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10

목 차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개요 17

I.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율 27

1. 개인소득세	29
가. 개인소득세의 세율 변화 추이	29
나. 국가별 개인소득세율	36
다. 소결	64
2. 법인세	66
가. 법인세율 변화 추이	66
나. 국가별 법인세율	75
다. 소결	97
3. 부가가치세	102
가. 부가가치세율 변화 추이	102
나. 국가별 부가가치세율	109
다. 소결	141
4. 상속·증여세	142
가. 상속·증여세 부과 현황	142
나. 국가별 상속·증여세율	143
다. 소결	171
5. 개별소비세	175
가. 주세	175
나. 담배	185
다. 유류(mineral oil)	191
라. 소결	200

목 차

II.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 203

1.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205
 - 가. 국민부담률의 변화 추이 206
 - 나. 조세부담률의 변화 추이 214
2. 세목별 GDP 대비 세수 비중 216
 - 가. 개인소득세 220
 - 나. 법인소득세 222
 - 다. 부가가치세, 판매세(VAT, Sales tax) 225
 - 라. 상속세 및 증여세(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227
 - 마. 소비세(Excises) 229
 - 바. 기타 233
3. 소결 239

III. OECD 회원국의 세수입 구조 241

1. 국세·지방세 구조 243
2. 직접세·간접세 구조 247
3. 세목별 세수 비중 255
 - 가. 개인소득세 256
 - 나. 법인소득세 259
 - 다. 부가가치세, 판매세(VAT, Sales tax) 262
 - 라. 상속세 및 증여세(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265
 - 마. 소비세(Excises) 266
 - 바. 기타 268
4. 소결 275

IV.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	279
1.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	281
가. 소득세 면세자 비중 산정 방법	281
나.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추이	283
2. 주요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285
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산정방법	285
나.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추이	286
V. 주요국의 고소득자 세수 비중	289
1. 고소득자 세수 비중 산정 방법	291
2. 고소득자 세수 비중 국제 비교	293
참고문헌	299
부록. OECD 회원국의 통계데이터 및 소득신고 현황	303

표 목차

<표 I-1>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율(1990년, 2000년, 2010년, 2011년~2016년) · 31
<표 I-2>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법정 최고세율(2000년, 2010년, 2011년~2016년) 35
<표 I-3> 호주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37
<표 I-4> 오스트리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38
<표 I-5> 벨기에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39
<표 I-6> 캐나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40
<표 I-7> 칠레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40
<표 I-8> 체코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41
<표 I-9> 덴마크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42
<표 I-10> 에스토니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43
<표 I-11> 핀란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44
<표 I-12> 프랑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45
<표 I-13> 독일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46
<표 I-14> 그리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47
<표 I-15> 헝가리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48
<표 I-16> 아이슬란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49
<표 I-17> 아일랜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49
<표 I-18> 이스라엘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50
<표 I-19> 이탈리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51
<표 I-20> 일본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52
<표 I-21>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52
<표 I-22> 라트비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53
<표 I-23> 룩셈부르크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53
<표 I-24> 멕시코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54
<표 I-25> 네덜란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55

List of Table

<표 I-26> 뉴질랜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56
<표 I-27> 노르웨이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57
<표 I-28> 폴란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57
<표 I-29>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58
<표 I-30> 슬로바키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58
<표 I-31> 슬로베니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59
<표 I-32> 스페인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60
<표 I-33> 스웨덴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61
<표 I-34> 스위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62
<표 I-35> 터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63
<표 I-36> 영국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63
<표 I-37> 미국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	64
<표 I-38> 2011년 대비 2016년의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의 변동 ……	65
<표 I-39>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	67
<표 I-40>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부가세, 지방법인세 포함) …	70
<표 I-41> 호주의 법인세율 ……	75
<표 I-42> 벨기에의 법인세율 ……	77
<표 I-43> 캐나다의 법인세율 ……	78
<표 I-44> 칠레의 법인세율 ……	79
<표 I-45> 덴마크의 법인세율 ……	80
<표 I-46> 프랑스의 법인세율 ……	81
<표 I-47> 독일의 법인세율 ……	82
<표 I-48> 그리스의 법인세율 ……	82
<표 I-49> 헝가리의 법인세율 ……	83
<표 I-50> 이스라엘의 법인세율 ……	84
<표 I-51> 이탈리아의 법인세율 ……	84

표 목차

<표 I-52> 일본의 법인세율	86
<표 I-53>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	88
<표 I-54> 네덜란드의 법인세율	88
<표 I-55> 노르웨이의 법인세율	89
<표 I-56> 폴란드의 법인세율	90
<표 I-57> 포르투갈의 법인부가세율	91
<표 I-58> 포르투갈의 법인세율	91
<표 I-59> 슬로바키아의 법인세율	92
<표 I-60> 슬로베니아의 법인세율	93
<표 I-61> 스페인의 법인세율	94
<표 I-62> 스웨덴의 법인세율	94
<표 I-63> 스위스의 법인세율	95
<표 I-64> 영국의 법인세율	96
<표 I-65> 미국의 법인세율	97
<표 I-66> OECD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구조(2017년 기준)	98
<표 I-67> OECD 회원국 중 중소기업 경감세율 적용 국가(2017년 기준)	98
<표 I-68> OECD 회원국의 금융위기 전·후 법인세율 인상·인하 여부	99
<표 I-69>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외 부가세, 지방법인세 부과 현황(2017년 기준)	101
<표 I-70>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 변화 추이(1975년~2016년)	105
<표 I-71> 호주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09
<표 I-72> 오스트리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10
<표 I-73> 벨기에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11
<표 I-74> 캐나다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12
<표 I-75> 칠레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13
<표 I-76> 체코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14
<표 I-77> 덴마크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15

List of Table

<표 I-78> 에스토니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16
<표 I-79> 핀란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17
<표 I-80> 프랑스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18
<표 I-81> 독일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19
<표 I-82> 그리스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20
<표 I-83> 헝가리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21
<표 I-84> 아이슬란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22
<표 I-85> 아일랜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23
<표 I-86> 이스라엘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24
<표 I-87> 이탈리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25
<표 I-88> 일본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26
<표 I-89> 대한민국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26
<표 I-90> 라트비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27
<표 I-91> 룩셈부르크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28
<표 I-92> 멕시코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29
<표 I-93> 네덜란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30
<표 I-94> 뉴질랜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31
<표 I-95> 노르웨이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32
<표 I-96> 폴란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33
<표 I-97> 포르투갈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34
<표 I-98> 슬로바키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35
<표 I-99> 슬로베니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35
<표 I-100> 스페인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36
<표 I-101> 스웨덴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38
<표 I-102> 스위스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39
<표 I-103> 터키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39

표 목차

<표 I-104> 영국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140
<표 I-105>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세 과세 현황	143
<표 I-106> 벨기에 브뤼셀(Brussels-Capital) 지역의 상속·증여세율	144
<표 I-107> 칠레의 상속·증여세율	145
<표 I-108> 핀란드의 상속세율	147
<표 I-109> 핀란드의 증여세율	148
<표 I-110> 프랑스의 배우자 간 증여세율	149
<표 I-111> 프랑스의 직계가족 간 상속·증여세율	149
<표 I-112> 프랑스의 형제자매 간 상속·증여세율	150
<표 I-113> 독일의 상속·증여세율	151
<표 I-114> 그리스의 상속·증여세율	152
<표 I-115> 일본의 상속세율	155
<표 I-116> 일본의 증여세율	156
<표 I-117> 대한민국의 상속·증여세율	156
<표 I-118> 룩셈부르크의 상속세율	158
<표 I-119> 룩셈부르크의 상속세율에 대한 부가세	158
<표 I-120> 룩셈부르크의 증여세율에 대한 부가세	159
<표 I-121> 네덜란드의 상속·증여세율	160
<표 I-122> 폴란드의 상속·증여세율	161
<표 I-123> 슬로베니아의 상속·증여세율	162
<표 I-124> 스페인의 상속·증여세율	163
<표 I-125> 스페인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가세(surcharge)	164
<표 I-126> 스위스 취리히 주의 상속·증여세율	165
<표 I-127> 터키의 상속세율	166
<표 I-128> 터키의 증여세율	167
<표 I-129> 미국의 상속·증여세율	168

List of Table

<표 I-130>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세율	169
<표 I-131> OECD 회원국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제3자에 대한 최고 상속세율 비교	173
<표 I-132> OECD 5개국의 증여세율	174
<표 I-133> OECD 회원국의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 현황	177
<표 I-134> OECD 회원국의 와인에 대한 주세 과세 현황	181
<표 I-135> OECD 회원국의 알코올 음료에 대한 주세 과세 현황	183
<표 I-136> 담배세	186
<표 I-137> OECD 회원국의 쉐련 담배 가격 대비 세금 부담 현황	189
<표 I-138> 무연휘발유(리터당) 유류세	193
<표 I-139> 디젤(리터당) 유류세	195
<표 I-140> 가정용 경질연료유(리터당) 유류세	198
<표 II-1> OECD 회원국의 연도별 국민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09
<표 II-2>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조세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15
<표 II-3> OECD 통계 분류 기준	217
<표 II-4>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20
<표 II-5>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23
<표 II-6>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25
<표 II-7> OECD 회원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28

표 목차

<표 II-8> OECD 회원국의 소비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31
<표 II-9> OECD 회원국의 거래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33
<표 II-10> OECD 회원국의 기타 재산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35
<표 II-11> OECD 회원국의 환경에너지세 부담률(1994년, 2000년, 2010년~2014년)	237
<표 II-12> 우리나라의 세목별 세수 비중(2014년)	240
<표 III-1> OECD 회원국의 국세·지방세 구조 변화 추이	245
<표 III-2> OECD 회원국의 직접세·간접세 비중	249
<표 III-3> 세목별 OECD 세수통계 항목	255
<표 III-4>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수 비중(총세수 기준)	257
<표 III-5>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수 비중	260
<표 III-6>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수 비중	263
<표 III-7> OECD 회원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	265
<표 III-8> OECD 회원국의 소비세수 비중	267
<표 III-9> OECD 회원국의 거래세 비중	269
<표 III-10> OECD 회원국의 기타 재산세 비중	271
<표 III-11> OECD 회원국의 환경 관련 세수 비중(1994년, 2000년, 2010년~2014년)	273
<표 III-12>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 비중(2014년 기준)	276
<표 IV-1>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추이(2007년~2015년)	284
<표 IV-2> 주요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추이(2007년~2015년)	286

List of Table

<표 V-1> 주요국의 소득상위계층의 소득구간 및 분포(2007년~2015년)	295
<표 V-2> 주요국의 고소득 납세자의 세수 비중 추이(2007년~2015년)	296
<부표 1> OECD 회원국의 GDP(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303
<부표 2> OECD 회원국의 총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	304
<부표 3>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306
<부표 4>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307
<부표 5>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308
<부표 6>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309
<부표 7> OECD 회원국의 소비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	310
<부표 8> OECD 회원국의 거래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	311
<부표 9> OECD 회원국의 기타 재산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312
<부표 10> OECD 회원국의 환경·에너지세수액(1994년, 2000년, 2010년~2014년) ..	313
<부표 11> 미국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 분포 (2014년 기준)	314
<부표 12> 영국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 분포 (2014년 기준)	315
<부표 13> 호주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 분포 (2014년 기준)	316
<부표 14> 캐나다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 분포 (2014년 기준)	317
<부표 15> 일본의 급여소득자 수, 급여총액 및 세수	318

표 목차

<부표 16> 우리나라의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신고자 분포(2015년)	319
<부표 17> 우리나라의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신고자 분포(2015년)	320
<부표 18> 미국의 소득분위별 소득 비중 및 세부담 현황(2013년)	321
<부표 19> 영국의 소득분위별 소득세 납부 현황(2007년~2016년)	322
<부표 20> 독일의 소득분위별 소득세 납부 현황(2013년)	322
<부표 21> 호주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납부 현황(2014년 기준)	323
<부표 22> 캐나다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납부 현황(2014년 기준)	324
<부표 23> 일본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납부 현황(2014년 기준)	325
<부표 24> 우리나라의 종합소득규모별 소득세 납부 현황(2015년 기준)	326
<부표 25>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상위 10%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 현황 (2007년~2015년 기준)	326

그림 목차

[그림 I-1]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율 변화(2011년 대비 2016년)	34
[그림 I-2]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2010년 대비 2017년)	69
[그림 I-3]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을 현황(2017년)	74
[그림 I-4] OECD 회원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VAT)의 변화(1976년~2016년) ·	107
[그림 I-5]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2016년기준)	108
[그림 II-1]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2015년)	208
[그림 II-2]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2014년)	212
[그림 II-3]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22
[그림 II-4]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24
[그림 II-5]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227
[그림 II-6]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변화 추이 (1965년~2015년)	239
[그림 III-1] OECD 회원국의 직접세·간접세 구조(국세만)	253
[그림 III-2] OECD 회원국의 직접세·간접세 비중(국세·지방세 모두 포함)	254
[그림 III-3]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258
[그림 III-4]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	261
[그림 III-5]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264

개 요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주요 조세통계 자료를 취합·정리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조세 정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세목별 세율, 세수 비중 및 세수입 구조 등의 항목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제시함
 - 제I장에서는 주요 세목별 세율의 변천 및 각 국가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제II장에서는 각 주요 세목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을 국가별로 정리하고 그 특징을 요약함
 - 제III장에서는 전체 세수 대비 각 세목들의 비중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회원국들의 조세수입 구조를 정리함
 - 제 IV장 및 제V장은 OECD 회원국 중 일부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중 및 고소득자 세수 비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율

가.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율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세율의 급격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음
 - OECD 회원국의 평균 개인소득세율은 1981년 약 57%에서 2010년 36.91% 까지 하락함

- 2011년 이후 최고세율은 일부 인상되었으나 중간·저소득층의 세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큰 변동이 없음
- 1980년대 이후 과세표준 구간(tax brackets)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1981년에는 회원 22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20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5개국(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외)이었으나, 2010년에는 회원 34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10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는 2개국(룩셈부르크, 스위스)에 불과함
 - 과세표준 구간 수는 소득상위계층의 세금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간접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며, 최고세율 변경과 연동하여 개정되는 경향이 있음
- 2016년 기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평균 43.27%이며, 주로 북·서유럽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최고세율이 50%를 상회함
 -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및 슬로바키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은 최고세율이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나. 법인세

- 200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인하 추세가 약화됨
 - 2000년~2009년 사이에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였음
 - 금융위기 이후에는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가 늘고, 인하 폭도 감소하였음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단일의 법인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누진세율, 경감세율, 법인부가세 등을 운용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네덜란드,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미국은 누진세율 구조를 운영함
 - 6개 회원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회원국 중 4개국(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별도의 법인부가세를 부과하며, 8개국은 지방법인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전체 법인세율은 약 24.45%로 최저 9%~최고 약 41%의 범위 내에 분포됨
 - 미국, 프랑스, 벨기에, 호주, 멕시코 등은 30%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영국, 라트비아, 아일랜드, 헝가리 등은 20% 미만의 저세율을 적용함

다. 부가가치세

- 197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은 크게 4단계의 기간 동안 인상 또는 안정화되었음
 - 1975년~2000년: 다수의 국가들이 VAT 제도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음(OECD 평균 표준세율: 1975년 15.6%~2000년 18%)
 - 2000년~2009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준세율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OECD 평균 표준세율: 2000년 18%~2009년 17.7%)
 - 2009년~2014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대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VAT 표준세율을 인상함(OECD 평균 표준세율: 2009년 17.7%~2014년 19.1%)
 - 2014년~2016년: 표준세율이 안정화됨(OECD 평균 표준세율: 2014년 19.1%~2016년 19.2%)

- 2016년 기준 OECD의 VAT 평균 표준세율은 19.2%인 반면, 우리나라의 VAT 표준세율은 10% 수준을 유지해 OECD 평균과 큰 격차를 보임
 -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8%), 스위스(8%), 캐나다(5%)¹⁾ 등 3개국임
 - OECD 회원국 중 EU권 국가와 비EU권 국가의 VAT 표준세율 격차가 크게 나타남
 - 22개 EU 회원국(평균 21.7%)과 영국(20%) 및 노르웨이(25%)를 제외한 10개국의 VAT 표준세율은 12.6%임

라. 상속·증여세

- OECD 회원 35개국 중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개국임
 - 상속·증여세가 없는 13개국 중 호주 및 캐나다는 상속·증여세 대신에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 나머지 11개 미부과 국가 중 9개국은 과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다 폐지하였음(체코, 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22개국 중 대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과세대상이나 세율 등을 달리 적용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아이슬란드와 영국은 상속세만 부과하고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 덴마크,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와 터키 등 5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이나 세율을 달리 규정함

1) 단, 캐나다의 경우 각 주(province)에서 별도의 판매세(sales tax)를 징수하여 유효세율은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상속세율은 주로 상속재산 규모나 피상속인과의 인적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상속세 부과 22개국 중 16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율을 차등 적용하며, 가까운 친족 관계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함
 -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터키, 영국과 미국은 인적 관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지 않음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누진세 형태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임
 - 나머지 9개국 중 6개국은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3개국은 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을 혼합해서 사용함

마. 개별소비세

- 주류, 담배 및 유류(mineral oil)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적 과세대상으로서, 품목 특성 및 과세 목적 등에 따라 종가세 및 종량세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음
 - 주세는 대부분 종량세 과세체계를 따르며 일부 국가들만 종가세 방식을 채택함
 - 담배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량세와 종가세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유류의 경우 거의 대부분 리터당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각 물품들은 세부 품목별 특성에 따라 국가별로 과세 방식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
 - 주류는 맥주, 와인 및 기타 알코올 음료로 구분되며, 저알코올 음료 또는 소규모 제조업체 등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 담배는 일반담배(cigarette), 시가(cigar), 각련(rolling tobacco) 등의 세부 품목으로 구분되며, 일반담배에 대해 과세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유류는 무연휘발유, 디젤유, 가정용 경질연료유 등으로 세부 구분되며, 운송 유에 비해 가정용 유류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함
- 개별소비세 과세는 세수 확보라는 기본적 목적뿐만 아니라 유해한 소비자 행위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시행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류 및 담배 관련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음

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

가. 전체 세수 비중

- GDP 대비 세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부담률²⁾과 조세부담률³⁾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1980년에 30.1%에서 2000년 34.0%까지 상승하였다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10년 32.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기준 평균 국민부담률은 34.3%로 추정됨
 -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1980년에 23.2%에서 2015년에는 25.8%에 이르기까지 상승하였음
 - 이러한 증가 추세는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공공부문 지출 증가를 위한 재정책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은 국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2015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17.4%(멕시코)에서 46.6%(덴마크)까지의 범위로 나타남

2)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을 포함한 조세수입(tax revenue)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등 7개국은 국민부담률이 40%를 초과함
- 2015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 및 슬로바키아가 18.5%로 가장 낮고 덴마크(46.6%)가 가장 높음
- 이외에도 스웨덴(33.6%), 아이슬란드(33.5%), 뉴질랜드(32.8%), 핀란드(31.3%) 등에서 조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남

나. 주요 세목별 세수 비중⁴⁾

- OECD 평균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1980년 9.8%에서 2010년 7.7%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추정치 8.6%까지 상승함
 -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25.4%)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1.5%)로 편차가 크며, 우리나라는 4.4% 수준임
- OECD 평균 법인소득세 부담률은 1980년 2.3%에서 2014년 2.8%로 상승함
 -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4.9%)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슬로베니아(1.5%)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수치가 집계된 32개국 중 10위에 해당함
- OECD 평균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1980년 4.8%에서 2015년 추정치 7.0%로 상승함
 -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9.9%)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0%)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수치가 집계된 32개국 중 30위에 해당함
- 상속·증여세 부담률 및 개별소비세 부담률은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4) 각 세목별 세수의 GDP 대비 비중으로서 세목별 '부담률'로 통칭함

- OECD 평균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1980년 이래 2014년까지 0.1%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OECD 평균 개별소비세 부담률은 1980년 2.9%에서 1990년 2.6%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 다시 2.9%로 증가하였고, 2015년 기준 2.6%로 나타남

3. OECD 회원국의 세수입 구조

- OECD 회원국의 세수입 구조 관련 통계는 전체 세수 대비 (i) 국세 및 지방세 비중, (ii) 직접세 및 간접세 비중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
- OECD 회원국의 2015년 기준 평균 국세 비중은 79.5%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은 없으며, 연방국가 이외의 대부분의 회원국은 국세 비중이 더 높음
 - 연방국가 중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며, 단일국가 중 스웨덴만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비슷함
 -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국세 비중이 75.4%이며, 지방세 비중은 1990년 19.0%에서 2015년 24.6%로 지방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OECD 회원국의 2015년 기준 평균 직접세 비중은 51.5%로 최근 5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 주로 동유럽 국가에서 간접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의 직접세 비중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53.9%)
- 세목별 세수입 구조는 직접세 비중 등 국가별 특징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임
 - 직접세 비중이 높은 미국, 캐나다의 경우 소득세수와 재산세 비중이 높은 반면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와 소비세수 비중이 낮음

- 주요국 중 독일은 개인소득세수, 부가가치세 비중은 높은 편인 반면 법인 소득세와 재산세의 세수 비중은 낮고, 일본은 개인소득세수,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소득세 및 재산세 비중이 높은 편임
 - 소비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수 비중은 독일, 일본 모두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임
- 프랑스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수 비중 모두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이나 재산세와 거래세수 비중은 상위국가에 속함
- 이탈리아의 경우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수 비중은 낮으나 개인 소득세와 거래세수 비중이 높음

4.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소득세 면세자⁵⁾ 비중을 조사 하였으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의 경우 일본도 추가 조사함
- 각 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4년 기준 3.2%(영국)에서 43.1%(우리나라) 까지로, 국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영국은 면세자 비중이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나머지 외국 국가들은 약 25%~35% 수준임
 -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4년 세제개편의 결과 면세자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4년 기준 0.9%(영국)~47.9%(우리나라)로 소득세 면세자 비중보다 편차가 크게 나타남

5) 과세대상소득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세소득이 존재하더라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결정세액이 없는 납세자를 지칭함

- 영국의 면세자 비중은 1% 미만이며, 미국은 35% 미만, 이외 국가에서는 20% 미만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중은 2007년 42.2%에서 2015년 46.5%까지 증가함
- 2013년 면세자 비중은 32.2% 수준이었으나, 2014년 47.9%로 크게 증가하였음

5. 주요국의 고소득자 세수 비중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소득 상위 0.1%, 1%, 10%인 고소득 납세자의 세수 비중을 조사함
- 2013년 기준 고소득자 세수 비중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소득상위자의 세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소득상위 1% 납세자의 세수 비중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순으로 높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상위 1%의 세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소득상위 10% 납세자의 세수 비중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주요국 모두 소득상위 10% 세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I .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율



I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율

01

개인소득세⁶⁾

-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OECD에 보고된 최고 한계세율(top marginal tax rate -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이하, “개인소득세율”)로, 국세(지방소득세, 부가세 등 제외)에 대한 세율임
 - 개인소득세율은 단일 납세자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공제·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⁷⁾
 - 국가 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점이 상이하므로 개인소득세율을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가. 개인소득세의 세율 변화 추이

- 총 35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여 1981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개인소득세의 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봄

6) 본 장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신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초자료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은 수행하지 않음(출처: <http://www.oecd.org/>)

7) 특히 일부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등)에서는 지방소득세나 부가세의 비중이 크거나, 과세 방식의 차이(중합·분류·분리 과세 또는 이원소득세제)로 인하여 조사된 세율이 총소득세율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OECD 평균 개인소득세율⁸⁾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 인하하는 추세를 나타냄⁹⁾
 - 198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개인소득세율은 약 57%였으나, 1990년까지 약 14%p 인하함
 - 199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평균 개인소득세율은 42.92%에서 36.91%¹⁰⁾로 약 6%p 인하함¹¹⁾
 - 특히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거나 단일세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개인소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함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세율을 인하하였으나,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통합 조치 등으로 세율을 인상함

- 세율의 인하와 더불어 과세표준 구간(tax brackets)에 대한 개편이 병행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과세표준 구간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1990년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¹²⁾
 - 1981년 기준 OECD 회원 22개국 중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20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5개국(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외), 10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9개국(일본, 스웨덴, 미국, 호주 외)으로 나타남

8) OECD 회원국의 평균세율은 각국의 개인소득세율의 산술평균치로, 연도별 변화 추이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함

9) Carolina Torres, Kirsty Mellbye and Bert Brys, “Trends in Personal Income Tax and 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Schedules,”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12, 2012. p. 3.

10) 1990년 수치가 제공된 OECD 24개국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 따라 평균 세율을 토대로 추이를 살필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24개 회원국의 평균 개인소득세율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연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4개국 평균 세율	42.92	40.60	36.91	36.12	36.60	36.69	36.91	36.80	37.27

11) Carolina Torres, Kirsty Mellbye and Bert Brys(2012), pp. 5~7

12) OECD 회원국의 과세표준 구간 수는 1981년 기준 평균 14단계였으나, 1990년에 평균 6단계, 2000년에는 평균 5단계로 감소함(출처: Carolina Torres, Kirsty Mellbye and Bert Brys(2012), p. 3.

(단위: %)

국가	1981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16 변동 ³⁾
일본 ¹⁾	75	50	37	40	40	40	40	40	45	45	인상
대한민국 ¹⁾	-	-	40	35	35	38	38	38	38	38	인상
라트비아	-	-	25	26	25	25	24	24	23	23	인하
룩셈부르크	57	56	46	38	39	39	40	40	40	40	인상
멕시코	55	35	40	30	30	30	30	35	35	35	인상
네덜란드	72	60	60	52	52	52	52	52	52	52	유지
뉴질랜드	60	33	39	35.5	33	33	33	33	33	33	유지
노르웨이 ¹⁾	38	17	29.85	24.55	26.05	25.75	25.75	24.95	25.15	24.25	인하
폴란드	-	-	40	32	32	32	32	32	32	32	유지
포르투갈	84.4	40	40	45.88	46.5	46.5	48	48	48	48	인상
슬로바키아	-	-	42	19	19	19	25	25	25	25	인상
슬로베니아	-	-	50	41	41	41	50	50	50	50	인상
스페인 ²⁾	65.09	56	39.6	27.13	23.5	30.5	30.5	30.5	22.5	22.5	인하
스웨덴 ¹⁾	29	25	25	25	25	25	25	25	25	25	유지
스위스 ²⁾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13.2	유지
터키	-	-	40	35	35	35	35	35	35	35	유지
영국	60	40	40	50	50	50	45	45	45	45	인하
미국 ¹⁾	70	28	39.6	35	35	35	39.6	39.6	39.6	39.6	인상
OECD평균	57.01	42.92	39.94	35.08	34.48	34.98	35.50	35.65	35.52	35.83	인상

주: 1)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non-progressive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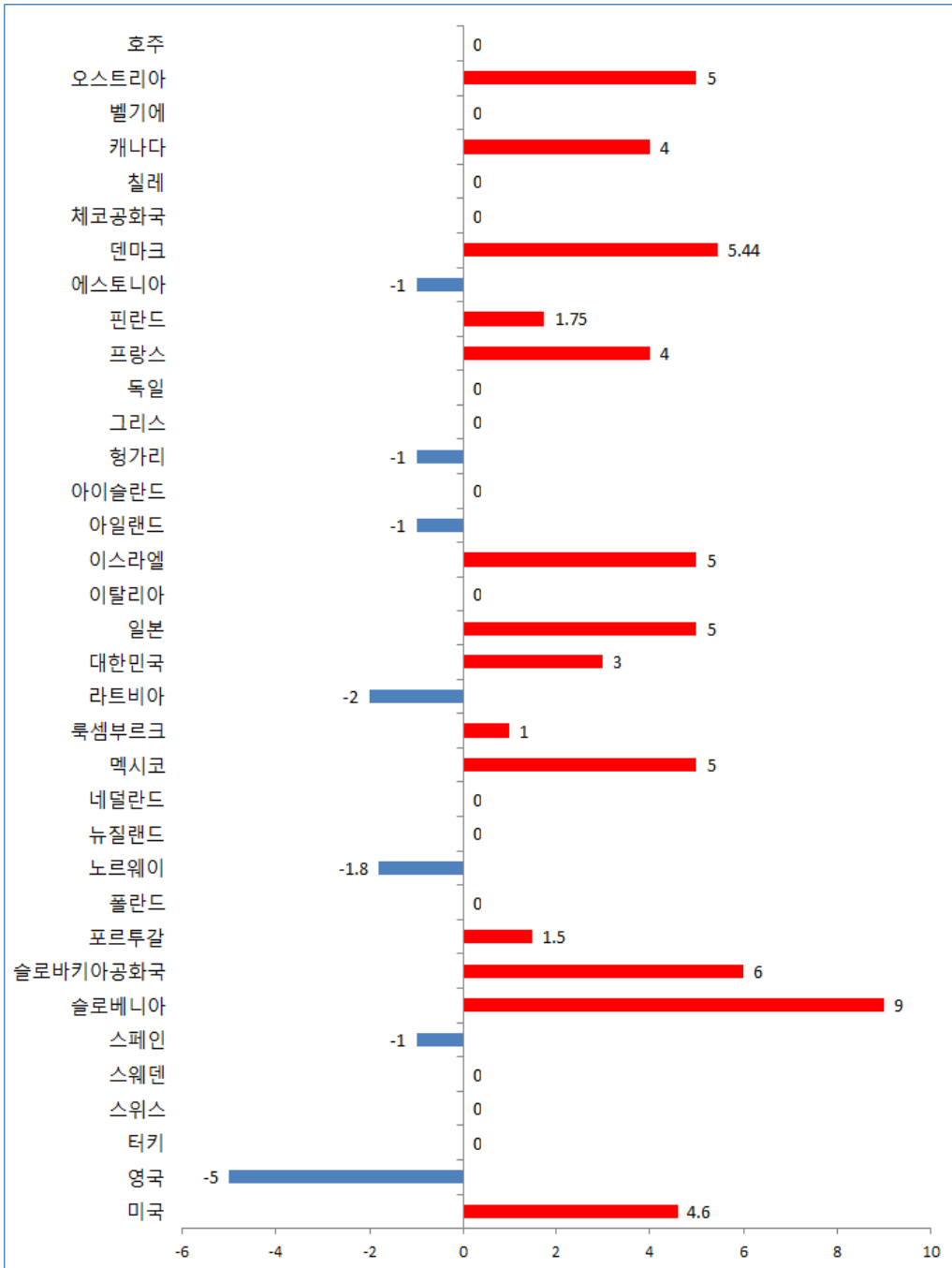
2)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progressive systems

3) 2011년 대비 2016년에 세율이 인상, 유지, 인하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01년 이후: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11#; 1981년, 1990년, 2000년: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접속일자: 2017.9.8.)

- OECD 평균 개인소득세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4.48%에서 35.83%로 1.36%p 상승함
 - 2011년 대비 2016년에 개인소득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14개국, 인하한 국가는 7개국, 유지한 국가는 14개국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개인소득세율을 인상 또는 유지함
 - 개인소득세율을 인상한 14개국은 우리나라 외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미국임
 - 개인소득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은 2011년 대비 2016년에 평균적으로 약 4.31%p 인상하였으며, 이 중 가장 크게 인상한 국가는 슬로베니아로, 9%p 인상함
 -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한 7개국은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임
 -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한 국가들은 2011년 대비 2016년에 평균적으로 약 1.83%p 인하하였으며, 이 중 가장 크게 인하한 국가는 영국으로, 5%p 인하함

그림 1-1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율 변화(2011년 대비 2016년)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참고로, 2000년,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OECD 회원국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정 최고세율(top statutory tax)은 <표 I-2>와 같음

- 세율의 변동추이는 개인소득세율과 동일하게 2010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1년 이후 상승하는 것으로 전환됨
- 2016년 기준 개인소득에 최고세율은 평균 43.27%로, 11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 포르투갈 외)에서 법정최고세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법정 최고세율이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표 I-2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법정 최고세율(2000년, 2010년, 2011년~2016년)

(단위: %)

국가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48.5	46.5	46.5	47.5	46.5	46.5	49	49
오스트리아	43.7	43.7	43.7	43.7	50	50	50	55
벨기에 ²⁾	60.5	53.7	53.7	53.7	53.7	53.8	53.8	53.3
캐나다 ²⁾	47.9	46.4	46.4	48.0	49.5	49.5	49.5	53.5
칠레	45	40	40	40	40	40	40	40
체코	32	15	15	15	15	15	15	15
덴마크 ¹⁾	59	55.4	55.4	55.4	55.6	55.6	55.8	55.8
에스토니아	26	21	21	21	21	21	20	20
핀란드 ¹⁾	55.2	49.0	49.2	49	51.1	51.5	51.0	51.6
프랑스	58.3	46.7	50.5	54.4	54.5	54.5	54.5	54.5
독일	53.8	47.5	47.5	47.5	47.5	47.5	47.5	47.5
그리스	45	45	49	49	46	46	50	54
헝가리	40	32	16	16	16	16	16	15
아이슬란드 ¹⁾	45.4	46.1	46.2	46.2	46.2	46.2	46.2	46.3
아일랜드	46	52	48	48	48	48	48	48
이스라엘	50	45	45	48	50	50	50	50
이탈리아 ¹⁾	46.4	45.2	47.3	47.3	47.3	47.8	48.8	48.8
일본 ¹⁾	50	50	50	50	50.8	50.8	55.9	55.9
대한민국 ¹⁾	44	38.5	38.5	41.8	41.8	41.8	41.8	41.8
라트비아	25	26	25	25	24	24	23	23
룩셈부르크	47.2	39.0	41.3	41.3	43.6	43.6	43.6	43.6

(단위: %)

국가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멕시코	40	30	30	30	30	35	35	35
네덜란드	60	52	52	52	52	52	52	52
뉴질랜드	39	35.5	33	33	33	33	33	33
노르웨이 ¹⁾	47.5	40	40	40	40	39	39	38.7
폴란드	40	32	32	32	32	32	32	32
포르투갈	40	45.9	50	49	56.5	56.5	56.5	56.5
슬로바키아	42	19	19	19	25	25	25	25
슬로베니아	50	41	41	41	50	50	50	50
스페인 ²⁾	48	43	45	52	52	52	45	45
스웨덴 ¹⁾	55.4	56.6	56.6	56.6	56.7	56.9	57.0	57.1
스위스 ²⁾	43.8	41.7	41.7	41.7	41.7	41.7	41.7	41.7
터키	40.6	35.7	35.7	35.7	35.76	35.8	35.8	35.8
영국	40	50	50	50	45	45	45	45
미국 ¹⁾	46.7	41.9	41.9	41.8	46.3	46.3	46.3	46.3
OECD평균	45.8	41.4	41.2	41.8	42.7	42.8	43.0	43.3

주: 1)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non-progressive systems

2)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progressive systems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7. Top statutory personal income tax rate and top marginal tax rates for employe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17#, 접속일자: 2017.9.8.)

나. 국가별 개인소득세율

- 총 35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이하, “조사기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변화를 살펴봄
 - 2016년을 기준으로 단일세율 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수를 “단계”로 기재함
 - 과세표준 또는 세율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간은 음영으로 표시함
 -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OECD에서 제공한 국세의 세율(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로 기재하였으며, 지방소득세(local/sub-central government tax), 부가세(surtax), 교회세(church tax)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호주

- 조사기간 동안 5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 누진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일부 조정함
 - 2013년에 과세최저한을 AUD 6,000에서 AUD 18,200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함
 - 반면에 2구간과 3구간의 세율을 각각 기존 15%, 30%에서 19%, 32.5%로 상향 조절하여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인상함

표 1-3 호주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AUD,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 단계	~6,000	0	~6,000	0	~18,200	0	~18,200	0	~18,200	0	~18,200	0
	~37,000	15	~37,000	15	~37,000	19	~37,000	19	~37,000	19	~37,000	19
	~80,000	30	~80,000	30	~80,000	32.5	~80,000	32.5	~80,000	32.5	~80,000	32.5
	~180,000	37	~180,000	37	~180,000	37	~180,000	37	~180,000	37	~180,000	37
	180,000~	45	180,000~	45	180,000~	45	180,000~	45	180,000~	45	180,000~	4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2) 오스트리아

- 2016년에 누진세 체계를 4단계에서 7단계로 개편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인하 또는 인상함
 - 2011년부터 2015까지 4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에 과세최저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외 과세표준 구간을 전반적으로 조정

하였으며, 특히 EUR 60,000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의 경우 4단계로 세분화함

- EUR 90,000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경우, 세율을 기존 36.5%, 43.21%, 50%에서 중하위 소득 구간을 신설하면서 25%, 35%, 42%, 48%로 조정하여 중산층의 세율을 인하함
- EUR 90,000 초과 EUR 1,000,000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은 기존 50%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EUR 1,000,000 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은 55%로 5%p 상향 조정하여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조치를 취함

표 1-4 오스트리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7 단계	~11,000	0	~11,000	0	~11,000	0	~11,000	0	~11,000	0	~11,000	0
											~18,000	25
	~25,000	36.5	~25,000	36.5	~25,000	36.5	~25,000	36.5	~25,000	36.5	~31,000	35
	~60,000	43.21	~60,000	43.21	~60,000	43.21	~60,000	43.21	~60,000	43.21	~60,000	42
	60,000~	50	60,000~	50	60,000~	50	60,000~	50	60,000~	50	~90,000	48
											~1,000,000	50
											1,000,000~	5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3) 벨기에

- 조사기간 중 5단계의 누진세 체계와 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함
- 벨기에에는 소득세에 물가연동세제를 연동하고 있어 과세표준 구간이 매년 변동함
 - 물가연동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과세표준구간

이 상향 조정되므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표 1-5 벨기에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 단계	~8,070	25	~8,350	25	~8,590	25	~8,680	25	~8,710	25	~10,860	25
	~11,480	30	~11,890	30	~12,220	30	~12,360	30	~12,400	30	~12,470	30
	~19,130	40	~19,810	40	~10,370	40	~20,600	40	~20,660	40	~20,760	40
	~35,060	45	~36,300	45	~37,330	45	~37,750	45	~37,870	45	~38,080	45
	35,060~	50	36,300~	50	37,330~	50	37,750~	50	37,870~	50	38,080~	50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4) 캐나다

- 2016년에 누진세 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면서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인하 또는 인상함
 - 2011년부터 2015까지는 4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함
 - 캐나다는 소득세에 물가연동세제를 연동하고 있어 매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함
 - 2구간의 세율을 기존 22%에서 20.5%로 하향 조정하여 중산층의 세율을 인하함
 - 또한 CAD 200,000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세율을 기존 29%에서 3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초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함

표 1-6 캐나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CAD,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 단계	~41,544	15	~42,707	15	~43,561	15	~43,953	15	~44,701	15	~45,282	15
	~83,088	22	~85,414	22	~87,123	22	~87,907	22	~89,401	22	~90,563	20.5
	~128,800	26	~132,406	26	~135,054	26	~136,270	26	~138,586	26	~140,388	26
	128,800~	29	132,400~	29	135,054~	29	136,270~	29	138,586~	29	~200,000	29
											200,000~	33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5) 칠레

□ 조사기간 중 8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중 최저세율 0%와 최고세율 40%를 제외한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인하함

- 칠레는 소득세에 물가연동세제를 연동하고 있어 매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함
- 2013년 중 최저세율 0%와 최고세율 40%를 제외한 중간단계 세율을 전반적으로 1%~2%p 하향 조정하는 감세조치를 취함

표 1-7 칠레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CLP,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8 단계	~6,321,402	0	~6,513,372	0	~6,605,064	0	~6,998,076	0	~7,282,710	0	~7,481,646	0
	~14,047,560	5	~14,474,160	5	~14,677,920	4	~15,551,208	4	~16,183,800	4	~16,625,880	4
	~23,412,600	10	~24,123,600	10	~24,463,200	8	~25,918,800	8	~26,973,000	8	~27,709,800	8
	~32,777,640	15	~33,773,040	15	~34,248,480	13.5	~36,286,320	13.5	~37,762,200	13.5	~38,793,720	13.5
	~42,412,680	25	~43,422,480	25	~44,033,760	23	~46,653,840	23	~48,551,400	23	~49,877,640	23
	~56,190,240	32	~57,896,640	32	~58,711,680	30.4	~62,205,120	30.4	~64,735,200	30.4	~66,503,520	30.4
	~70,237,800	37	~72,370,800	37	~73,389,600	35.5	~77,756,400	35.5	~80,919,000	35.5	~83,129,400	35.5
	70,237,800~	40	72,370,800~	40	73,389,600~	40	77,756,400~	40	80,919,000~	40	83,129,400~	40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6) 체코

□ 조사기간 중 단일세율 체계와 15% 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함

- 체코는 2007년까지 12%~37%의 누진세 체계였으나 2008년 15%의 단일세율을 체계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표 1-8 체코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CZK,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단일세율		15		15		15		15		15		1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7) 덴마크

□ 조사기간 중 동일하게 2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을 매년 인상함

- 세율은 매년 인상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세율과 함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킴

□ 덴마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방소득세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조사한 세율은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국세의 세율(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에 해당함¹³⁾

- 기본구간(ordinary income tax, low bracket)과 추가구간(additional income

13) 일반적으로 알려진 덴마크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음

tax, top bracket)으로 구분하여, 추가구간에 대해서 기본세율에 15%를 가산하여 과세함¹⁴⁾

- 2016년 기준 지방소득세율은 22.5%~27.8%¹⁵⁾이며, 부가세(사회보장세)는 8%¹⁶⁾로, 정확한 소득세의 계산은 지방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함

표 1-9 덴마크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DKK,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	~389,900	3.64	~389,900	4.65	~421,000	5.83	~449,100	6.83	~459,200	8.08	~467,300	9.08
단계	389,900~	18.64	389,900~	19.65	421,000~	20.83	449,100~	21.83	459,200~	23.08	467,300~	24.08

주: OECD에서 제공한 주정부 세율(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로 기재하였으며, 지방소득세(sub-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단위: DKK,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	~42,900	0	~42,900	0	~42,900	0	~49,900	0	~47,174	8	~47,826	8
	~389,900	36	~389,900	36	~389,900	36	~488,100	40	~499,100	40	~507,934	42
	389,900~	51.5	389,900~	51.5	389,900~	51.7	488,100~	56	499,100~	56	507,934~	56

(자료 : EY, *The 2011 global executive-individual tax, social security and immigration*, 2011; 2012-13부터 2015-16까지의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 14) 덴마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skm.dk/english/facts-and-figures/danish-income-tax-rates-2014-2017>, 접속일자 2017.9.29.)
- 15) OECD Statistics 제공 2016년 최소 지방소득세율(Minimum sub-central rate)과 최고 지방소득세율(Maximum sub-central rate)을 기재함(출처: Table I.2.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non-progressive system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2#, 접속일자: 2017.9.12.)
- 16) OECD Statistics 제공 2016년 surtax rate에 해당함(출처: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12.)

8) 에스토니아

- 조사기간 중 단일세율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중 세율을 기존 21%에서 20%로 인하함
 - 2000년 소득세율은 26%였으며, 2005년 24%로 2%p 인하한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p씩 인하함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1%로 유지하였으나, 2015년 1%p 인하하여 현재 세율인 20%로 개정됨

표 1-10 에스토니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단일 세율		21		21		21		21		20		20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9) 핀란드

- 2013년에 누진세 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함
 - 2012년, 2014년~2016년에는 물가수준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이 이루어짐
 - 2013년에는 고소득자 증세를 위하여 EUR 100,000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였으며, 이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음¹⁷⁾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3년 제2호, 2013. 12, p. 26

- 2012년에 최고세율을 30%에서 29.75%로 소폭 인하하였으나, 2013년에 과세 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기존 29.75%에서 31.75%로 인상함
- 2013년 이후 세율은 0%~31.75%로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음
- 핀란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방소득세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조사한 세율은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국세의 세율(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에 해당함
- 2016년 기준 지방소득세율은 16.5%~22.5%¹⁸⁾이며, 정확한 소득세의 계산은 지방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함

표 1-11 핀란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 단계	~15,600	0	~16,100	0	~16,100	0	~16,300	0	~16,500	0	~16,700	0
	~23,200	6.5	~23,900	6.5	~23,900	6.5	~24,300	6.5	~24,700	6.5	~25,000	6.5
	~37,800	17.5	~39,100	17.5	~39,100	17.5	~39,700	17.5	~40,300	17.5	~40,800	17.5
	~68,200	21.5	~70,300	21.5	~70,300	21.5	~71,400	21.5	~71,400	21.5	~72,300	21.5
	68,200~	30	70,300~	29.75	~100,000	29.75	~100,000	29.75	~90,000	29.75	~90,000	29.75
				100,000~	31.75	100,000~	31.75	90,000~	31.75	90,000~	31.7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18) OECD Statistics 제공 2016년 최소 지방소득세율(minimum sub-central rate)과 최고 지방소득세율(maximum sub-central rate)을 기재함(출처: Table I.2.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non-progressive system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2#, 검색일자: 2017.9.18.)

10) 프랑스

- 2012년에 누진세 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효과가 발생하였고, 2014년에는 6단계에서 5단계로 저소득층의 누진세 구간을 재개편함
 - 2012년에 과세표준이 EUR 150,000을 초과하는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을 기존 41%에서 45%로 4%p 인상함
 - 참고로 EUR 250,000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층에 대해 3%~4%의 특별부가세를 징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¹⁹⁾
 - 2013년 이후 물가수준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이 이루어짐
 - 2014년에는 과세최저한을 기존 EUR 6,011에서 EUR 9,690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5.5% 세율을 적용하는 2구간을 폐지하고 14%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함
- 프랑스는 과세대상소득을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부양가족 조건(결혼 유무,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누진세율을 반영하는 가족계수제(family coefficient system)를 적용하고 있음

표 1-12 프랑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 단계	~5,963	0	~5,963	0	~6,011	0	~9,690	0	~9,700	0	~9,710	0
	~11,896	5.5	~11,896	5.5	~11,991	5.5						
	~26,420	14	~26,420	14	~26,631	14	~26,764	14	~26,791	14	~26,818	14
	~70,830	30	~70,830	30	~71,397	30	~71,754	30	~71,826	30	~71,898	30
	70,830~	41	150,000~	41	151,200~	41	151,956~	41	152,108~	41	152,260~	41
		~150,000	45	~151,200	45	~151,956	45	~152,108	45	~152,260	4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11#, 접속일자: 2017.9.8.)

19)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2호, p. 2

11) 독일

- 독일은 납세자의 부부합산 여부에 따라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며, 각각의 경우 조사기간 중 4단계의 누진세 체계와 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함
 - 독일의 누진세 체계를 4단계로 기재하였으나, 2구간의 세율은 일정하지 아니하고 14%에서 42%까지로 차등 적용됨
-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0% 세율을 적용하는 1구간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6년에는 과세표준 구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표 1-13 독일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합산 여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 단계	단독	~8,004	0	~8,004	0	~8,130	0	~8,354	0	~8,354	0	~8,652	0
		~52,881	14~42	~52,881	14~42	~52,881	14~42	~52,881	14~42	~52,881	14~42	~53,665	14~42
		~250,730	42	~250,730	42	~250,730	42	~250,730	42	~250,730	42	~254,446	42
		250,730~	45	250,730~	45	250,730~	45	250,730~	45	250,730~	45	254,446~	45
	부부 합산	~16,009	0	~16,009	0	~16,260	0	~16,708	0	~16,708	0	~17,304	0
		~105,763	14~42	~105,763	14~42	~105,763	14~42	~105,763	14~42	~105,763	14~42	~107,331	14~42
		~501,460	42	~501,460	42	~501,460	42	~501,460	42	~501,460	42	~508,892	42
		501,460	45	501,460	45	501,460	45	501,460	45	501,460	45	508,892~	45

자료: 1.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2. EY, *The 2011 global executive-individual tax, social security and immigration*, 2011
 3. EY,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2-13부터 2015-16까지
 4.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12) 그리스

- 그리스는 재정건전성과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8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운영하였으나 2013년에 3단계로 단순화하였고, 2016년에는 4단계로 조정하면서

세율을 인상함

- 2013년에는 과세구간을 3단계로 하여 세율을 22%, 32%, 42%로 단순화하고 면세구간을 폐지함
- 2016년에는 22% 세율을 적용하는 1구간의 과세구간을 기존 EUR 25,000에서 EUR 20,000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세율을 기존 22%, 32%, 42%에서 29%, 37%, 45%로 상향 조정함

표 1-14 그리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 단계	~5,000	0	~5,000	0	~25,000	22	~25,000	22	~25,000	22	~20,000	22
	~12,000	10	~12,000	10								
	~16,000	18	~16,000	18								
	~26,000	25	~26,000	25							~30,000	29
	~40,000	35	~40,000	35	~42,000	32	~42,000	32	~42,000	32	~40,000	37
	~60,000	38	~60,000	38	42,000~	42	42,000~	42	42,000~	42	40,000~	45
	~100,000	40	~100,000	40								
	100,000~	45	100,000~	4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13) 헝가리

- 헝가리는 2010년까지 2단계의 과세구간이 있었으나, 2011년부터 16%의 단일 세율 체계로 조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세율을 기존 16%에서 15%로 인하함
- 2011년 조세체계의 단순화, 근로유인의 창출,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인한 저축과 소비지출의 촉진 등을 위해 16%의 단일세율로 인하 조정함²⁰⁾

- 2011년에는 모든 총소득, 2012년에는 HUF 2,424,000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27을 곱한 세율(super-gross)을 적용하였으나 2013년부터 폐지됨²¹⁾

표 1-15 헝가리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HUF,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단일 세율		16		16		16		16		16		1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14) 아이슬란드

- 조사기간 중 3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과 2016년에 최고 세율을 제외한 각 구간의 세율을 인하함
 - 최고세율은 31.8%로 유지하되, 이외 세율은 2014년에 기존 22.9%, 25.8%에서 22.86%, 25.3%로 인하하였고, 2016년에 다시 22.68%, 23.9%로 하향 조정함
 -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수준에 따라 매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짐
- 아이슬란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방소득세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조사한 세율은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국세의 세율(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에 해당함
 - 2016년 기준 지방소득세율은 12.44%~14.52%²²⁾이며, 정확한 소득세의 계산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3년 제2호, 2013. 12, p. 36

21) 위의 책, p. 37

22) OECD Statistics 제공 2016년 최소 지방소득세율(Minimum sub-central rate)과 최고 지방소득세율(Maximum sub-central rate)을 기재함(출처: Table I.2.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non-progressive system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2#, 접속일자 2017.9.18.)

은 지방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함

표 1-16 아이슬란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ISK,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 단계	~2,512,800	22.9	~2,760,000	22.9	~2,897,700	22.9	~3,480,000	22.86	~3,709,680	22.86	~4,032,420	22.68
	~8,166,600	25.8	~8,542,400	25.8	~8,874,108	25.8	~9,415,428	25.3	~10,036,847	25.3	~10,043,880	23.9
	8,166,600~	31.8	8,542,400~	31.8	8,874,108~	31.8	9,415,428~	31.8	10,036,847~	31.8	10,043,880~	31.8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15)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납세자의 부부합산 여부에 따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며, 조사기간 중 2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모두 동일하게 유지함
- 단독 납세자의 경우, 2015년에 최고세율을 기존 41%에서 40%로 인하함

표 1-17 아일랜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합산 여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 단계	단독	~32,800	20	~32,800	20	~32,800	20	~32,800	20	~32,800	20	~32,800	20
		32,800~	41	32,800~	41	32,800~	41	32,800~	41	32,800~	40	32,800~	40
단계	부부	~41,800	20	~41,800	20	~41,800	20	~41,800	20	~41,800	20	~41,800	20
	합산	41,800~	41	41,800~	41	41,800~	41	41,800~	41	41,800~	41	41,800~	41

자료: 1.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2. EY, *The 2011 global executive-individual tax, social security and immigration*, 2011
 3. EY,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2-13부터 2015-16까지
 4.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16) 이스라엘

- 2013년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누진세 체계를 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 개편하고, 최고세율을 50%로 상향 조정함
- 2012년에는 3구간의 세율을 23%에서 21%로 인하하여 중산층의 세율을 감소시키고, 최고세율은 45%에서 48%로 인상하여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함
- 2013년에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을 기존 48%에서 50%로 2%p 인상하고, 4구간의 세율을 기존 30%에서 31%로, 5구간의 세율을 기존 33%에서 34%로 각각 1%p 인상함
- 2012년부터 2016년까지(2014년 제외)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수준에 따라 매년 상향 조정함

표 1-18 이스라엘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ILS,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7 단계	~60,840	10	~62,400	10	~63,360	10	~63,360	10	~63,240	10	~63,640	10
	~103,920	14	~106,560	14	~108,120	14	~108,120	14	~108,000	14	~107,040	14
	~168,840	23	~173,160	21	~168,000	21	~168,000	21	~167,880	21	~166,320	21
	~254,880	30	~261,360	30	~240,000	31	~240,000	31	~239,760	31	~237,600	31
	~482,760	33	~501,960	33	~501,960	34	~501,960	34	~501,480	34	~496,920	34
	482,760~	45	501,960~	48	~811,560	48	~811,560	48	~810,720	48	~803,520	48
					811,560~	50	811,560~	50	810,720~	50	803,520~	50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17) 이탈리아

- 조사기간 중 5단계 누진세 체계와 세율(23%~43%)을 동일하게 유지함
 - 동 세율 체계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표 1-19 이탈리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 단계	~15,000	23	~15,000	23	~15,000	23	~15,000	23	~15,000	23	~15,000	23
	~28,000	27	~28,000	27	~28,000	27	~28,000	27	~28,000	27	~28,000	27
	~55,000	38	~55,000	38	~55,000	38	~55,000	38	~55,000	38	~55,000	38
	~75,000	41	~75,000	41	~75,000	41	~75,000	41	~75,000	41	~75,000	41
	75,000~	43	75,000~	43	75,000~	43	75,000~	43	75,000~	43	75,000~	43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11#, 접속일자: 2017.9.8.)

18) 일본

- 2015년에 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 누진세 체계를 개편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함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에서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6단계 누진세 체계를 유지함
 - 2015년에 과세표준이 4,000만엔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구간의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함

표 1-20 일본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JPY,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7 단계	~1,950,000	5	~1,950,000	5	~1,950,000	5	~1,950,000	5	~1,950,000	5	~1,950,000	5
	~3,300,000	10	~3,300,000	10	~3,300,000	10	~3,300,000	10	~3,300,000	10	~3,300,000	10
	~6,950,000	20	~6,950,000	20	~6,950,000	20	~6,950,000	20	~6,950,000	20	~6,950,000	20
	~9,000,000	23	~9,000,000	23	~9,000,000	23	~9,000,000	23	~9,000,000	23	~9,000,000	23
	~18,000,000	33	~18,000,000	33	~18,000,000	33	~18,000,000	33	~18,000,000	33	~18,000,000	33
	18,000,000~	40	18,000,000~	40	18,000,000~	40	18,000,000~	40	~40,000,000	40	~40,000,000	40
									40,000,000~	45	40,000,000~	4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19) 대한민국

- 2012년에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누진세 체계를 개편하여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2014년에 5구간의 과세표준 하향 조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율을 인상함
- 2012년에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구간의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상향 조정함
- 2014년에 5구간의 과세표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최고세율인 38%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표 1-21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KRW,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 단계	~12,000,000	6	~12,000,000	6	~12,000,000	6	~12,000,000	6	~12,000,000	6	~12,000,000	6
	~46,000,000	15	~46,000,000	15	~46,000,000	15	~46,000,000	15	~46,000,000	15	~46,000,000	15
	~88,000,000	24	~88,000,000	24	~88,000,000	24	~88,000,000	24	~88,000,000	24	~88,000,000	24
	88,000,000~	35	~300,000,000	35	~300,000,000	35	~150,000,000	35	~150,000,000	35	~150,000,000	35
			300,000,000~	38	300,000,000~	38	150,000,000~	38	150,000,000~	38	150,000,000~	38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9 단계	~36,069	32	~36,069	32	~36,069	32	~36,069	32	~36,069	32	~36,069	32
	~37,977	34	~37,977	34	~37,977	34	~37,977	34	~37,977	34	~37,977	34
	~39,885	36	~39,885	36	~39,885	36	~39,885	36	~39,885	36	~39,885	36
	~41,793	38	~41,793	38	~41,793	38	~41,793	38	~41,793	38	~41,793	38
	41,793~	39	41,793~	39	~100,000	39	~100,000	39	~100,000	39	~100,000	39
					100,000~	40	100,000~	40	100,000~	40	100,000~	40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22) 멕시코

- 2014년에 기존 8단계에서 11단계로 누진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최고세율을 30%에서 35%로 인상함
- 2013년까지는 MXN 392,841.96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30% 세율을 적용 하였으나, 2014년에 해당 구간을 4개 구간으로 구분하면서 세율을 30%, 32%, 34%, 35%로 상향 조정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표 1-24 멕시코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MXN,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1 단계	~5,952.84	1.92	~5,952.84	1.92	~5,952.84	1.92	~5,952.84	1.92	~5,952.84	1.92	~5,952.84	1.92
	~50,524.92	6.4	~50,524.92	6.4	~50,524.92	6.4	~50,524.92	6.4	~50,524.92	6.4	~50,524.92	6.4
	~88,793.04	10.88	~88,793.04	10.88	~88,793.04	10.88	~88,793.04	10.88	~88,793.04	10.88	~88,793.04	10.88
	~103,218.00	16	~103,218.00	16	~103,218.00	16	~103,218.00	16	~103,218.00	16	~103,218.00	16
	~123,580.20	17.92	~123,580.20	17.92	~123,580.20	17.92	~123,580.20	17.92	~123,580.20	17.92	~123,580.20	17.92
	~294,243.48	21.36	~294,243.48	21.36	~294,243.48	21.36	~294,243.48	21.36	~294,243.48	21.36	~294,243.48	21.36
	~392,841.96	23.52	~392,841.96	23.52	~392,841.96	23.52	~392,841.96	23.52	~392,841.96	23.52	~392,841.96	23.52
	392,841.96~	30	392,841.96~	30	392,841.96~	30	~750,000.01	30	~750,000.01	30	~750,000.01	30
							~1,000,000.00	32	~1,000,000.00	32	~1,000,000.00	32
							~3,000,000.01	34	~3,000,000.01	34	~3,000,000.01	34
							3,000,000.01~	35	3,000,000.01~	35	3,000,000.01~	3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23) 네덜란드

- 조사기간 동안 4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전반적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 추세를 보임
 - 1구간의 세율은 매년 인상하여 2011년 1.85%에서 2016년 8.4%로 6.55%p 인상함
 - 2구간의 세율은 2015년에 기존 10.8%에서 13.85%로 인상하였다가 2016년에 12.25%로 소폭 인하함
 - 3구간의 세율은 2016년에 42%에서 40.4%로 인하하였으며, 최고세율은 조사기간 동안 52%로 동일하게 유지함

표 1-25 네덜란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 단계	~18,628	1.85	~18,945	1.95	~19,645	5.85	~19,645	5.1	~19,822	8.35	~19,922	8.4
	~33,436	10.8	~33,863	10.8	~33,363	10.8	~33,363	10.8	~33,589	13.85	~33,715	12.25
	~55,694	42	~56,491	42	~55,991	42	~56,531	42	~57,585	42	~66,421	40.4
	55,694~	52	56,491~	52	55,991~	52	56,531~	52	57,585~	52	66,421~	52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24) 뉴질랜드

- 조사기간 동안 4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은 10.5%에서 33%로 동일하게 유지함
 - 2008년에 3단계 누진세 체계에서 2009년 7단계로 재편되어 운영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4단계로 정착함

표 1-26 뉴질랜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NZD,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 단계	~14,000	10.5	~14,000	10.5	~14,000	10.5	~14,000	10.5	~14,000	10.5	~14,000	10.5
	~48,000	17.5	~48,000	17.5	~48,000	17.5	~48,000	17.5	~48,000	17.5	~48,000	17.5
	~70,000	30	~70,000	30	~70,000	30	~70,000	30	~70,000	30	~70,000	30
	70,000~	33	70,000~	33	70,000~	33	70,000~	33	70,000~	33	70,000~	33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25)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일반소득(ordinary income)에 대하여는 단일세율²³⁾로 과세하며, 개인소득(personal income)에 대하여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OECD에서 제공한 자료는 일반소득에 대한 세율(지방소득세, 부가세 제외)과 개인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계산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득세의 계산은 이를 고려하여 산출해야 함²⁴⁾
- 2015년까지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3단계의 누진세(0%~12%)로 과세하였으나, 2016년에 5단계(0%~13.7%)로 개편함²⁵⁾

23) 노르웨이는 일반소득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28%,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7%, 2016년 25%의 단일세율(지방소득세, 부가세 포함)을 적용함(출처: EY,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2-13부터 2015-16까지;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24) 예를 들어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볼 때 Finnmark와 Nord-Troms를 제외한 경우, 소득세율(national tax rate)은 10.55%이며, 개인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0%, 0.44%, 1.7%, 10.7%, 13.7%로,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값으로 추정됨(출처: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Norway 2016," 2016, p. 20;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25) EY,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2-13부터 2015-16까지;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표 1-27 노르웨이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NOK,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 단계	~456,400	14.05	~490,000	13.75	~509,600	13.75	~527,400	12.95	~550,550	13.15	~159,800	10.55
	~741,700	23.05	~796,400	22.75	~828,300	22.75	~857,300	21.95	~885,600	22.15	~224,900	10.99
	741,700~	26.05	796,400~	25.75	828,300~	25.75	857,300~	24.95	885,600~	25.15	~565,400	12.25
											~909,500	21.25
											909,500~	24.2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26) 폴란드

□ 조사기간 중 18%, 32% 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누진세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함

표 1-28 폴란드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PLN,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 단계	~85,528	18	~85,528	18	~85,528	18	~85,528	18	~85,528	18	~85,528	18
	85,528~	32	85,528~	32	85,528~	32	85,528~	32	85,528~	32	85,528~	32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27) 포르투갈

□ 2013년에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누진세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2016년에 과세 구간을 일부 조정함

○ 2012년까지는 11.5%에서 46.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3년 누진세 체계 개편을 통하여 14.5%에서 48%로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함

표 1-29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 단계	~4,898	11.5	~4,898	11.5	~7,000	14.5	~7,000	14.5	~7,000	14.5	~7,035	14.5
	~7,410	14	~7,410	14								
	~18,375	24.5	~18,375	24.5	~20,000	28.5	~20,000	28.5	~20,000	28.5	~20,100	28.5
	~42,259	35.5	~42,259	35.5	~40,000	37	~40,000	37	~40,000	37	~40,200	37
	~61,244	38	~61,244	38								
	~66,045	41.5	~66,045	41.5	~80,000	45	~80,000	45	~80,000	45	~80,000	45
	~153,300	43.5	~153,300	43.5	80,000~	48	80,000~	48	80,000~	48	80,000~	48
	153,300~	46.5	153,300~	46.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11#, 접속일자: 2017.9.8.)

28) 슬로바키아

-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기존 단일세제에서 2단계 누진세 체계로 변경함
 - 2012년까지 19%의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에 25% 세율 구간을 신설함
 - 2013년에 과세표준이 EUR 34,401.74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하였으나, 이를 2014년에 EUR 35,022.31로 조정하여 2016년 까지 유지함

표 1-30 슬로바키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 단계		19		19	~34,401.74	19	~35,022.31	19	~35,022.31	19	~35,022.31	19
					34,401.74~	25	35,022.31~	25	35,022.31~	25	35,022.31~	2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11#, 접속일자: 2017.9.8.)

29) 슬로베니아

- 2013년에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누진세 체계를 개편함
 - 2012년에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상향 조정함
 - 2013년에 과세표준이 EUR 70,907.2를 초과하는 경우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함
 - 2016년에 2구간의 과세표준 상한 기준을 EUR 18,960.28에서 EUR 20,400으로 상향 조정함

표 1-31 슬로베니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 단계	~7,634.40	16	~7,840.53	16	~8,021.34	16	~8,021.34	16	~8,021.34	16	~8,021.34	16
	~15,268.77	27	~15,681.03	27	~18,960.28	27	~18,960.28	27	~18,960.28	27	~20,400.00	27
	15,268.77~	41	15,681.03~	41	~70,907.20	41	~70,907.20	41	~70,907.20	41	~70,907.20	41
					70,907.20~	50	70,907.20~	50	70,907.20~	50	70,907.20~	50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11#, 접속일자: 2017.9.8.)

30) 스페인

- 2012년에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 누진세 체계를 개편하였고, 2015년에는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로 재조정함
 - 2012년에 모든 구간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EUR 300,000을 기준으로 한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을 30.5%까지 인상함
 - 2015년에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기존 16%~30.5%에

서 9.5%~22.5%로 전반적으로 인하함

- 2016년에 3구간의 과세표준 상한기준을 EUR 34,000에서 EUR 35,200으로 상향 조정함
- 스페인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50%의 비중으로 구성되므로, 정확한 소득세의 계산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함²⁶⁾²⁷⁾

표 1-32 스페인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EUR,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 단계	~17,707.2	12	~17,707.2	12.75	~17,707.2	12.75	~17,707.2	12.75	~12,450	9.5	~12,450	9.5
	~33,007.2	14	~33,007.2	16	~33,007.2	16	~33,007.2	16	~20,200	12	~20,200	12
	~53,407.2	18.5	~53,407.2	21.5	~53,407.2	21.5	~53,407.2	21.5	~34,000	15	~35,200	15
									~60,000	18.5	~60,000	18.5
									60,000~	22.5	60,000~	22.5
			~120,000	21.5	~120,000	25.5	~120,000	25.5	~120,000	25.5		
			~175,000	22.5	~175,000	27.5	~175,000	27.5	~175,000	27.5		
			175,000~	23.5	~300,000	29.5	~300,000	29.5	~300,000	29.5		
					300,000~	30.5	300,000~	30.5	300,000~	30.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11#, 접속일자: 2017.9.8.)

26) 2016년 기준 스페인의 일반적인 개인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각 소득구간별 19%~45%에 해당함(출처: PWC 홈페이지, <http://taxsummaries.pwc.com/ID/Spain-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접속일자: 2017.9.27.)

27) 2016년 마드리드 기준의 개인소득세율(19%~45%)은 국세분 9.5%~22.5%와 마드리드 지방소득세율 9.5%~22.5%를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출처: 김은경, 「해외지방세제도, 스페인의 지방소득세제」, 『지방세포럼』, 통권 제29호, 2016. 9, p. 80.)

31) 스웨덴

- 조사기간 중 3단계 누진세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은 매년 물가수준에 따라 상향 조정함
- 스웨덴의 세율은 OECD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확한 소득세의 계산은 지방소득세(단일비례세율, 평균 32%) 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함²⁸⁾

표 1-33 스웨덴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AUD,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 단계	~383,000	0	~401,100	0	~413,200	0	~420,800	0	~430,200	0	~430,200	0
	~548,300	20	~574,300	20	~591,600	20	~602,600	20	~616,100	20	~625,800	20
	548,300~	25	574,300~	25	591,600~	25	602,600~	25	616,100~	25	625,800~	2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32) 스위스

- 2012년에 모든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2014년에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기존 10단계에서 11단계 누진세 체계로 개편함
- 2012년에 모든 구간의 과세표준을 CHF 100~CHF 1,000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상위 소득계층의 과세표준 구간을 더 크게 상향 조정함
- 2014년에 과세표준이 CHF 755,200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적용세율

28)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세수규모를 정할 수 있음(출처: 하능식, 「해외지방세제도, 스웨덴의 지방소득세제」, 『지방세포럼』, 통권 제28호, 2016. 7, pp. 90~96)

을 13.2%에서 11.5%로 인하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효과가 발생함

- 해당 세율은 OECD에서 제공한 연방정부소득세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정부소득세(cantonal tax)는 각 주의 세법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소득세의 계산은 이를 고려하여 산출해야 함

표 1-34 스위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CHF,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1 단계	~14,400	0	~14,500	0	~14,500	0	~14,500	0	~14,500	0	~14,500	0
	~31,500	0.77	~31,600	0.77	~31,600	0.77	~31,600	0.77	~31,600	0.77	~31,600	0.77
	~41,200	0.88	~41,400	0.88	~41,400	0.88	~41,400	0.88	~41,400	0.88	~41,400	0.88
	~55,000	2.64	~55,200	2.64	~55,200	2.64	~55,200	2.64	~55,200	2.64	~55,200	2.64
	~72,200	2.97	~72,500	2.97	~72,500	2.97	~72,500	2.97	~72,500	2.97	~72,500	2.97
	~77,700	5.94	~78,100	5.94	~78,100	5.94	~78,100	5.94	~78,100	5.94	~78,100	5.94
	~103,000	6.6	~103,600	6.6	~103,600	6.6	~103,600	6.6	~103,600	6.6	~103,600	6.6
	~133,900	8.8	~134,600	8.8	~134,600	8.8	~134,600	8.8	~134,600	8.8	~134,600	8.8
	~175,000	11	~176,000	11	~176,000	11	~176,000	11	~176,000	11	~176,000	11
	175,000~	13.2	176,000~	13.2	176,000~	13.2	~755,200	13.2	~755,200	13.2	~755,200	13.2
						755,200~	11.5	755,200~	11.5	755,200~	11.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33) 터키

- 조사기간 동안 4단계의 누진세 체계와 15%에서 35%까지의 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함
- 물가인상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각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줌

표 1-35 터키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TRY,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 단계	~9,400	15	~10,000	15	~10,700	15	~11,000	15	~12,000	15	~12,600	15
	~23,000	20	~25,000	20	~26,000	20	~27,000	20	~29,000	20	~30,000	20
	~80,000	27	~88,000	27	~94,000	27	~97,000	27	~106,000	27	~110,000	27
	80,000~	35	88,000~	35	94,000~	35	97,000~	35	106,000~	35	110,000~	3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34) 영국

- 조사기간 동안 3단계의 누진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5%로 인하함
- 2015년까지는 과세최저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나, 2016년에는 소폭 상향 조정함

표 1-36 영국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GBP,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 단계	~35,000	20	~34,370	20	~32,010	20	~31,865	20	~31,785	20	~32,000	20
	~150,000	40	~150,000	40	~150,000	40	~150,000	40	~150,000	40	~150,000	40
	150,000~	50	150,000~	50	150,000~	45	150,000~	45	150,000~	45	150,000~	45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35) 미국

- 2013년에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 누진세 체계를 개편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39.6%로 인상함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과세한계구간을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함
 - 미혼과 기혼, 세대주에 따라 세율 적용 소득구간의 일부 차이가 존재하며, 아래의 표는 미혼 납세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표 1-37 미국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11년~2016년)

(단위: USD, %)

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7 단계	~8,500	10	~8,700	10	~8,925	10	~9,075	10	~9,225	10	~9,275	10
	~34,500	15	~35,350	15	~36,250	15	~36,900	15	~37,450	15	~37,650	15
	~83,600	25	~85,650	25	~87,850	25	~89,350	25	~90,750	25	~91,150	25
	~174,400	28	~178,650	28	~183,250	28	~186,350	28	~189,300	28	~190,150	28
	~379,150	33	~388,350	33	~398,350	33	~405,100	33	~411,500	33	~413,350	33
	379,150~	35	388,350~	35	~400,000	35	~406,750	35	~413,200	35	~415,050	35
					400,000~	39.6	406,750~	39.6	413,200~	39.6	415,050~	39.6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

다. 소결

- 개인소득세는 2011년 이후 제도 안정화에 따라 과거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 수나 세율의 급격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음
 - 최고세율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상 또는 유지하였으며, 이외의 경우 대체적으로 물가연동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외에는 기존과 유사하게

세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고세율은 우리나라 외 13개국에서 인상하였으며, 영국 외 6개국에서는 인하한 것으로 나타남
- 중간·저소득층의 세율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8 2011년 대비 2016년의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의 변동

구분	세부담 증가		세부담 감소		유지
	세율 ↑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 ↓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고 세율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벨기에, 칠레, 체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터키
최저 세율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최고·최저 세율 이외 소득 세율	호주, 그리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페인	독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주: 물가연동제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증세 또는 감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유지’로 표시하였으며, 단일세율 체계의 경우에는 ‘최고세율’로 구분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접속일자: 2017.9.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02

법인세

- 본 장에서는 OECD 자료를 토대로 OECD 35개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와 각 회원국의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법인세율 개정 현황을 살펴봄²⁹⁾
 - 법인세율은 OECD 통계자료 상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의 법인부가세를 제외한 법인세 최고세율(corporate income tax rate exclusive of surtax)임
 - 이외에 법인부가세(surtax)와 지방정부에서 법인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 부가세와 지방정부 법인세율(sub-central government corporate income tax rate)을 합한 통합세율도 별도로 제시함

가. 법인세율 변화 추이

- OECD에서는 2000년도 법인세율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2000년부터 금융위기 전후로 법인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봄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금융위기 이전(2000년~2009년)에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만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남 (<표 I -39> 참조)
 - 금융위기 이전(2000년~2009년): 6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법인세율을 평균 6.9%p 인하하였으며, 가장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독일, 체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임
 - 반면, 칠레는 법인세율을 2% 인상하였으며,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은 기존의 법인세율을 유지함

29) 본 장은 OECD Tax Database(<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를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함

- 금융위기 이후(2009년~2017년): 전체 OECD 회원국(35개국) 중 19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가장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인소한 국가는 영국, 일본으로 각각 9%p, 6.6%p 법인세율을 인하함
- 금융위기 이전 법인세율 인하 현상은 EU국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국가가 자국기업 및 해외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한 것에 기인함
 - 아일랜드가 1990년대 중반부터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1994년 최고 40%에서 2003년 최고 12.5%)한 것을 시작으로 인근 EU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촉발시킴
 - 독일은 2000년 40%에서 2001년 25%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이외에 체코(-11%p), 그리스(-15%p), 아이슬란드(-15%p), 아일랜드(-11.5%p), 이탈리아(-9.5%p) 등의 국가도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함

표 1-39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단위: %)

국가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0-09 증감	'09 이후 증감
호주	34.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	0.00
오스트리아	34.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9.00	0.00
벨기에	39.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6.00	0.00
캐나다	28.00	19.50	18.00	16.5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8.50	-4.50
칠레	15.00	17.00	17.00	20.00	20.00	20.00	21.00	22.50	24.00	25.00	2.00	8.00
체코	31.00	20.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1.00	-1.00
덴마크	32.00	25.00	25.00	25.00	25.00	25.00	24.50	23.50	22.00	22.00	-7.00	-3.00
에스토니아	26.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0.00	20.00	20.00	-5.00	-1.00
핀란드	29.00	26.00	26.00	26.00	24.50	24.50	20.00	20.00	20.00	20.00	-3.00	-6.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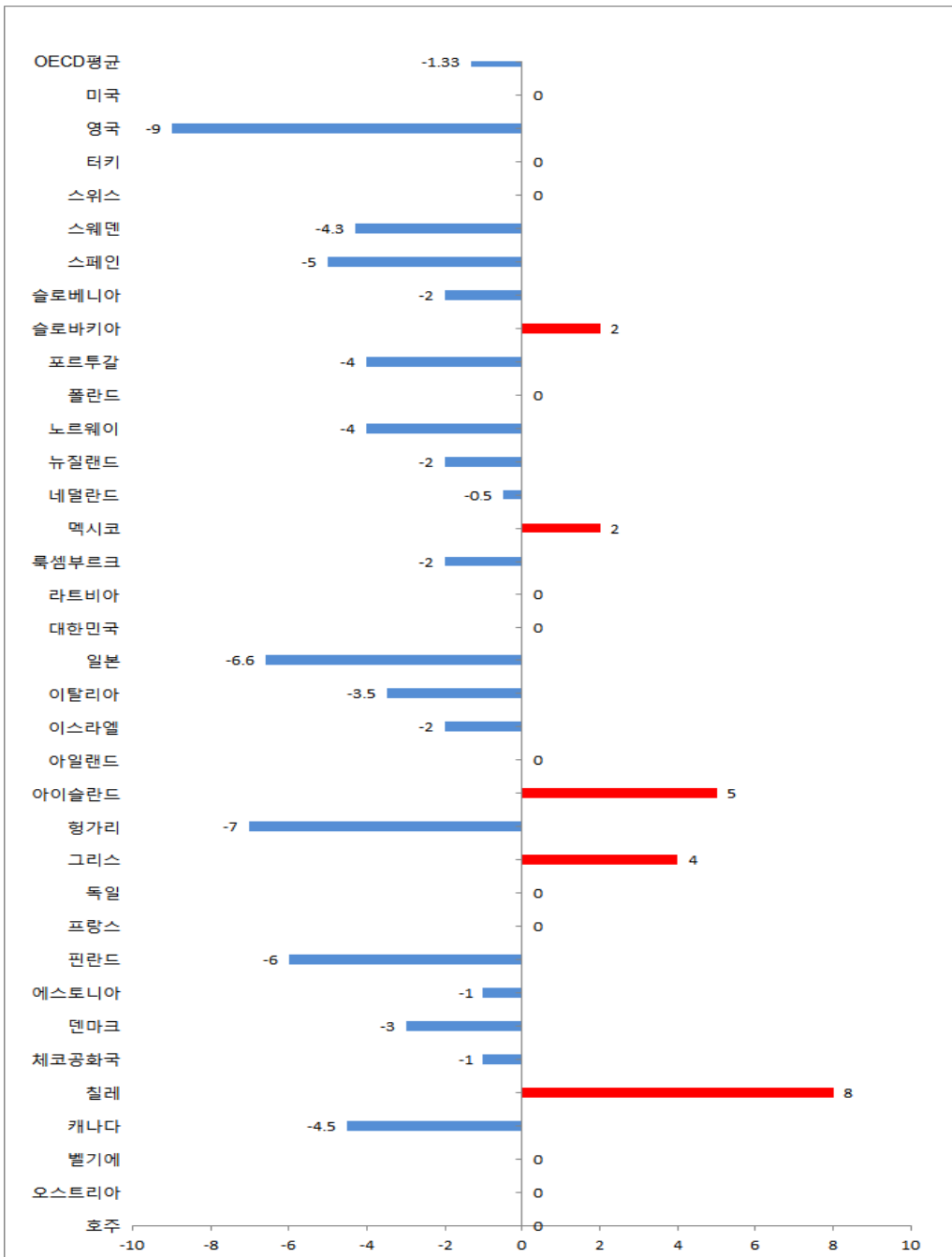
국가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0- '09 증감	'09 이후 증감
프랑스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0.00	0.00
독일	40.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25.00	0.00
그리스	40.00	25.00	24.00	20.00	20.00	26.00	26.00	26.00	29.00	29.00	-15.00	4.00
헝가리	18.00	16.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9.00	-2.00	-7.00
아이슬란드	30.00	15.00	18.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5.00	5.00
아일랜드	24.0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1.50	0.00
이스라엘	36.00	26.00	25.00	24.00	25.00	25.00	26.50	26.50	25.00	24.00	-10.00	-2.00
이탈리아	37.00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4.00	-9.50	-3.50
일본	30.00	30.00	30.00	30.00	30.00	25.50	25.50	23.90	23.40	23.40	0.00	-6.60
대한민국	28.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6.00	0.00
라트비아	2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0.00	0.00
룩셈부르크	30.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19.00	-9.00	-2.00
멕시코	35.00	28.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7.00	2.00
네덜란드	35.00	25.50	25.5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9.50	-0.50
뉴질랜드	33.00	30.00	30.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3.00	-2.00
노르웨이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7.00	27.00	25.00	24.00	0.00	-4.00
폴란드	30.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1.00	0.00
포르투갈	32.00	25.00	25.00	25.00	25.00	25.00	23.00	21.00	21.00	21.00	-7.00	-4.00
슬로바키아	29.00	19.00	19.00	19.00	19.00	23.00	22.00	22.00	22.00	21.00	-10.00	2.00
슬로베니아	25.00	21.00	20.00	20.00	18.00	17.00	17.00	17.00	17.00	19.00	-4.00	-2.00
스페인	3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28.00	25.00	25.00	-5.00	-5.00
스웨덴	28.00	26.30	26.30	26.30	26.30	22.00	22.00	22.00	22.00	22.00	-1.70	-4.30
스위스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0.00	0.00
터키	3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	0.00
영국	30.00	28.00	28.00	26.00	24.00	23.00	21.00	20.00	20.00	19.00	-2.00	-9.00
미국 ¹⁾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0.00	0.00
OECD평균	30.08	23.38	23.45	23.28	23.10	23.08	22.84	22.64	22.52	22.05	-6.71	-1.33

주: 1) 미국은 15%~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중간구간에서 높은 세율인 39%이 적용되고 있음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I.1.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http://stats.oecd.org/index.aspx?r=800364&random=0.4598911041058908#>, 접속일자: 2017.9.13.)

그림 1-2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2010년 대비 2017년)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I.1.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http://stats.oecd.org/index.aspx?r=800364&random=0.4598911041058908#, 접속일자: 2017.9.13.)

- OECD 회원국 중 일부 국가는 법인세액의 일정 비율만큼 부가세(surtax)를 부과하거나, 지방법인세율이 높아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함(<표 I-40>에 제시)
 - 2017년 기준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임
 - 캐나다는 2000년에 1.12%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였으며, 일본은 2013년~2014년 동안 2.55%로, 터키는 2000년에 3%로 부가세를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현재 별도의 지방법인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이며, 이 중 캐나다, 독일, 스위스의 지방법인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의 지방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기준 11.7%, 독일은 14.35%, 스위스는 14.45%인 것으로 나타남

표 I-40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부가세, 지방법인세 포함)

(단위: %)

국가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최근 5년간 인하폭
호주	34.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0.00
오스트리아	34.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0.00
벨기에	중앙정부	39.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0.00
	부가세	1.17	0.99	0.99	0.99	0.99	0.99	0.99	0.99	0.00
	통합세율	40.17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33.99	0.00
캐나다	중앙정부	28.00	18.00	16.50	15.00	15.00	15.00	15.00	15.00	0.00
	지방정부	13.31	11.40	11.20	11.10	11.20	11.20	11.70	11.70	0.60
	부가세	1.12	-	-	-	-	-	-	-	-
	통합세율	42.43	29.40	27.70	26.10	26.20	26.20	26.70	26.70	0.60
칠레	15.00	17.00	20.00	20.00	20.00	21.00	22.50	24.00	25.00	5.00
체코	31.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0.00
덴마크	32.00	25.00	25.00	25.00	25.00	24.50	23.50	22.00	22.00	-3.00

(단위: %)

국가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최근 5년간 인하폭	
에스토니아	26.00	21.00	21.00	21.00	21.00	21.00	20.00	20.00	20.00	-1.00	
핀란드	29.00	26.00	26.00	24.50	24.50	20.00	20.00	20.00	20.00	-4.50	
프랑스	중앙정부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0.00	
	부가세	4.43	1.10	2.77	2.77	4.67	4.67	4.67	1.10	1.10	-1.67
	통합세율	37.76	34.43	36.10	36.10	38.00	38.00	38.00	34.43	34.43	-1.67
독일	중앙정부	40.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0.00
	부가세	2.20	0.83	0.83	0.83	0.83	0.83	0.83	0.83	0.83	0.00
	지방정부	17.01	14.35	14.35	14.35	14.35	14.35	14.35	14.35	14.35	0.00
	통합세율	52.03 ¹⁾	30.18	30.18	30.18	30.18	30.18	30.18	30.18	30.18	0.00
그리스	40.00	24.00	20.00	20.00	26.00	26.00	26.00	29.00	29.00	9.00	
헝가리	18.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9.00	-10.00	
아이슬란드	30.00	18.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00	
아일랜드	24.0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0.00	
이스라엘	36.00	25.00	24.00	25.00	25.00	26.50	26.50	25.00	24.00	-1.00	
이탈리아	중앙정부	37.00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4.00	-3.50	
	조정된 세율 ²⁾	37.00	27.50	27.50	27.39	27.39	27.39	27.39	23.91	-3.49	
	지방정부	4.25	3.90	3.90	3.90	3.90	3.90	3.90	3.90	0.00	
	통합세율	41.25	31.40	31.40	31.29	31.29	31.29	31.29	27.81	-3.49	
일본	중앙정부	30.00	30.00	30.00	30.00	28.05	28.05	23.90	23.40	-6.60	
	부가세	-	-	-	-	2.55	2.55	-	-	0.00	
	조정된 세율 ²⁾	27.37	27.99	27.99	27.99	26.17	26.17	22.55	22.59	-5.40	
	지방정부	13.50	11.55	11.55	11.55	10.82	10.82	9.56	7.38	-4.17	
	통합세율	40.87	39.54	39.54	39.54	36.99	36.99	32.11	29.97	-9.57	
대한민국	중앙정부	28.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0.00	
	지방정부	2.8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0.00	
	통합세율	30.80	24.20	24.20	24.20	24.20	24.20	24.20	24.20	0.00	
라트비아	2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0.00	
룩셈부르크	중앙정부	30.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19.00	-2.00	
	부가세	1.20	0.84	1.05	1.05	1.47	1.47	1.47	1.33	0.28	
	지방정부	9.09	6.75	6.75	6.75	6.75	6.75	6.75	6.75	0.00	
	통합세율	40.29	28.59	28.80	28.80	29.22	29.22	29.22	27.08	-1.72	

(단위: %)

국가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최근 5년간 인하폭	
멕시코	3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0.00	
네덜란드	35.00	25.5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0.00	
뉴질랜드	33.00	30.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0.00	
노르웨이	28.00	28.00	28.00	28.00	28.00	27.00	27.00	25.00	24.00	-4.00	
폴란드	30.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0.00	
포르 투갈	중앙정부	32.00	25.00	25.00	25.00	25.00	23.00	21.00	21.00	21.00	-4.00
	부가세	3.2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0.00
	지방정부	-	-	2.00	5.00	5.00	7.00	7.00	7.00	7.00	2.00
	통합세율	35.20	26.50	28.50	31.50	31.50	31.50	29.50	29.50	29.50	-2.00
슬로바키아	29.00	19.00	19.00	19.00	23.00	22.00	22.00	22.00	21.00	2.00	
슬로베니아	25.00	20.00	20.00	18.00	17.00	17.00	17.00	17.00	19.00	1.00	
스페인	35.00	30.00	30.00	30.00	30.00	30.00	28.00	25.00	25.00	-5.00	
스웨덴	28.00	26.30	26.30	26.30	22.00	22.00	22.00	22.00	22.00	-4.30	
스위스	중앙정부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0.00
	조정된 세율 ²⁾	6.38	6.70	6.70	6.70	6.70	6.70	6.70	6.70	6.70	0.00
	지방정부	18.54	14.47	14.47	14.47	14.45	14.45	14.45	14.45	14.45	-0.03
	통합세율	24.93	21.17	21.17	21.17	21.15	21.15	21.15	21.15	21.15	-0.03
터키	중앙정부	3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00
	부가세	3.00	-	-	-	-	-	-	-	-	0.00
	통합세율	33.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00
영국	중앙정부	30.00	28.00	26.00	24.00	23.00	21.00	20.00	20.00	19.00	-5.00
미국 ³⁾	중앙정부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0.00
	조정된 세율 ²⁾	32.70	32.74	32.74	32.78	32.82	32.81	32.85	32.89	32.90	0.12
	지방정부	6.64	6.47	6.45	6.34	6.23	6.27	6.15	6.04	6.01	-0.33
	통합세율	39.34	39.21	39.19	39.12	39.05	39.08	39.00	38.92	38.91	-0.21
OECD 평균	32.78	25.45	25.39	25.29	25.39	25.21	24.92	24.66	24.18	-1.11	

주: 1) 독일은 2007년까지 연방납부 법인세액에서 지방납부 법인세액을 공제 한 후 적용되는 세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0년 지방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한 후의 중앙정부 법인세율은 35.02%임

2) 조정된 세율은 OECD통계 상 'Corporate income tax rate less deductions for subnational taxes'로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연방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을 반영한 후의 중앙정부 세율임

3) 미국은 15%~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중간구간에서 높은세율인 39%이 적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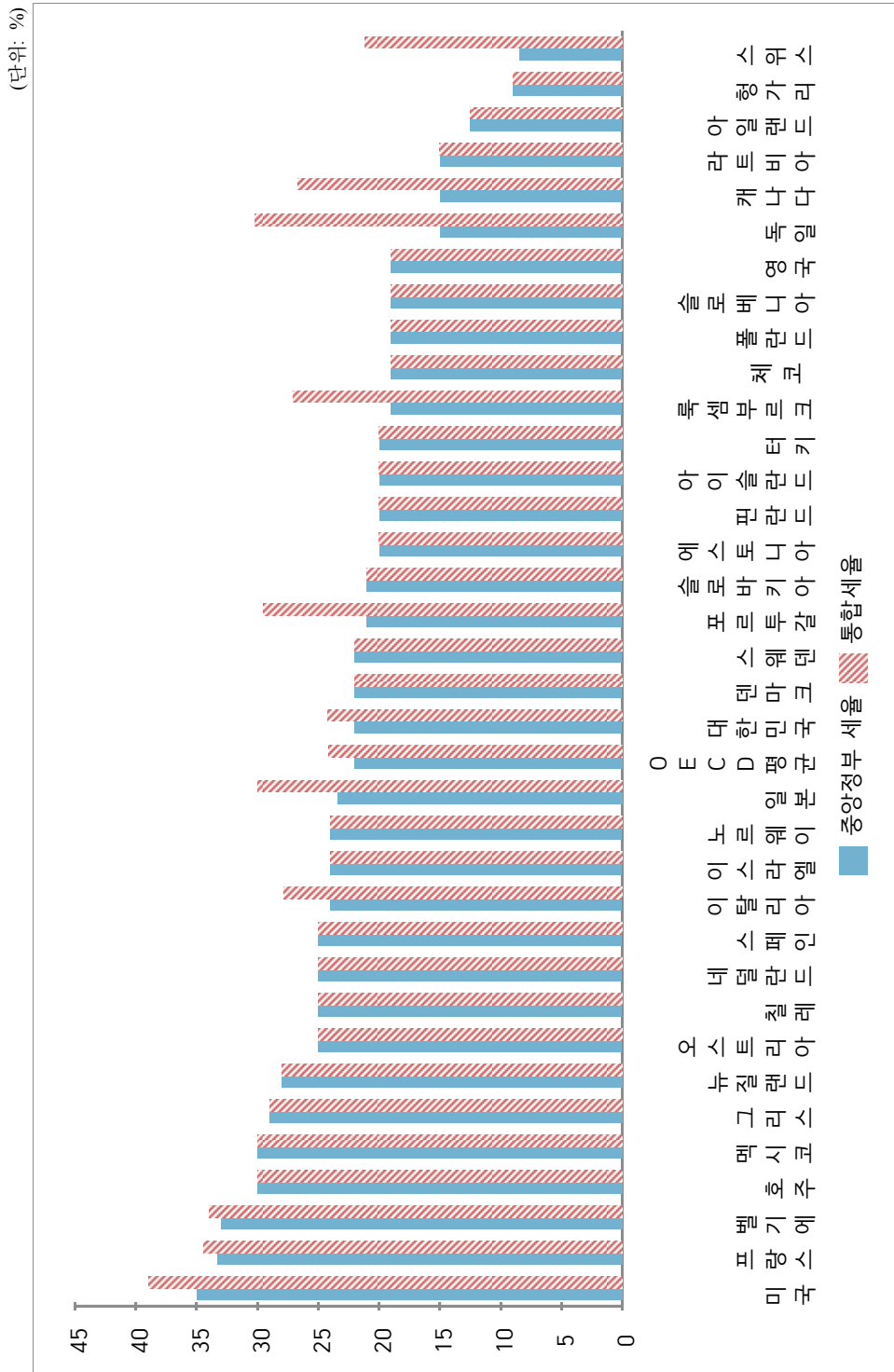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I.1.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http://stats.oecd.org/index.aspx?r=800364&random=0.4598911041058908#>, 검색일자: 2017.09.13.)

- OECD 회원국의 법인부가세 및 지방법인세율을 포함한 통합법인세율 고려 시 미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 스위스의 최고법인세율은 크게 증가함([그림 I-3] 참조)
 - 2017년 기준 통합법인세율은 법정 최고법인세율보다 미국의 경우 6.01%p, 포르투갈 7%p, 이탈리아 3.9%p, 일본 7.38%p, 독일 15.18%p, 캐나다 11.7%p, 스위스 14.45%p가 높아짐
 - 독일, 캐나다의 경우 중앙정부에만 부과하는 법인세율만 고려 시 OECD 평균 법인세율보다 낮으나 통합법인세율 고려 시 OECD 평균법인세율보다 높아짐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통합법인세율 고려 시 주요국인 미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림 I-4] 참조)
 - 법정 최고법인세율만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독일, 캐나다에 비해 높은 편임

그림 1-3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현황(2017년)



나. 국가별 법인세율

□ 본 장에서는 OECD 회원국 최근 5년(2012년~2017년)간 법인세율 개정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경감세율 적용 여부, 법인부가세 과세 여부 및 세율도 조사함

1) 호주

□ 호주는 단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동안 소기업을 위한 세율 신설 및 인하의 개정이 있었음

-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재 30%를 유지하고 있음
-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율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28.5%를 적용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27.5%로 인하됨
 - 소기업은 연간 매출액으로 판정하며, 2015년 과세연도까지는 연간 매출액이 2백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소기업으로 보았으나³⁰⁾, 2016년 과세연도부터 연간 매출액이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봄³¹⁾
 - 호주의 과세연도는 7월 1일부터임

표 1-41 호주의 법인세율

(단위: AUD, %)

구분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소기업	30	30	30	28.5	27.5
일반기업				30	30

주: 소기업은 2015년 과세연도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백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 2016년 과세연도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으로 개정됨

자료: 호주국세청([https://www.ato.gov.au/Rates/Company-tax/?page=1#Tax rates](https://www.ato.gov.au/Rates/Company-tax/?page=1#Tax%20rates) 2016 17, 접속일자: 2017.9.13.)

30)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78p, 2016

31) T. Toryanik, *Australia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2)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구조이며, 2004년 34%에서 25%로 인하된 후 현재까지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3) 벨기에

- 벨기에에는 단일세율 구조이며, 2003년 39%에서 33%로 인하된 후 조사기간 동안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법인세액의 3.3%를 부가세(austerity surcharge)로 부과하고 있어, 2017년 부가세 포함 시 세율은 33.99%임
- 단, 지분을 요건, 지주회사 요건, 이사보수 요건, 배당금 지급 요건을 만족하고, 과세표준이 322,500유로 미만인 기업은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됨³²⁾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지 않음
 - 회사가 지주회사, 집단투자펀드(collective investment fund), 연금운용펀드가 아님
 - 최소 1명 이상의 이사에게 보수를 36,000유로 이상 지급하지 않음
 - 자본금의 13%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과세표준이 0~25,000유로인 경우 24.98%, 25,000~90,000유로인 경우 31.93%, 90,000~322,500인 경우 35.54%의 세율이 적용됨³³⁾

32) G. Cruysmans, "Belgium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접속일자: 2017.9.14.)

33) 3%의 부가세가 포함된 세율임

표 1-42 벨기에의 법인세율

(단위: EUR, %)

구분	2012~2017			
	과세표준	세율		
		일반세율	부가세	통합세율
일반기업	단일세율	33.00	3	33.99
소기업 (3단계)	0~25,000	24.25	3	24.98
	25,000~90,000	31.00	3	31.93
	90,000~322,500	34.5	3	35.54

자료: G. Cruysmans, "Belgium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접속일자: 2017.9.14.)

4) 캐나다

- 캐나다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구조이며, 조사기간 동안 법인세율 15%를 유지하고 있음
- 일반법인의 연방법인세율은 38%이나 동일한 소득에 지방법인세를 동시에 부과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의 연방법인세 감면(federal tax abatement)을 적용하고 있음³⁴⁾
 - 연방법인세 감면에 추가로 일반적인 연방세율공제(general tax reduction)를 통해 연방법인세율의 13%를 줄여주고 있음³⁵⁾
 - 단, 법인의 투자소득과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이하 CCPC)의 50만캐나다달러 미만의 사업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음

34)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tx/bsnss/tpcs/crprtms/rts-eng.html> (접속일자: 2017.9.15.)35)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E/pub/tg/t4012/t4012-07-e.html#P2969_218288 (접속일자: 2017.9.15.)

- 소기업에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조사기간 중 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16년 기준 11%에서 10.5%로 인하됨
 - 소기업은 CCPC로 사업소득이 50만캐나다달러 미만인 법인을 말하며, 소기업에 한해 소규모사업공제(small business reduction) 17.5%를 적용받을 수 있음³⁶⁾
 - 따라서, 소기업은 일반법인세율 38%에서 지방법인세 감면율 10%, 소규모사업공제율 17.5%를 적용받아 10.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표 1-43 캐나다의 법인세율

(단위: CAD, %)

	2012~2015			2016~2017		
	일반 법인	소기업(CCPC)		일반 법인	소기업(CCPC)	
		50만CAD 이하 금액	50만CAD 초과 금액		50만CAD 이하 금액	50만CAD 초과 금액
기본 연방법인세율	38	38	38	38	38	38
연방법인세 감면	(10)	(10)	(10)	(10)	(10)	(10)
연방법인세율	28	28	28	28	28	28
일반 연방세율 공제	(13)	-	(13)	(13)	-	(13)
소규모사업공제	-	(17)	-	-	(17.5)	-
순 연방법인세율	15	11	15	15	10.5	15

자료: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캐나다는 지방법인세를 별도로 부과하며 연방법인세율에 지방법인세율 합산 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26%~31%정도 될 것임
 - 최저세율은 0%~4.5%의 범위 내에서 최고세율은 11%~16%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정부별로 세율이 상이함³⁷⁾
 - 캐나다의 지방법인세율은 조사기간 동안 2013년에 기준 11.1%에서 11.2%로, 2015년에 11.7%로 인상된 바 있음³⁸⁾

36)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12-t2-corporation-income-tax-guide-2016/t2-corporation-income-tax-guide-chapter-4-page-4-t2-return.html#P2862_208254 (접속일자: 2017.9.15.)

37)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corporations/corporation-tax-rates.html> (접속일자: 2017.9.15.)

5) 칠레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이 3차례 인상됨
- 2014년 20%에서 21%로 1%p 인상함
 - 2015년 21%에서 22.5%로 1.5%p 인상함
 - 2017년 22.5%에서 25%로 2.5% 인상함

표 1-44 칠레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2~2013	2014	2015~2016	2017
단일세율	20.0	21.0	22.5	25.0

자료: OECD Statistics

6) 체코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도 19%를 유지함

7) 덴마크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을 3차례 인하함
- 2014년 25%에서 24.5%로 0.5%p 인하함
 - 2015년 24.5%에서 23.5%로 1%p 인하함
 - 2017년 23.5%에서 22%로 1.5%인상함

38) 지방법인세율은 OECD 통계에서 제공하는 세율로, 각 지방정부별로 세율이 상이하므로 대표세율을 제시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음

표 1-45 덴마크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2~2013	2014	2015~2016	2017
단일세율	25.0	24.5	23.5	22.0

자료: OECD Statistics

8) 에스토니아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을 1차례 인하함
 - 2015년 21%에서 20%로 1%p 인하함

9) 핀란드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을 1차례 인하함
 - 2014년 24.5%에서 20%로 4.5%p 인하함

10) 프랑스³⁹⁾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2단계의 세율에서 3단계 세율로 개정함
 - 프랑스는 2020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3.33%에서 28%로 인하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부터 세부담을 인하할 예정임

39) J. Benamran, France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접속일자: 2017.9.15.)

- 일반기업의 경우 33.33%, 소기업의 경우 15%, 28%, 33.33%의 세율을 적용함
 - 소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7,63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개인주주 또는 중 소기업이 최소 75%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말함
 - 기존에 소기업의 이익 38,120유로까지만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17년부터 28% 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38,120~75,000까지는 28%의 세율을 적용함

- 또한, 일반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763,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763,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의 부가세(surcharge)가 부과됨
 -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연간 매출액이 2,5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가세가 부과됨⁴⁰⁾
 -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회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5%의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됨
 -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회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10.7%의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됨

표 1-46 프랑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과세표준	2012	2013~2015	2016	2017
일반 기업	법인세율	단일세율	33.3	33.3	33.3	
	부가세율		8.3	14.0	3.3	
	통합법인세율		36.1	38.0	34.43	
소기업		0~38,120	15			15
		38,120~75,000	33.33			28
		75,000~				33.33

자료: J. Benamran, France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참고하여 저자 작성

40)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471

11) 독일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5%의 세율을 유지함
- 법인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연대부가세, 지방세인 영업세가 부과됨
 - 연대부가세는 법인세액의 5.5%가 부과되며, 조사기간 동안 부가세율의 변동은 없음

표 1-47 독일의 법인세율

(단위: %)

	2012~2017
법인세율	15
부가세율	0.82
지방정부세율	14.35
통합법인세율	30.18

자료: OECD Statistics

12) 그리스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은 2차례 인상됨
 - 2013년 기준 20%에서 26%로 인상하였으며, 2017년 기준 26%에서 29%로 인상함

표 1-48 그리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2	2013~2016	2017
단일세율	20	26	29

자료: OECD Statistics

13) 헝가리

- 2016년까지 법인세는 2단계의 누진세율 구조였으나, 2017년부터 단일세율로 개정함
- 단일세율로 개정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9%에서 9%로 인하함

표 1-49 헝가리의 법인세율

(단위: HUF(포린트), %)

과세표준 구간	2012~2016	2017
0~500,000,000	10	9%
500,000,001~	19	

주: 500,000,000HUF는 약 21억원임(2017.9.27.일자 환율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14) 아이슬란드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의 세율을 계속 유지함
-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체계이나 파트너십에는 36%의 세율을 적용함

15) 아일랜드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 12.5%의 세율을 계속 유지함

16) 이스라엘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동안 법인세율은 1차례 인상, 인하함

- 2014년 기준 25%에서 26.5%로 1.5%p 인상하였으나, 2017년 26.5%에서 24%로 2.5%p 인하함

표 1-50 이스라엘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2~2013	2014~2016	2017
단일세율	25	26.5	24

자료: OECD Statistics

17) 이탈리아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세율을 기존 27.5%에서 24%로 3.5%p 인하함
 - 단, 금융기관은 법인세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주별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세율 포함 시 법인에 적용되는 통합세율은 27.9%임

표 1-51 이탈리아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2~2016	2017
중앙정부세율	27.5	24
지방정부세율	3.9	3.9
통합세율	31.4	27.9

자료: OECD Statistics

18) 일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일반법인의 경우 단일세율 체계, 중소기업의 경우 2단계

누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조사기간 중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을 3차례 인하하였으며, 최근 5년간 총 6.6%p가 인하됨
 - 2013년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은 기존 30%에서 25.5%로 4.5%p 인하하였으며, 2015년 25.5%에서 23.9%로 1.6%p 인하, 2016년 23.9%에서 23.4%로 0.5%p 인하함
 - 2013년~2014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함

- 조사기간 중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2차례 인하함
 - 중소기업이란, ‘해당 법인의 자본규모가 1억엔 이하이고 그 소유주중 자본 규모 5억엔 초과인 법인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함⁴¹⁾
 - 과세표준이 8백만엔 이하인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8백만엔 초과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 2013년 기존 18%에서 16.5%로 1.5%p 인하하였으며, 2015년 기존 16.5%에서 15%로 1.5%p로 인하함

- 지방세는 지역,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됨

41) M. Otchi, Japan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표 1-52 일본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기업	30.0	25.5	25.5	23.9	23.4	23.4
부가세	-	2.55	2.55	-	-	-
조정법인세율(A)	27.99	26.17	26.17	22.55	22.59	22.59
중소기업	8백만엔 이하	18.0	16.5	16.5	15.0	15.0
	8백만엔 초과	30.0	25.5	25.5	23.9	23.4
지방세(B)	11.55	10.82	10.82	9.56	7.38	7.38
통합세율(A+B)	39.54	36.99	36.99	32.11	29.97	29.97

주: 일본은 지방세인 사업세(enterprise)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비용으로 공제함. 조정 법인세율은 이를 반영한 세율임

자료: OECD Statistics

19) 대한민국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은 3단계 누진세 체계이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과세소득의 2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소득이 2억~200억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을,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율을 적용함
- 법인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지방세는 그 세율이 결정세액의 10%로 변경 없음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법인세율을 4단계 누진세 체계로 개정하고,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할 예정임

-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과세소득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임

20) 라트비아

조사기간 중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0년~2016년까지 중소기업에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7년부터 일반 기업과 동일한 세율인 15%로 과세함

21) 룩셈부르크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2017년부터 2단계 누진세 체계에서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개정함
 - 과세소득이 25,000유로 이하인 경우 적용세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되었으며, 30,000유로 초과 시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함
- 2017년부터 과세소득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에 기존 21%에서 19%로 2%p 인하됨
- 조사기간 중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 형태인 ‘고용촉진기금(employment fund)’ 부담금이 인상됨
 - ‘고용촉진기금(employment fund)’은 법인세액의 일정률로 계산되며, 2009년~2010년에는 4%, 2011년~2012년에는 5%, 2013년 이후는 7%로 인상됨
- 지방세율은 사업세(business tax) 3%에 각 지방별로 상관계수(coefficient)를 곱하여 계산하며, 룩셈부르크 시의 지방세율은 조사기간 동안 동일함⁴²⁾
 - 룩셈부르크 시는 사업세 3%에 상관계수 2.25를 곱한 세율인 6.75%를 적용함

42) A. Jeanrond et al., Luxembourg - Corporate Taxation sec. 3., Country Surveys IBFD

표 1-53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

(단위: EUR %)

구분		2012	2013~2016	2017	
일반 법인세율	0~15,000		20	0~25,000	15%
	15,001~		21	25,001~ 30,000	EUR 3,750+ (과세표준 - 5,000)×39%
				30,001~	19%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율		4	5	7	7

자료: A. Jeanrond et al., Luxembourg - Corporate Taxation sec. 3., Country Surveys IBFD

22) 멕시코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0%의 세율을 계속 유지함

23) 네덜란드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2단계 누진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의 변동은 없음
 - 과세소득이 20만유로 이하인 경우 20% 세율을, 20만유로 초과 시 초과하는 과세소득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함

표 1-54 네덜란드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0	2011~2017
20만유로 이하	20.0	
20만유로 초과	25.5	25

자료: OECD Statistics

24) 뉴질랜드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 세율의 변동은 없음
 - 2011년 30%에서 28%로 인하 후 법인세율 28%를 계속 유지함

25) 노르웨이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을 2차례 인하함
 - 2014년 기준 28%에서 27%로 1%p 인하하였고, 2017년 기준 27%에서 24%로 3%p 인하함

표 1-55 노르웨이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2~2013	2014~2016	2017
단일세율	28	27	24

자료: OECD Statistics

26) 폴란드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19%임
- 2017년부터 연간 매출액(VAT 포함)이 120만유로 미만인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함
 - 경감세율은 15%임

표 1-56 폴란드의 법인세율

(단위: %)

과세표준	2012~2016	2017
0~1,200,000	19	15
1,200,001~		19

자료: OECD Statistics

27) 포르투갈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2차례 인하됨
 - 2014년에 기존 25%에서 23%로 2%p 인하하였으며, 2015년부터 23%에서 21%로 2%p 인하함
-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소득의 15,000유로까지 경감세율인 17%를 적용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세율을 적용함⁴³⁾
 - 2014년 이전에는 과세소득의 12,000유로까지 12.5%의 세율을 적용함
 - 중소기업 판단 시 EU 규정을 적용하며⁴⁴⁾, EU 규정상 중소기업은 종업원이 2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5천만유로 미만 또는 대차대조표상 자산금액이 4,300만유로 미만인 기업이라 규정하고 있음⁴⁵⁾
- 포르투갈은 2011년부터 일정 과세표준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derrama estadual)를 부과함⁴⁶⁾

43) A. Valente Vieira, Portugal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44) PWC, <http://taxsummaries.pwc.com/ID/Portugal-Corporate-Taxes-on-corporate-income> (접속일자: 2017.10.10.)45) EU,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sme-definition_en (접속일자: 2017.10.10.)

- 2017년 기준 기존의 법인세율 외에 법인세 과세표준의 3%~7%를 추가로 부과함

표 1-57 포르투갈의 법인부가세율

(단위: %)

	과세표준(EUR)	법인부가세율
2011	2,000,000~	2
2012	1,500,000~10,000,000	3
	10,000,000~	5
2013	1,500,000~7,500,000	3
	7,500,000~	5
2014-2017	1,500,000~7,500,000	3
	7,500,000~35,000,000	5
	35,000,000~	7

자료: A. Valente Vieira, Portugal - Corporate Taxation sec. 1.10, Country Analyses IBFD

- 포르투갈의 지방세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2017년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의 최고 1.5%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음

- 2007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의 최고 1.5%를 한도로 지방세 부과가 가능함

표 1-58 포르투갈의 법인세율

(단위: %)

과세표준	2012~2013	2014	2015~2017
일반법인(a)	25	23	21
중소법인	12.5 (과세표준 12,500유로까지)	17 (과세표준 15,000유로까지)	17
부가세(b)	5	7	7
지방세율(c)	1.5	1.5	1.5
통합세율 (a+b+c)	31.5	31.5	29.5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46)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1228

28) 슬로바키아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체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1차례 인상한 후 2차례 인하됨
 - 2013년 20%에서 23%로 3%p 인상됨
 - 2014년 23%에서 22%로 1%p 인하됨
 - 2017년 22%에서 21%로 1%p 인하됨

표 1-59 슬로바키아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1~2012	2013	2014~2016	2017
세율	20	23	22	22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29) 슬로베니아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1차례 인하 후 1차례 인상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씩 인하되어 2009년 21%에서 2013년 17%로 4%p 인하됨
 - 2017년에 17%에서 19%로 2%p 인상함
-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업종은 0%의 세율을 적용받음⁴⁷⁾
 - 「펀드투자법」에 의한 투자펀드이며 이익의 90% 이상을 11월 30일까지 분배하는 펀드
 - 「연금법」에 의한 연금펀드
 - 「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관리하는 보험회사

47)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7, p. 570

표 1-60 슬로베니아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2	2013~2016	2017
세율	18	17	19

자료: OECD Statistics

30) 스페인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은 2차례 인하함
 - 2015년 30%에서 28%로 2%p 인하함
 - 2017년 28%에서 25%로 3%p 인하함

- 조사기간 중 중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부터 별도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2015년까지 직전연도 매출액이 1천만유로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의 30만유로까지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초과하는 금액에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율인 28%를 적용함⁴⁸⁾

- 일부 법인에 대해 법인의 형태에 따라 경감세율을 적용함⁴⁹⁾
 - 뮤추얼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세무신고 요건이 미비한 비영리법인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음
 - 신규 법인은 설립 후 1년간 15%의 세율을 적용받음
 - 세무신고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10%의 세율을 적용받음
 - 모집에 의한 투자기구는 1%의 세율을 적용받음
 - 연금 관련 기관이나 펀드는 0%의 세율을 적용받음

48)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5, p. 1311

49) A. de la Cueva González-Cotera & C. Morlán Burgasé, Spain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표 1-61 스페인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09~2014	2015	2016	2017
기본세율	30	28	28	25
중소기업세율	25	25	-	-

자료: OECD Statistics

31) 스웨덴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이 1차례 인하됨
 - 법인세율은 2013년 26.3%에서 22%로 3.3%p 인하됨

표 1-62 스웨덴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2	2013~2017
세율	26.3	22.0

자료: OECD Statistics

32) 스위스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연방정부세와 칸톤(canton)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방 정부세율의 변동은 없음
 - 각 칸톤들은 각자 세율을 정하여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법인세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칸톤의 세법을 적용해야 함
 - OECD에서 제공하는 지방세율(칸톤세율)은 2013년에 14.47%에서 14.45%로 다소 인하됨

표 1-63 스위스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2	2013~2017	비고
연방세율	8.5		
조정된 연방세율(a)	6.7		가상의 칸톤을 기준으로 한 세율임
칸톤세 등(b)	14.47	14.45	
통합법인세율(a+b)	21.71	21.15	조정된 연방세율과 칸톤세의 합

주: 조정된 연방세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방세율의 일정 부분을 조정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임
 자료: OECD Statistics

33) 터키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의 변동은 없음
 - 법인세율은 20%임

34) 영국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일반법인과 중소기업별로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2014년까지 과세소득이 30만파운드 미만인 기업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함
- 조사기간 중 법인세율은 수차례 인하되었으며, 2016년 예산안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및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법인세율을 2020년 17%까지 인하할 예정임⁵⁰⁾
 - 2012년에 26%에서 24%로 2%p 인하됨

50) 영국 국세청, “Overview of Tax Legislation and Rates 2016”, p. 8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13073/OOTLAR_complete_for_publication.pdf (접속일자: 2017.9.27.)

- 2013년에 24%에서 23%로 1%p 인하됨
- 2014년에 23%에서 21%로 2%p 인하됨
- 2015년에 21%에서 20%로 1%p 인하됨
- 2017년에 20%에서 19%로 1%p 인하됨

표 1-64 영국의 법인세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2016	2017
기본세율	24	23	21	20	19
중소기업세율	21	20			

자료: OECD Statistics

35) 미국

- 조사기간 중 법인세는 8단계 구조로 세율의 변동 없음
 - 335,000달러 초과 시 세율이 전단계 세율인 39%보다 낮은 35%가 적용되며, 18,333,333달러 초과 시에도 세율이 전단계 세율인 38%보다 낮은 35%가 적용되어 완전한 누진세 체계는 아님
- 연방법인세율 외에도 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가 부과되며, 주별로 세율은 다양하나 4%~12%(최고세율 기준)의 범위 내에서 세율이 적용됨⁵¹⁾
 - 주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연방소득 산정 시 공제가 가능함

51) Tax Foundation, *State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for 2016*, 2016.1

표 1-65 미국의 법인세율

(단위: USD, %)

2012		2013		2014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0~50,000	15	0~50,000	15	0~50,000	1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75,001~100,000	34	75,001~100,000	34	75,001~100,000	34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8,333,334~	35	18,333,334~	35	18,333,334~	35
2015		2016		2017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0~50,000	15	0~50,000	15	0~50,000	1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50,001~75,000	25
75,001~100,000	34	75,001~100,000	34	75,001~100,000	34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100,001~335,000	39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335,001~10,000,000	34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0,000,001~15,000,000	35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5,000,001~18,333,333	38
18,333,334~	35	18,333,334~	35	18,333,334~	35

자료: OECD Statistics & IBFD(www.ibfd.org)

다. 소결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단일의 법인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누진세율 구조를 운영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미국임

표 1-66 OECD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구조(2017년 기준)

구분	국가명
단일세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누진세율	네덜란드(2단계), 대한민국(3단계), 룩셈부르크(3단계), 미국(8단계)

- OECD 회원국 중 6개국이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주로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함
 - 중소기업 판단 시 일부 국가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두어 대규모법인이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제도는 호주는 2013년 새로 신설한 반면 스페인, 라트비아는 각각 2016년, 2017년부터 폐지함

표 1-67 OECD 회원국 중 중소기업 경감세율 적용 국가(2017년 기준)

(단위: %)

	법인세율		중소기업 요건
	표준세율	경감세율	
호주	30.00	27.5	연간 매출액 1,000만AUD 미만
벨기에	33.00	24.25/31/34.5	과세표준 322,500유로 미만, 지분율 요건, 이사보수 요건, 배당금 지급 요건 만족
캐나다	15.00	10.5	연간 사업소득 50만CAD 미만
프랑스	33.33	15/28/33.33	연간 매출액 7,630,000유로 이하, 지분율 요건 만족
일본	23.40	15/23.4	자본규모가 1억엔 이하, 주주자본 규모가 5억엔 이하
포르투갈	21.00	17	종업원 250명 미만, 매출액 5천만유로 미만 또는 총자산 4,300만 미만

주: 보다 자세한 중소기업 요건은 본 장의 '나. 국가별 법인세율'에 기술됨
 자료: 호주국세청(<https://www.ato.gov.au>, 접속일자: 2017. 9. 13.)
 IBFD(<http://ibfd.org>, 접속일자: 2017. 9. 15.)
 캐나다국세청(<http://www.canada.ca/en/revenue-agency>, 접속일자: 2017. 9. 15.)

- 200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며, 특히 금융위기 이전 2000년~2009년 사이에 EU국을 중심으로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인하됨
 - EU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은 아일랜드가 1990년 중반부터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주변 EU국도 자국기업 및 해외기업의 자본 및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함⁵²⁾

-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가 증가하였으며, 인하하는 국가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인하폭이 감소함

표 1-68 OECD 회원국의 금융위기 전·후 법인세율 인상·인하 여부

(단위: %)

국가	법인세율 인상·인하 여부				법인세율 ('17년)
	금융위기 이전 ('00~'09)	금융위기 이후 ('10~'17)			
		세율증감률 ¹⁾	세율증감률 ¹⁾		
호주	인하	-4	유지	0	30.0
오스트리아	인하	-9	유지	0	25.0
벨기에	인하	-6	유지	0	33.0
캐나다	인하	-8.5	인하	-4.5	15.0
칠레	인상	2	인상	8	25.0
체코	인하	-11	인하	-1	19.0
덴마크	인하	-7	인하	-3	22.0
에스토니아	인하	-5	인하	-1	20.0
핀란드	인하	-3	인하	-6	20.0
프랑스	유지	0	유지	0	33.33
독일	인하	-25	유지	0	15.0
그리스	인하	-15	인상	4	29.00
헝가리	인하	-2	인하	-7	9.00

52) 한국금융연구원, 『주요국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 시사점』, 금융브리프, 2013

(단위: %)

국가	법인세율 인상·인하 여부				법인세율 ('17년)
	금융위기 이전 ('00~'09)	세율증감률 ¹⁾	금융위기 이후 ('10~'17)	세율증감률 ¹⁾	
아이슬란드	인하	-15	인상	5	20.00
아일랜드	인하	-11.5	유지	0	12.50
이스라엘	인하	-10	인하	-2	24.00
이탈리아	인하	-9.5	인하	-3.5	24.00
일본	유지	0	인하	-6.6	23.40
대한민국	인하	-6	유지	0	22.00
라트비아	인하	-10	유지	0	15.00
룩셈부르크	인하	-9	인하	-2	19.00
멕시코	인하	-7	인상	2	30.00
네덜란드	인하	-9.5	인하	-0.5	25.00
뉴질랜드	인하	-3	인하	-2	28.00
노르웨이	유지	0	인하	-4	24.00
폴란드	인하	-11	유지	0	19.00
포르투갈	인하	-7	인하	-4	21.00
슬로바키아	인하	-10	인상	2	21.00
슬로베니아	인하	-4	인하	-2	19.00
스페인	인하	-5	인하	-5	25.00
스웨덴	인하	-1.7	인하	-4.3	22.00
스위스	유지	0	유지	0	8.50
터키	인하	-10	유지	0	20.00
영국	인하	-2	인하	-9	19.00
미국	유지	0	유지	0	35.00

주: 1) 2017년 대비 세율증감을 나타낸 것임
 자료: OECD Statistics

- OECD 회원국 중 4개국은 재정확보 목적으로 법인세율 외에 별도의 법인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8개국은 지방법인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세 명목으로 법인세액의 3.3%를 법인부가세로 과세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 충당목적으로 1991년부터 법인세액의 5.5%를 ‘연대 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로 부과하고 있음
- 룩셈부르크의 경우 고용촉진 목적으로 법인세액의 7%를 부가세로 과세하고 있음
- 포르투갈의 경우 사업세 명목으로 법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2%~5%로 추가 법인세를 과세함
- 지방법인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국가의 세율은 <표 I -69>에 제시함

표 I -69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외 부가세, 지방법인세 부과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국가	법인세 부가세		지방법인세	
	부과 여부	부가세율	부과 여부	세율
캐나다	-	-	○	11~16
프랑스	○	법인세액의 3.3%	-	-
독일	○	법인세액의 5.5%	○	14.35
이탈리아	-	-	○	3.9
일본	-	-	○	7.38
대한민국	-	-	○	법인세액의 10%
룩셈부르크	○	법인세액의 7%	○	6.75
포르투갈	○	법인세 과세표준에 2~5%로 추가 과세	-	-
스위스	-	-	○	14.45
미국	-	-	○	4~12

주: 캐나다와 미국을 제외한 지방법인세율은 OECD통계에서 제공하는 세율로 지방정부별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율이 상이하므로 대표세율을 제시한 것임

자료: 캐나다 국세청(<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 접속일자: 2017.9.15.)

Tax Foundation, *State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for 2016, 2016*. 1.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과 달리 3단계 누진 세율 구조를 운영 중이며, 2000년대에 법인세율 인하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한 바 있음

- 하지만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가세와 지방법인세를 모두 포함한 법인세 통합세율 고려 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되더라도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임

03

부가가치세

- 본 장에서는 OECD 자료를 토대로 미국을 제외한 OECD 34개 회원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이하 “VAT”) 세율 변화 추이와 각 국의 2016년 기준 경감세율 및 경감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살펴봄⁵³⁾⁵⁴⁾

가. 부가가치세율 변화 추이

- OECD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의 변화를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⁵⁵⁾
- 첫 번째 시기는 많은 국가들이 VAT 제도를 도입한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다수의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움

53) 본 장은 OECD Tax Database(<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접속일자: 2017.9.14.)와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보고서(<http://www.oecd.org/tax/consumption-tax-trends-19990979.htm>, 접속일자: 2017.9.14.)를 기초자료로 하여 작성함. 다만, 기초자료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은 수행하지 아니함

54) OECD 회원국 미국을 제외한 34개 회원국이 VAT 제도를 도입함. OECD(2016), p. 16

55) OECD(2016), pp. 68~69

직임을 보임

- 이 기간 VAT 제도를 도입한 31개국 중 20개국이 표준세율을 최소 1회 이상 인상하였으며, OECD의 평균 표준세율은 1975년 15.6%에서 2000년 18%로 2.4%p 인상됨
- 두 번째 시기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준세율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34개국 중 23개국이 15%와 22% 사이에서 표준세율을 유지하였으며, 5개국(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만 22% 이상의 높은 표준세율을 보임
 - 이 기간 OECD의 평균 표준세율은 2000년 18%에서 2009년 17.7%로 0.3%p 인하됨
- 세 번째 시기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로 대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VAT 표준세율을 인상함
 - VAT를 통한 세수확보는 그 효과가 즉각적이고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덜 해롭다고 여겨져 재정위기 대응에 대한 주요 방안으로 사용되었음
 - 이 기간 22개국에서 최소 1회 이상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EU 회원국에서의 표준세율 인상이 주를 이룸
 - 이 기간 OECD의 평균 표준세율은 2009년 17.7%에서 2014년 19.1%로 1.4%p 인상됨
- 네 번째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표준세율이 안정화되어 직전 시기에 나타난 표준세율 인상 추세가 나타나지 않음

- 이 기간 표준세율 인상을 한 OECD 회원국으로는 일본과 룩셈부르크 등 2개국이 있었으며, 표준세율을 인하한 국가로는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 등 2개국이 있음
 - 이 기간 OECD의 평균 표준세율은 2014년 19.1%에서 2016년 19.2%로 0.1%p 인상됨
- 2016년 기준 OECD의 평균 VAT 표준세율은 19.2%인 가운데, 헝가리(27%)가 가장 높은 VAT 표준세율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10%)를 비롯해 호주(10%), 일본(8%), 스위스(8%), 캐나다(5%) 등 5개국만이 10% 이하의 표준세율을 기록함
- 평균 세율보다 높은 국가는 22개국으로 대부분 EU 회원국이었으며, 평균보다 낮은 표준세율을 기록한 국가는 12개국으로 대부분 비EU 회원국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 중 22개 EU 회원국인의 평균 표준세율은 21.7%로 나타나 OECD 평균보다 2.5%p 높았으며, 22개 EU 회원국 중 OECD 평균보다 낮은 표준세율을 기록한 국가로는 독일(19%)과 룩셈부르크(17%) 등 2개국이 있음
 - EU 국가는 EU의 VAT Directive상 최소 15% 이상의 표준세율을 유지하여야 함
 - OECD 회원국 중 22개 EU 회원국과 영국(20%) 및 노르웨이(25%)를 제외한 10개국의 평균 VAT 표준세율은 12.6%로 OECD 회원국 중 EU권 국가와 비EU권 국가의 VAT 표준세율 격차는 9%p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6년 VAT 표준세율은 10%로 OECD 평균(19.2%)과 9.2%p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8%), 스위스(8%), 캐나다(5%)등 3개국이 있음
- 단, 캐나다의 경우 각 주(province)에서 별도의 판매세(sales tax)를 징수하여 유효세율은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⁵⁶⁾

56) Ibid., p. 69, p. 84

표 | 70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 변화 추이(1975년~2016년)

(단위: %, %p)

국가	도입 연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호주	2000	-	-	-	-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	0.0	0.0
오스트리아	1973	16.0	18.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0.0	0.0	10.0/13.0
벨기에	1971	18.0	16.0	19.0	19.0	20.5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0.0	0.0	0.0/6.0/12.0
캐나다	1991	-	-	-	-	7.0	7.0	7.0	6.0	5.0	5.0	5.0	5.0	5.0	5.0	5.0	5.0	5.0	0.0	0.0	0.0
칠레	1975	20.0	20.0	20.0	16.0	18.0	18.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0.0	0.0	-
체코	1993	-	-	-	-	22.0	22.0	19.0	19.0	19.0	19.0	20.0	20.0	20.0	20.0	21.0	21.0	21.0	2.0	0.0	0.0/10.0/15.0
덴마크	1967	15.0	20.25	22.0	22.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0.0	0.0/5.0
에스토니아	1991	-	-	-	-	18.0	18.0	18.0	18.0	18.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	0.0	0.0/9.0
핀란드	1994	-	-	-	-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3.0	23.0	24.0	24.0	24.0	24.0	2.0	0.0	0.0/10.0/14.0
프랑스	1968	20.0	17.6	18.6	18.6	20.6	20.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20.0	20.0	20.0	0.4	0.0	2.1/5.5/10.0
독일	1968	11.0	13.0	14.0	14.0	15.0	16.0	16.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0.0	0.0	7.0
그리스	1987	-	-	-	-	18.0	18.0	18.0	19.0	19.0	19.0	19.0	23.0	23.0	23.0	23.0	23.0	23.0	4.0	0.0	6.0/13.0
헝가리	1988	-	-	-	-	25.0	25.0	25.0	20.0	20.0	25.0	25.0	25.0	27.0	27.0	27.0	27.0	27.0	7.0	0.0	5.0/18.0
아이슬란드	1990	-	-	-	-	22.0	24.5	24.5	24.5	24.5	24.5	25.5	25.5	25.5	25.5	25.5	24.0	24.0	1.0	-1.5	0.0/11.0
아일랜드	1972	19.5	20.0	23.0	23.0	21.0	21.0	21.0	21.0	21.0	21.5	21.0	21.0	23.0	23.0	23.0	23.0	23.0	1.5	0.0	0.0/4.8/9.0/13.5
이스라엘	1976	-	12.0	15.0	15.0	17.0	17.0	17.0	15.5	15.5	16.0	16.0	16.0	16.0	17.0	18.0	18.0	17.0	2.5	-1.0	0.0
이탈리아	1973	12.0	14.0	18.0	19.0	19.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1.0	21.0	22.0	22.0	22.0	2.0	0.0	4.0/5.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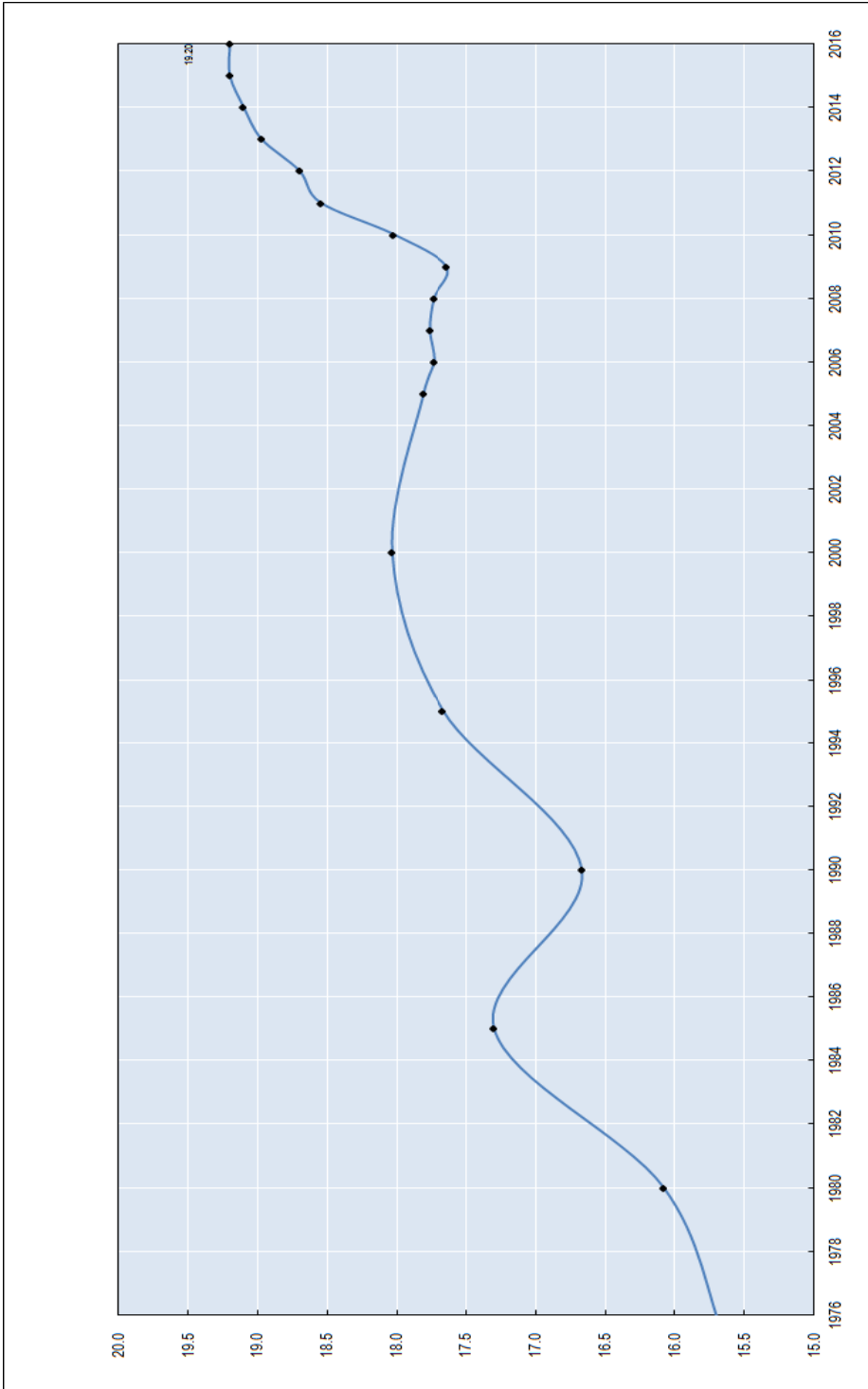
(단위: %, %p)

국가	도입 연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일본	1989	-	-	-	3.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8.0	8.0	0.0	3.0	-
대한민국	197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	0.0	0
라트비아	1995	-	-	-	-	-	18.0	18.0	18.0	18.0	21.0	21.0	22.0	22.0	21.0	21.0	21.0	21.0	0.0	0.0	0.0/12.0
룩셈부르크	1970	10.0	10.0	12.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7.0	17.0	0.0	2.0	3.0/8.0/14.0
멕시코	1980	-	10.0	15.0	15.0	10.0	15.0	15.0	15.0	15.0	15.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0	0.0	0.0
네덜란드	1969	16.0	18.0	19.0	18.5	17.5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21.0	21.0	21.0	21.0	2.0	0.0	6
뉴질랜드	1986	-	-	-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5.0	15.0	15.0	15.0	15.0	15.0	2.5	0.0	0.0
노르웨이	1970	20.0	20.0	20.0	23.0	23.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0.0	0.0/10.0/15.0
폴란드	1993	-	-	-	-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3.0	23.0	23.0	23.0	23.0	23.0	1.0	0.0	5.0/8.0
포르투갈	1986	-	-	-	17.0	17.0	17.0	19.0	21.0	21.0	20.0	20.0	23.0	23.0	23.0	23.0	23.0	23.0	3.0	0.0	6.0/13.0
슬로바키아	1993	-	-	-	-	25.0	23.0	19.0	19.0	19.0	19.0	19.0	20.0	20.0	20.0	20.0	20.0	20.0	1.0	0.0	10
슬로베니아	1999	-	-	-	-	-	19.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2.0	22.0	22.0	2.0	0.0	9.5
스페인	1986	-	-	-	12.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8.0	18.0	21.0	21.0	21.0	21.0	5.0	0.0	4.0/10.0
스웨덴	1969	17.7	23.5	23.5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0.0	0.0/6.0/12.0
스위스	1995	-	-	-	-	6.5	7.5	7.6	7.6	7.6	7.6	7.6	8.0	8.0	8.0	8.0	8.0	8.0	0.4	0.0	0.0/2.5/3.8
터키	1985	-	-	10.0	10.0	15.0	17.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0.0	0.0	1.0/8.0
영국	1973	8.0	15	1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20.0	20.0	20.0	20.0	20.0	20.0	5.0	0.0	0.0/5.0
OECD 평균		15.6	16.1	17.3	16.7	17.7	18.0	17.8	17.7	17.7	17.7	18.1	18.7	18.8	19.0	19.1	19.2	19.2	1.4	0.1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그림 1-4 OECD 회원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VAT)의 변화(1976년~2016년)

(단위: %)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69

그림 1-5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2016년기준)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70

나. 국가별 부가가치세율

- 미국을 제외한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이하, “조사기간”)에 대해 각국의 VAT 표준세율 변화와 2016년 기준 각국의 경감세율 및 경감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살펴봄

1) 호주

- 호주는 2000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래 세율의 변화 없이 10%의 표준세율을 유지함
- 경감세율로는 영세율(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⁵⁷⁾
- 미가공 식음료, 수도, 여객운송, 의료보건, 비영리교육, 공익단체활동 등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표 1-71 호주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2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	0.0	0.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09.14.)

2)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1973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70~80년대에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한 이후 1985년부터 현재까지 세율의 변화 없이 20%의 표준세율을 유지함

57)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은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표준세율 인상 추세가 두드러짐
 - 2009년 이후 많은 EU 국가들이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오스트리아는 20%의 세율을 유지함
- 경감세율로는 10%와 13%의 세율을 적용함⁵⁸⁾
- 1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수도, 여객운송, 의료 보건, 도서, 방송, 주택임대, 공익단체활동 등이 있음
 - 13%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예술창작품, 문화 예술 인적용역 등이 있음

표 1-72 오스트리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73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0.0	0.0	10.0/ 13.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3) 벨기에

- 벨기에에는 1971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세율의 변화 없이 21%의 표준세율을 유지함
-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은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표준세율 인상 추세가 두드러짐

58) Ibid.

- 2009년 이후 많은 EU 국가들이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나 벨기에는 21%의 세율을 유지함
- 경감세율로는 0%, 6%, 12%의 세율을 적용함⁵⁹⁾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장애인 차량, 신문 및 간행물 등이 있음
 - 6%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미가공 음식료, 수도, 여객운송, 도서, 예술창작품 등이 있음
 - 12%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당, 연탄, 공공주택 등이 있음

표 1-73 벨기에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71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0.0	0.0	0.0/6.0/ 12.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4) 캐나다

- 캐나다는 1991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8년 5%로 표준세율을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표준세율을 유지함
 - 1995년 7%, 2007년 6%, 2008년 5%로 표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함
 -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국가에서 VAT 표준세율 인상이 있었으나, 캐나다는 기존 세율을 유지함

59) Ibid.

- 단, 캐나다는 각 주(province)에서 별도의 판매세(sales tax)를 징수하여 실질적인 표준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⁶⁰⁾
- 경감세율은 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⁶¹⁾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장애인 차량, 신문 및 간행물 등이 있음

표 1-74 캐나다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91	5.0	5.0	5.0	5.0	5.0	5.0	5.0	5.0	0.0	0.0	0.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5) 칠레

- 칠레는 1975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0년대 세율 인하, 2000년대 세율 인상을 거쳐 2005년부터는 19%의 표준세율을 유지함
 - 1990년대에 20%의 기존 세율을 16%로 인하한 이후 1995년 18%, 2005년에는 19%로 세율을 인상함
 -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국가에서 VAT 표준세율 인상이 있었으나, 칠레는 기존 세율을 유지함
- 칠레는 표준세율 외에 별도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지 않음⁶²⁾

60) OECD(2016), p. 69, p. 84

61)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62) Ibid.

표 1-75 칠레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75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0.0	0.0	-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6) 체코

□ 체코는 1993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0년대 초반 표준세율을 인하하였으나, 2009년 금융위기 이후 2차례의 표준세율 인상을 단행하여 현재 21%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00년대 초반 기존의 22% 표준세율을 19%까지 인하함
- 2010년 20%, 2013년 21%로 표준세율을 2번 인상한 이후 2016년까지 세율을 유지함
- 2009년 이후의 2차례 표준세율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의 감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짐⁶³⁾

□ 경감세율로는 0%, 10%, 15%의 세율을 적용함⁶⁴⁾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여객운송, 수출재화 등이 있음
- 1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도서 등 출판물,

63) OECD(2012), pp. 99~100; KOTRA, 해외시장뉴스, 2011. 3. 31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05756&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332&row=100>, 접속일자: 2017.9.21.)

64)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의료약품 등이 있음

- 15%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음료, 수도, 의료 용역, 장애인 시설 등이 있음

표 1-76 체코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93	19.0	20.0	20.0	20.0	21.0	21.0	21.0	21.0	2.0	0.0	10.0/ 15.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7) 덴마크

□ 덴마크는 1967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5년까지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한 후 1995년부터 현재까지 세율의 변화 없이 25%의 표준세율을 유지함

-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은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표준세율 인상 추세가 두드러짐
- 2009년 이후 많은 EU 국가들이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나 덴마크는 25%의 세율을 유지함
 - 1995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표준세율이 25%인 국가는 덴마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4개국밖에 없음

□ 경감세율로는 0%와 5%의 세율을 적용함⁶⁵⁾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신문과 간행물 등이 있음

65) Ibid.

- 5%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30만크로나를 초과하는 첫 예술작품 등이 있음(공급가액의 20%만 과세표준으로 하고 2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유효세율 5%)

표 1-77 덴마크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67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0.0	0.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8)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는 1991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8%의 표준세율을 유지하다 2010년 20%로 표준세율을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많은 EU 국가들이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에스토니아의 2010년 표준세율 인상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의 감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짐⁶⁶⁾
- 경감세율로는 0%와 9%의 세율을 적용함⁶⁷⁾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여객운송이 있음
 - 1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의료약품, 장애인용 의료기기, 도서, 신문 및 간행물, 호텔숙박 등이 있음

66) OECD(2012), pp. 111~112

67)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표 1-78 에스토니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91	18.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	0.0	0.0/ 9.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9) 핀란드

□ 핀란드는 1994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2%의 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과 2013년 각각 1%p씩 2차례 세율 인상을 통하여 현행 24%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많은 EU 국가들이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핀란드의 2차례 세율 인상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국가의 재정 적자 및 공공부채 감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짐⁶⁸⁾

□ 경감세율은 0%, 10%, 14%의 세율을 적용함⁶⁹⁾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인쇄용역과 선박 등이 있음

○ 1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의료약품, 여객운송, 도서, 신문 및 간행물, 호텔숙박, 문화공연, 운동시설사용 등이 있음

○ 14%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음료, 식당 등이 있음

68) OECD(2012), p. 118

69)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표 1-79 핀란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94	22.0	22.0	23.0	23.0	24.0	24.0	24.0	24.0	2.0	0.0	0.0/10.0/ 14.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10) 프랑스

□ 프랑스는 1968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0년대 인하, 1990년대 인상, 2000년 재인하를 거친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9.6%의 세율을 유지하다 2014년 20%로 표준세율을 인상함

○ 프랑스 정부는 2008년 260억유로(GDP의 1.3%) 규모 감세 등 경기부양종합대책을 시행한 후, 2010년부터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기업과 고소득층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VAT 세율의 인상을 결정함⁷⁰⁾

- 2014년도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프랑스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증가를 위한 세액공제(CICE, *crédit d'impôt compétitivité emploi*) 제도의 실시에도 필요한 재정충당의 일환으로 이루어짐⁷¹⁾

□ 경감세율로는 2.1%, 5.5%, 10%의 세율을 적용함⁷²⁾

○ 2.1%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신문 및 간행물, 의약품 등이 있음

○ 5.5%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음료, 수도, 장애인

70) 이영숙,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계개편 동향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5.2., p. 87

71) IBFD, "Increase of VAT rates proposed by the Government," Dec. 5, 2012. 12. 5.

72)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시설, 도서, 문화시설입장권, 공공주택, 전기 및 난방, 예술작품, 여성위생품 등이 있음

- 1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운송여객, 놀이공원 입장권, TV 수신료, 식당, 호텔숙박, 농산물 등이 있음

표 1-80 프랑스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68	19.6	19.6	19.6	19.6	19.6	20.0	20.0	20.0	0.4	0.0	2.1/5.5/10.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11) 독일

□ 독일은 1968년에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이후 2007년부터 현행 표준세율인 19%를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많은 EU 국가들이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나 독일은 19%의 세율을 유지함

□ 경감세율로는 7%의 단일세율을 적용함⁷³⁾

- 7%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료품, 수도, 장애인 시설, 의료서비스, 도서 및 신문, 식물, 특정 문화행사, 박물관, 동물원, 자선 활동, 공공여객운송, 호텔숙박 등이 있음

73) Ibid.

표 1-81 독일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68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0.0	0.0	7.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12) 그리스

□ 그리스는 1987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7년 처음으로 기존 18%에서 19%로 세율을 인상하고 2011년에는 다시 4%p 인상하여 현재 2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4%p 세율 인상은 헝가리(7%p)와 영국(5%p)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임
- VAT 세율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따른 대처방안 중 하나로 시행됨⁷⁴⁾

□ 경감세율은 6%와 13%의 세율을 적용함⁷⁵⁾

- 6%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의약품, 도서, 신문, 간행물, 공연입장권 등이 있음
- 13%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수도, 식료품, 식물, 장애인 의료기기, 전기, 천연가스, 난방, 호텔숙박 등이 있음

74) OECD(2011), p. 122

75)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표 1-82 그리스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87	19.0	19.0	23.0	23.0	23.0	23.0	23.0	23.0	4.0	0.0	6.0/13.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13) 헝가리

- 헝가리는 1988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줄곧 2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다 2007년에는 5%p 인하하여 2009년까지 유지한 후, 2010년에는 5%p, 2012년에는 2%p 인상하여 현재 27%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7%p 인상은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이며, 27%의 표준세율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VAT 세율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헝가리의 재정위기 대처방안 중 하나로 시행됨⁷⁶⁾
- 경감세율은 5%와 18%의 세율을 적용함⁷⁷⁾
 - 5%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의약품, 시각장애인 기구, 도서, 신문, 일부 가축, 지역난방, 예술활동 등이 있음
 - 18%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우유 및 유제품, 밀가루, 숙박시설, 야외공연 등이 있음

76) OECD, (2012), p. 143

77)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표 1-83 헝가리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88	20.0	25.0	25.0	27.0	27.0	27.0	27.0	27.0	7.0	0.0	5.0/ 18.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14)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는 1990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5년 기존 22%에서 1995년 24.5%로 표준세율을 인상하였고, 2010년에는 25.5%로 1%p 인상한 후 2015년에는 1.5% 인하하여 현재 24%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10년 VAT 세율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이슬란드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됨⁷⁸⁾
 - 2015년 VAT 표준세율 인하는 아이슬란드의 재정위기가 완화된 가운데 취해진 조치이며, 기존 7%의 경감세율을 11%로 인상하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짐⁷⁹⁾
 - 2014년 이후 VAT 표준세율을 인정한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 2개국 이 있음
- 경감세율로는 0%와 11%의 세율을 적용함⁸⁰⁾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선박건조, 선박 및 항공기 유지보수, 식료품, 씨앗, 거름, 일부 선박과 항공기 등이 있음

78) OECD(2012), p. 153

79) VAT Live(<https://www.vatlive.com/vat-news/iceland-cuts-vat-rate-25-5-24-january-2015/>, 접속일자: 2017.9.22.)

80)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 11%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료품, 여객운송, 관광서비스, 도서, 신문, 간행물, 라디오 및 TV 수신, 숙박시설, 온수, 난방 등이 있음

표 1-84 아이슬란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90	24.5	25.5	25.5	25.5	25.5	25.5	24.0	24.0	1.0	-1.5	0.0/ 11.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15)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1972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까지 1차례 인상 및 인하를 거쳤으며,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 중 1.5%p 표준세율 인상을 통해 현재 23%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12년 VAT 세율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일랜드의 재정위기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됨⁸¹⁾
 - 단, VAT보다는 개인소득세의 세원확대가 주된 세수증대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됨
- 경감세율로는 0%, 4.8%, 9%와 13.5%의 세율을 적용함⁸²⁾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도서, 아동 의류 및 신발, 일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식료품, 씨앗, 일부 항공기 및 선박 등이 있음

81) OECD(2012), pp. 160~161

82)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 4.8%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용 또는 농업용 가축 등이 있음
- 9%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신문 및 간행물, 문화 공연 입장권, 보육원, 숙박시설, 식당, 농업서비스 등이 있음
- 13.5%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 난방 등에 사용되는 연료, 가스, 전기, 부동산, 수선용역, 관광용역, 예술품 등이 있음

표 1-85 아일랜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72	21.5	21.0	21.0	23.0	23.0	23.0	23.0	23.0	1.5	0.0	0.0/4.8/ 9.0/13.5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16)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1976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0~90년대에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2.5%p 인상, 2016년에는 1%p 인하를 통해 현재 17%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VAT 세율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스라엘의 재정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됨⁸³⁾
 - 2014년 이후 VAT 표준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 2개국 있음

83) OECD(2012), p. 33

□ 경감세율은 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⁸⁴⁾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숙박, 외국관광객과 관련된 다양한 용역, 비영리기관의 부동산 등이 있음

표 1-86 이스라엘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76	15.5	16.0	16.0	16.0	17.0	18.0	18.0	17.0	2.5	-1.0	0.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17)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1973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VAT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2012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총 2.0%p 표준세율 인상을 통해 현재 22%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12년과 2014년 VAT 세율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 대응방안 중 하나로 시행됨⁸⁵⁾

□ 경감세율은 4%, 5%, 10%의 세율을 적용함⁸⁶⁾

- 4%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일부 식음료, 장애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주거건물 공사, 도서, 신문, 간행물 등이 있음

84)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85) OECD(2012), p. 166

86)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 5%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노인, 이민자 등을 위한 사회 및 의료서비스 등이 있음
- 1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수도, 의약품, 의료서비스, 여객운송, 전기, 가스, 도시폐기물 처리, 정화시설, 가축 및 어류, 재생에너지, 예술품, 문화공연, 부동산 임대, 거주 건물 레노베이션 및 유지, 식당 등이 있음

표 1-87 이탈리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73	20.0	20.0	20.0	21.0	21.0	22.0	22.0	22.0	2.0	0.0	4.0/5.0/ 10.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18) 일본

- 일본은 1989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0년에 기존 3%에서 5%로 VAT 표준세율을 인상하였고, 이후 2015년 3%p를 인상하여 현재 8%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표준세율 인상은 일본의 고령화 문제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단행됨⁸⁷⁾
- 일본은 별도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지 않음⁸⁸⁾

87) BBC(<http://www.bbc.com/news/26830486>, 접속일자: 2017.9.22.)

88)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표 1-88 일본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89	5.0	5.0	5.0	5.0	5.0	5.0	8.0	8.0	0.0	3.0	-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19) 대한민국

- 우리나라는 1977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10%의 VAT 표준세율을 유지함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호주만 VAT 제도 도입 이후 표준세율에 변화가 없었음
 - 호주는 2000년에 VAT 제도를 도입하였음
- 경감세율은 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⁸⁹⁾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재화의 수출, 외국항행용역, 외화획득용역 등이 있음

표 1-89 대한민국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7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	0.0	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89)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20) 라트비아

- 라트비아는 1995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존 18%의 표준세율에서 2009년에는 3.0%p, 2011년에는 1%p 등 2차례의 표준세율 인상을 단행한 이후, 2013년 1%p 인하하여 현재 21%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09년과 2011년 VAT 표준세율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라트비아의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시행됨⁹⁰⁾
 - 2008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 조건으로 VAT 인상을 요청한 바 있음⁹¹⁾
- 경감세율은 0%, 12%의 세율을 적용함⁹²⁾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여객운송 등이 있음
 - 12%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의약품, 의료기기, 유아식품, 도서, 신문, 간행물, 호텔숙박, 지역난방 등이 있음

표 1-90 라트비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95	21.0	21.0	22.0	22.0	21.0	21.0	21.0	21.0	0.0	0.0	0.0/ 12.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90) Latvia - 2010 Budget - Letter of Intent describes fiscal policy per request for IMF assistance (10 Sep. 2009), News IBFD

91) IMF(<https://www.imf.org/external/pubs/ft/scr/2009/cr0903.pdf>, 접속일자: 2017.9.22.)

92)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21)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는 1970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VAT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2015년 기존 15%에서 2%p 인상하여 현재 17%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15년 표준세율 인상은 EU의 관련 지침상 디지털, 통신, 인터넷 용역 제공에 대한 VAT 과세가 용역 제공자인 거주지국에서 소비지국으로 전환됨에 따른 세수손실과 관련된 조치임⁹³⁾
 - 룩셈부르크의 VAT 표준세율은 현재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음

- 경감세율로는 3%, 8%, 12%의 세율을 적용함⁹⁴⁾
 - 3%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료품, 수도, 의약품, 의료기기, 장애인 기기, 여객운송, 호텔숙박, 도서, 신문, 간행물, 운동시설, 식당 등이 있음
 - 8%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일부 노동집약 용역, 예술작품, 가스, 전기, 지역난방, 꽃 등 식물 등이 있음
 - 12%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일부 와인, 일부 연료, 청소제품, 일부 금융용역 등이 있음

표 1-91 룩셈부르크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70	15.0	15.0	15.0	15.0	15.0	15.0	17.0	17.0	0.0	2.0	3.0/8.0/ 14.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14.)

93) VAT Live(<https://www.vatlive.com/vat-news/luxembourg-vat-rise-17-2015/>, 접속일자: 2017.9.22.)

94)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22) 멕시코

- 멕시코는 1980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0년대에 1차례 표준세율 인상과 인하를 거쳐 2000년대까지 15%를 유지하다, 2010년 1%p 인상하여 현재 16%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석유가격의 하락과 석유의 생산성 감소를 경험한 멕시코 정부는 석유 의존적인 재정구조의 제고를 위해 VAT를 포함하여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 전반적인 증세 정책을 시행함⁹⁵⁾
- 경감세율은 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⁹⁶⁾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가축, 의약품, 우유, 식수, 식료품, 농업 및 임업 관련 설비, 도서, 신문, 간행물, 수도, 호텔숙박 등이 있음

표 1-92 멕시코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80	15.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0	0.0	0.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23)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1969년에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하여 19%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 2%p 인상하여 현재 21%의

95) OECD(2012), p. 184

96)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표준세율을 적용함

- 네덜란드의 표준세율 인상은 다른 많은 EU 회원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정부 재정악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시행됨⁹⁷⁾

□ 경감세율로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함⁹⁸⁾

- 6%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료품, 급식, 장애인 관련 용품과 용역, 의약품, 호텔숙박, 농산물, 도서, 신문, 간행물, 운송여객, 수도, 문화·체육 공연 입장권, 식당, 체육시설, 예술 작품 및 골동품, 노동집약 용역 등이 있음

표 1-93 네덜란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69	19.0	19.0	19.0	19.0	21.0	21.0	21.0	21.0	2.0	0.0	6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24)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1986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줄곧 12.5%의 표준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2.5%p 인상하여 현재 15%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뉴질랜드의 표준세율 인상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 재정악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시행됨⁹⁹⁾

97) VAT Live(<https://www.vatlive.com/vat-news/netherlands-raises-vat-from-19-to-21-october-2012/>, 접속일자: 2017.9.25.)

98)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99) OECD(2012), p. 194

□ 경감세율은 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¹⁰⁰⁾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과세대상 사업행위, 금·은 등 금속,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이 있음

표 1-94 뉴질랜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86	12.5	12.5	15.0	15.0	15.0	15.0	15.0	15.0	2.5	0.0	0.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25)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1970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하여 2005년부터는 현행 25%의 표준세율을 유지함

-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은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표준세율 인상 추세가 두드러짐
- 2009년 이후 많은 EU 국가들이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나 노르웨이는 25%의 세율을 유지함
 -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25%를 초과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헝가리뿐이며, 2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3개국에 불과함

□ 경감세율은 0%, 10%, 15%를 적용함¹⁰¹⁾

100)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101)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도서, 신문, 간행물, 전기와 대체에너지를 통한 전력,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중고차, 선박 및 항공기, 시추선, 장례서비스 등이 있음
- 1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숙박시설, 여객운송, 공중방송, 스포츠·예술 공연 입장권 등이 있음
- 15%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료품, 음료(알코올 음료 제외) 등이 있음

표 1-95 노르웨이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7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0.0	0.0/10.0/ 15.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26) 폴란드

- 폴란드는 1993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0년까지 22%의 표준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에 1%p 세율을 인상하여 현재 23%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10년 VAT 표준세율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폴란드의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시행됨¹⁰²⁾
- 경감세율로는 5%, 8%의 세율을 적용함¹⁰³⁾
 - 5%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일부 식음료품, 일부 도서 및 간행물 등이 있음

102) OECD(2012), p. 200

103)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 8%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수도, 의약품, 장애인 용품, 의료서비스, 여객운송, 신문, 방송수신, 문화·스포츠 관람, 일부 건축용역, 주택, 호텔숙박, 식당, 폐기물 처리, 노동집약적 용역, 아동 신발, 가축, 농업설비 및 용역 등이 있음

표 I-96 폴란드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93	22.0	22.0	23.0	23.0	23.0	23.0	23.0	23.0	1.0	0.0	5.0/8.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27) 포르투갈

- 포르투갈은 1986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2011년 기존 표준세율 20%에서 3%p 세율을 인상하여 현재 23%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EU 회원국들이 VAT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포르투갈의 3%p 인상은 이 기간 헝가리(7%p), 스페인과 영국(이상 5%p), 그리스(4%p) 다음으로 높은 인상폭임
 - 2011년 VAT 표준세율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의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시행됨¹⁰⁴⁾
- 경감세율로는 6%, 13%의 세율을 적용함¹⁰⁵⁾
 - 6%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일부 식료품, 수도,

104) OECD(2012), pp. 206~208

105)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의약품, 장애인 용품, 의료서비스, 도서, 신문, 간행물, 여객운송, 호텔숙박, 공공주택, 농업용 재화와 서비스 등이 있음

- 13%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와인, 농업용 디젤 연료, 농업용 기계, 문화·스포츠 관람 등이 있음

표 1-97 포르투갈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86	20.0	20.0	23.0	23.0	23.0	23.0	23.0	23.0	3.0	0.0	6.0/13.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28)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는 1993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5%의 표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10년까지 19%의 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1%p 세율 인상을 통해 현재 20%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EU 회원국들이 VAT 표준세율을 인상함
- 2011년 VAT 표준세율 인상은 다른 많은 EU 회원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정부 재정악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시행됨¹⁰⁶⁾

□ 경감세율로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¹⁰⁷⁾

- 1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일부 식료품, 의료 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도서, 음악, 장애인 용품 등이 있음

106) OECD(2012), pp. 213~214

107)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표 1-98 슬로바키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93	19.0	19.0	20.0	20.0	20.0	20.0	20.0	20.0	1.0	0.0	1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29)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는 1999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3년까지 20%의 표준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 2%p 세율 인상을 통해 현재 22%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EU 회원국들이 VAT 표준세율을 인상함
 - 2014년 표준세율 인상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악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시행됨¹⁰⁸⁾
- 경감세율로는 9.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¹⁰⁹⁾
 - 9.5%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료품, 수도, 의약품, 장애인 용품, 여객운송, 도서, 신문, 간행물, 예술품 등이 있음

표 1-99 슬로베니아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99	20.0	20.0	20.0	20.0	20.0	22.0	22.0	22.0	2.0	0.0	9.5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108) VAT Live(<https://www.vatlive.com/vat-news/slovenia-vat-rate-increase/>, 접속일자: 2017.9.25.)

109)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30) 스페인

- 스페인은 1986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0년대 1차례 표준세율 인상을 거쳐 2010년까지 16%의 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과 2013년 각각 2%p와 3%p, 총 5%p의 인상을 통해 현재 21%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EU 회원국들이 VAT 표준세율을 인상한 가운데, 스페인은 같은 기간 영국과 함께 헝가리(7%p)에 이어 2번째로 높은 VAT 표준세율 인상을 보임
 - VAT 세율 인상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악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시행됨¹¹⁰⁾

- 경감세율로는 4%와 10%의 세율을 적용함¹¹¹⁾
 - 4%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료품, 공공주택,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서, 신문, 간행물, 주택용 건물 등이 있음
 - 1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수도, 장애인 시설, 여객운송, 주택 수선, 농산물, 식당, 문화·스포츠 관람, 호텔숙박, 청소 및 유지보수 용역 등이 있음

표 1-100 스페인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86	16.0	16.0	18.0	18.0	21.0	21.0	21.0	21.0	5.0	0.0	0.0/6.0/ 12.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110) OECD(2012), p. 228; Spain - Measures to guarantee balanced budget and promote competitiveness published - Details (23 July 2012), News IBFD

111)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31) 스웨덴

- 스웨덴은 1969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현행 25%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은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표준세율 인상 추세가 두드러짐
 - 2009년 이후 많은 EU 국가들이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스웨덴은 25%의 세율을 유지함
 - 1995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표준세율이 25%인 국가는 덴마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4개국밖에 없음
 -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25%를 초과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헝가리뿐이며, 2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에 불과함

- 경감세율은 0%, 6%, 12%의 세율을 적용함¹¹²⁾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상업용 항공기와 선박 및 관련 용역, 항공기 연료, 의약품 등이 있음
 - 6%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운송여객, 도서, 신문, 간행물, 문화공연, 동물원, 박물관 등이 있음
 - 12%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당, 호텔숙박, 예술품, 수입 골동품 등이 있음

112)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표 1-101 스웨덴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69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0	0.0	0.0/6.0/ 12.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32) 스위스

- 스위스는 1995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줄곧 6%~7%대의 표준세율을 유지하다, 2011년 0.4%p 인상을 통해 현행 8%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스위스는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VAT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임
 - 스위스는 2009년 국민투표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비용 충당을 위한 일시적인 VAT 세율 인상에 합의하였으며, 8%의 세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됨¹¹³⁾
- 경감세율로는 0%, 2.5%, 3.8%의 세율을 적용함¹¹⁴⁾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관광 관련 용역, 국제항공 관련 재화와 용역, 투자목적금 등이 있음
 - 2.5%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수도, 식료품, 소, 가금류, 어류, 곡식, 식물, 살충제, 비료, 스포츠·문화 관람, 의약품, 도서, 신문, 간행물 등이 있음
 - 3.8%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호텔숙박 등이 있음

113) Switzerland - VAT rates to increase (29 Sep. 2009), News IBFD; VAT Live(<https://www.vatlive.com/vat-news/switzerland-increases-vat-rate-to-8-from-2011-until-2018/>, 접속일자: 2017.9.25.)

114) OECD(2016), p. 88 및 IBFD 참조

표 1-102 스위스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95	7.6	7.6	8.0	8.0	8.0	8.0	8.0	8.0	0.4	0.0	0.0/2.5/ 3.8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33) 터키

- 터키는 1985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하여 2005년부터는 현행 세율인 18%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경감세율은 0%, 1%, 8%의 세율을 적용함¹¹⁵⁾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선박·항공기·기차 및 관련 용역과 유지보수, 석탄 등 자원 탐사, 일부 기계설비, 건설 등이 있음
 - 1%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일부 농산물, 중고차, 신문, 간행물, 혈액, 장례용역,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등이 있음
 - 8%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료품, 도서, 영화 관람, 사교육, 의약품,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숙박, 식당, 고아원 등 보육 기관 제공 서비스 등이 있음

표 1-103 터키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85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0.0	0.0	1.0/8.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115) OECD(2016), p. 88 및 IBFD 참조

34) 영국

- 영국은 1973년 VAT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하여 1995년부터 17.5%의 표준세율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 세율을 한시적으로 2.5%p 인하하여 15% 적용 후, 2010년에는 17.5%로 복원 그리고 2011년에 2.5%p 인상하여 현재 20%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2009년 세율 인하는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소비부양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2010년 원래의 세율인 17.5%로 복원됨¹¹⁶⁾
 -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EU 회원국들이 VAT 표준세율을 인상한 가운데, 2011년 VAT 세율 인상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악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시행됨¹¹⁷⁾

- 경감세율로는 0%와 5%의 세율을 적용함¹¹⁸⁾
 - 0%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식료품, 자선단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 아동복, 여객운송, 도서, 신문, 수도, 의약품, 장애인용품, 신규 주택 등이 있음
 - 5%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가정용 또는 자선단체용 전력, 일부 난방기구, 아동용 차량 보조의자, 일부 의약품 등이 있음

표 1-104 영국 VAT 표준세율 변화(2009년~2016년)

(단위: %, %p)

VAT 도입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9~'14 증감	'14~'16 증감	2016년 경감세율
1973	15.0	17.5	20.0	20.0	20.0	20.0	20.0	20.0	5.0	0.0	0.0/5.0

자료: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http://dx.doi.org/10.1787/888933420089>, 접속일자: 2017.9.25.)

116) HM Treasury, Budget 2009, April 2009. p. 72.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hm-treasury.gov.uk/d/bud09_complereport_2520.pdf, 접속일자: 2017.9.25.)

117) OECD(2012), p. 246

118) OECD(2016), p. 88 및 IBFD 참조

다. 소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의 변화는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¹¹⁹⁾
 - 1975년~2000년: 많은 국가들이 VAT 제도를 도입한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다수의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OECD의 평균 표준세율은 1975년 15.6%에서 2000년 18%로 2.4%p 인상됨
 - 2000년~2009년: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준세율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기간 OECD의 평균 표준세율은 2000년 18%에서 2009년 17.7%로 0.3%p 인하됨
 - 2009년~2014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로 대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VAT 표준세율을 인상하여, 이 기간 OECD의 평균 표준세율은 2009년 17.7%에서 2014년 19.1%로 1.4%p 인상됨
 - VAT를 통한 세수확보는 그 효과가 즉각적이고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덜 해롭다고 여겨져 재정위기 대응에 대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사용됨
 - 이 기간 OECD 22개국에서 최소 1회 이상 표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EU 회원국에서의 표준세율 인상이 주를 이룸
 - 2014년~2016년: 이 기간에는 표준세율이 안정화되어 직전 시기에 나타난 표준세율 인상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기간 OECD의 평균 표준세율은 2014년 19.1%에서 2016년 19.2%로 0.1%p 인상됨
- 2016년 기준 OECD의 VAT 평균 표준세율은 19.2%인 반면, 우리나라의 VAT 표준세율은 1977년 VAT 제도 도입 이후 줄곧 10%를 유지해 OECD 평균과 큰 격차를 보임

119) OECD(2016), pp. 68~69

-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8%), 스위스(8%), 캐나다(5%)등 3개국이 있음
 - 단, 캐나다의 경우 각 주(province)에서 별도의 판매세(sales tax)를 징수하여 유효세율은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¹²⁰⁾
- OECD 회원국 중 22개 EU 회원국(평균 21.7%)과 영국(20%) 및 노르웨이(25%)를 제외한 10개국의 VAT 표준세율은 12.6%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EU권 국가와 비EU권 국가의 VAT 표준세율 격차는 9%p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04

상속·증여세

가. 상속·증여세 부과 현황

-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개국이며, 상속·증여세가 아닌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2개국,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11개국인 것으로 나타남¹²¹⁾
 - 상속·증여세 대신에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임
 - 상속·증여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국가 중 과거 상속·증여세를 도입한 적이 없는 국가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이며, 나머지 9개국은 과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다 폐지한 국가로 체코, 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임
 - 오스트리아는 2008년부터 상속·증여에 과세하지 않았으나 자산 이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의무는 부여함¹²²⁾

120) OECD(2016), p. 69, p. 84

121) 김재진·김민경·김영란·유현영(2015) p. 36 및 IBF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 다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22개국 중 상속세만 부과하고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2개국임

표 1-105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세 과세 현황

구분	국가명
상속·증여세 부과	벨기에, 칠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2개국)
자본이득세 부과	호주, 캐나다 (2개국)
비과세(폐지연도)	라트비아(미시행), 에스토니아(미시행), 체코(2014), 오스트리아(2008), 스웨덴(2005), 포르투갈(2004), 슬로바키아(2004), 이스라엘(1981), 멕시코(2005), 뉴질랜드(1992), 노르웨이(2014) (11개국)

자료: 김재진·김민경·김영란·유현영,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비교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p. 36

- 여기서는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22개국의 현행 세율을 소개함
 - 2017년 9월말 현재 IBFD에 공개된 각 국가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소개함

나. 국가별 상속·증여세율

1) 벨기에¹²³⁾

- 벨기에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측면에서 동일하며, 누진세율로 과세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달리 적용함

122) 김재진·김민경·김영란·유현영(2015) p.36 및 IBFD (Austria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접속일자: 2017.9.25.)

123) IBFD (Belgium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 4개의 그룹은 배우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 3촌, 그 밖의 자임
- 관계가 멀수록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이 모두 높아지는데, 그룹 간 최저세율의 차이는 최대 37%p, 최고세율의 차이는 최대 50%p로 나타남
 - 배우자와 직계가족인 경우 최저세율 3%이고 최고세율 30%가 적용되나, 형제자매는 최저세율 20%, 최고세율 65%, 고모, 이모, 조카 등 3촌의 경우 최저세율 35%, 최고세율 70%, 그 밖의 자는 최저세율 40%, 최고세율 80%가 적용됨
-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각 지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달리 규정하여 브뤼셀(Brussels-Capital), 왈론(Walloon과) 플레미쉬(Flemish)의 세 지역의 상속·증여세율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수도인 브뤼셀(Brussels-Capital)의 세율을 소개함
 - 플레미쉬(Flemish) 지역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며, 나머지 두 지역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함

표 1-106 벨기에 브뤼셀(Brussels-Capital) 지역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상속인(수증인)별 세율			
	배우자 및 직계가족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그 밖의 자
0 ~ 12,500	3	20	35	40
12,500 ~ 25,000		25		
25,000 ~ 50,000		30		
50,000 ~ 75,000	8	40	50	55
75,000 ~ 100,000				65
100,000 ~ 175,000	9	55	60	80
175,000 ~ 250,000	18	60	70	
250,000 ~ 500,000	24	65		
500,000 ~	30			

자료: IBFD (Belgium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2) 칠레¹²⁴⁾

- 칠레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측면에서 동일하며, 누진 세율로 과세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상속인과 수증인을 배우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와 3촌, 그 밖의 자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세율¹²⁵⁾을 달리 적용함
 - 배우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와 3촌, 그 밖의 자로 갈수록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이 모두 높아지는데, 그룹 간 최저세율의 차이는 최대 0.4%p, 최고세율의 차이는 최대 10%p로 나타남
 - 배우자와 직계가족인 경우 최저세율 1%이고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나, 형제자매와 삼촌은 최저세율 1.2%, 최고세율 30%, 그 밖의 자는 최저세율 1.4%, 최고세율 35%가 적용됨

표 1-107 칠레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CLP, %)

과세표준 구간	상속인(수증인)별 세율		
	배우자 및 직계가족	형제자매, 3촌	그 밖의 자
0 ~ 80	1	1.2	1.4
80 ~ 160	2.5	3	3.5
160 ~ 320	5	6	7
320 ~ 480	7.5	9	10.5
480 ~ 640	10	12	14
640 ~ 800	15	18	21
800 ~ 1,200	20	24	28
1,200 ~	25	30	35

자료: IBFD (Chil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124) IBFD (Chil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125) 칠레의 경우 그룹별 과세표준 구간은 동일하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만 다름

3) 덴마크¹²⁶⁾

- 덴마크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그룹별 적용 세율 등의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하며, 단일세율로 과세됨

-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상속은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친족 간 상속에는 15%의 단일세율을, 기타의 관계에는 36.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여기서 친족이란 직계가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망 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거한 자, 이혼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 사망 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양한 어린이를 포함함

-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와 동일하게 배우자 증여는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친족 간 증여에는 15%의 단일세율을, 의붓부모나 조부모에는 36.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기타의 관계에는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함
 - 친족 간 증여 시 62,900코로네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세율로 과세함
 - 여기서 친족이란 직계가족, 사망한 직계비속의 배우자, 증여 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거한 자, 증여 전 5년 중 2년 동안 증여자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증여자가 부양한 어린이를 포함함

126) IBFD (Denmark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4) 핀란드¹²⁷⁾

- 핀란드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하며, 누진세율로 과세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특정 친족과 그 밖의 자의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친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함
 - 여기서 친족이란 배우자,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비를 공유한 약혼자를 포함함
 - 그 밖의 자는 친족에 포함되지 않은 친족과 제3자를 포함함
- 상속세의 경우 면세점인 20,000유로를 초과한 금액부터 과세되는데 그룹별 최저세율은 7%나 19%, 최고세율은 19%나 33%로 나타남
 - 그룹 간 과세표준 구간은 동일하나 구간별 세율이 다름

표 I-108 핀란드의 상속세율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상속인별 세율	
	특정 친족	그 밖의 자
0 ~ 20,000	0	0
20,000 ~ 40,000	7	19
40,000 ~ 60,000	10	25
60,000 ~ 200,000	13	29
200,000 ~ 1,000,000	16	31
1,000,000 ~	19	33

자료: IBFD (Fin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127) IBFD (Fin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 증여세의 경우 면세점인 5,000유로를 초과한 금액부터 과세되는데 그룹별 최저 세율은 8%나 19%, 최고세율은 17%나 33%로 나타남
- 그룹 간 과세표준 구간은 동일하나 구간별 세율이 다름

표 1-109 핀란드의 증여세율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수증자별 세율	
	특정 친족	그 밖의 자
0 ~ 5,000	0	0
5,000 ~ 25,000	8	19
25,000 ~ 55,000	10	25
55,000 ~ 200,000	12	29
200,000 ~ 1,000,000	15	31
1,000,000 ~	17	33

자료: IBFD (Fin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5) 프랑스¹²⁸⁾

- 프랑스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측면에서 동일하며, 상속·증여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모두 존재함
- 프랑스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크게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별로 다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용함
 - 5개 그룹은 배우자(상속세는 비과세), 직계가족,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과 그 밖의 자이며, 배우자,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간 상속·증여는 누진세율로 그 외 4촌까지의 혈연관계나 기타 관계에서의 상속·증여는 단일세율로 과세됨

128) IBFD (Fran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 일자: 2017.9.25.)

□ 배우자 간 상속은 과세하지 않고 배우자 간 증여는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배우자 간 최저 증여세율은 5%, 최고 증여세율은 45%임

표 1-110 프랑스의 배우자 간 증여세율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세율
0 ~ 8,072	5
8,072 ~ 15,932	10
15,932 ~ 31,865	15
31,865 ~ 552,324	20
552,324 ~ 902,838	30
902,838 ~ 1,805,677	40
1,805,677 ~	45

자료: IBFD (Fran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가 직계가족인 경우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배우자 간 증여세율과 세율은 동일하나 일부 과세표준 구간에 차이가 있음

○ 최저 상속·증여세율 5%, 최고 상속·증여세율 45%임

표 1-111 프랑스의 직계가족 간 상속·증여세율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세율
0 ~ 8,072	5
8,072 ~ 12,109	10
12,109 ~ 15,932	15
15,932 ~ 552,324	20
552,324 ~ 902,838	30
902,838 ~ 1,805,677	40
1,805,677 ~	45

자료: IBFD (Fran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가 형제자매인 경우 2단계 누진 세율이 적용됨
 - 최저 상속·증여세율 35%, 최고 상속·증여세율 45%임
 - 단, 50세를 초과하였거나 동거한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됨

표 1-112 프랑스의 형제자매 간 상속·증여세율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세율
0 ~ 24,430	35
24,430 ~	45

자료: IBFD (Fran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 4촌까지의 친족 간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5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관계에서의 상속·증여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됨

6) 독일¹²⁹⁾

- 독일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측면에서 동일하며, 7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함
 - 3개의 그룹은 1그룹이 배우자와 직계가족(직계존속은 증여세의 경우 2그룹에 포함됨), 2그룹이 형제자매, 조카,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가족(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 포함), 3그룹이 그 밖의 친족과 제3자임

129) IBFD (Germa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 관계가 멀수록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이 모두 높아지는데, 그룹 간 최저세율의 차이는 최대 23%p, 최고세율의 차이는 최대 20%p로 나타남
- 배우자와 직계가족인 경우 최저세율 7%이고 최고세율 30%가 적용되나, 형제자매 등은 최저세율 15%, 최고세율 43%, 기타 관계의 경우 최저세율 30%, 최고세율 50%가 적용됨

표 1-113 독일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상속인(수증인)별 세율		
	1. 배우자 및 직계가족	2. 형제자매 등	3. 그 밖의 자
0 ~ 75,000	7	15	30
75,000 ~ 300,000	11	20	30
300,000 ~ 600,000	15	25	30
600,000 ~ 6,000,000	19	30	30
6,000,000 ~ 13,000,000	23	35	50
13,000,000 ~ 26,000,000	27	40	50
26,000,000 ~	30	43	50

주: 1. 1그룹: 배우자와 직계가족(직계존속은 증여세의 경우 2그룹에 포함됨)

2. 2그룹: 형제자매, 조카,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가족(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 포함)

3. 3그룹: 그 밖의 친족과 제3자

자료: IBFD (Germa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7) 그리스¹³⁰⁾

- 그리스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측면에서 동일하며,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상이한 비과세 면세점을 두고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그룹별로

130) IBFD (Gree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 일자: 2017.9.25.)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함

- 3개의 그룹은 1그룹이 배우자(2년 이상 동거한 자 포함), 자녀, 손주, 부모 2그룹이 증손주,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3촌까지 혈연(삼촌, 이모, 고모), 배우자의 가족, 배우자의 자녀, 의붓형제자매, 양부모, 3그룹이 그 밖의 친족과 제3자임
- 관계가 멀수록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이 모두 높아지는데, 그룹 간 최저세율의 차이는 최대 19%p, 최고세율의 차이는 최대 30%p로 나타남
 - 배우자를 포함한 1그룹은 최저세율 1%이고 최고세율 10%가 적용되나,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2그룹은 최저세율 5%, 최고세율 20%, 3그룹은 최저세율 20%, 최고세율 40%가 적용됨

□ 다만, 현금 증여 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각 그룹별 최고세율인 10%(1그룹), 20%(2그룹)와 40%(3그룹)의 세율이 적용됨

표 1-114 그리스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상속인(수증인)별 세율			
	1. 배우자 등	2. 형제자매 등	3. 기타	
0 ~ 6,000	0	0	0	
6,000 ~ 30,000			5	20
30,000 ~ 66,000		10		30
66,000 ~ 70,000				
70,000 ~ 150,000	20			
150,000 ~ 195,000		10		
195,000 ~ 200,000	5			
200,000 ~ 267,000			10	
267,000 ~ 300,000	5			
300,000 ~ 600,000		10		
600,000 ~				

주: 1. 1그룹: 배우자(2년 이상 동거한 자 포함), 자녀, 손주, 부모

2. 2그룹: 증손주,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3촌까지 혈연(삼촌, 이모, 고모), 배우자의 가족, 배우자의 자녀, 의붓형제자매, 양부모

3. 3그룹: 그 밖의 친족과 제3자임

자료: IBFD (Gree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검색일자: 2017. 9. 25.)
OECD Statistics

8) 헝가리¹³¹⁾

- 헝가리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단일세율로 과세됨
- 헝가리는 직계가족과 배우자 사이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그 외의 상속·증여에는 1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다만, 주거용 재산이나 금전적 가치를 갖는 권리를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9%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9) 아이슬란드¹³²⁾

- 아이슬란드는 상속에 대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다만, 1.5백만크로나까지는 비과세되며, 1.5백만크로나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됨
 - 아이슬란드는 배우자나 동거인 간 상속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아이슬란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¹³³⁾

10) 아일랜드¹³⁴⁾

- 아일랜드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33%의 단일세율로 과세됨

131) IBFD (Hungary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5.)

132) PWC (<http://taxsummaries.pwc.com/ID/Iceland-Individual-Other-taxes>, 접속일자: 2017.9.25.)
IBFD Country Analysis에 아일랜드가 포함되지 않아 PwC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133) OECD, *OECD Economic Surveys ICELAND*, p. 118, 2001. 4

134) IBFD (Ire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6.)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상이한 비과세 면세점을 두고 면세점¹³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부과함
- 1그룹은 부모와 자녀, 2그룹은 1그룹을 제외한 직계가족, 형제자매, 조카, 3그룹은 그 밖의 자이며, 관계가 멀수록 비과세 면세점이 낮음
 - 아일랜드는 배우자 사이의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11) 이탈리아¹³⁶⁾

- 이탈리아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단일세율로 과세됨
-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나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세율과 면세점을 다르게 규정하며, 관계가 멀수록 면세점은 낮아지고 세율은 높아짐
 - 1그룹은 배우자와 직계가족이며, 과세표준 1백만유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4%의 세율로 과세함
 - 2그룹은 형제자매이며, 과세표준 100,000유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6%의 세율로 과세함
 - 3그룹은 4촌까지의 친족이나 3촌까지의 배우자 가족이며, 면세점 없이 전체 과세표준에 대해 6%의 세율로 과세함
 - 4그룹은 그 외의 자이며, 면세점 없이 전체 과세표준에 대해 8%의 세율로 과세함

135) 1그룹의 면세점은 310,000유로, 2그룹의 면세점은 32,500유로, 3그룹의 면세점은 16,250유로임

136) IBFD (Italy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 일자: 2017.9.25.)

12) 일본¹³⁷⁾

- 일본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10%~5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이 다름
- 일본의 상속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달리 적용되지 않으며, 8단계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됨

표 1-115 일본의 상속세율

(단위: JPY, %)

과세표준 구간	세율
0 ~ 10,000,000	10
10,000,000 ~ 30,000,000	15
30,000,000 ~ 50,000,000	20
50,000,000 ~ 100,000,000	30
100,000,000 ~ 200,000,000	40
200,000,000 ~ 300,000,000	45
300,000,000 ~ 600,000,000	50
600,000,000 ~	55

자료: IBFD (Japa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6.)

- 일본은 증여세 과세 목적상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함
 - 20세까지의 직계비속과 그 외의 자로 구분하며, 모든 그룹에서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최저 10%,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에 차이가 있음

137) IBFD (Japa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6.)

표 1-116 일본의 증여세율

(단위: JPY, %)

과세표준 구간	수증인별 세율	
	20세 이하 직계비속	그 외의 자
0 ~ 2,000,000	10	10
2,000,000 ~ 3,000,000	15	15
3,000,000 ~ 4,000,000		20
4,000,000 ~ 6,000,000	20	30
6,000,000 ~ 10,000,000	30	40
10,000,000 ~ 15,000,000	40	45
15,000,000 ~ 30,000,000	45	50
30,000,000 ~ 45,000,000	50	55
45,000,000 ~	55	

자료: IBFD (Japa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6.)

13) 대한민국¹³⁸⁾

- 대한민국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함
- 대한민국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달리 적용되지 않으며, 10%~50%의 세율이 적용됨

표 1-117 대한민국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KRW, %)

과세표준 구간	세율
0 ~ 100,000,000	10
100,000,000 ~ 500,000,000	20
500,000,000 ~ 1,000,000,000	30
1,000,000,000 ~ 3,000,000,000	40
3,000,000,000 ~	50

자료: IBFD (Korea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138) IBFD (Korea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14) 룩셈부르크¹³⁹⁾

- 룩셈부르크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측면에서 상이하며, 상속·증여세율은 단일세율임
 - 룩셈부르크는 상속에 대해 상속세와 사망세를 부과하는데, 사망세는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만 부과됨

- 룩셈부르크의 상속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6그룹으로 구분하여 다른 단일세율을 적용함
 - 1그룹은 직계상속인(유언에 의하지 않더라도 상속되는 자)과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배우자, 2그룹은 피상속인과 사이에 자녀가 없는 배우자, 3그룹은 형제, 4그룹은 3촌, 조카, 입양부모와 자녀 관계, 5그룹은 종조부 (great uncle), 형제의 손주나 조카의 자녀(great nephew) 관계, 입양부모와 입양자녀의 자녀 사이의 관계, 6그룹은 그 밖의 자임
 - 1그룹에 적용되는 세율은 0%이므로 비과세되며, 그 외에 그룹별 5%, 6%, 9%, 10%와 15%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139) IBFD (Luxembourg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표 1-118 룩셈부르크의 상속세율

(단위: %)

관계	상속세 및 사망세	
	상속세	사망세
직계상속인과 배우자	0	0
자녀가 없는 배우자	5	5
형제	6	6
3촌, 조카, 입양부모와 자녀	9	9
종조부(great uncle), 형제의 손주나 조카의 자녀(great nephew) 관계, 입양부모와 입양자녀의 자녀 사이의 관계	10	10
그 밖의 자	15	15

자료: IBFD (Luxembourg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검색일자: 2017. 10. 10.)

- 상속세에 한하여 추가 부과되는 부가세(surcharge)가 누진세 형태로 과세되는데 과세 대상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최저 10%~최고 220%의 1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됨
- 부가세는 상속세에 부가세율을 곱해서 계산함
- 과세대상 상속 재산가액이 10,000유로 미만인 경우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음

표 1-119 룩셈부르크의 상속세율에 대한 부가세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10,000 ~ 20,000	10	250,000 ~ 380,000	120
20,000 ~ 30,000	20	380,000 ~ 500,000	130
30,000 ~ 40,000	30	500,000 ~ 620,000	140
40,000 ~ 50,000	40	620,000 ~ 750,000	150
50,000 ~ 75,000	50	750,000 ~ 870,000	160
75,000 ~ 100,000	60	870,000 ~ 1,000,000	170
100,000 ~ 150,000	70	1,000,000 ~ 1,250,000	180
150,000 ~ 200,000	80	1,250,000 ~ 1,500,000	190
200,000 ~ 250,000	90	1,500,000 ~ 1,750,000	200
		1,750,000 ~	220

자료: IBFD (Luxembourg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10.10.)

- 룩셈부르크의 증여세는 10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 최저 1.8%~최고 14.4%의 서로 다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관계가 멀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며, 법정 혼인계약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그 외의 경우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됨
 - 증여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같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음

표 1-120 룩셈부르크의 증여세율에 대한 부가세

(단위: %)

관계	세율
직계상속인	1.8
일정 요건을 만족한 직계상속인, 혼인에 의한 배우자	2.4
혼인에 의하지 않은 배우자	4.8
혼인 관계에 의해 인정되는 형제	3
그 외 형제	6
지방자치단체, 호스피스와 미등록 자선단체	4.8
비영리 단체	7.2
3촌, 조카, 입양부모와 입양자녀 관계,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의 배우자 사이 관계	8.4
혼인에 의해 관계맺은 자로 3촌, 조카, 입양부모와 입양자녀 관계,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의 배우자 사이 관계	4.2
종조부(great uncle), 형제의 손주나 조카의 자녀(great nephew) 관계, 입양부모와 입양자녀의 자녀 사이의 관계	9.6
혼인에 의해 관계맺은 종조부(great uncle), 형제의 손주나 조카의 자녀(great nephew) 관계, 입양부모와 입양자녀의 자녀 사이의 관계	4.8
위에서 언급한 자보다 더 낮은 친족 관계	14.4
그 밖의 자	14.4

자료: IBFD (Luxembourg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10.10.)

15) 네덜란드¹⁴⁰⁾

- 네덜란드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함
- 네덜란드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2그룹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함
 - 그룹별 과세표준 구간은 동일하며 세율만 달리 적용됨
 - 1그룹은 배우자와 직계가족이며, 10%와 30%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2그룹은 그 밖의 자이며, 30%와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표 1-121 네덜란드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상속인 및 수증인별 세율	
	배우자, 직계가족	그 밖의 자
0 ~ 122,269	10	30
122,269 ~	20	40

자료: IBFD (Netherlands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16) 폴란드¹⁴¹⁾

- 폴란드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동일함
- 폴란드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140) IBFD (Netherlands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141) IBFD (Po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관계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함

- 1그룹은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와 배우자의 부모이며, 2그룹은 조카, 3촌 관계의 친족(예를 들어, 삼촌, 이모, 고모 등), 형제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와 다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고, 3그룹은 1그룹과 2그룹에 속한 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임
- 관계가 멀수록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이 모두 높아지고 면세점은 낮아지는데, 그룹 간 최저세율의 차이는 최대 9%p, 최고세율의 차이는 최대 13%p임
- 1그룹의 경우 최저세율 3%이고 최고세율 7%가 적용되나, 2그룹에는 최저세율 7%, 최고세율 12%, 3그룹의 경우 최저세율 12%, 최고세율 20%가 적용됨

표 1-122 폴란드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PLN(즈워티), %)

과세표준 구간	상속인(수증인)별 세율		
	1그룹	2그룹	3그룹
0 ~ 10,278	3	7	12
10,278 ~ 20,556	5	9	16
20,556 ~	7	12	20

- 주: 1. 1그룹: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와 배우자의 부모
- 2. 2그룹: 조카, 3촌 관계의 친족(예를 들어, 삼촌, 이모, 고모 등), 형제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와 다른 직계비속의 배우자
- 3. 3그룹: 그 밖의 자

자료: IBFD (Po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17) 슬로베니아¹⁴²⁾

- 슬로베니아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7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함
- 슬로베니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사이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142) IBFD (Slovenia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그 외의 상속·증여에 대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4그룹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함

- 1그룹은 부모, 형제와 형제의 직계비속이며, 2그룹은 조부모, 3그룹은 1그룹과 2그룹에 속하지 않은 그 밖의 자임
- 관계가 멀수록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이 모두 높아지는데, 그룹 간 최저세율의 차이는 최대 7%p, 최고세율의 차이는 최대 25%p임
- 1그룹의 경우 최저세율 5%이고 최고세율 14%가 적용되나, 2그룹에는 최저세율 8%, 최고세율 17%, 3그룹의 경우 최저세율 12%, 최고세율 39%가 적용됨

표 1-123 슬로베니아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상속인(수증인)별 세율		
	1그룹	2그룹	3그룹
0 ~ 10,000	5	8	12
10,000 ~ 50,000	6	9	16
50,000 ~ 100,000	7	10	20
100,000 ~ 200,000	8	11	25
200,000 ~ 300,000	10	13	30
300,000 ~ 400,000	12	15	35
400,000 ~	14	17	39

- 주: 1. 1그룹: 부모, 형제와 형제의 직계비속,
 2. 2그룹: 조부모
 3. 3그룹: 그 밖의 자

자료: IBFD (Slovenia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18) 스페인¹⁴³⁾

□ 스페인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며, 16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함

143) IBFD (Spai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 일자: 2017.9.29.)

- 스페인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일정 요건을 만족한 직계비속과 배우자 사이의 상속·증여에는 취득한 재산가액의 95%를 감면하여 적은 세금을 부과함

표 1-124 스페인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0 ~ 7,993.46	7.65	63,905.62 ~ 71,893.07	14.45
7,993.46 ~ 15,980.91	8.50	71,893.07 ~ 79,880.52	15.30
15,980.91 ~ 23,968.36	9.35	79,880.52 ~ 119,757.67	16.15
23,968.36 ~ 31,955.81	10.20	119,757.67 ~ 159,634.83	18.70
31,955.81 ~ 39,943.26	11.05	159,634.83 ~ 239,389.13	21.25
39,943.26 ~ 47,930.72	11.90	239,389.13 ~ 398,777.54	25.50
47,930.72 ~ 55,918.17	12.75	398,777.54 ~ 797,555.08	29.75
55,918.17 ~ 63,905.62	13.60	797,555.08 ~	34.00

자료: IBFD (Spai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 스페인은 상속·증여세에 부가세(surcharge)도 부과하는데 부가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와 받은 순 재산의 규모에 따라 부가세율을 달리 적용하며 부가세율은 3단계 누진세 형태로 과세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를 3그룹으로 구분하는데, 1그룹은 직계비속, 2그룹은 형제, 3촌, 조카, 혼인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존속, 3그룹은 그 밖의 자임
 - 상속이나 수증받은 순 재산(net wealth)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부가세는 상속·증여세 부담액에 부가세율을 곱해서 계산함

표 1-125 스페인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가세(surcharge)

(단위: EUR, %)

과세표준 구간	상속인(수증인)별 세율		
	1그룹	2그룹	3그룹
0 ~ 402,678.11	0	58.82	100
402,678.11 ~ 2,007,380.43	5	66.76	110
2,007,380.43 ~ 4,020,770.98	10	74.71	120
4,020,770.98 ~	20	90.59	140

주: 1. 1그룹: 직계비속

2. 2그룹: 형제, 3촌, 조카, 혼인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존속

3. 3그룹: 그 밖의 자

자료: IBFD (Spai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19) 스위스¹⁴⁴⁾

- 스위스는 주(canton) 단위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주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차이는 있으나 모든 주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함
 - 26개 주 중에서 Schwyz(SZ) 주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지 않으며, Lucerne(LU) 주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만 부과함
-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모든 주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주별 과세표준 구간, 세율과 그룹 구분은 다름
 - 다만 모든 주에서 배우자 상속과 증여를 비과세함
 - 세율은 0%~40% 사이이며, 상속세와 증여세에 부가세(surcharge)가 부과되는데 세율이 100%~300% 사이임

144) IBFD (Switzer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 여기서는 스위스의 대표 도시인 취리히가 속한 취리히 주(Zurich, ZH)의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소개함
 - 취리히 주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과 증여도 비과세함

- 취리히 주에서는 6단계 누진세율에 따라 기본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한 후,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6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일정 배수를 곱해서 최종 상속세와 증여세를 결정함
 - 6개 그룹은 1그룹 부모, 2그룹 조부모와 의붓자녀, 3그룹 형제, 4그룹 의붓부모, 5그룹 3촌과 형제의 자녀이며, 6그룹은 그 밖의 자임
 - 세율은 최저 2% 최대 7%이며, 과세표준이 1,500,000프랑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그룹별 배수는 1그룹은 1배, 2그룹은 2배, 3그룹은 3배, 4그룹은 4배, 5그룹은 5배, 6그룹은 6배임

표 1-126 스위스 취리히 주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CHF, %)

과세표준 구간	세율
0 ~ 30,000	2
30,000 ~ 90,000	3
90,000 ~ 180,000	4
180,000 ~ 360,000	5
360,000 ~ 840,000	6
840,000 ~ 1,500,000	7
1,500,000 ~	6%의 단일세율

자료: IBFD (Switzer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9.29.)

20) 터키¹⁴⁵⁾

- 터키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상속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더 높음
- 터키의 상속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 않음
 - 최저세율은 1%, 최고세율은 10%임

표 1-127 터키의 상속세율

(단위: TRY, %)

과세표준 구간	세율
0 ~ 210,000	1
210,000 ~ 920,000	3
920,000 ~ 2,740,000	5
2,740,000 ~ 6,560,000	7
6,560,000 ~	10

자료: IBFD (Turkey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10.10.)

- 터키의 증여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2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세율을 달리 적용함
 - 부모, 배우자와 자녀는 최저 5%, 최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밖의 자는 최저 10%,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됨

145) IBFD (Turkey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10.10.)

표 1-128 터키의 증여세율

(단위: TRY, %)

과세표준 구간	수증인별 세율	
	부모, 자녀, 배우자	그 밖의 자
0 ~ 210,000	5	10
210,000 ~ 920,000	7.5	15
920,000 ~ 2,740,000	10	20
2,740,000 ~ 6,560,000	12.5	25
6,560,000 ~	15	30

자료: IBFD (Turkey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10.10.)

21) 영국¹⁴⁶⁾

- 영국은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함
- 영국의 상속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 않으며¹⁴⁷⁾,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은 40%의 단일세율로 과세됨
 - 면세점은 2020/21년까지 325,000파운드이므로 325,000파운드를 초과한 상속에 대해서만 40% 세율로 과세됨
 - 2017/18년부터는 100,000파운드를 추가 면세하여 총 425,000파운드까지 상속세가 비과세됨¹⁴⁸⁾
 - 한편,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총상속재산의 10% 이상을 특정 단체에 기부하면 36%의 세율로 과세됨

146) IBFD (United Kingdom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10.10.)

147) 배우자 사이의 상속은 비과세됨

148) 다만 총상속재산이 2,000,00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2파운드당 1파운드로 추가 면세 금액이 감소하며, 추가 면세 금액은 2018/19년 125,000파운드, 2019/20년 150,000파운드, 2020/21년 175,000파운드까지 인상될 예정임

- 영국도 증여 후 증여인이 7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세 대신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됨
 - 면세점은 상속세와 동일함

22) 미국¹⁴⁹⁾

- 미국은 상속세, 증여세와 세대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GSTT)를 부과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12단계 누진세율로, 세대생략세는 단일세율로 과세됨
- 미국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및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데, 최저세율은 18%, 최고세율은 40%임
- 한편, 세대생략세의 세율은 최고 상속·증여세율과 동일한 40%임

표 1-129 미국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USD, %)

과세표준 구간	세율
0 ~ 10,000	18
10,000 ~ 20,000	20
20,000 ~ 40,000	22
40,000 ~ 60,000	24
60,000 ~ 80,000	26
80,000 ~ 100,000	28
100,000 ~ 150,000	30
150,000 ~ 250,000	32
250,000 ~ 500,000	34
500,000 ~ 750,000	37
750,000 ~ 1,000,000	39
1,000,000 ~	40

자료: IBFD (United States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10.10.)

149) IBFD (United States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10.10.)

표 I-130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세율

(단위: %)

국가	증여세율과 일치 여부 ¹⁾	세율 체계 ²⁾	세율 결정요인 ⁹⁾	최저세율	최고세율
벨기에	○	4~7단계 누진세율	지역,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3, 20, 35, 40	30, 65, 70, 80
칠레	○	8단계 누진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1, 1.2, 1.4	25, 30, 35
덴마크	×	단일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15 또는 36.25	
핀란드	×	5단계 누진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7, 19	19, 33
프랑스	○	2또는 7단계 누진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5, 35	45
		일부 단일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55 또는 60	
독일	○	7단계 누진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7, 15, 30	30, 43, 50
그리스	○	3단계 누진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1, 5, 20	10, 20, 40
헝가리	○	단일세율	상속재산 종류,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18 (일부 재산 9%, 특정 관계 비과세)	
아이슬란드	N/A	단일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10 (특정 관계 비과세)	
아일랜드	○	단일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33 (관계별 면세점 상이)	
이탈리아	○	단일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4, 6, 8	
일본	×	8단계 누진세율	상속재산 규모 ³⁾	10	55
대한민국	○	5단계 누진세율	상속재산 규모	10	50
룩셈부르크	×	단일세율 및 19단계 누진세율 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⁴⁾	5, 6, 9, 10, 15 ⁵⁾	

(단위: %)

국가	증여세율과 일치 여부 ¹⁾	세율 체계 ²⁾	세율 결정요인 ⁹⁾	최저세율	최고세율
네덜란드	○	2단계 누진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10, 30	20, 40
폴란드	○	3단계 누진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3, 7, 12	7, 12, 20
슬로베니아	○	7단계 누진세율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5, 8, 12	14, 17, 39
스페인	○	16단계 누진세율	상속재산 규모	7.65	34
스위스	○	누진세율 및 단일세율 ⁶⁾	지역,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2	7
터키	×	5단계 누진세율	상속재산 규모	1	10
영국	N/A	단일세율	기부여부 ⁷⁾	40 (또는 36) ⁷⁾	
미국	○	12단계 누진세율 ⁸⁾	상속재산 규모	18	40

주: 1)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일치하면 ○, 아니면 ×로 표시함.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아 일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N/A로 표시함

2) 누진세율의 단계에서 면세점인 0%를 고려하지 않았음.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면세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세점 구간을 고려할 경우 6단계 누진세율이나 면세점 구간을 고려하지 않아 5단계 누진세율로 표시함

3) 일본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결정요인이 상이함

4) 룩셈부르크의 상속세나 사망세는 단일세율이나, 상속세에 추가 부과되는 부가세(surcharge)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진세 형태로 과세되는데 최저 10%~220%의 세율로 과세됨

5) 룩셈부르크의 경우 표에 기재한 세율은 상속세이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의 사망세가 별도로 부과됨. 기재한 세율은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세율임

6) 스위스는 과세표준이 1,500,000프랑을 초과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지 않고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7) 영국은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한 기부 후 상속하는 경우 36%의 세율이 적용됨

8) 미국은 상속세 외에 세대생략세를 부과하는데 세대생략세는 40%의 단일세율로 과세됨

9) 표에서 증여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로 '상속재산 규모'는 '증여재산 규모'로 대체됨

자료: IBF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10.13.)

다. 소결

- 상속세를 부과하는 22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5개국은 과세표준 구간이나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2개국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이나 세율을 달리 규정하는 5개국은 덴마크,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와 터키임
 - 상속세는 부과하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2개국은 아이슬란드와 영국임

- 세율의 결정요인은 주로 상속재산 규모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였으며, 영국은 상속재산의 기부 여부로 스위스나 벨기에에는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함
 -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하여 6개국을 제외한 16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율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16개국은 모두 가까운 친족 관계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함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지 않은 6개국은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터키, 영국과 미국임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누진세 형태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이었으며, 6개국은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3개국은 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을 혼합해서 사용함
 - 누진세율을 적용한 13개국은 벨기에, 칠레,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일본, 우리나라,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와 미국임
 - 단일세율을 적용한 6개국은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와 영국임
 - 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국가는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임

- 22개국의 배우자, 자녀, 부모와 친족 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구분하여 각 국의 최고세율을 비교함
 - 일반적으로 일본이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친족이 아닌 자의 경우 일본(55%)보다 벨기에(80%), 프랑스(60%)가 더 높았으며, 가까운 친족 관계에서는 일본의 최고세율(5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50%)였음
 -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을 비과세하거나 제3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특별히 높은 국가가 존재하여,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비교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구분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음
 - 국가마다 3촌 이내 친족, 사촌, 손주, 조부모 등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하나 국가마다 분류가 달라 모두 비교하기 어려워 가장 대표적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함
 - 배우자 간 상속을 전액 비과세하는 국가는 8개국이며,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 비과세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임
 - 8개국은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위스와 영국임
 - 룩셈부르크는 자녀가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한 금액만 비과세하며 자녀가 없는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과세함

표 1-131 OECD 회원국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제3자에 대한 최고 상속세율 비교

(단위: %)

국가	배우자	자녀	부모	제3자
벨기에	30	30	30	80
칠레	25	25	25	35
덴마크	비과세	15	15	36.25
핀란드	19	19	19	33
프랑스	비과세	45	45	60
독일	30	30	30	50
그리스	10	10	10	40
헝가리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8
아이슬란드	비과세	10	10	10
아일랜드	비과세	33	33	33
이탈리아	4	4	4	8
일본	55	55	55	55
대한민국	50	50	50	50
룩셈부르크 ²⁾	0 또는 5 ¹⁾	0	0	15
네덜란드	20	20	20	40
폴란드	7	7	7	20
슬로베니아	비과세	비과세	14	39
스페인 ³⁾	세율의 95%감면	세율의 95%감면	34	34
스위스	비과세	비과세 ⁴⁾	7	42
터키	10	10	10	10
영국	비과세	40	40	40
미국	40	40	40	40

주: 1) 자녀가 있는 배우자 간 상속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자녀가 없는 배우자 간 상속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됨

2) 룩셈부르크 세율은 상속세 세율이며,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로 사망세가 부과됨. 또한, 상속세에 추가 부과되는 부가세도 고려하지 않은 세율임

3) 스페인은 상속세에 대해 누진세 형태로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서는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세율을 표시함

4) 스위스의 경우 지역마다 세율과 과세 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취리히 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상속을 비과세하나 다른 주에서는 과세함

자료: IBF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10.13.)

- 앞의 상속세율의 비교표에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다른 5개 국가의 증여세율만 별도의 표로 비교함
- 덴마크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이 동일한 단일세율이나, 기타의 관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차이가 있음
 - 핀란드의 증여세는 상속세와 과세표준 구간과 최저, 중간 세율이 다른데 특히 증여세 면세점이 상속세 면세점보다 낮음
 - 일본의 증여세는 상속세와 과세표준 구간이 다르며, 증여세만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일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룩셈부르크의 경우 상속세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증여세에는 부가세가 추가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 목적상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를 상속세보다 세분화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함
 - 터키는 상속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더 높으며, 상속세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 않으나 증여세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함

표 1-132 OECD 5개국의 증여세율

(단위: %)

국가	세율 체계	세율 결정요인	상속세와 차이점	최저세율	최고세율
덴마크	단일세율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	기타의 관계에 대해 소득세 부과	15, 36.25	
핀란드	5단계 누진세율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 증여재산 규모	과세표준 구간과 최저, 중간 세율이 다름	8, 17	19, 33
일본	8단계 누진세율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 증여재산 규모	과세표준 구간 다르고, 증여세만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일부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이 다름	10	55
룩셈부르크	단일세율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	증여세는 부가세가 없으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도 상이함	1.8, 2.4, 3, 4.2, 4.8, 6, 7.2, 8.4, 9.6, 14.4	
터키	5단계 누진세율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 증여재산 규모	상속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더 높으며,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름	5, 10	15, 30

자료: IBF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2017.10.13.)

05

개별소비세

가. 주세

- OECD 회원국의 주세는 맥주, 와인, 알코올 음료에 대해 나라별로 복잡한 세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하위 카테고리 및 특정 세율(예: 저알코올 제품 및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등도 제시하고 있음
- 주세 과세방식은 제품가격과 상관없이 제품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ad quantum) 과세체계와 제품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증가세(ad valorem) 과세체계로 구분됨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만 증가세 방식을 적용하여 주세를 부과하며, 29개국은 종량세 과세체계에 따름¹⁵⁰⁾
 - 모든 주류에 증가세를 적용하는 3개국은 우리나라, 멕시코와 칠레임
 - 호주와 터키는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특정 주류에 대해서만 증가세 과세방식으로 과세함
 - 현재 종량세로 과세하는 29개국 중에서 일본과 스웨덴은 과거 증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함
- OECD 보고서상 세율은 무수알코올(absolute alcohol) 헥토리터(100리터)당 세금을 의미함
 - 알코올 함량은 일반적으로 100리터당 순수 에탄올 부피(alcohol by volume: abv)로 표시되며, 알코올당 세금을 산정하지만, 폴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150)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pp. 131~132

나라는 주세를 산출함에 있어 플라토(plato)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데, 비교를 위해 이를 알코올 도수로 변환함

- 플라토는 맥즙의 농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플라토를 abv로 환산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세법상 1% abv는 2.5플라토와 같으므로, 플라토에 2.5배수를 적용하여 abv와 비교 가능하도록 환산함

1) 맥주의 주세

- 맥주의 주세율은 2.8% abv 미만의 저알코올 맥주와 일반 맥주별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세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의 경감세율이 존재하는 국가도 유럽의 경우 다수 존재함
- 맥주의 주세는 연간 생산량에 따라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주세를 경감해주고 있음¹⁵¹⁾
 -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은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에게 경감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21개국은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맥주에 경감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칠레,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있음
- 저알코올 맥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임
 - 중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칠레, 우리나라와 멕시코 중에서 멕시코는 저알코올 맥주에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알코올 함량을 세율에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칠레만 높은 도수의 알코올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151)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의 맥주에 대한 개별소비세(excise rates)를 우리나라의 주세로 번역함

-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은 저알코올 맥주에 경감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14개국은 저알코올 맥주에 경감세율을 적용함

표 1-133 OECD 회원국의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 현황

호주	100리터당 abv에 따른 일반세율		소규모 독립 맥주 양조업자에 적용되는 저세율			저알코올 맥주 (2.8% abv 미만)에 대한 100리터당 주세		VAT	알코올 강도에 따른 소비세 누진성 여부
	자국 통화	USD	연간 생산(hl)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	
호주	각주 참조 ¹⁾							10.0	예
오스트리아	5.00	5.55	<12,500	3.00	3.33	-	-	20.0	아니오
			<25,000	3.50	3.88				
			<37,500	4.00	4.44				
			≤50,000	4.50	4.99				
벨기에	5.01	5.56	≤12,500	4.36	4.84	-	-	21.0	아니오
			≤25,000	4.50	4.99				
			≤50,000	4.65	5.16				
			≤75,000	4.79	5.32				
			≤200,000	4.94	5.48				
캐나다	각주 참조 ²⁾							5.0/13.0/ 14.0/ 15.0	예
칠레	각주 참조 ³⁾							19.0	아니오
체코	80.00	3.25	≤10,000	40.00	1.63	-	-	21.0	아니오
			≤50,000	48.00	1.95				
			≤100,000	56.00	2.28				
			≤150,000	64.00	2.60				
			≤200,000	72.00	2.93				
덴마크	56.02	8.33	≤3,700	각주 참조 ⁴⁾		0.00	0.00	25.0	아니오
			≤20,000						
			≤200,000						
에스토니아	8.30	9.21	≤3,000	4.15	4.61	-	-	20.0	아니오

	100리터당 abv에 따른 일반세율		소규모 독립 맥주 양조업자에 적용되는 저세율			저알코올 맥주 (2.8% abv 미만)에 대한 100리터당 주세		VAT	알코올 강도에 따른 소비세 누진성 여부
	자국 통화	USD	연간 생산(hl)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	
핀란드 ⁵⁾	32.05	35.57	≤5,000	16.03	17.79	8.00	8.88	24.0	아니오
			≤30,000	22.44	24.90				
			≤55,000	25.64	28.46				
			≤100,000	28.85	32.01				
프랑스	7.41	8.22	≤200,000	7.41	8.22	3.70	4.11	20.0	아니오
독일	1.97	2.19	≤5,000	1.10	1.22	-	-	19.0	아니오
			≤10,000	1.32	1.47				
			≤20,000	1.54	1.71				
			≤40,000	1.65	1.83				
그리스	6.50	7.21	≤200,000	3.25	3.61	-	-	23.0	아니오
헝가리	1,620.00	5.80	≤8,000	810.00	2.90	-	-	27.0	아니오
아이슬란드	각주 참조 ⁶⁾						11.0	예	
아일랜드	22.55	25.03	각주 참조 ⁷⁾				23.0	아니오	
이스라엘	231.00	59.43	-			각주 참조 ⁸⁾		17.0	아니오
이탈리아	7.60	8.44	-			각주 참조 ⁹⁾		22.0	아니오
일본	각주 참조 ¹⁰⁾		-				8.0	아니오	
대한민국	각주 참조 ¹¹⁾		-			각주 참조 ¹¹⁾		10.0	아니오
라트비아	3.80	4.22	≤10,000	1.90	2.11			21.0	아니오
룩셈부르크	1.98	2.20	≤50,000	0.98	1.09	-	-	17.0	아니오
			≤200,000	1.12	1.24	-	-		
멕시코	26.5% ¹²⁾		-			-	-	16.0	예
네덜란드	각주 참조 ¹³⁾		-			-	-	21.0	예
뉴질랜드	27.20	18.97	-			각주 참조 ¹⁴⁾		15.0	아니오
노르웨이	각주 참조 ¹⁵⁾		-			-	-	25.0	예
폴란드	19.48	5.17	각주 참조 ¹⁶⁾			-	-	23.0	아니오
포르투갈	각주 참조 ¹⁷⁾						23.0	예	
슬로바키아	3.59	3.98	≤200,000	2.65	2.94	-	-	20.0	아니오

	100리터당 abv에 따른 일반세율		소규모 독립 맥주 양조업자에 적용되는 저세율			저알코올 맥주 (2.8% abv 미만)에 대한 100리터당 주세		VAT	알코올 강도에 따른 소비세 누진성 여부
	자국 통화	USD	연간 생산(hl)	자국 통화	USD	자국 통화	USD		
슬로베니아	12.10	13.43		-		-	-	22.0	아니오
스페인	각주 참조 ¹⁸⁾			-		각주 참조 ¹⁸⁾		21.0	예
스웨덴	194.00	23.02		-		-		25.0	아니오
스위스	각주 참조 ¹⁹⁾			-		각주 참조 ¹⁹⁾		8.0	예
터키	0.63	-		-		-		18.0	아니오
영국	18.37	28.09		각주 참조 ²⁰⁾		8.10	12.39	20.0	아니오
미국	각주 참조 ²¹⁾					-			아니오

- 주: 1) 호주: 48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개별 용기 - 알코올 함량≤3%: 알코올 리터당 47.85호주달러/알코올 함량>3%: 알코올 리터당 47.85호주달러; 48리터를 초과하는 개별 용기 - 알코올 함량≤3%: 알코올 리터당 8.21호주달러/3%<알코올 함량≤3.5%: 25.73호주달러, 3.5%<알코올 함량: 33.70호주달러. 알코올 함량이 1.15%를 초과하는 분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알코올 함량이 1.15%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러한 과세는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매년 2월과 8월 물가지수에 연동됨.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맥주 양조업체는 주세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만호주달러임
- 2) 캐나다: 주세는 생산된 제품의 100리터(hl)당 부과됨(알코올 함량이 아님). 지방정부는 통상적으로 연방세보다 더 큰 추가세를 부과함. 연방세는 1) 2.5%≤알코올 함량: 100리터당 31.22캐나다달러, 2) 1.2%≤알코올 함량<2.5%: 100리터당 15.61캐나다달러, 3) 알코올 함량<1.2%: 100리터당 2.591캐나다달러가 부과되나, 일정 생산량까지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됨
- 3) 칠레: 알코올 음료의 판매는 19%의 부가가치세와 부가세(surtax)가 부과됨. 맥주에 대한 주세는 20.6%이며 알코올 함량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판매가격(부가가치세 제외금액)에 주세가 부과됨
- 4) 덴마크: 독립적인 소규모 양조업자는 세 부담이 낮아지며, 2.8% 미만 알코올 함량의 맥주에 대해 주세가 부과됨
- * 연간생산량(X)이 3,700hl 이하인 경우: DKK 77.08/hl
 - * 연간생산량이 3,700hl 초과 20,000hl 이하인 경우: DKK 259.939/(X + 6.83)
 - * 연간생산량이 20,000hl 초과 200,000hl 이하인 경우: DKK 22.02-(X/9083)의 세액감면이 적용됨
- 5) 핀란드: 알코올 함량이 0.5% 미만에 대해 부과세
- 6) 아이슬란드: 리터당 알코올 함량 % abv에서 2.25센티리터를 차감 후 센티리터당 ISK112 과세. 즉, 2.25% abv 미만은 부과세됨
- 7) 아일랜드: 연간 맥주생산량이 30,000hl 이하인 소규모 양조업자에게 주세의 50%를 환급함. 저알코올 맥주에 대해서는 부과세(알코올 함량≤1.2% abv) 또는 11.27유로(1.2% abv<알코올 함량≤2.8% abv)로 과세됨
- 8) 이스라엘: 100리터당 ILS231로 과세되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변경됨. 2% 미만(재활용 병이 사용되면 3.8%)의 알코올에 대해서는 부과세됨
- 9) 이탈리아: 알코올 함량 0.5% 미만에 대해 부과세됨
- 10) 일본: 제품 100리터(hl)당 22,000엔으로 부과. 연간 맥주 생산량이 13,000hl인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는 면허 최초 5년간 생산량 2,000hl에 대해 hl당 18,700엔의 경감세율 적용(임시조치)
- 11) 대한민국: 주세는 출고가의 72%로 과세되며, 주세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됨
- 12) 멕시코: 가격에 따라 과세되는데, 14도루삭(Gay-Lussac:GL)까지 26.5%, 14도GL에서 20도GL 사이는 30%, 20도GL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3%가 적용됨

- 13) 네덜란드: 100리터당 알코올 함량 \leq 7디그리플라토: 8.83유로, 7디그리플라토 $<$ 알코올 함량 \leq 11디그리플라토: 28.49유로, 11디그리플라토 $<$ 알코올 함량 $<$ 15디그리플라토: 37.96유로, 15디그리플라토 이상 \leq 알코올함량: 47.48유로. 소규모 양조업자에게는 2천만리터까지 알코올 함량에 따라 8.83유로에서 43.92유로까지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14) 뉴질랜드: 2.5% abv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27.870뉴질랜드달러, 1.15%-2.5% abv에 대해 41.797뉴질랜드달러, 1.15% abv 미만은 비과세됨
- 15) 노르웨이: 생산제품 100리터당 a) 0.0%~0.7% abv: 비과세, b) 0.7%~2.7% abv: 327크로네, c) 2.7%~3.7% abv: 1,229크로네, d) 3.7%~4.7% abv 2,129크로네로 과세되며, 4.7% 이상의 맥주에 대해서는 알코올 함량당 476크로네로 과세됨
- 16) 폴란드: 소규모 양조업자에 대해 20,000hl의 판매 시 100리터당 생산량에 따라 30즐로티에서 9즐로티까지 공제허용하고 있으나, 공제금액은 기본세율 적용 시 과세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17) 포르투갈: 100리터당 a) 0.5%~1.2% abv는 7.98로, b) 1.2% abv부터 7디그리플라토까지 10.00유로, c) 1.2% abv 이상 7~11디그리플라토까지 15.95유로, d) 1.2% abv 이상 11~13디그리플라토까지 20.00유로, e) 1.2% abv 이상 13~15디그리플라토까지 23.99유로, f) 1.2% abv 이상 15디그리플라토를 초과 시 28.06유로 적용하며, 포르투갈은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연간 생산량 200,000hl)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50%만 적용
- 18) 스페인: 100리터당 a) \leq 1.2% abv: 비과세, b) 1.2%~2.8% abv: 2.75유로, c) 2.8% abv~11디그리플라토: 7.48유로, c) 11~15디그리플라토: 9.96유로, d) 15~19 디그리플라토: 13.56유로, e) 19디그리플라토 $<$: 디그리플라토당 0.91유로로 과세됨
- 19) 스위스: 100리터당 저알코올 맥주(10.0디그리플라토까지): 16.88프랑, 일반적 및 특수 맥주(10.1~14디그리플라토): 25.32프랑, 독주(14.1디그리플라토 초과): 33.76프랑으로 과세되며, 소규모 양조업자(55,000hl)에게 40%까지 저세율 부과(한도 15,000hl)
- 20) 영국: a) 1.2% abv 미만은 비과세, b) 1.3%~2.8% abv에 대해 £8.42의 저세율 부과, c) 7.5% abv를 초과하는 경우 £5.69가 일반세율에 추가 부과되며, 소규모 맥주 양조업자에게는 생산량에 따라 일부 경감이 이루어짐
- 21) 미국: 가중평균 연방 및 지방 주세율은 100리터당 22달러임
- 자료: 1.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31~135,
 2.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xcise-and-excise-equivalent-goods/In-detail/Brewery-refunds/>, 접속일자: 2017.9.7.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 2015년 제1호, pp. 44~46 참조

2) 와인의 주세

- 와인의 경우 스틸 와인, 스파클링 와인, 저알코올 와인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주세율을 보여주고 있음
- 주세 세율은 비과세에서 최대 스틸와인에 대해 리터당 7달러(노르웨이),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 리터당 13달러(터키)까지 다양함
- 스틸 와인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과 스위스가 있음

표 I-134 OECD 회원국의 와인에 대한 주세 과세 현황

	스틸 와인			스파클링 와인			저알코올(스틸) 와인 (<8.5% abv)		
	100리터당 주세		VAT	100리터당 주세		VAT	100리터당 주세		VAT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호주	각주 참조 ¹⁾		10.00	각주 참조 ¹⁾		10.00	각주 참조 ¹⁾		10.00
오스트리아	0.00	0.00	20.00	100.00	110.99	20.00	0.00	0.00	20.00
벨기에	74.91	83.14	21.00	256.32	284.48	21.00	23.91	26.54	21.00
캐나다	62.00	48.51	5.0/ 13.0/ 14.0/ 15.0	62.00	48.51	5.0/ 13.0/ 14.0/ 15.0	각주 참조 ²⁾		5.0/ 13.0/ 14.0/ 15.0
칠레	각주 참조 ³⁾		19.00	각주 참조 ³⁾		19.00	각주 참조 ³⁾		19.00
체코	0.00	0.00	21.00	2,340.00	95.15	21.00	0.00	0.00	21.00
덴마크 ⁴⁾	1,161.00	172.64	25.00	1,496.00	222.45	25.00	534.00	79.41	25.00
에스토니아 ⁵⁾	111.98	124.28	20.00	84.67	93.97	20.00	48.55	53.88	20.00
핀란드	339.00	376.25	24.00	339.00	376.25	24.00	각주 참조 ⁶⁾		24.00
프랑스	3.77	4.18	20.00	9.33	10.36	20.00	3.77	4.18	20.00
독일 ⁷⁾	0.00	0.00	19.00	136.00	150.94	19.00	0.00	0.00	19.00
그리스	20.00	22.20	23.00	20.00	22.20	23.00	20.00	22.20	23.00
헝가리	0.00	0.00	27.00	16,460.00	58.96	27.00	0.00	0.00	27.00
아이슬란드	각주 참조 ⁸⁾		11.00	각주 참조 ⁸⁾		25.50	각주 참조 ⁸⁾		11.00
아일랜드 ⁹⁾	424.84	471.52	23.00	849.68	943.04	23.00	141.57	157.13	23.00
이스라엘	0.00	0.00	17.00	-		18.00	0.00	0.00	17.00
이탈리아	0.00	0.00	22.00	0.00	0.00	22.00	0.00	0.00	22.00
일본	8,000.00	66.11	8.00	8,000.00	66.11	5.00	8,000.00	66.11	8.00
대한민국	각주 참조 ¹⁰⁾		10.00	각주 참조 ¹⁰⁾		10.00	각주 참조 ¹⁰⁾		10.00
라트비아	70.00	77.69	21.00	70.00	77.69	21.00	-		21.00
룩셈부르크	0.00	0.00	14.00 ¹¹⁾ or 17.00	0.00	0.00	15.00	0.00	0.00	14.00
멕시코 ¹²⁾	26.5%/ 30%	-	16.00	26.5%/ 30%	-	16.00	26.5%	-	16.00
네덜란드 ¹³⁾	88.36	98.07	21.00	254.41	282.36	21.00	44.18	49.03	21.00
뉴질랜드	각주 참조 ¹⁴⁾		15.00	각주 참조 ¹⁴⁾		15.00	각주 참조 ¹⁴⁾		15.00
노르웨이 ¹⁵⁾	5,712.00	708.33	25.00	5,712.00	708.33	25.00	각주 참조 ¹⁵⁾		25.00
폴란드	158.00	41.91	23.00	158.00	41.91	23.00	158.00	41.91	23.00
포르투갈	0.00	0.00	13.00	0.00	0.00	23.00	0.00	0.00	23.00

	스틸 와인			스파클링 와인			저알코올(스틸) 와인 (<8.5% abv)		
	100리터당 주세		VAT	100리터당 주세		VAT	100리터당 주세		VAT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자국통화	USD	%
슬로바키아 ¹⁶⁾	0.00	0.00	20.00	79.65	88.40	20.00	0.00	0.00	20.00
슬로베니아	0.00	0.00	22.00	0.00	0.00	22.00	0.00	0.00	22.00
스페인	0.00	0.00	21.00	0.00	0.00	21.00	0.00	0.00	21.00
스웨덴 ¹⁷⁾	2,517.00	298.61	25.00	2,517.00	298.61	25.00	0.00	0.00	25.00
스위스 ¹⁸⁾	0.00	0.00	8.00	0.00	0.00	8.00	0.00	0.00	8.00
터키	557.00	204.55	18.00	3,763.00	1,381.93	18.00	557.00	204.55	18.00
영국 ¹⁹⁾	273.31	417.91	20.00	350.07	535.28	20.00	84.21	128.76	20.00
미국 ²⁰⁾	47.00	47.00	-	116.00	116.00	-	각주 참조 ²⁰⁾		-

- 주: 1) 호주: 모든 와인에 대해 최종판매가(GST 부과 전)의 29% 세율로 와인균등세가 부과됨
 2) 캐나다: 7% abv≤: 리터당 0.62캐나다달러, 1.2%~7% abv: 리터당 0.295캐나다달러, <1.2% abv: 리터당 0.0205캐나다달러 과세. 지방정부는 통상적으로 연방세보다 더 큰 추가세를 부과함
 3) 칠레: 와인 등의 판매 및 수입에 대해 VAT 과세표준인 판매가격의 20.5%의 부가세(surtax)가 과세됨
 4) 덴마크: 15%~22% abv: 1,555크로네(100ml), 6%~15% abv: 1,161크로네(100ml), 1.2%~6% abv: 534크로네(100ml)로 과세되며, 스파클링와인의 세율은 스틸와인에 335크로네(100ml)가 가산됨
 5) 에스토니아: 저알코올인 최대 6% vol까지 48.55유로로 과세됨
 6) 핀란드: 저알코올 음료에 대해 a) 1.2%~2.8% abv: 22유로, b) 2.8~5.5% abv: 169유로, c) 5.5%~8.0% abv: 241유로로 과세됨
 7) 독일: 6% abv 미만의 저알코올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 51유로로 과세됨
 8) 아이슬란드: 15% abv까지 리터당 알코올 함량 % abv에서 2.25센티리터를 차감 후 센티리터당 102크로나 과세됨
 9) 아일랜드: 15% abv를 초과하는 스틸 와인에 대해 616.45유로 과세됨
 10) 대한민국: 주세는 생산자 가격의 30%로 과세되며, 추가 10%의 교육세가 부가됨
 11) 룩셈부르크: 123% abv 미만의 스틸 와인에 대해서는 경감된 부가가치세율(12%)이 적용됨
 12) 멕시코: 가격에 따라 과세되는데, 14도루삭(Gay-Lussac:GL)까지 26.5%, 14도GL에서 20도GL 사이는 30%, 20도GL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3%가 적용됨
 13) 네덜란드: 15% abv를 초과하는 와인에 대해 129.81유로(100ml), 최대 8.5% abv의 저알코올 스파클링 와인은 48.25유로(100ml)가 적용되며, 1.2% abv 미만의 와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6%로 과세됨
 14) 뉴질랜드: 비강화주(unfortified) 와인에 대해 리터당 2.7870뉴질랜드달러로 과세됨
 15) 노르웨이: 포의 세율은 12% abv 와인에 대한 것이며, 4.7%~22% abv에 대한 주세는 알코올 1%당 476 크로네(100ml)임
 16) 슬로바키아: 8.5% abv를 초과하지 않는 스파클링 음료에 54.16유로(100ml)가 적용됨
 17) 스웨덴: 저알코올 음료에 세율은 a) <2.25% abv: 비과세, b) 7%~8.5% abv: 1,797크로네, c) 4.5%~7% abv: 1,306크로네, d) 2.25%~4.5% abv: 884크로네이며,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없음
 18) 스위스: 15% abv 이상의 와인 및 18% abv 이상의 포도로 만든 생포도주(natural wines)는 알코올음료로 과세됨(와인: 무수알코올 100ml당 2,900프랑, 생포도주: 22% abv까지 무수알코올 100ml당 1,450프랑이며 초과 시 2,900프랑)
 19) 영국: 품목별로 분류된 저알코올 음료에 대해 a) 1.2%~4% abv: 84.21파운드, b) 4%~5.5% abv: 115.80파운드, c) 5.5%~8.5% abv 스파클링 와인: 264.61파운드, d) 8.5%~15% abv 스파클링와인 및 메이드와인: 350.07파운드로 과세됨
 20) 미국: 연방과 지방정부의 가중평균세율은 14% abv 스틸 와인은 47달러(100ml), 스파클링 와인은 116달러(100ml)임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36~138

3) 알코올 음료의 주세

- 발표되거나 증류되는 다양한 성분(포도, 사과, 맥아, 쌀 등)에서 생산될 수 있는 다양한 알코올 음료가 존재함
- 관세품목표(customs combined nomenclature code)에 따라 알코올 음료를 6가지로 나누고 있음¹⁵²⁾
 - 맥아로 만든 맥주(code 22.03), 포도주(code 22.04), 베르무트(vermouth)와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code 22.05), 기타 발효음료(예: 사이다, 페리 등)(code 22.06), 미변성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함) 및 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code 22.07), 미변성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함), 증류주 기타 주정음료(code 22.08)
 - 알코올 음료의 세율은 100리터당 최저 915.18달러(캐나다)에서 최대 10,462.79달러(아이슬란드)까지 다양하게 분포함

표 1-135 OECD 회원국의 알코올 음료에 대한 주세 과세 현황

	무수알코올(absolute alcohol) 100리터당 주세		
	자국통화	USD	VAT
호주 ¹⁾	8,105.00	6,089.41	10.00
오스트리아 ²⁾	1,200.00	1,331.85	20.00
벨기에	2,992.79	3,321.63	21.00
캐나다 ³⁾	1,169.60	915.18	5.0/13.0/14.0/15.0
칠레 ⁴⁾	각주참조 ⁴⁾	-	19.00
체코	28,500.00	1,158.87	21.00
덴마크 ⁵⁾	15,000.00	2,230.48	25.00
에스토니아	2,172.00	2,410.65	20.00
핀란드 ⁶⁾	4,555.00	5,055.49	24.00
프랑스 ⁷⁾	1,737.56	1,928.48	20.00

152)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123

	무수알코올(absolute alcohol) 100리터당 주세		
	자국통화	USD	VAT
독일	1,303.00	1,446.17	19.00
그리스 ⁸⁾	2,450.00	2,719.20	23.00
헝가리 ⁹⁾	333,385.00	1,194.10	27.00
아이슬란드	1,380,000.00	10,462.79	11.00
아일랜드	4,257.00	4,724.75	23.00
이스라엘 ¹⁰⁾	각주참조 ¹⁰⁾	-	17.00
이탈리아	1,035.52	1,149.30	22.00
일본 ¹¹⁾	각주참조 ¹¹⁾	-	8.00
대한민국 ¹²⁾	각주참조 ¹²⁾	-	10.00
라트비아	1,360.00	1,509.43	21.00
룩셈부르크	1,041.15	1,155.55	14.00
멕시코 ¹³⁾	53%	-	16.00
네덜란드 ¹⁴⁾	1,686.00	1,871.25	21.00
뉴질랜드 ¹⁵⁾	각주참조 ¹⁵⁾	-	15.00
노르웨이	73,100.00	9,064.98	25.00
폴란드	5,704.00	1,513.00	23.00
포르투갈	1,327.94	1,473.85	23.00
슬로바키아	1,081.00	1,198.67	20.00
슬로베니아	1,320.00	1,465.04	22.00
스페인	913.28	1,013.63	21.00
스웨덴	51,148.00	6,068.10	25.00
스위스	2,900.00	3,014.55	8.00
터키	15,071.00	5,534.70	18.00
영국 ¹⁶⁾	2,766.00	4,229.36	20.00
미국 ¹⁷⁾	995.00	995.00	-

- 주: 1) 호주: 증류주(spirits) 및 기타 알콜 음료에 대해서 알코올 1리터당 81.05호주달러의 주세가 부과됨
 2) 오스트리아: 연간 400ml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자의 경우 648유로(표준세율의 54%)를 부과함
 3) 캐나다: 증류주는 리터당 11.696캐나다달러가 부과되며, 7% abv≤: 리터당 0.295캐나다달러를 부과함
 4) 칠레: 브랜디, 버몬트, 피스코, 위스키 및 기타 증류주는 VAT 과세표준인 판매가격의 31.5%의 부가세(surtax)로 과세됨
 5) 덴마크: 증류주와 무알코올 음료가 혼합된 제품은 추가로 혼합물 1리터당 4.21크로네가 부과됨
 6) 핀란드: a) CN - code 2208 1.2%~2.8% abv: 800유로, b) 기타 제품은 4,555유로가 부과됨
 7) 프랑스: 순 알코올의 557.90유로(100ml)의 추가세가 과세됨
 8) 그리스: 우조(ouzo)와 에틸알코올은 순수 알코올당 1,225유로(100ml)가 과세됨
 9) 헝가리: 과일재배자가 양조한 에틸알코올의 경우 50%가 경감된 세율이 과세됨
 10) 이스라엘: 모든 알코올 음료의 주세는 1리터당 84.28ILS가 부과됨

- 11) 일본: 위스키와 브랜디(40% abv)는 40,000엔, 증류주(37% abv)은 37,000엔, 소주(Shochu) Group A and B(25% abv)는 25,000엔으로 과세됨
 - 12) 대한민국: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소주 등의 주세는 생산가격의 72%로 과세되며, 30%의 교육세가 부가됨
 - 13) 멕시코: 주세는 증가세로 부과되며, 14도루삭(Gay-Lussac:GL)까지 26.5%, 14도GL에서 20도GL사이는 30%, 20도GL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3%가 적용됨
 - 14) 네덜란드: 1.2% abv 미만의 저알코올 음료의 부가가치세는 6%로 과세됨
 - 15) 뉴질랜드: 9~14% abv: 2,7870뉴질랜드달러(100ml)로 과세되며, 14% abv 이상의 알코올 음료는 무수알코올 1리터당 50.759뉴질랜드달러로 과세됨
 - 16) 영국: 22% abv 이상의 모든 증류주와 증류주와 기타 다른 형태의 알코올의 혼합물도 증류주로 과세됨. 스틸사이다와 페리는 a) 1.2~7.5% abv: 38.87파운드, b) 7.5~8.5% abv: 58.75파운드, 스파클링 사이다와 페리는 c) 1.2~5.5% abv: 264.6파운드, d) 5.5~8.5% abv: 268.99파운드로 과세됨
 - 17) 미국: 연방과 지방정부의 가중평균세율은 995달러(100ml)임. 연방정부세율은 3.785리터당 13.5달러임
-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39~141

나. 담배

- 알코올 음료와 마찬가지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최초로 세수확보의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공중보건의 목적이 강화되고 있음
 - 수요의 비탄력성, 소수의 공급자, 대량 소비 등의 특징으로 인해 담배는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대하기 용이한 품목이었음
 - 최근 수십 년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증거가 축적되고 담배에 대한 세금부과가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제시되면서, 공공보건 목적에서 담배세를 운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1) 주요 품목별 담배 개별소비세 현황¹⁵³⁾

- 알코올 음료 및 유류 제품 등과 마찬가지로, 담배 품목도 여러 개의 세부 품목으로 구분됨
 - 일반 담배(cigarette), 시가(cigar), 각련(rolling tobacco) 등으로 나누어짐

153)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24~125

- 대부분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알코올 음료나 유류와는 달리 담배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종량세와 종가세 방식을 혼합한 과세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종량세는 주로 1,000개당 일정 금액을 과세하고, 종가세는 소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함

- 종량세 및 종가세 세부 과세기준은 국가별, 품목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음
 - 종량세 및 종가세를 혼합하는 경우 두 과세 방식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종가세의 경우 세부 과세표준 산정 기준(예: 제도가격, 수입가격, 소매가격)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과세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미국과 같이 연방-주정부 구조를 갖춘 국가들은 지방정부의 과세 수준이 각기 다를 수 있음

표 1-136 담배세¹

	담배			시가 ² (Cigar)			각련			VAT
	1,000당 종량세		종가세	1,000당 종량세		종가세	1,000당 종량세		종가세	
	자국 통화	USD	소매 가격의 %	자국 통화	USD	소매 가격의 %	자국 통화	USD	소매 가격의 %	%
호주 ¹⁾	530.96	398.92	0.00	주석 참조	-	0.00	663.72	498.66	0.00	10.00
오스트리아 ²⁾	45.00	49.94	40.00	0.00	0.00	13.00	0.00	0.00	56.00	20.00
벨기에	39.52	43.86	45.84	0.00	0.00	10.00	23.70	26.30	31.50	21.00
캐나다 ³⁾	105.15	82.28	주석 참조	22.89	17.91	주석 참조	131.44	102.85	주석 참조	5.0/ 13.0/ 14.0/ 15.0
칠레 ⁴⁾	46323.00	70.80	30.00	0.00	-	52.60	0.00	-	59.70	19.00
체코	1290.00	52.45	27.00	1420.00	57.74	-	1896.00	77.10	-	21.00
덴마크 ⁵⁾	1182.50	175.84	1.00	500.00	74.35	10.00	788.50	117.25	0.00	25.00
에스토니아 ⁶⁾	46.50	51.61	34.00	211.00	234.18	0.00	61.00	67.70	0.00	20.00
핀란드 ⁷⁾	37.50	41.62	52.00	0.00	0.00	31.00	26.00	28.86	52.00	24.00

	담배			시가 ² (Cigar)			각련			VAT
	1,000당 종량세		증가세	1,000당 종량세		증가세	1,000당 종량세		증가세	
	자국 통화	USD	소매 가격의 %	자국 통화	USD	소매 가격의 %	자국 통화	USD	소매 가격의 %	%
프랑스	48.75	54.11	49.70	19.00	21.09	23.00	67.50	74.92	32.00	20.00
독일	98.20	108.99	21.69	14.00	15.54	1.47	48.49	53.82	14.76	19.00
그리스	82.50	91.56	20.00	0.00	0.00	35.00	156.70	173.92	0.00	23.00
헝가리 ⁸⁾	15700.00	56.23	25.00	0.00	0.00	14.00	14000.00	50.14	0.00	27.00
아이슬란드 ⁹⁾	22990.00	174.30	0.00	주석 참조	-	0.00	16450.00	124.72	0.00	24.00
아일랜드 ¹⁰⁾	271.96	301.84	9.20	주석 참조	-	0.00	291.68	323.73	0.00	23.00
이스라엘 ¹¹⁾	395.00	101.62	주석 참조	0.00	0.00	주석 참조	454.03	116.81	0.00	17.00
이탈리아	17.34	19.25	58.70	0.00	0.00	23.00	0.00	0.00	58.50	22.00
일본 ¹²⁾	12244.00	101.19	0.00	12244.00	101.19	0.00	12244.00	101.19	0.00	8.00
대한민국 ¹³⁾	145450.00	109.25	64.64	주석 참조	-	0.00	103200.00	77.52	0.00	10.00
라트비아 ¹⁴⁾	54.20	60.16	25.00	42.69	47.38	-	58.00	64.37	-	21.00
룩셈부르크	18.39	20.41	46.65	0.00	0.00	10.00	10.00	11.10	34.30	17.00
멕시코 ¹⁵⁾	350.00	22.05	38.77	주석 참조	-	주석 참조	주석 참조	-	주석 참조	16.00
네덜란드	178.28	197.87	1.09	0.00	0.00	5.00	78.68	87.33	4.60	21.00
뉴질랜드 ¹⁶⁾	주석 참조	-	0.00	주석 참조	-	0.00	386.14	269.27	0.00	15.00
노르웨이	2500.00	310.02	0.00	2500.00	310.02	0.00	2500.00	310.02	0.00	25.00
폴란드 ¹⁷⁾	206.76	54.84	31.41	393.00	104.24	-	141.29	37.48	31.41	23.00
포르투갈 ¹⁸⁾	90.85	100.83	17.00	0.00	0.00	25.00	78.00	86.57	20.00	23.00
슬로바키아 ¹⁹⁾	59.50	66.04	23.00	71.11	78.92	-	71.11	78.92	0.00	20.00
슬로베니아 ²⁰⁾	68.82	76.38	21.18	0.00	0.00	6.00	40.00	44.40	35.00	22.00
스페인	24.10	26.75	51.00	0.00	0.00	15.80	22.00	24.42	41.50	21.00
스웨덴	1500.00	177.96	1.00	1320.00	156.60	0.00	1833.00	217.46	0.00	25.00
스위스 ²¹⁾	118.32	122.99	25.00	5.60	5.82	1.00	38.00	39.50	25.00	8.00
터키 ²²⁾	221.00	81.16	65.25	221.00	81.16	40.00	221.00	81.16	65.25	18.00
영국 ²³⁾	189.49	289.74	16.50	236.37	361.42	0.00	185.74	284.01	0.00	20.00
미국 ²⁴⁾	135.00	135.00								

주: 1. 관련 자료는 주로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함

2. 시가(cigar)와 관련하여, 덴마크 및 일본은 무게 기준이 아니라 1,000개피당 비율 기준으로 담배세를 부과함. 덴마크의 경우 담배 1개피 무게를 3그램이라 가정하고 일본은 1개피당 1그램이라 가정함

3. 국가별 주석 내용

- 1) 호주: 한 개피당 0.8그램 이하인 담배에 대해 1개피당 0.53096호주달러로 과세됨. 다른 담배상품은 킬로그램당 663.72호주달러 과세
- 2) 오스트리아: 소비자판매가격의 13%로 과세되며, 1,000개피당 최소 100유로가 과세됨. 각련의 경우 최소 담배세는 킬로그램당 80유로임
- 3) 캐나다: 시가(cigar)에 대한 담배세는 1,000개 시가당 22.88559캐나다달러와 시가당 0.08226캐나다달러 또는 판매가격의 82% 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과세됨. 또한, 각 지방정부는 담배제품에 대해 다양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4) 칠레: 가공된 담배 제품의 판매 또는 수입에 적용되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59.7%임. 담배(cigarette)는 팩의 판매가격에 30%와 팩에 포함된 담배당 월별 과세기준(Monthly Tax Unit)의 0.0010304240가 추가 과세되며, 시가는 52.6%로 과세됨.
- 5) 덴마크: 기타 흡연 담배에 대한 담배세는 DKK 738.5/1000g임
- 6) 에스토니아: 담배(cigarette)의 경우 최소 담배세는 1천개피당 90유로임
- 7) 핀란드: 켈런지(cigarette paper)는 소매가의 60%; 기타 흡연 담배는 28.75유로/kg 및 소매가의 48% 적용; 최소 담배세는 담배 1000개피당 188.50유로이며 미세 절단 롤링 담배는 114.50유로/kg가 적용됨
- 8) 헝가리: 최소 담배세는 1000개피당 HUF 28,000(cigarette), 1000개피당 HUF 4,000(cigar 및 cigarillo)가 적용됨
- 9) 아이슬란드: 시가(cigar)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으며 켈런 담배(rolling tobacco)와 동일하게 과세됨
- 10) 아일랜드: 일반 담배에 대한 담배세는 1,000개피당 271.96유로에 소매상에서 판매되는 담배 가격에 9.20%와 1,000개피당 307.61유로 중 큰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과세됨. 시가(cigar)에 대한 담배세는 킬로그램당 315.359유로이며, 파인컷 각련 담배는 킬로그램당 291.683유로, 여타 담배는 킬로그램당 218.783유로로 과세됨
- 11) 이스라엘: 담배와 시가에 대한 세율은 각각 판매가격의 270%와 90%임
- 12) 일본: 당해 세금은 국세 및 지방세 요소를 모두 포함함
- 13) 대한민국: 시가에 대한 담배세는 1,000그램당 294,800원임
- 14) 라트비아: 2016년 7월 1일부터 1000개피당 56.20유로 및 소매가의 25%에 해당하는 담배세가 부과됨. 최소 담배세는 1000개피당 93.70 유로임
- 15) 멕시코: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해 종가세는 160%이나 시가나 각련의 제조 전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면 30.4%의 감경세율로 과세됨. 판매나 수입되는 담배에 대해 0.35페소가 부과됨. 시가 및 여타의 담배의 경우에도 제조 전체가 수작업이 아니라면 0.75그램당 0.35페소가 부과됨
- 16) 뉴질랜드: 중량이 0.8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으면 담배 1,000개피당 545.39뉴질랜드달러, 이를 초과하면 777.18뉴질랜드 달러가 부과됨. 여타 담배의 경우 킬로그램당 681.72뉴질랜드달러가 부과됨
- 17) 폴란드: 2015년 1월 1일부터 시가에 대한 담배세는 킬로그램 단위로 적용됨
- 18) 포르투갈: 2016년 3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요율임. (1) Azores와 Madeira의 소규모 생산자가 만든 담배(cigarette)로서 Azores 제도에서 판매되는 경우 18.50유로 및 42%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2) Azores와 Madeira의 소규모 생산자가 만든 담배(cigarette)로서 Madeira 섬에서 판매되는 경우 78.37유로 및 20%의 담배세율이 적용됨
- 19) 슬로바키아: 각련에 대한 담배세에는 기타 흡연 담배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 시가에 대한 담배세는 EUR 71.11/kg임
- 20) 슬로베니아: 최소 담배세는 담배의 경우 1000개피당 106유로, 각련의 경우 1kg당 88유로, 시가의 경우 1kg당 40유로임
- 21) 스위스: 담배의 경우 1000개피의 소매 판매 가격이 CHF 375.00 이하이면 최소 담배세는 1,000개당 CHF 212.10로 산출됨. 각련의 경우 최소 담배세는 1,000그램당 CHF 80.00로 산출됨
- 22) 터키: 담배 1,000개피당 최저 담배세는 TL 221.00임
- 23) 영국: 시가에 대한 종량세는 킬로그램당 부과되는 것이며, “기타 피는 담배”와 “기타 씹는 담배”에 대해 킬로그램당 84.98파운드가 부과됨
- 24) 미국: 주세는 해당 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연방세와 주세를 가중평균하면 담배 1,000개피당 135달러임. 연방 담배세는 다음과 같음: 1,000개당 3파운드 이하의 소형 담배의 경우 1,000개당 50.33달러; 대형 담배의 경우 1000개당 105.69달러; 1,000개당 3파운드 이하의 소형 시가의 경우 1,000개당 50.33달러; 대형 시가의 경우 제조가격의 52.75%(단, 1000개당 402.60달러를 초과하지는 아니함); 스스로 말아 피는 각련의 경우 파운드당 24.78달러(kg당 54.63달러)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142

2) 담배가격 대비 세금 부담 현황

- OECD 국가의 일반 담배 가격 평균값은 6.14달러이며, 개별소비세 비중 평균은 74.86%임
 -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3.38달러이며, 담배 가격에서 개별소비세 비중은 약 73.74%, 개별소비세액은 2.49달러가 부과되고 있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담배 개별소비세 수준은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6위이며, 가격은 35개국 중 32위로 낮은 수준임
 - 담배에서 개별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로 86.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국이 84.10%로 2위, 그리스가 83.20%로 3위를 차지하며, 개별소비세 비중이 낮은 국가는 미국이 42.54%, 호주가 56.76% 수준임
 - 담배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로 12.81달러이며, 노르웨이 12.65달러, 뉴질랜드 11.85달러로 담배 가격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멕시코가 2.99달러, 라트비아 3.10달러, 체코 3.26달러로 담배 가격이 아주 낮은 수준을 보임

표 1-137 OECD 회원국의 꺾린 담배 가격 대비 세금 부담 현황

	세전 가격 (달러 기준)	총세금 ¹⁾		20개비 꺾린 담배의 평균 소비자가격			
		비중(%)	순위	자국통화	가격	가격	
						달러 기준	순위
호주	5.54	56.76	34	AUD	17.05	12.81	1
오스트리아	1.08	77.46	19	EUR	4.33	4.81	21
벨기에	1.38	77.10	21	EUR	5.52	6.00	16
캐나다	2.19	69.80	27	CAD	9.25	7.24	10
칠레	0.65	82.73	5	CLP	2,458.00	3.76	27
체코	0.76	76.56	23	CZK	80.14	3.26	33
덴마크	1.28	78.89	13	DKK	40.80	6.07	15
에스토니아	0.65	80.96	8	EUR	3.07	3.41	31

	세전 가격 (달러 기준)	총세금 ¹⁾		20개비 궤련 담배의 평균 소비자가격			
		비중(%)	순위	자국통화	가격	가격	
						달러 기준	순위
핀란드	1.06	83.15	4	EUR	5.68	6.30	12
프랑스	1.44	80.81	9	EUR	6.75	7.49	9
독일	1.51	74.44	25	EUR	5.34	5.93	17
그리스	0.69	83.20	3	EUR	3.70	4.11	24
헝가리	0.91	75.93	24	HUF	1,058.00	3.79	26
아이슬란드	3.91	56.89	33	ISK	1,195.00	9.06	6
아일랜드	1.39	86.51	1	EUR	9.28	10.30	5
이스라엘	1.71	78.87	14	ILS	31.50	8.10	8
이탈리아	1.17	76.73	22	EUR	4.52	5.02	19
일본	1.27	64.36	31	JPY	430.00	3.55	28
대한민국	0.89	73.74	26	KRW	4,500.00	3.38	32
라트비아	0.61	80.30	10	EUR	2.79	3.10	34
룩셈부르크	1.84	68.20	29	EUR	5.20	5.77	18
멕시코	0.98	67.33	30	MXN	47.42	2.99	35
네덜란드	1.42	78.51	16	EUR	5.94	6.59	11
뉴질랜드	2.69	77.34	20	NZD	17.00	11.85	3
노르웨이	3.90	69.20	28	NOK	102.00	12.65	2
폴란드	0.66	81.24	7	PLN	13.30	3.53	29
포르투갈	1.06	77.85	18	EUR	4.31	4.78	22
슬로바키아	0.72	79.30	12	EUR	3.12	3.46	30
슬로베니아	0.84	78.43	17	EUR	3.51	3.90	25
스페인	1.04	78.82	15	EUR	4.44	4.93	20
스웨덴	1.29	79.31	11	SEK	52.63	6.24	13
스위스	3.51	60.25	32	CHF	8.50	8.84	7
터키	0.73	82.62	6	TRY	11.50	4.22	23
영국	1.81	84.10	2	GBP	7.44	11.38	4
미국	3.58	42.54	35	USD	6.23	6.23	14
평균	—	74.86	—	—	—	6.14	—

주 : 1) 총세금은 궤련 담배 개별소비세의 종량세, 종가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값임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145

다. 유류(mineral oil)¹⁵⁴⁾

- 유류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정제방법에 따라 상품을 나누고 있으며, 관련 에너지 상품에도 과세하는 경우가 존재함
 - 기술적 정제방법에 따라 무연휘발유, 디젤유 등으로 나뉨
 - 일부 OECD 회원국은 천연가스, 전기, 석탄 등에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며, EU 에너지 세제지침(EU energy tax Directive 2003/96/EU)에서는 석탄, 천연가스, 전기에 대한 최소 세율 등의 EU 세제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유류 관련 개별소비세는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별소비세율을 활용하는 경향이 다른 분야들에 비해 더 크다는 특징이 있음
 - 최초로 무연휘발유는 가연가솔린(leaded gasoline)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금 부과체계를 조정함
 - LPG(liquefied petroleum gas)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디젤이나 휘발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음

- 운송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문의 유류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들에 기인함
 - 운송유 과세대상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임
 -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대표적으로 교통정체)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음
 - 주택난방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세율로 과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주택난방유가 운송용 디젤유와 물품의 성격은 대동소이함에도 상대적으로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154)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26~127

- EU 에너지 과세지침은 시장의 왜곡을 감소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통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부피, 중량 또는 에너지 항목에 따라 최소 수준의 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무연휘발유는 리터당 0.359유로, 가스유는 리터당 0.330유로, LPG는 킬로그램당 0.125유로 등임
 - 반면, 동 지침은 어떠한 세목으로 이러한 최소 과세수준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개별소비세, 탄소세, 에너지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부과될 수 있을 것임

1) 무연휘발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 무연휘발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터당 일정 요율의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세부 구성항목이나 과세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일부 국가들은 유황 함량이나 바이오연료 함량 등에 따라 리터당 과세요율을 달리 적용함(예: 호주,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 칠레의 경우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매주 유류세 과세가격이 변동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등은 연방세와 주세가 복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무연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등(VAT 포함) 과세액의 전체 가격 대비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57% 수준이며,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북중미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과세수준이 낮은 편임
 - 주로 서유럽 국가들(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의 과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138 무연휘발유(리터당) 유류세¹

	세전 가격 ²	세전 가격 ²	유류세 ³		VAT 율 ⁴	VAT 금액	총세금	총가격	총가격 대비 총세금 (%)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	USD	USD	USD	
호주	0.85	0.64	0.39	0.30	10	0.09	0.39	1.03	37.8
오스트리아 ¹⁾	0.45	0.50	0.48	0.54	20	0.21	0.74	1.24	59.8
벨기에	0.60	0.66	0.62	0.69	21	0.29	0.97	1.64	59.2
캐나다 ²⁾	0.76	0.59	0.34	0.26	9.05	0.08	0.34	0.93	36.7
칠레 ³⁾	374.30	0.57	317.00	0.48	19	0.17	0.65	1.23	53.4
체코	11.73	0.48	12.84	0.52	21	0.21	0.73	1.21	60.5
덴마크 ⁴⁾	3.85	0.67	4.14	0.62	25	0.30	0.91	1.49	61.4
에스토니아	0.45	0.50	0.42	0.47	20	0.19	0.66	1.16	57.1
핀란드 ⁵⁾	0.45	0.50	0.68	0.76	24	0.30	1.06	1.56	67.9
프랑스 ⁶⁾	0.44	0.49	0.62	0.69	20	0.24	0.93	1.42	65.6
독일 ⁷⁾	0.46	0.51	0.66	0.73	19	0.24	0.96	1.47	65.3
그리스	0.46	0.51	0.67	0.74	23	0.29	1.03	1.55	66.8
헝가리	142.58	0.51	120.00	0.43	27	0.25	0.68	1.19	57.2
아이슬란드 ⁸⁾	92.09	0.70	69.86	0.53	24	0.30	0.82	1.52	54.1
아일랜드	0.47	0.52	0.59	0.65	23	0.27	0.92	1.45	63.8
이스라엘 ⁹⁾	2.08	0.54	3.06	0.79	17	0.22	1.01	1.55	65.4
이탈리아	0.47	0.52	0.73	0.81	22	0.29	1.10	1.62	67.9
일본 ¹⁰⁾	64.80	0.54	56.30	0.47	8	0.08	0.55	1.08	50.5
대한민국	881.00	0.78	781.89	0.69	10	0.15	0.84	1.62	51.8
라트비아	0.45	0.50	0.41	0.46	21	0.20	0.66	1.16	56.9
룩셈부르크 ¹¹⁾	0.45	0.50	0.46	0.51	17	0.17	0.69	1.19	57.7
멕시코 ¹²⁾	12.16	0.77	0.00	0.00	16	0.12	0.12	0.89	13.8
네덜란드 ¹³⁾	0.46	0.51	0.77	0.86	21	0.29	1.15	1.66	69.3
뉴질랜드 ¹⁴⁾	1.05	0.74	0.67	0.47	15	0.18	0.65	1.38	46.9
노르웨이 ¹⁵⁾	4.94	0.61	5.82	0.72	25	0.33	1.06	1.67	63.3
폴란드 ¹⁶⁾	1.88	0.50	1.67	0.44	23	0.22	0.66	1.16	56.9
포르투갈	0.49	0.55	0.62	0.69	23	0.28	0.97	1.51	64
슬로바키아 ¹⁷⁾	0.51	0.57	0.52	0.57	20	0.23	0.80	1.37	58.4
슬로베니아 ¹⁸⁾	0.43	0.48	0.55	0.61	22	0.24	0.84	1.32	63.8
스페인 ¹⁹⁾	0.50	0.55	0.46	0.51	21	0.22	0.74	1.29	57.2
스웨덴 ²⁰⁾	4.38	0.52	5.58	0.66	25	0.30	0.96	1.48	64.8
스위스 ²¹⁾	0.60	0.62	0.74	0.76	8	0.11	0.88	1.49	58.5

	세전 가격 ²	세전 가격 ²	유류세 ³		VAT 율 ⁴	VAT 금액	총세금	총가격	총가격 대비 총세금 (%)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	USD	USD	USD	
터키	1.51	0.56	2.18	0.80	18	0.24	1.04	1.60	65.3
영국	0.31	0.47	0.58	0.89	20	0.27	1.16	1.63	71
미국 ²²⁾	0.49	0.49	0.14	0.14	-	-	0.14	0.64	22.5

- 주: 1. 가격과 세금은 2015년 4분기 기준임
 2. 세전 가격은 VAT 및 유류세를 제외한 가격임
 3. 유류세는 1리터당 기준으로 자국통화 및 USD로 각각 표시됨
 4. 호주 및 뉴질랜드는 GST를 표시하였으며, 미국은 판매세(sales tax), 일본은 소비세(consumption tax)를 각각 표시한 것임
 5. 국가별 주석 내용
 1) 오스트리아: 바이오연료 함량이 4.6% 이상이고 유황 함량이 10mg/kg 이하인 무연휘발유에 EUR 0.482/l의 유류세가 부과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EUR 0.515/l의 유류세가 적용됨
 2) 캐나다: 유류세에는 연방세 및 지방세가 포함됨(연방세율은 리터당 CAD 0.1). GST 연방세율은 5%임. 지방정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중평균 부가가치세 세율은 2016년 1월 1일 현재 10.46%임
 3) 칠레: 2014년 7월에 도입된 “연료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mecanismo de estabilización de precios de los combustibles)에 따라 유류세 부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매주 국제시장가격 변동 정도를 감안하여 소비자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세금 부담액을 증감함
 4) 덴마크: 당해 유류세는 바이오연료 함량 4.8% 이상의 연료를 대상으로 한 것임. 여기에는 유류세, 환경세 및 질소산화물 관련 세금이 포함됨
 5) 핀란드: 프리미엄 무연휘발유의 유류세에는 에너지 또는 CO₂ 관련 세금 및 전략적 비축 수수료가 포함됨
 6) 프랑스: 지역별로 리터당 EUR 0.6064에서 EUR 0.6241까지 세율이 다름. 철도 또는 해상 운항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리터당 EUR 0.073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7) 독일: 당해 유류세는 유황 함량이 10mg/kg 이하인 무연휘발유를 대상으로 한 것임. 그 외의 경우에는 EUR 0.6698/l의 유류세가 적용됨
 8) 아이슬란드: IEA 또는 EU의 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관련 자료는 유럽 자동차제조업체 협회로부터 취득함
 9) 이스라엘: 관련 통계는 이스라엘 관계 당국이 제공한 자료에 의거함
 10) 일본: 당해 유류세는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무연휘발유(91RON)를 대상으로 한 것임. 이에는 휘발유세(gasolin tax) 및 도로세(road tax)가 포함됨
 11) 룩셈부르크: 당해 유류세는 유황 함량 10mg/kg 이하인 무연휘발유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외의 경우에는 EUR 0.464/l의 유류세가 적용됨
 12) 멕시코: 종량제 방식의 유류세는 해당 없음. 도매거래 단계에서의 물품 가격에 비례하여 관련 세금이 부과됨
 13) 네덜란드: 당해 EUR 0.774/l의 세금에는 0.766/l의 유류세와 0.008/l의 비축세(stockpiling tax)가 포함되어 있음
 14) 뉴질랜드: 유류세 금액에는 국토운송기금세, 석유엔진모니터링 부담금(petroleum engine monitoring levy) 및 지방세가 포함됨
 15) 노르웨이: 당해 유류세 금액에는 유류세를 비롯하여 CO₂ 세금이 같이 포함됨
 16) 폴란드: 당해 유류세 금액에는 유류세 및 연료부담금이 같이 포함됨
 17) 슬로바키아: 바이오연료 함유량이 최저기준 이하인 휘발유의 경우 EUR 0.55052/l의 유류세가 적용됨
 18) 슬로베니아: 당해 유류세 금액에는 EUR 41.47/1000l의 CO₂ 세금이 포함됨
 19) 스페인: 당해 유류세 금액에는 EUR 0.424/l의 유류세와 관련 지방세 평균치(EUR 0.424/l)가 포함됨 것임
 20) 스웨덴: 실제 유류세는 EUR 5.850/l(EUR 2.60의 휘발유세 + EUR 3.25의 CO₂ 세금)이나, 포에서 제시한 금액은 E85 휘발유에 대한 조세감면(5% 상당)을 감안하여 실제 금액의 95%를 표기한 것임
 21) 스위스: 당해 유류세 금액에는 긴급기금세, 유류세 및 CO₂ 배출 관련 부담금이 포함됨
 22) 미국: 평균 연방세 및 주세로 구성되며, 부가가치세는 없음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147.

2) 디젤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디젤유에 대한 유류세는 무연휘발유에 비해 낮음
 - 유류세 등(VAT 포함) 과세액의 전체 가격 대비 비중은 약 52% 정도로 무연 휘발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칠레와 스위스만 디젤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류세를 부과하며, 호주 및 영국은 디젤유 및 휘발유에 같은 수준의 유류세를 적용함
 - 디젤유가 대기오염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임
- 무연휘발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과세 수준이나 기준에 차이가 상당함
 -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에서 과세부담이 낮게 나타나며, 이스라엘, 이탈리아, 영국, 칠레 등은 과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139 디젤(리터당) 유류세¹

	세전	세전	유류세 ³		VAT	VAT	총세금	총가격	총가격 대비 총세금 (%)
	가격 ²	가격 ²	자국통화	USD	율 ⁴	금액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	USD	USD	USD	
호주	0.75	0.56	0.39	0.30	10	0.09	0.38	0.94	40.3
오스트리아 ¹⁾	0.48	0.53	0.40	0.44	20	0.19	0.63	1.16	54.6
벨기에	0.52	0.57	0.48	0.53	21	0.23	0.77	1.34	57.2
캐나다 ²⁾	0.72	0.57	0.27	0.21	9.05	0.07	0.28	0.84	32.9
칠레 ³⁾	342.50	0.52	802.00	1.23	19	0.33	1.56	2.08	74.9
체코	13.30	0.54	10.95	0.45	21	0.21	0.65	1.19	54.7
덴마크	3.86	0.57	3.00	0.45	25	0.26	0.70	1.27	55
에스토니아	0.47	0.52	0.39	0.44	20	0.19	0.63	1.15	54.7
핀란드 ⁴⁾	0.49	0.55	0.51	0.56	24	0.27	0.83	1.38	60.2
프랑스 ⁵⁾	0.42	0.47	0.47	0.52	20	0.20	0.72	1.18	60.6
독일 ⁶⁾	0.55	0.61	0.47	0.52	19	0.21	0.74	1.34	54.8
그리스	0.56	0.63	0.33	0.37	23	0.23	0.59	1.22	48.7

	세전 가격 ²	세전 가격 ²	유류세 ³		VAT 율 ⁴	VAT 금액	총세금	총가격	총가격 대비 총세금 (%)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	USD	USD	USD	
헝가리	155.07	0.56	110.35	0.40	27	0.26	0.65	1.21	54
아이슬란드 ⁷⁾	102.45	0.78	61.84	0.47	24	0.30	0.77	1.55	49.7
아일랜드	0.50	0.55	0.48	0.53	23	0.25	0.78	1.33	58.6
이스라엘 ⁸⁾	2.26	0.58	2.93	0.75	17	0.23	0.98	1.56	62.7
이탈리아	0.48	0.53	0.62	0.69	22	0.27	0.95	1.48	64.3
일본	70.00	0.58	34.60	0.29	8	0.07	0.36	0.93	38
대한민국	591.82	0.52	528.75	0.47	10	0.10	0.57	1.09	52
라트비아	0.44	0.49	0.33	0.37	21	0.18	0.55	1.05	52.8
룩셈부르크 ⁹⁾	0.43	0.48	0.34	0.37	17	0.14	0.52	0.99	52
멕시코 ¹⁰⁾	10.54	0.66	0.00	0.00	16	0.11	0.11	0.77	13.8
네덜란드 ¹¹⁾	0.48	0.53	0.49	0.54	21	0.23	0.77	1.30	59.3
뉴질랜드	0.94	0.65	0.00	0.00	15	0.10	0.10	0.76	13.4
노르웨이	5.09	0.63	4.45	0.55	25	0.30	0.85	1.48	57.3
폴란드 ¹²⁾	2.00	0.53	1.46	0.39	23	0.21	0.60	1.13	53
포르투갈 ¹³⁾	0.52	0.58	0.40	0.45	23	0.24	0.68	1.26	54.2
슬로바키아 ¹⁴⁾	0.53	0.59	0.37	0.41	20	0.20	0.61	1.20	50.7
슬로베니아 ¹⁵⁾	0.43	0.48	0.46	0.51	22	0.22	0.73	1.21	60.6
스페인 ¹⁶⁾	0.49	0.55	0.37	0.41	21	0.20	0.61	1.16	52.6
스웨덴 ¹⁷⁾	5.27	0.63	5.05	0.60	25	0.31	0.91	1.53	59.2
스위스 ¹⁸⁾	0.63	0.66	0.76	0.79	8	0.12	0.91	1.57	58.1
터키	1.51	0.56	1.60	0.59	18	0.21	0.79	1.35	58.8
영국	0.33	0.51	0.58	0.89	20	0.28	1.17	1.68	69.6
미국 ¹⁹⁾	0.49	0.49	0.15	0.15	-	-	0.15	0.64	23.3

- 주: 1. 가격과 세금은 2015년 4분기 기준임
 2. 세전 가격은 VAT 및 유류세를 제외한 가격임
 3. 유류세는 1리터당 기준으로 자국통화 및 USD로 각각 표시됨
 4. 호주 및 뉴질랜드는 GST를 표시하였으며, 미국은 판매세(sales tax), 일본은 소비세(consumption tax)를 각각 표시한 것임
 5. 국가별 주석 내용
 1) 오스트리아: 바이오연료 함량 6.6% 이상 유황 함유량 10mg/kg 이하인 자동차용 디젤에 대해서는 EUR 0.397/l의 유류세가 부과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UR 0.425/l의 유류세가 적용됨
 2) 캐나다: 유류세율에는 연방 및 지방/도시 세금이 포함됨(연방세율은 리터당 CAD 0.04). 연방 GST 세율은 5%이며, 지방정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중 부가가치세율은 10.46%임(2016년 1월 1일 기준)
 3) 칠레: 2014년 7월에 도입된 연료 가격 안정화 조치(mecanismo de estabilización de precios de los combustibles, MEPCO)에 따라 유류세 부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매주 국제 시장 가격 변동 정도를 감안하여 소비자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세금 부담액을 증감함

- 4) 핀란드: 유류세 금액 EUR 0.506/l에는 유황 품목에 대한 유류세(유황 함량 0.001 % 미만인 자동차용 디젤의 경우) 및 에너지/CO₂ 세금 및 예비 비축 수수료 등이 포함됨
- 5) 프랑스: 지역별로 리터당 EUR 0.6064에서 EUR 0.6241까지 세율이 다름. 철도 또는 해상 운항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리터당 EUR 0.073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6) 독일: 당해 유류세는 유황 함량이 10mg/kg 이하인 디젤유를 대상으로 한 것임
- 7) 아이슬란드: IEA 또는 EU의 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관련 자료는 유럽 자동차제조업체 협회로부터 취득한 것임
- 8) 이스라엘: 관련 통계는 이스라엘 관계 당국이 제공한 자료에 의거함
- 9) 룩셈부르크: 당해 유류세는 유황 함량 10mg/kg 이하인 디젤유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외의 경우에는 EUR 0.338/l의 유류세가 적용됨
- 10) 멕시코: 2015년 기준으로 휘발유 및 디젤유에 대한 유류세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1) 탄소세 관련 유류세, (2) 주정부로 귀속되는 유류세, (3) 주요 유류세(main excise tax)로서 매달 변동 가능. 이 중 (3) 주요 유류세의 경우 해당 연료의 기준가격(controlled price)에서 연료 수입 원가, 물류, 운송 관련 비용 및 소매이익 등을 차감한 가격을 기반으로 책정되었음. 이에 따라 국내 연료 판매가격이 낮고 국제수입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음(-)의 세금(일종의 보조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2016년도에 유류세 개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리터당 고정 비율로 휘발유 및 디젤유에 대한 유류세를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음.
- 11) 네덜란드: 당해 EUR 0.490/l의 세금에는 0.482/l의 유류세와 0.008/l의 비축세(stockpiling tax)가 포함되어 있음
- 12) 폴란드: 당해 유류세 금액에는 유류세 및 연료부담금이 같이 포함됨
- 13) 포르투갈: 농업용 자동차 디젤에는 13%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 14) 슬로바키아: 바이오연료 함유량이 최저기준 이하인 디젤유의 경우 EUR 0.386/l의 유류세가 적용됨
- 15) 슬로베니아: 당해 유류세 금액에는 EUR 44.93/1000l의 CO₂ 세금이 포함됨
- 16) 스페인: 당해 유류세 금액에는 EUR 0.331/l의 유류세와 관련 지방세 평균치(EUR 0.037/l)가 포함된 것임
- 17) 스웨덴: SEK 5.051/l의 유류세는 Class 1 자동차 디젤유(aromatic content 5% 미만 및 최대 유황 함량은 10wppm 이하)에 대해 적용됨. Class 2(SEK 5.331/l) 및 Class 3(SEK 5.477/l) 디젤유에는 더 높은 세금이 적용됨
- 18) 스위스: 당해 CHF 0.763의 세금에는 유류세 및 긴급기금세(Emergency fund tax)가 포함됨
- 19) 미국: 평균 연방세 및 주세로 구성되며, 부가가치세는 없음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149

3) 가정용 경질연료유(light fuel oil for households)에 대한 개별소비세

- 가정용 경질연료유는 주택 난방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 다른 유류에 비해 낮게 과세되는 특징이 있음
 - 건물 난방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임
 - 유류세 등(VAT 포함) 과세액의 전체 가격 대비 비중은 약 35.3% 수준으로 무연휘발유나 디젤유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남

표 1-140 가정용 경질연료유(리터당) 유류세¹

	세전 가격 ²		유류세 ³		VAT 율 ⁴	VAT 금액	총세금	총가격	총가격 대비 총세금 (%)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	USD	USD	USD	
호주 ¹⁾	주석 참조				10				
오스트리아 ²⁾	0.44	0.49	0.10	0.11	20	0.12	0.23	0.71	31.90
벨기에	0.39	0.43	0.02	0.02	21	0.10	0.12	0.55	21.10
캐나다 ³⁾	0.89	0.70	0.05	0.04	9.05	0.07	0.11	0.81	13.40
칠레 ⁴⁾	493.03	0.75	0.24	0.00	19	0.14	0.14	0.90	16.00
체코 ⁵⁾	11.76	0.48	10.95	0.45	21	0.19	0.64	1.12	57.20
덴마크 ⁶⁾	4.60	0.68	2.67	0.40	25	0.27	0.67	1.35	49.40
에스토니아	0.50	0.55	0.11	0.12	20	0.14	0.26	0.81	31.80
핀란드 ⁷⁾	0.43	0.48	0.19	0.21	24	0.17	0.37	0.86	43.70
프랑스	0.46	0.51	0.08	0.09	20	0.12	0.20	0.71	28.60
독일 ⁸⁾	0.39	0.43	0.06	0.07	19	0.10	0.16	0.60	27.40
그리스 ⁹⁾	0.43	0.48	0.23	0.26	23	0.17	0.43	0.91	46.90
헝가리 ¹⁰⁾	103.62	0.37	110.35	0.40	27	0.21	0.60	0.97	61.90
아이슬란드 ¹¹⁾	주석 참조				24				
아일랜드 ¹²⁾	0.43	0.47	0.10	0.11	13.5	0.08	0.19	0.67	28.90
이스라엘 ¹³⁾	2.11	0.54	2.93	0.75	17	0.22	0.97	1.52	64.20
이탈리아	0.51	0.57	0.40	0.45	22	0.22	0.67	1.24	54.10
일본 ¹⁴⁾	67.73	0.56	2.54	0.02	8	0.05	0.07	0.63	10.80
대한민국 ¹⁵⁾	730.00	0.65	72.45	0.06	10	0.07	0.14	0.78	17.30
라트비아	0.47	0.52	0.06	0.06	21	0.12	0.19	0.71	26.30
룩셈부르크 ¹⁶⁾	0.36	0.40	0.01	0.01	14	0.06	0.07	0.47	14.60
멕시코 ¹⁷⁾	주석 참조								
네덜란드 ¹⁸⁾	0.18	0.20	0.49	0.54	21	0.16	0.70	0.91	77.40
뉴질랜드 ¹⁹⁾	주석 참조								
노르웨이 ²⁰⁾	5.91	0.73	2.49	0.31	25	0.26	0.57	1.30	43.70
폴란드	2.02	0.54	0.23	0.06	23	0.14	0.20	0.73	27.10
포르투갈	0.46	0.51	0.34	0.38	13	0.12	0.50	1.01	49.10
슬로바키아 ²¹⁾	주석 참조								
슬로베니아 ²²⁾	0.39	0.44	0.20	0.22	22	0.15	0.37	0.80	45.80
스페인 ²³⁾	0.32	0.35	0.09	0.10	21	0.09	0.19	0.54	35.30
스웨덴 ²⁴⁾	주석 참조								
스위스	0.50	0.52	0.16	0.17	8	0.06	0.23	0.74	30.20

	세전 가격 ²	세전 가격 ²	유류세 ³		VAT 율 ⁴	VAT 금액	총세금	총가격	총가격 대비 총세금 (%)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	USD	USD	USD	
터키	1.24	0.46	0.24	0.09	18	0.10	0.19	0.64	28.90
영국	0.28	0.43	0.11	0.17	20	0.12	0.29	0.72	40.20
미국 ²⁵⁾	0.99	0.99	0.00	0.00	0	0.00	0.00	0.99	0.00

- 주: 1. 가격과 세금은 2015년 4분기 기준임
2. 세전 가격은 VAT 및 유류세를 제외한 가격임
3. 유류세는 1리터당 기준으로 자국통화 및 USD로 각각 표시됨
4. 호주 및 뉴질랜드는 GST를 표시하였으며, 미국은 판매세(sales tax), 일본은 소비세(consumption tax)를 각각 표시한 것임
5. 국가별 주석 내용
1) 호주: 자료 없음
2) 오스트리아: 유황 함유량 10mg/kg 이하인 경질연료유에 대해서는 EUR 0.098/l의 유류세가 부과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UR 0.128/l의 유류세가 적용됨
3) 캐나다: 유류세율에는 연방 및 지방/도시 세금이 포함됨. 건물 난방용 또는 발전용 디젤 연료(단, 운송용 차량을 위한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연방 유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연방 GST 세율은 5%이며, 지방정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중 부가가치세율은 10.46%임(2016년 1월 1일 기준)
4) 칠레: 국내 등유(kerosene)에 대한 사항은 석유 가격 안정 기금(fondo de estabilizacion de precios del Petróleo, FEPP)에 의해 매주마다 결정되며, m³당 USD 기준으로 부과됨
5) 체코: EU 지침 Directive 95/60/EC에 따라 표시된 연료유는 난방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정당하게 입증 되면 CZK 10,290/1000l에 상당한 유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6) 덴마크: 당해 유류세 DKK 2.667/l에는 유류세 DKK 2.215/l 및 환경세 DKK 0.451/l과 질소산화물 관련 세금 DKK 0.0009/l이 포함됨
7) 핀란드: 당해 유류세 금액 EUR 0.1874/l에는 에너지/CO₂ 세금(EUR 0.1839/l) 및 예비 비축 수수료(EUR 0.00353/l) 등이 포함됨
8) 독일: 당해 유류세는 유황 함유량 50mg/kg 이하로서 적절하게 표시된 가스 오일의 경우에 적용됨
9) 그리스: 당해 가정용 난방유의 유류세 EUR 0.230/l는 겨울철(10월 15일~4월 15일)에 적용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EUR 0.330/l임
10) 헝가리: 시장가격 정보는 IEA/EU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음. 가격 데이터는 <http://countryeconomy.com/energy/prices-gasoline-gas-oil-heating/hungary>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함
11) 아이슬란드: 자료 없음
12) 아일랜드: 당해 유류세율 0.102/l은 표시된 가스 오일(표시된 디젤)에 적용되는 것임. 표시된 등유(난방용으로 널리 사용됨)의 경우 EUR 0.05073/l이 적용됨
13) 이스라엘: 관련 통계는 이스라엘 관계 당국이 제공한 자료에 의거함
14) 일본: 가정용 등유
15) 대한민국: 가정용 등유
16) 룩셈부르크: 난방용 가스유의 경우 14%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17) 멕시코: 자료 없음
18) 네덜란드: 당해 EUR 0.490/l의 세금에는 0.482/l의 유류세와 0.008/l의 비축세(stockpiling tax)가 포함되어 있음
19) 뉴질랜드: 관련 제품이 대량으로 소비되지 않는 관계로 관련 데이터가 제공되지 아니함
20) 노르웨이: 당해 NOK 2.49/l의 금액에는 NOK 1.59/l의 기본세와 NOK 0.90/l의 CO₂세가 포함됨
21) 슬로바키아: 관련 제품이 대량으로 소비되지 않는 관계로 관련 데이터가 제공되지 아니함
22) 슬로베니아: 당해 유류세 금액은 2015년 4분기 동안의 평균값임
23) 스페인: 당해 유류세 금액 EUR 0.088/l에는 EUR 0.085/l의 유류세와 관련 지방세 평균치(EUR 0.003/l)가 포함된 것임
24) 스웨덴: 가격 자료 없음
25) 미국: 평균 연방세 및 주세로 구성되며, 부가가치세는 없음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152

라. 소결

- 알코올 음료, 담배 및 유류는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과세하는 대표적인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임
 - 각 국가별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상기 3가지 품목은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세수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품목 특성 및 과세 목적 등에 따라 종가세 및 종량세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음
 - 알코올 음료에 대한 주세는 대부분 종량세 과세체계를 따르며(OECD 34개국 중 29개국), 나머지 일부만 종가세 방식을 채택함
 - 담배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량세와 종가세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유류의 경우 거의 대부분 리터당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알코올 음료는 맥주, 와인 및 기타 알코올 음료로 구분되며 세부 구성 항목 및 과세 방식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
 - 맥주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 저알코올 맥주와 일반 맥주로 구분하며, 상당수 국가들은 저알코올 맥주 또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 등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함
 - 와인은 스틸 와인, 스파클링 와인, 저알코올 와인으로 구분하며,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알코올 와인은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함

- 담배는 일반 담배(Cigarette), 시가(Cigar), 각련(rolling tobacco) 등의 세부 품목으로 구분되며, 담배 가격에서 개별소비세 비중이 약 73.7%로 높은 편임
 - 시가나 각련보다는 일반 담배에 대해 과세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담배 가격 대비 개별소비세 비중은 아일랜드, 영국 등의 서유럽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며, 미국, 호주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유류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정제방법에 따라 무연휘발유, 디젤유 등으로 품목을 구분하며, 운송유에 비해 가정용 난방용 등에 대한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가정용 경질연료유는 무연휘발유 및 디젤유에 비해 과세부담이 상당히 낮음
 - 무연휘발유는 디젤유에 비해 전반적으로 과세부담이 다소 높은 편임

- 개별소비세 과세는 세수확보라는 기본적 목적뿐만 아니라 유해한 소비자 행위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시행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
 - 개별소비세 과세 수준 및 방식 등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됨
 - 특히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알코올 음료 및 담배 관련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움직임이 있음
 - 유류의 경우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짐

II.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



II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¹⁵⁵⁾

01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 총 35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이하, “조사기간”)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
 -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을 포함한 조세수입(tax revenue)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세수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을 GDP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
 - 세수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federal or central government)와 지방정부의 세수를 합산한 세수(total government)를 기준으로 함
 - 조세부담률은 ‘GDP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에 해당함
 - 세수(사회보장기여금 제외)를 GDP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
 - OECD에서는 개별 회원국의 과세관청(또는 국가 통계청)을 통해 매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확정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하여 본 보고서의 2015년 수치는 임시값을 기반으로 추정한 수치임¹⁵⁶⁾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 각 국가의 회계연도 기준의 추정치로 집계하여 산정함¹⁵⁷⁾

155) 본 보고서는 OECD에서 제공한 조세부담률(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s % of GDP)과 국민부담률(tax revenue as % of GDP) 수치를 근거로 작성함

156) 위의 보고서, p. 39

- 국민부담률(또는 조세부담률)의 증감이 세수의 증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세수 증가율과 GDP 성장률을 함께 살펴볼 때 그 의미가 있음
 - 세수가 증가하고 GDP가 변하지 않을 경우, 국민부담률이 증가함
 - 세수가 증가하고 GDP도 증가한 경우, GDP 성장률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증가 또는 감소함
 - 세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GDP가 감소할 경우, 국민부담률이 증가함

가. 국민부담률의 변화 추이

1) 2015년 국민부담률(임시)

-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34.3%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50년간 최대치에 해당함
 - OECD 평균은 1980년에 30.1%에서 2000년 34.0%까지 상승하였다가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2010년 32.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6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함
 -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공공부문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됨¹⁵⁸⁾
- 2015년 기준으로 국민부담률이 제시된 OECD 회원국은 총 32개국¹⁵⁹⁾이며, 이 중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6.6%),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17.4%)로 나타남

157) OECD 회원국 중 31개 국가에서 보고되는 연도는 역년과 일치하나, 호주, 캐나다, 일본 및 뉴질랜드의 4개국은 보고 연도가 상이함(예시: 2013년 기준 캐나다, 일본의 경우, 2013년 2분기~2014년 1분기,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2013년 3분기~2014년 2분기까지를 포함함. 출처: OECD(2016), p. 39.)

158)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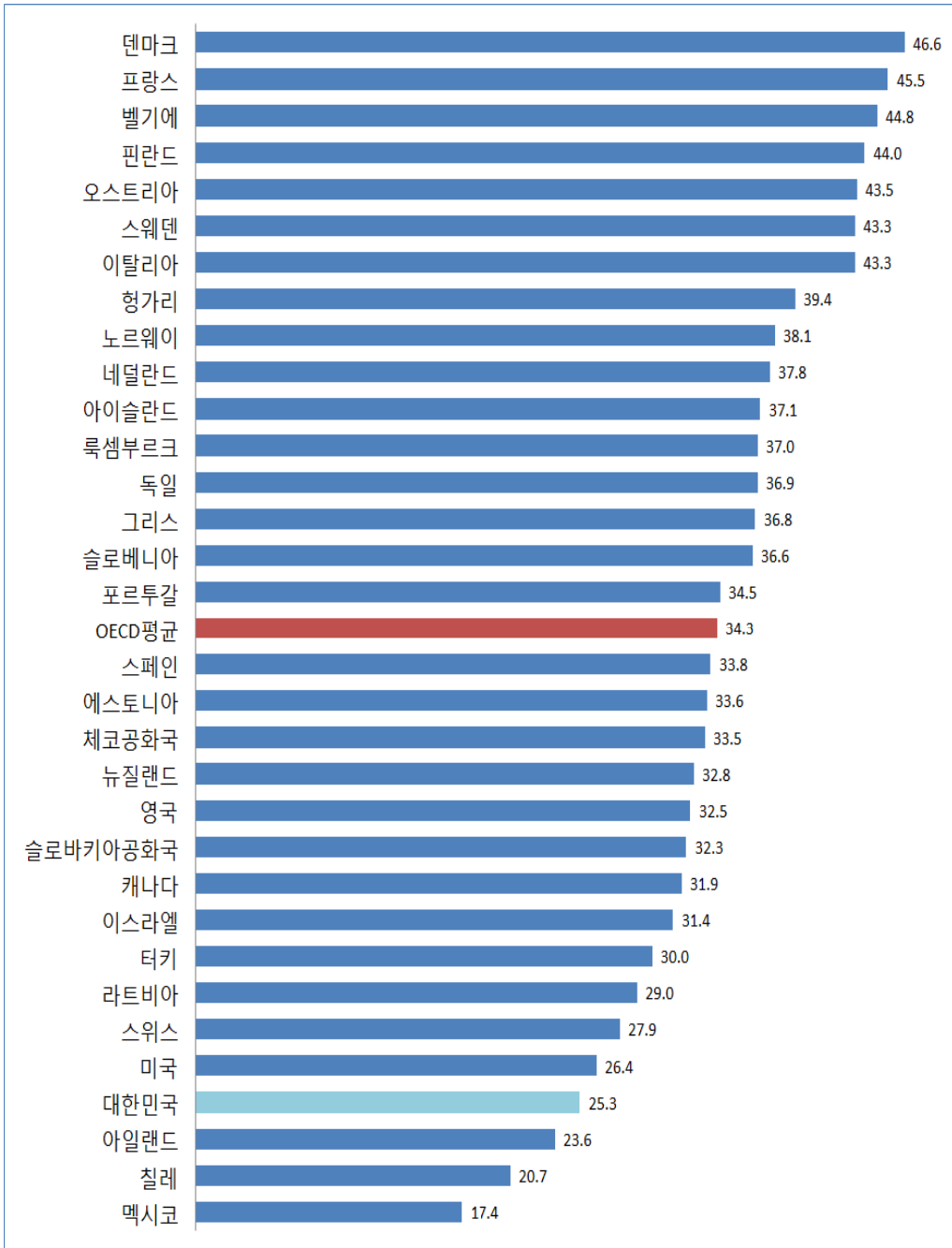
159) 호주, 일본, 폴란드의 경우, 2015년 수치가 집계되지 않음

- 2015년 국민부담률이 40%를 초과한 국가는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으로 총 7개국임
 - 2015년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을 초과한 국가는 총 16개국임
- 전년 대비 2015년 국민부담률이 상승한 국가는 23개국, 하락한 국가는 7개국임
- 멕시코(+2.2%p)는 소득세와 물품소비세 세수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국민부담률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터키의 경우, 물품소비세 세수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하면서 국민부담률이 상승(+1.2%p)함¹⁶⁰⁾
 - 이외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경우에도 1%p 이상 증가함
 - 아일랜드의 명목 세수는 전년 대비 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GDP 성장률(명목 32.4%, 실질 26.3%)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국민부담률이 오히려 5.1%p 하락하였음¹⁶¹⁾
 - 덴마크의 경우, 소득세 세수가 감소하면서 국민부담률이 3%p 감소함
 - 이외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도 1%p 이상 감소함

160) OECD(2016), p. 26

161) 아일랜드 관할 지역에서 다국적 기업의 무형자산(라이선스 및 특허 포함) 등의 이전이 급증하면서 생산, 수출, 감가상각 및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아일랜드의 비정상적인 GDP 성장을 초래함(출처: OECD(2016), p. 28.)

그림 II-1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2015년)



주: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010년 대비 2015년 국민부담률이 상승한 국가는 27개국으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국민부담률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2010년 대비 2015년에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그리스(+4.6%p)임
 - 이외 4%p 이상 상승한 국가는 슬로바키아공화국(+4.2%p)과 포르투갈(+4.1%p)임
 - 2010년 대비 2015년에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노르웨이(-3.8%p)임
 - 이외 3%p 이상 하락한 국가는 아일랜드(-3.5%p)임
 - 2015년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호주, 일본, 폴란드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5년 국민부담률은 25.3%이며, 32개국 중 29위에 해당함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0.7%p, 2010년 대비 1.9%p 상승함
 - 2015년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비하여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에 해당하는 6.8%p 만큼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조세부담률은 감소한 것에 반하여 국민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사회보장부담률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것에 기인함

표 II-1 OECD 회원국의 연도별 국민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26.2	28.1	30.4	25.6	26.3	27.4	27.6	27.8	..
오스트리아	38.7	39.4	42.1	40.8	41.0	41.7	42.5	42.8	43.5
벨기에	40.5	41.2	43.5	42.6	43.1	44.2	45.0	45.0	44.8
캐나다	30.4	35.2	34.8	30.6	30.5	31.0	31.0	31.2	31.9
칠레	..	17.0	18.8	19.7	21.2	21.5	20.0	19.8	20.7
체코	32.5	32.5	33.3	33.7	34.1	33.1	33.5
덴마크	41.3	44.4	46.9	45.1	45.1	45.8	46.8	49.6	46.6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에스토니아	31.1	33.2	31.5	31.5	31.5	32.4	33.6
핀란드	35.3	42.9	45.8	40.8	42.0	42.7	43.6	43.8	44.0
프랑스	39.4	41.0	43.1	42.0	43.2	44.3	45.2	45.5	45.5
독일	36.4	34.8	36.2	35.0	35.7	36.3	36.4	36.6	36.9
그리스	20.8	25.2	33.4	32.2	33.7	35.5	35.6	35.8	36.8
헝가리	38.6	37.5	36.5	38.6	38.2	38.2	39.4
아이슬란드	28.9	30.2	36.3	33.4	34.5	35.3	36.0	38.9	37.1
아일랜드	30.1	32.4	30.8	27.1	27.1	27.5	28.2	28.7	23.6
이스라엘	34.8	30.5	30.8	29.7	30.7	31.2	31.4
이탈리아	28.7	36.4	40.6	41.9	41.9	43.9	44.0	43.7	43.3
일본	24.8	28.5	26.6	27.6	28.6	29.4	30.3	32.0	..
대한민국	16.9	18.8	21.5	23.4	24.2	24.8	24.3	24.6	25.3
라트비아	29.1	28.1	27.8	28.5	28.5	28.9	29.0
룩셈부르크	34.3	33.6	37.2	38.0	37.9	38.8	38.1	38.4	37.0
멕시코	14.5	12.4	13.6	14.1	14.0	13.9	14.6	15.2	17.4
네덜란드	40.3	40.2	37.2	36.1	35.9	36.0	36.5	37.5	37.8
뉴질랜드	29.6	36.2	32.5	30.3	30.4	32.0	31.3	32.5	32.8
노르웨이	41.9	40.2	41.9	41.9	42.1	41.5	39.9	38.7	38.1
폴란드	32.9	31.1	31.6	31.9	31.9	32.1	..
포르투갈	21.9	26.5	31.1	30.4	32.3	31.8	34.1	34.2	34.5
슬로바키아 공화국	33.6	28.1	28.6	28.4	30.3	31.2	32.3
슬로베니아	36.6	36.9	36.5	36.9	36.8	36.5	36.6
스페인	22.0	31.6	33.4	31.5	31.4	32.4	33.3	33.8	33.8
스웨덴	43.7	49.5	49.0	43.2	42.5	42.6	42.9	42.8	43.3
스위스	23.3	23.6	27.4	26.5	27.0	26.8	26.9	27.0	27.9
터키	13.3	14.9	24.2	26.2	27.8	27.6	29.3	28.8	30.0
영국	33.4	32.9	32.8	32.5	33.4	32.7	32.5	32.1	32.5
미국	25.5	26.0	28.2	23.5	23.9	24.1	25.7	25.9	26.4
OECD 평균	30.1	32.0	34.0	32.6	33.0	33.4	33.8	34.2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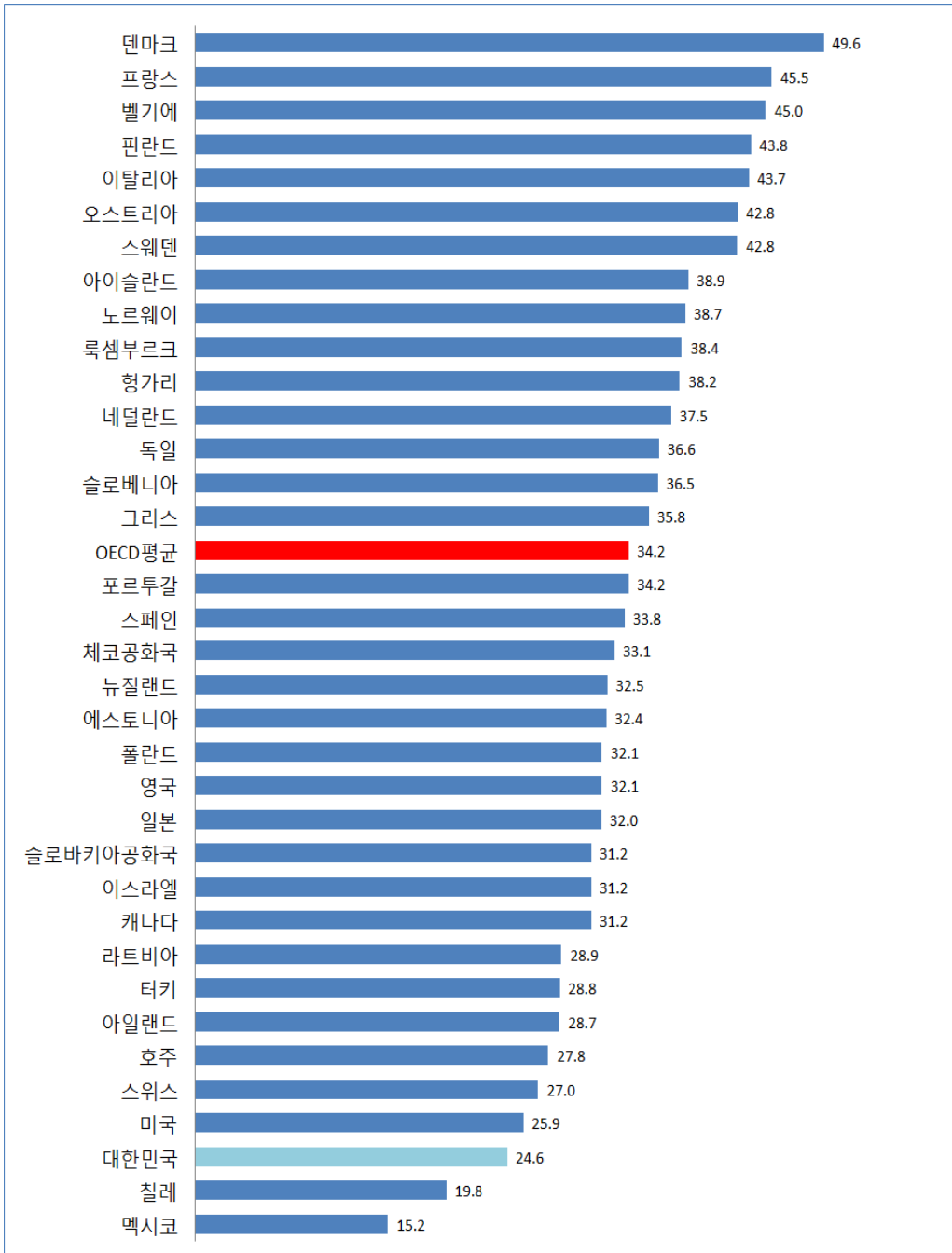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Revenue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접속일자: 2017. 9. 1.)

2) 2014년 국민부담률(최종)

- OECD 회원국 중 2014년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9.6%),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15.2%)로 국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그림 II-2] 참고)
 - 호주, 칠레, 아일랜드, 대한민국, 라트비아, 멕시코, 스위스, 터키, 미국의 경우, 국민부담률이 30% 미만으로 나타남

- 2014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2%로, 2013년에 비해 0.4%p 증가함
 - 2013년 대비 2014년 국민부담률이 상승한 국가는 26개국, 하락한 국가는 9개국임
 -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국가는 아이슬란드(+2.9%p), 덴마크(+2.4%p), 일본(+1.7%p), 뉴질랜드(+1.2%p)이며,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도 0.9%p~1.0%p 증가하였음
 - 국민부담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노르웨이(-1.2%p)와 체코(-1.0%p)임

그림 II-2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2014년)



주: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1965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민부담률 변화 추이¹⁶²⁾

-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1990년대부터 상승세로 들어서 2000년 34.0%까지 상승한 후 2004년까지 완만히 하락하다가 금융위기 이전까지 다시 상승함
 - 1965년부터 1975년까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8%p 상승함
 - 특히,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전까지는 모든 OECD 회원국의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수도 함께 증가함
 - 1975년부터 1985년까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9%p 상승함
 - 1970년대 중반 이후 실질소득의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1980년 제2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유럽 국가들은 사회보장기여금 마련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조세부담 수준을 증가시킴
 - 1985년부터 1995년까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1.8%p 상승함
 -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개인 및 법인소득세의 법정세율을 인하하였으나, 조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감소 효과를 상쇄시킴
 - 1995년부터 2014년까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0.9%p 상승함
 -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국민부담률은 34% 전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국민부담률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5년 이후 200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다시 상승함

162) OECD(2016), pp. 30~35

나. 조세부담률의 변화 추이

-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평균 조세부담률은 약 25.8%로 추정됨
 -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1980년에 23.2%에서 2000년 25.4%까지 상승하였다가 2010년 23.7%로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약 2.1%p 상승함
 - 금융위기 전후로 변동이 있었으나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2015년에는 OECD에서 조사한 최근 50년 중 최대치를 기록함
 - 2015년 조세부담률이 제시된 32개국 중 2010년 대비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국가는 27개국으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2010년 대비 2015년에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그리스(+5%p)이며, 아이슬란드의 경우, 4%p 상승함
 - 2010년 대비 2015년에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노르웨이(-5%p)임
- 2015년 조세부담률이 제시된 OECD 회원국 31개국¹⁶³⁾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6.6%)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 공화국(18.5%)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 31개국 중 30위에 위치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 대비 0.5%p, 2010년 대비 0.6%p 상승함
 -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을 초과한 국가는 16개국이며, 이 중 상위 5위에 해당하는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33.6%), 아이슬란드(33.5%), 뉴질랜드(32.8%), 핀란드(31.3%)임
 - 2015년 수치가 집계되지 아니하여 제외된 멕시코는 2014년 기준 12%로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해당함

163) 호주, 일본, 멕시코, 폴란드의 경우 2015년 수치가 집계되지 아니하여 제외함

□ 2015년 조세부담률이 제시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전년 대비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국가는 23개국, 하락한 국가는 7개국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1%p)이며,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는 아일랜드(-4%p)임

표 II-2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조세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26.2	28.1	30.4	25.6	26.3	27.4	27.6	27.8	..
오스트리아	26.7	26.4	27.8	26.7	26.9	27.5	28.0	28.2	28.7
벨기에	28.8	27.5	30.1	28.8	29.2	30.0	30.7	30.8	30.5
캐나다	27.2	30.9	30.0	26.1	26.0	26.3	26.3	26.5	27.1
칠레	..	15.4	17.4	18.3	19.9	20.1	18.5	18.3	19.3
체코	18.1	18.0	18.7	19.0	19.4	18.6	19.0
덴마크	41.1	44.4	46.2	45.0	45.0	45.7	46.7	49.5	46.6
에스토니아	20.2	20.5	19.9	20.4	20.6	21.5	22.4
핀란드	27.1	31.9	34.3	28.7	30.0	30.0	31.0	31.2	31.3
프랑스	22.6	22.9	27.5	25.9	26.9	27.8	28.5	28.5	28.6
독일	23.9	21.8	22.1	21.3	21.9	22.4	22.6	22.6	22.9
그리스	13.9	17.6	23.2	21.1	22.9	24.5	24.8	25.5	26.1
헝가리	27.3	25.7	24.0	26.0	25.7	25.7	26.3
아이슬란드	28.3	29.3	33.5	29.5	30.5	31.6	32.3	35.2	33.5
아일랜드	25.8	27.8	27.1	22.1	21.9	22.6	23.2	23.7	19.7
이스라엘	29.7	25.4	25.6	24.6	25.6	26.1	26.2
이탈리아	17.8	24.4	29.0	28.8	29.0	30.8	30.9	30.7	30.3
일본	17.5	21.0	17.3	16.2	16.7	17.2	18.0	19.3	..
대한민국	16.8	16.9	17.9	17.9	18.4	18.7	17.9	18.0	18.5
라트비아	19.4	19.4	19.1	19.8	20.0	20.5	20.7
룩셈부르크	24.4	24.3	27.5	27.0	26.8	27.5	27.1	27.3	26.3
멕시코	12.4	10.3	10.9	11.3	11.2	11.0	11.6	12.0	..
네덜란드	24.9	25.2	22.8	23.0	22.1	21.3	21.6	22.7	23.5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뉴질랜드	29.6	36.2	32.5	30.3	30.4	32.0	31.3	32.5	32.8
노르웨이	33.1	29.7	33.1	32.6	32.8	32.2	30.4	28.8	27.6
폴란드	20.0	20.3	20.5	19.9	19.7	19.9	..
포르투갈	15.4	19.3	23.1	21.8	23.4	23.1	25.2	25.2	25.5
슬로바키아 공화국	19.7	16.1	16.6	16.1	17.0	17.9	18.5
슬로베니아	22.7	22.1	21.8	21.9	22.1	22.1	22.1
스페인	11.3	20.4	21.8	19.8	19.7	20.8	21.8	22.2	22.5
스웨덴	31.2	36.0	36.1	32.3	32.6	32.4	32.9	32.9	33.6
스위스	17.9	18.0	20.8	20.2	20.4	20.1	20.2	20.3	21.0
터키	11.5	12.0	19.6	19.7	20.1	20.1	21.2	20.6	21.3
영국	27.8	27.3	27.3	26.3	27.2	26.5	26.4	26.1	26.5
미국	19.9	19.3	21.6	17.4	18.4	18.6	19.5	19.7	20.1
OECD 평균	23.2	24.6	25.4	23.7	24.1	24.5	24.7	25.1	25.8 ¹⁾

주: 1) 2015년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호주, 일본, 멕시코, 폴란드를 제외한 31개국의 수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함

자료: OECD Tax Revenue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접속일자: 2017. 9. 1.)

02

세목별 GDP 대비 세수 비중

□ OECD 분류 기준에 따른 세목별 세수를 GDP로 나누어 산정함¹⁶⁴⁾

- OECD에서는 세수를 성격에 따라 소득, 이익과 자본이득에 관한 세금(1000), 사회보장기여금(2000), 급여 및 노동세(3000), 재산세(4000), 재화/용역세(5000), 기타(6000)로 구분함

164) OECD(2016), p. 26

표 II-3 OECD 통계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000 소득, 이익과 자본이득에 관한 세금(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1100 개인의 소득, 이익과 자본이득에 관한 세금(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1110 개인소득세(On income and profits of individuals)
		1120 개인자본이득세(On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1200 법인의 소득, 이익과 자본이득에 관한 세금(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corporates)	1210 법인소득세(On profits of corporates)
		1220 법인자본이득세(On capital gains of corporates)
	1300 기타 소득, 이익과 자본이득에 관한 세금 (Unallocable between 1100 and 1200)	n/a
2000 사회보장기여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SSC)		(생략)
3000 급여 및 노동세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생략)
4000 재산세 (Taxes on property)	4100 부동산 관련 반복적 재산세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4110 주거부동산세(Households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4120 이외 부동산세(Other than households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200 반복적 부유세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4210 개인부유세(Individual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4220 법인부유세(Corporate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4300 상속세 및 증여세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4310 상속세(Estate and inheritance taxes)	
		4320 증여세(Gift taxes)	
	4400 거래세(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n/a	
	4500 비반복적 재산세 (Non-recurrent taxes on property)	4510 비반복적 부유세(Non-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4520 기타 비반복적 재산세(Non-recurrent taxes on property other than net wealth)			
4600 기타 반복적 재산세 (Other recurrent taxes on property except 4100, 4200)	n/a		
5000 재화/용역세 (Taxes on goods and service)	5100 생산, 판매, 거래 등에 관한 세금(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5110 재화/서비스세 (General taxes on goods and service)	5111 부가가치세(VAT)
			5112 판매세(Sales tax)
			5113 기타(Other)
	5120 특정 재화/서비스세 (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	5121 소비세(Excises)	
		5122 독과점세(Profits of fiscal monopolies)	
		5123 관세/수입세(Customs and import duties)	
		5124 수출세(Taxes on export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5125 투자세 (Taxes on investment goods)	
			5126, 5127, 5128 이외 물품 및 서비스 관련 세금	
		5130 이외 (General taxes on goods and service)	n/a	
	5200 재화사용/용역세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5210 반복적 재화사용/ 용역세 (Recurrent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생략)
		5220 비반복적 재화사용/용역세 (Non-recurrent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생략)
		5300 기타 재화/용역세 (Unallocable between 5100 and 5200)	n/a	
6000 기타	(생략)			

주: 음영으로 표시된 항목은 세부 세목으로 다루는 내용에 해당함
 자료: OECD Tax Revenue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가.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개인소득세 세수 비중’으로 산정함
 - 개인소득세 세수는 OECD 세수 통계(Tax revenue statistics)에서 ‘개인의 소득, 이익과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11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를 기준으로 함

- OECD 회원국의 평균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1980년 9.8%에서 2010년 7.7%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8.4%(2015년 추정치 8.6%)까지 상승함
 -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25.4%)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1.5%)로 양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2015년 수치가 집계된 32개국 중 27위에 해당함
 - 2014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26.8%),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1.4%)로 2015년과 동일함
 - 우리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 31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1980년 1.9%에서 2015년에는 4.4%까지 상승하여, 2010년(3.3%) 대비 1.1%p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표 II-4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1.5	12.1	11.5	9.8	10.3	10.7	10.7	11.4	..
오스트리아	9.0	8.3	9.3	9.2	9.2	9.6	9.8	10.1	10.6
벨기에	14.7	13.2	13.7	12.0	12.2	12.3	12.9	12.9	12.6
캐나다	10.4	14.4	12.8	10.7	11.0	11.3	11.2	11.3	11.8
칠레	..	0.9	1.4	1.3	1.4	1.5	1.4	1.4	1.5
체코	4.2	3.3	3.5	3.6	3.7	3.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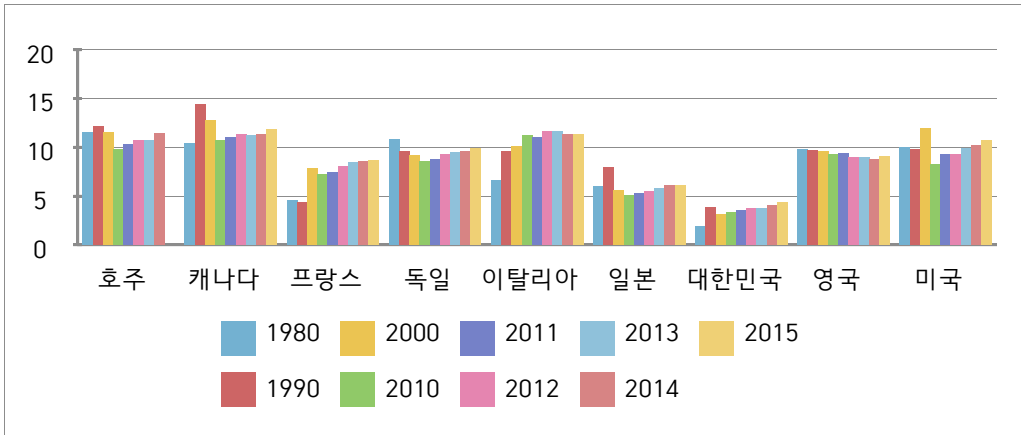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덴마크	21.6	24.0	24.7	23.4	23.4	23.4	25.5	26.8	25.4
에스토니아	6.8	5.3	5.1	5.2	5.4	5.7	5.8
핀란드	12.6	14.9	14.0	12.1	12.3	12.5	12.8	13.4	13.3
프랑스	4.6	4.4	7.8	7.2	7.4	8.0	8.4	8.5	8.6
독일	10.8	9.6	9.2	8.5	8.8	9.3	9.5	9.6	9.9
그리스	3.1	3.6	4.8	4.0	4.8	7.0	6.0	5.9	..
헝가리	7.2	6.5	5.1	5.7	5.4	5.3	5.0
아이슬란드	6.7	8.1	12.6	12.2	13.0	13.2	13.8	13.6	13.3
아일랜드	9.6	10.7	9.8	8.1	8.4	8.9	9.0	9.2	7.5
이스라엘	10.1	5.5	5.5	5.3	5.5	5.8	6.1
이탈리아	6.6	9.6	10.1	11.2	11.0	11.6	11.6	11.3	11.3
일본	6.0	7.9	5.6	5.1	5.3	5.5	5.8	6.1	6.1
대한민국	1.9	3.8	3.1	3.3	3.5	3.7	3.7	4.0	4.4
라트비아	5.5	6.2	5.6	5.8	5.8	5.9	5.9
룩셈부르크	9.2	8.1	6.9	8.0	8.4	8.5	8.7	8.9	9.0
멕시코	2.4	2.4	2.5	2.6	3.0	3.4
네덜란드	10.6	9.9	5.6	7.8	7.4	7.0	6.9	7.0	7.7
뉴질랜드	18.3	17.4	14.0	11.4	11.3	12.1	11.9	12.6	12.5
노르웨이	11.9	10.5	10.1	9.9	9.7	9.7	9.9	9.8	10.4
폴란드	4.3	4.4	4.3	4.5	4.5	4.6	..
포르투갈	..	4.2	5.4	5.4	6.0	5.8	7.7	7.7	7.3
슬로바키아 공화국	3.3	2.7	2.8	2.9	2.9	3.0	3.2
슬로베니아	5.5	5.6	5.6	5.7	5.2	5.1	5.1
스페인	4.5	6.9	6.4	6.9	7.2	7.4	7.5	7.6	7.2
스웨덴	18.0	19.1	16.3	12.0	11.7	11.9	12.2	12.2	12.5
스위스	9.1	7.7	8.2	8.4	8.4	8.5	8.4	8.4	8.7
터키	5.8	4.0	5.4	3.7	3.8	4.0	4.1	4.2	4.4
영국	9.8	9.7	9.6	9.3	9.4	9.0	9.0	8.8	9.1
미국	10.0	9.8	11.9	8.2	9.3	9.3	9.9	10.2	10.7
OECD 평균	9.8	9.7	8.7	7.7	7.8	8.1	8.3	8.4	..

주: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OECD Statistics의 '11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접속일자: 2017. 9. 1.)

그림 II-3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법인소득세 세수 비중’으로 산정함
 - 법인소득세 세수는 OECD 세수 통계에서 ‘법인의 소득, 이익과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1200 :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corporates)’를 기준으로 함

-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소득세 부담률은 1980년 2.3%에서 2014년 2.8%로 상승함
 -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4.9%)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슬로베니아(1.5%)임
 - 우리나라는 2015년 수치가 집계된 32개국 중 10위에 해당함
 - 2014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6.6%)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슬로베니아(1.4%)임
 - 우리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 13위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 부담률은 1980년 1.9%에서 2012년 3.7%까지 상승하였다가 2015년에 3.2%로 다소 하락함
-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 부담률은 1980년대에 개인소득세 부담률과 유사했으나, 2013년부터 개인소득세 부담률이 법인소득세 부담률을 상회하여 2015년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세 부담률이 1.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5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3.2	4.0	6.2	4.7	5.2	5.2	4.9	4.7	..
오스트리아	1.4	1.4	2.0	1.9	2.0	2.0	2.2	2.1	2.3
벨기에	1.9	2.0	3.1	2.5	2.8	3.0	3.1	3.2	3.4
캐나다	3.5	2.5	4.2	3.2	3.1	3.2	3.3	3.3	3.1
칠레	..	2.1	2.1	4.0	5.0	5.9	4.4	4.2	4.9
체코	3.2	3.2	3.2	3.3	3.4	3.5	3.6
덴마크	1.4	1.7	3.2	2.3	2.2	2.6	2.8	2.6	2.6
에스토니아	0.9	1.3	1.2	1.4	1.7	1.7	2.1
핀란드	1.2	1.9	5.7	2.4	2.6	2.1	2.4	1.9	2.2
프랑스	2.0	2.2	3.0	2.3	2.6	2.6	2.6	2.3	2.1
독일	2.0	1.7	1.8	1.5	1.7	1.7	1.8	1.7	1.7
그리스	0.8	1.4	4.0	2.5	2.1	1.1	1.1	1.9	..
헝가리	2.2	1.2	1.2	1.3	1.4	1.5	1.9
아이슬란드	0.7	0.8	1.2	0.9	1.7	1.9	2.2	3.4	2.9
아일랜드	1.4	1.6	3.6	2.4	2.2	2.3	2.4	2.4	2.7
이스라엘	3.3	2.6	3.0	2.7	3.5	3.2	3.0
이탈리아	2.2	3.7	2.8	2.3	2.2	2.4	2.6	2.2	2.1
일본	5.4	6.4	3.7	3.2	3.4	3.7	4.0	4.1	4.3
대한민국	1.9	2.4	3.0	3.2	3.7	3.7	3.4	3.2	3.2
라트비아	1.5	1.0	1.4	1.6	1.6	1.5	1.6
룩셈부르크	5.6	5.4	6.7	5.8	5.1	5.2	4.8	4.4	4.4
멕시코	1.9	2.1	1.8	2.4	2.6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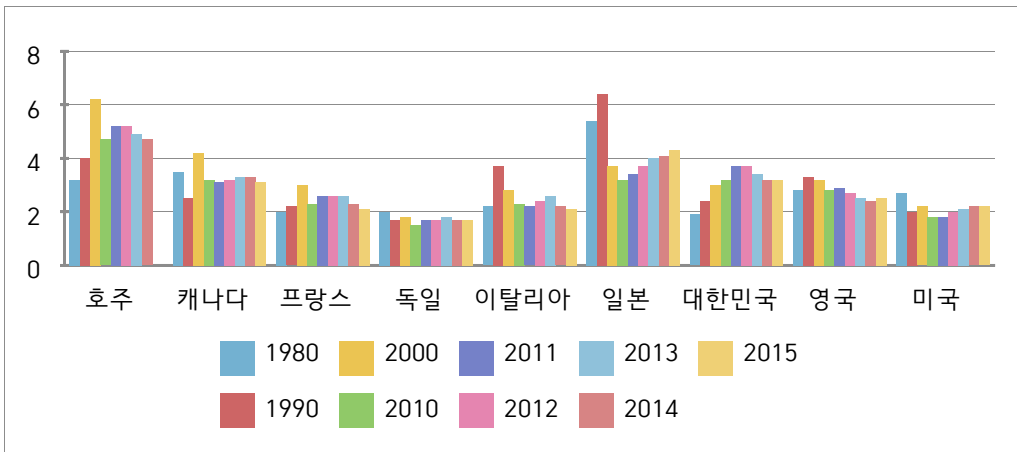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네덜란드	2.7	3.0	4.0	2.3	2.2	2.1	2.2	2.6	2.7
뉴질랜드	2.3	2.3	4.0	3.7	3.9	4.5	4.4	4.3	4.4
노르웨이	5.6	3.6	8.8	9.9	10.8	10.3	8.3	6.6	4.5
폴란드	2.4	1.9	2.0	2.1	1.8	1.7	..
포르투갈	..	2.1	3.7	2.7	3.1	2.7	3.3	2.8	3.2
슬로바키아 공화국	2.6	2.5	2.4	2.4	2.9	3.3	3.5
슬로베니아	1.1	1.8	1.7	1.2	1.2	1.4	1.5
스페인	1.1	2.8	3.0	1.9	1.9	2.2	2.1	2.1	2.4
스웨덴	1.1	1.5	3.7	3.3	3.1	2.6	2.7	2.7	3.0
스위스	1.5	2.9	3.8	2.7	2.8	2.8	2.8	2.8	3.0
터키	0.6	1.0	1.8	1.9	2.1	2.0	1.9	1.8	1.7
영국	2.8	3.3	3.2	2.8	2.9	2.7	2.5	2.4	2.5
미국	2.7	2.0	2.2	1.8	1.8	2.0	2.1	2.2	2.2
OECD 평균	2.3	2.5	3.3	2.7	2.9	2.9	2.9	2.8	..

주: 법인소득세 부담률은 OECD Statistics의 '12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corporates'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접속일자: 2017. 9. 1.)

그림 II-4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부가가치세, 판매세(VAT, Sales tax)

-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의 부담률(이하,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으로 산정함
 - 부가가치세 세수는 OECD 세수 통계에서 ‘부가가치세(5111: Value added taxes)와 판매세(5112: Sales tax)를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 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1980년 4.8%에서 2014년 6.9% (2015년 추정치 7.0%)로 상승함
 -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9.9%)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0%)임
 - 우리나라는 2015년 수치가 집계된 32개국 중 30위에 해당함
 - 2014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와 이스라엘(9.7%)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0%)임
 - 우리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 30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1980년 3.7%에서 2012년 4.3%까지 상승하였다가 2015년에 3.9%로 다소 하락함
 -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법인소득세 부담률보다 0.2%p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II-6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4	2.3	3.7	3.5	3.4	3.4	3.6	3.6	..
오스트리아	7.8	8.2	7.9	7.7	7.6	7.8	7.7	7.7	7.7
벨기에	6.8	6.8	7.1	7.0	6.9	7.0	7.0	6.9	6.8
캐나다	3.5	5.0	4.9	4.3	4.3	4.3	4.3	4.3	4.4
칠레	..	6.3	7.9	7.6	7.9	8.1	8.1	8.2	8.4
체코	6.0	6.7	6.9	7.0	7.4	7.4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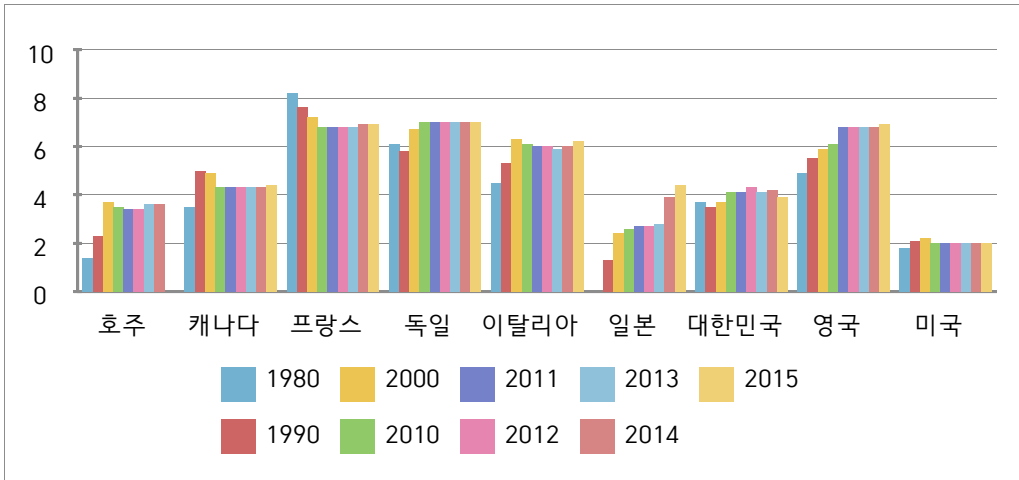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덴마크	9.4	8.4	9.2	9.5	9.6	9.6	9.4	9.5	9.5
에스토니아	8.4	8.6	8.3	8.4	8.2	8.6	9.2
핀란드	6.1	8.3	8.0	8.3	8.8	9.0	9.3	9.2	9.1
프랑스	8.2	7.6	7.2	6.8	6.8	6.8	6.8	6.9	6.9
독일	6.1	5.8	6.7	7.0	7.0	7.0	7.0	7.0	7.0
그리스	2.6	6.5	7.0	7.2	7.4	7.3	7.1	7.2	..
헝가리	8.7	8.7	8.6	9.4	9.1	9.5	9.9
아이슬란드	8.4	9.8	10.4	7.6	7.7	8.0	8.0	8.1	8.2
아일랜드	4.4	6.6	7.1	6.0	5.6	5.8	5.8	6.0	4.7
이스라엘	9.2	9.1	9.1	8.8	9.2	9.7	9.4
이탈리아	4.5	5.3	6.3	6.1	6.0	6.0	5.9	6.0	6.2
일본	..	1.3	2.4	2.6	2.7	2.7	2.8	3.9	4.4
대한민국	3.7	3.5	3.7	4.1	4.1	4.3	4.1	4.2	3.9
라트비아	7.0	6.7	6.8	7.2	7.4	7.7	7.8
룩셈부르크	4.0	4.1	5.0	6.5	6.7	7.2	7.2	7.5	6.5
멕시코	2.3	3.2	3.1	3.8	3.7	3.7	3.5	3.9	3.9
네덜란드	6.4	6.6	6.4	6.8	6.5	6.5	6.5	6.4	6.6
뉴질랜드	3.0	8.1	8.1	9.3	9.4	9.6	9.4	9.7	9.8
노르웨이	7.7	7.6	8.3	7.8	7.6	7.6	7.7	7.8	8.2
폴란드	6.9	7.6	7.8	7.1	7.0	7.1	..
포르투갈	3.5	5.2	7.6	7.5	8.1	8.3	8.1	8.5	8.6
슬로바키아 공화국	6.9	6.2	6.7	6.0	6.4	6.6	6.9
슬로베니아	8.7	8.1	8.1	8.0	8.5	8.5	8.4
스페인	0.0	5.0	5.9	5.3	5.2	5.4	5.9	6.1	6.4
스웨덴	5.8	7.4	8.3	9.2	9.0	8.9	9.0	9.0	9.1
스위스	2.4	2.8	3.7	3.4	3.5	3.6	3.6	3.5	3.5
터키	..	2.7	5.8	5.7	6.1	5.8	6.4	5.9	6.2
영국	4.9	5.5	5.9	6.1	6.8	6.8	6.8	6.8	6.9
미국	1.8	2.1	2.2	2.0	2.0	2.0	2.0	2.0	2.0
OECD 평균	4.8	5.6	6.6	6.6	6.7	6.7	6.7	6.9	..

주: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OECD Statistics의 '5111 Value added taxes'와 '5112 Sales tax'를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접속일자: 2017. 9. 1.)

그림 II-5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라. 상속세 및 증여세(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률은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수 비중’으로 산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수는 OECD 세수 통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를 기준으로 함
-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률은 1980년 이래 2014년까지 0.1%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2015년과 2014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0.7%)이며, 우리나라는 0.3%로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함
 -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률은 1990년 0.2%에서 2011년에 0.3%로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폐지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웨덴임

표 11-7 OECD 회원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0.1	0.0	0.0	0.0	0.0	0.0	0.0	0.0	..
오스트리아	0.1	0.1	0.1	0.0	0.0	0.0	0.0	0.0	0.0
벨기에	0.3	0.3	0.4	0.6	0.6	0.7	0.8	0.7	0.7
캐나다	0.0	0.0	0.0	0.0	0.0	0.0	0.0	0.0	0.0
칠레	..	0.0	0.0	0.0	0.0	0.1	0.0	0.0	0.1
체코	0.0	0.0	0.1	0.1	0.0	0.0	0.0
덴마크	0.2	0.3	0.2	0.2	0.3	0.2	0.2	0.2	0.3
에스토니아	0.0	0.0	0.0	0.0	0.0	0.0	0.0
핀란드	0.1	0.2	0.3	0.2	0.2	0.3	0.3	0.2	0.3
프랑스	0.2	0.4	0.5	0.4	0.4	0.5	0.5	0.5	0.6
독일	0.1	0.1	0.1	0.2	0.2	0.2	0.2	0.2	0.2
그리스	0.2	0.3	0.3	0.1	0.1	0.0	0.1	0.1	..
헝가리	0.0	0.0	0.0	0.0	0.0	0.0	0.0
아이슬란드	0.0	0.1	0.1	0.2	0.1	0.1	0.1	0.1	0.1
아일랜드	0.1	0.1	0.2	0.1	0.1	0.2	0.2	0.2	0.2
이스라엘	0.0	0.0	0.0	0.0	0.0	0.0	0.0
이탈리아	0.1	0.1	0.1	0.0	0.0	0.0	0.0	0.0	0.0
일본	0.2	0.4	0.3	0.3	0.3	0.3	0.3	0.4	0.4
대한민국	0.0	0.2	0.2	0.2	0.3	0.3	0.3	0.3	0.3
라트비아	0.0	0.0	0.0	0.0	0.0	0.0	0.0
룩셈부르크	0.1	0.1	0.1	0.1	0.1	0.2	0.2	0.2	0.1
멕시코	0.0	0.0	0.0	0.0	0.0	0.0	0.0	0.0	..
네덜란드	0.2	0.2	0.3	0.3	0.2	0.2	0.3	0.2	0.2
뉴질랜드	0.2	0.1	0.0	0.0	0.0	0.0	0.0	0.0	0.0
노르웨이	0.0	0.1	0.1	0.1	0.1	0.1	0.1	0.1	0.0
폴란드	0.0	0.0	0.0	0.0	0.0	0.0	..
포르투갈	0.1	0.1	0.1	0.0	0.0	0.0	0.0	0.0	0.0
슬로바키아 공화국	0.0	0.0	0.0	0.0	0.0	0.0	0.0
슬로베니아	0.0	0.0	0.0	0.0	0.0	0.0	0.0
스페인	0.1	0.1	0.2	0.2	0.2	0.2	0.2	0.3	0.3
스웨덴	0.1	0.1	0.1	0.0	0.0	0.0	0.0	0.0	0.0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스위스	0.2	0.2	0.3	0.2	0.1	0.1	0.2	0.2	0.2
터키	0.0	0.0	0.0	0.0	0.0	0.0	0.0	0.0	0.0
영국	0.2	0.2	0.2	0.2	0.2	0.2	0.2	0.2	0.2
미국	0.3	0.3	0.3	0.1	0.1	0.1	0.2	0.1	0.1
OECD 평균	0.1	0.1	0.1	0.1	0.1	0.1	0.1	0.1	..

주: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률은 OECD Statistics의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접속일자: 2017. 9. 1.)

마. 소비세(Excises)

□ 소비세 부담률은 'GDP 대비 소비세 세수 비중'으로 산정함

○ 소비세 세수는 OECD 세수 통계에서 '소비세(5121: Excises)'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참고 목적으로 '생산, 판매, 거래 등에 관한 세금(5100: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을 함께 표시함

- 생산, 판매, 거래 등에 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VAT, Sales tax), 소비세(Excise tax), 관세/수입세(Customs and import duties), 수출세(Taxes on exports) 등을 포함함

□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비세 부담률은 1980년 2.9%에서 1990년 2.6%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 다시 2.9%로 증가하였고, 2015년 기준 2.6%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5.4%)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과 뉴질랜드(0.9%)임

- 우리나라는 2015년 수치가 집계된 31개국¹⁶⁵⁾ 중 24위에 해당함

○ 2014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5.2%)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 뉴질랜드와 멕시코(0.9%)임

165) 호주,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제외

- 우리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6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의 평균 생산, 판매, 거래 등에 관한 세금부담률은 1980년 9.0%에서 2000년 10.3%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9.9%로 감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10.4%(추정)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16.8%)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3.8%)임
 - 우리나라(6.6%)는 2015년 수치가 집계된 31개국¹⁶⁶⁾ 중 28위로, OECD 평균(10.4%)보다 3.8%p 낮음

- 우리나라의 소비세 부담률은 1980년에는 2.6%였으나 2015년에 2.0%로 6%p 하락함
 - 우리나라의 생산, 판매, 거래 등에 관한 세금부담률은 1980년 10.4%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 6.6%로 3.8%p 하락함

166) 호주,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제외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라트비아	3.4	10.8	3.6	10.5	3.4	10.4	3.3	10.6	3.3	10.8	3.2	11.1	3.3	11.3
룩셈부르크	3.0	7.3	3.3	7.7	4.5	9.7	3.5	10.2	3.5	10.4	3.5	10.8	3.2	10.6	3.2	10.9
멕시코	0.8	7.3	1.2	5.4	1.4	5.1	0.6	4.8	0.7	4.5	0.6	4.6	0.6	4.3	0.9	5.0
네덜란드	2.2	9.3	2.3	9.7	3.1	9.7	2.9	9.9	2.8	9.6	2.7	9.5	2.7	9.7	2.7	9.8
뉴질랜드	2.1	6.3	2.5	11.4	1.8	10.5	0.9	11.2	0.8	11.3	0.9	11.5	0.8	11.2	0.9	11.7
노르웨이	4.7	14.4	5.0	13.7	3.6	12.3	2.9	11.0	2.8	10.6	2.6	10.4	2.6	10.5	2.5	10.5
폴란드	3.6	11.4	4.1	11.9	4.0	12.1	4.0	11.3	4.0	11.2	3.8	11.2
포르투갈	3.6	9.9	3.7	11.5	3.5	12.2	3.1	11.8	3.0	12.4	2.8	12.4	2.8	12.0	2.8	12.4
슬로바키아 공화국	3.1	11.5	2.9	9.3	2.8	9.7	2.7	9.1	2.7	9.6	2.7	9.7
슬로베니아	3.1	13.1	4.3	13.2	4.2	13.1	4.5	13.5	4.4	13.9	4.3	13.8
스페인	1.2	4.6	1.8	8.4	2.5	9.1	2.1	7.8	2.0	7.6	2.0	8.1	2.3	8.8	2.3	9.1
스웨덴	3.4	9.9	3.6	11.9	3.0	11.8	2.6	12.2	2.5	11.9	2.4	11.9	2.3	11.8	2.2	11.7
스위스	1.7	5.0	0.4	4.5	1.5	5.5	1.4	5.3	1.3	5.3	1.3	5.3	1.3	5.3	1.3	5.3
터키	1.6	3.4	0.1	4.1	2.8	9.8	5.2	12.0	4.9	12.1	5.1	11.9	5.5	13.0	5.2	12.2
영국	3.5	9.3	3.2	9.7	3.4	10.0	2.9	9.6	2.8	10.4	2.8	10.4	2.7	10.3	2.6	10.3
미국	1.6	3.9	1.1	3.9	1.1	3.9	1.0	3.6	0.9	3.7	1.0	3.7	0.9	3.8	0.9	3.8
OECD 평균	2.9	9.0	2.6	9.5	2.9	10.3	2.7	9.9	2.7	10.0	2.7	10.1	2.6	10.2	2.6	10.3

주: 소비세 부담률은 OECD Statistics의 '5121 Excesses'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오른쪽에 기재한 숫자는 '5100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를 기준으로 산정한 생산, 판매, 거래 등에 관한 세금에 관한 비중임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접속일자: 2017. 9. 1.)

바. 기타

1) 거래세(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 거래세 부담률은 ‘GDP 대비 거래세 세수 비중’으로 산정함
 - 거래세 세수는 OECD 세수 통계에서 ‘거래세(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를 기준으로 함
- OECD 회원국의 거래세 부담률은 1980년 이후 평균적으로 0.4%~0.5%로 나타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2015년¹⁶⁷⁾과 2014년 기준 거래세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거래세 부담률은 2015년 2.0%, 2014년 1.6%로, 이는 1980년 0.8%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에 해당함

표 II-9 OECD 회원국의 거래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0.7	1.0	1.4	1.0	0.9	0.9	1.1	1.3	..
오스트리아	0.2	0.3	0.3	0.3	0.3	0.3	0.3	0.3	0.3
벨기에	0.7	0.9	1.0	1.0	1.0	1.0	1.0	1.0	1.1
캐나다	0.0	0.0	0.0	0.2	0.2	0.2	0.2	0.2	0.2
칠레	..	0.4	0.6	0.2	0.2	0.3	0.2	0.2	0.2
체코	0.2	0.2	0.2	0.2	0.2	0.2	0.3
덴마크	0.6	0.5	0.3	0.3	0.3	0.3	0.2	0.3	0.3
에스토니아	0.0	0.0	0.0	0.0	0.0	0.0	0.0
핀란드	0.5	0.8	0.3	0.3	0.3	0.3	0.3	0.3	0.4
프랑스	0.5	0.6	0.5	0.5	0.6	0.6	0.6	0.6	0.7
독일	0.2	0.2	0.2	0.2	0.2	0.3	0.3	0.3	0.4
그리스	0.6	0.8	1.4	0.5	0.4	0.4	0.3	0.3	..

167) 호주,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제외한 31개국 기준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헝가리	0.4	0.3	0.2	0.3	0.2	0.3	0.3
아이슬란드	0.5	0.8	0.4	0.2	0.2	0.2	0.2	0.2	0.2
아일랜드	0.4	0.6	1.0	0.5	0.5	0.5	0.6	0.6	0.6
이스라엘	0.5	0.3	0.3	0.3	0.3	0.3	0.4
이탈리아	1.0	0.8	1.0	1.1	1.0	0.9	1.1	1.1	1.1
일본	0.5	0.7	0.4	0.3	0.3	0.3	0.3	0.3	0.3
대한민국	0.8	1.5	1.9	1.7	1.8	1.6	1.5	1.6	2.0
라트비아	0.2	0.1	0.2	0.2	0.2	0.2	0.2
룩셈부르크	0.7	1.0	1.0	0.4	0.4	0.4	0.5	0.6	0.5
멕시코	0.1	0.1	0.1	0.1	0.1	0.1	0.1	0.1	..
네덜란드	0.4	0.4	0.8	0.4	0.3	0.2	0.2	0.2	0.3
뉴질랜드	0.2	0.1	0.1	0.0	0.0	0.0	0.0	0.0	0.0
노르웨이	0.1	0.1	0.2	0.2	0.2	0.2	0.2	0.2	0.3
폴란드	0.3	0.2	0.1	0.1	0.1	0.1	..
포르투갈	0.3	0.3	0.7	0.5	0.4	0.4	0.3	0.4	0.4
슬로바키아 공화국	0.1	0.0	0.0	0.0	0.0	0.0	0.0
슬로베니아	0.1	0.1	0.1	0.1	0.1	0.1	0.1
스페인	0.8	0.8	0.9	0.7	0.6	0.5	0.5	0.6	0.7
스웨덴	0.2	0.9	0.2	0.3	0.2	0.2	0.3	0.3	0.3
스위스	0.5	0.6	0.9	0.4	0.4	0.2	0.2	0.2	0.3
터키	0.6	0.3	0.6	0.8	0.8	0.9	1.1	1.1	1.1
영국	0.3	0.3	0.8	0.6	0.5	0.5	0.7	0.8	0.7
미국	0.0	0.0	0.0	0.0	0.0	0.0	0.0	0.0	0.0
OECD 평균	0.4	0.5	0.5	0.4	0.4	0.4	0.4	0.4	..

주: 거래세 부담률은 OECD Statistics의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접속일자: 2017. 9. 1.)

2) 기타 재산세

□ 기타 재산세 부담률은 'GDP 대비 기타 재산세 세수 비중'으로 산정함

○ 재산세 세수는 OECD 세수 통계에서 '재산세(4000: Taxes on property)'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와 거래세(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를 차감한 값'을 기준으로 함

- OECD의 평균 기타 재산세 부담률은 1980년 1.0%에서 2014년에 1.3%로 0.3%p 증가함
 -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3.5%)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체코와 오스트리아(0.2%)임
 - 우리나라(0.8%)는 2015년 수치가 집계된 31개국¹⁶⁸⁾ 중 20위에 해당함
 - 2014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3.5%)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체코와 멕시코(0.2%)임
 - 우리나라(0.8%)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5위로, OECD 평균(1.3%)보다 낮음
- 우리나라의 기타 재산세 부담률은 1980년 0.5%에서 2015년 0.8%로 0.3%p 증가함

표 II-10 OECD 회원국의 기타 재산세 부담률(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2	1.5	1.3	1.4	1.4	1.4	1.5	1.6	..
오스트리아	0.8	0.7	0.2	0.2	0.2	0.2	0.5	0.3	0.2
벨기에	0.2	0.4	0.6	1.5	1.5	1.6	1.7	1.8	1.7
캐나다	2.7	3.5	3.3	3.6	3.5	3.5	3.5	3.5	3.5
칠레	..	0.6	0.7	0.6	0.6	0.6	0.6	0.6	0.7
체코	0.2	0.2	0.2	0.2	0.2	0.2	0.2
덴마크	1.7	1.2	1.0	1.3	1.4	1.3	1.4	1.4	1.4
에스토니아	0.4	0.3	0.3	0.3	0.3	0.3	0.3
핀란드	0.1	0.1	0.5	0.6	0.6	0.6	0.7	0.7	0.8

168) 호주,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제외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프랑스	1.2	1.6	2.0	2.6	2.6	2.7	2.8	2.8	2.9
독일	0.9	0.8	0.4	0.4	0.5	0.5	0.5	0.5	0.5
그리스	0.1	0.1	0.3	1.1	1.9	2.1	2.6	1.1	..
헝가리	0.2	0.8	0.9	0.9	1.1	1.0	1.0
아이슬란드	1.3	1.7	2.3	2.0	2.1	2.2	2.1	2.2	1.7
아일랜드	1.0	0.8	0.5	0.8	1.0	1.1	1.3	1.4	0.8
이스라엘	2.5	2.8	2.9	2.6	2.6	2.6	2.7
이탈리아	0.0	0.0	0.8	0.9	1.1	1.7	1.6	1.7	1.7
일본	1.3	1.5	2.0	2.1	2.2	2.1	2.0	2.0	2.0
대한민국	0.5	0.5	0.6	0.7	0.7	0.7	0.8	0.8	0.8
라트비아	0.9	0.7	0.8	0.8	0.8	0.8	0.8
룩셈부르크	1.2	1.7	2.9	2.2	2.1	2.1	2.2	2.3	2.6
멕시코	0.2	0.1	0.2	0.2	0.2	0.2	0.2	0.2	..
네덜란드	0.9	0.9	0.9	0.7	0.7	0.7	0.8	1.0	0.9
뉴질랜드	2.0	2.3	1.7	2.0	2.0	2.0	1.9	2.0	2.0
노르웨이	0.6	1.0	0.7	0.9	0.9	0.9	0.9	0.9	0.8
폴란드	1.1	1.1	1.1	1.2	1.3	1.2	..
포르투갈	0.0	0.2	0.4	0.6	0.7	0.7	0.8	0.8	0.9
슬로바키아 공화국	0.5	0.4	0.4	0.4	0.4	0.4	0.4
슬로베니아	0.5	0.5	0.5	0.5	0.6	0.5	0.5
스페인	0.1	0.9	1.0	1.0	1.1	1.3	1.4	1.5	1.5
스웨덴	0.1	0.8	1.3	0.8	0.8	0.8	0.8	0.8	0.8
스위스	1.3	1.1	1.3	1.3	1.3	1.3	1.3	1.4	1.4
터키	0.1	0.0	0.1	0.2	0.3	0.2	0.2	0.3	0.3
영국	3.6	2.2	2.8	3.2	3.2	3.2	3.2	3.1	3.1
미국	2.4	2.8	2.5	3.0	2.9	2.8	2.7	2.7	2.6
OECD 평균	1.0	1.1	1.1	1.2	1.3	1.3	1.4	1.3	..

주: 기타 재산세 부담률은 OECD Statistics의 '4000 Taxes on property'에서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와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를 차감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접속일자: 2017. 9. 1.)

3) 환경에너지세(Environmentally related tax)

- 환경에너지세 부담률은 ‘GDP 대비 환경세 세수 비중’으로 산정함
 - 환경에너지세 세수는 OECD 환경 관련 세수 통계(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동 자료는 1994년 이후 수치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2015년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2개국에 대한 수치만 집계되어 조사기간을 1994년, 2000년,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함
 - OECD 회원 32개국 중 라트비아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OECD 회원국의 환경에너지세 평균 부담률은 1994년 1.85%에서 2014년 1.61%로 0.24%p 감소함
 - 2014년 기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11%)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0.06%)임
 - 우리나라(2.54%)는 OECD 회원국 중 2014년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라트비아와 폴란드를 제외한 34개국 중 13위로, OECD 평균(1.61%)보다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세 부담률은 1994년 1.91%에서 2014년 2.54%로 0.63%p 증가함

표 II-11 OECD 회원국의 환경에너지세 부담률(1994년, 2000년, 2010년~2014년)

(단위: %)

국가	1994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호주	2.32	2.41	1.80	1.78	2.07	2.13	1.91
오스트리아	2.23	2.93	2.83	2.92	2.88	2.84	2.88
벨기에	2.42	2.48	2.24	2.29	2.18	2.04	2.03
캐나다	1.63	1.34	1.19	1.17	1.15	1.15	1.15
칠레	1.18	1.57	1.03	1.09	1.13	1.13	1.20
체코	2.74	2.44	2.72	2.86	2.83	2.78	2.65

(단위: %)

국가	1994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덴마크	4.09	4.98	4.18	4.21	4.10	4.24	4.11
에스토니아	0.71	1.60	2.92	2.70	2.69	2.53	2.56
핀란드	2.79	3.10	2.70	3.04	3.00	2.96	2.88
프랑스	1.92	2.24	1.84	1.89	1.90	1.96	1.97
독일	2.35	2.29	2.13	2.17	2.11	2.04	1.94
그리스	..	2.25	2.44	2.61	2.74	2.74	2.77
헝가리	3.00	2.96	2.77	2.65	2.78	2.65	2.60
아이슬란드	2.68	3.00	2.05	2.06	2.15	2.02	2.00
아일랜드	3.18	2.77	2.34	2.24	2.16	2.21	2.17
이스라엘	3.31	2.65	3.24	3.18	2.96	2.82	2.97
이탈리아	3.63	2.89	3.18	3.41	3.80	3.68	3.85
일본	1.66	1.73	1.60	1.60	1.58	1.55	1.48
대한민국	1.91	2.65	2.82	2.53	2.63	2.56	2.54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3.03	2.64	2.43	2.42	2.39	2.16	2.00
멕시코	1.60	1.31	-0.21	-0.79	-1.14	-0.35	0.06
네덜란드	3.16	3.55	3.58	3.48	3.33	3.41	3.35
뉴질랜드	1.79	1.67	1.34	1.31	1.31	1.33	1.35
노르웨이	3.36	2.84	2.41	2.28	2.17	2.15	2.12
폴란드	1.49	1.96	1.92	1.86	1.97	1.93	..
포르투갈	3.32	2.61	2.40	2.30	2.14	2.15	2.20
슬로바키아공화국	2.79	2.26	1.84	1.84	1.74	1.74	1.73
슬로베니아	0.33	3.04	3.64	3.48	3.82	3.93	3.86
스페인	2.15	2.19	1.65	1.61	1.61	1.90	1.89
스웨덴	2.77	2.67	2.59	2.41	2.40	2.36	2.21
스위스	1.79	1.89	1.87	1.83	1.81	1.78	1.76
터키	1.12	2.77	3.94	3.74	3.63	4.06	3.83
영국	2.61	2.74	2.46	2.41	2.38	2.36	2.32
미국	1.09	0.96	0.79	0.79	0.78	0.76	0.72
OECD 평균	1.85	1.83	1.65	1.62	1.60	1.63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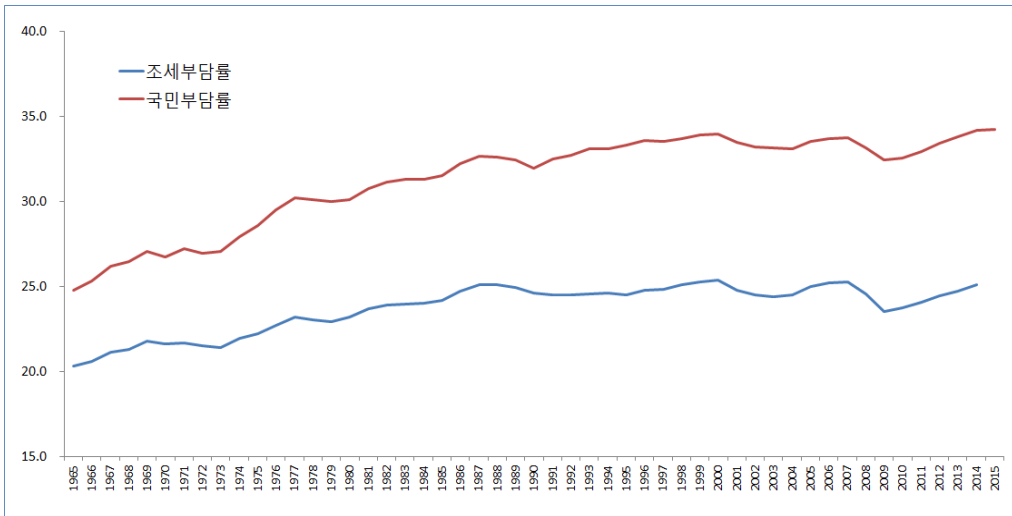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접속일자: 2017. 9. 1.)

03

소결

- 2015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196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196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2010년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기준 평균 국민부담률은 34.3%로 추정됨
 - 이러한 증가 추세는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공공부문 지출 증가를 위한 재정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그림 II-6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변화 추이(1965년~2015년)



자료: OECD Statistics를 토대로 저자 작성

-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은 국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2014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15.2%(멕시코)에서 49.6%(덴마크)까지의 범위로 나타나며, 조세부담률은 12%(룩셈부르크)에서 49.5%(덴마크)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2014년 기준 각 세목별 세수 비중을 살펴보면, 법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거래세와 환경에너지세는 각 세수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소득세, 부가세 및 판매세, 소비세와 기타 재산세는 세수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12 우리나라의 세목별 세수 비중(2014년)

(단위: %)

구분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세 · 판매세	상속세 · 증여세	소비세	거래세	기타 재산세	환경 에너지세
우리나라	4.0	3.2	4.2	0.3	1.9	1.6	0.8	2.54
최대	26.8 (덴마크)	6.6 (노르웨이)	9.7 (뉴질랜드, 이스라엘)	0.7 (벨기에)	5.2 (터키)	1.6 (우리나라)	3.5 (캐나다)	4.11 (덴마크)
최소	1.4 (칠레)	1.4 (슬로베니아)	2.0 (미국)	0.0 (상속세 폐지국 외)	0.9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0.0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미국)	0.2 (체코, 멕시코)	0.06 (멕시코)
OECD 평균	8.4	2.8	6.9	0.1	2.6	0.4	1.3	1.61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III. OECD 회원국의 세수입 구조



Ⅲ

OECD 회원국의 세수입 구조

01

국세·지방세 구조

- OECD국의 국세, 지방세 구조를 조사한 결과 OECD국의 평균 전체 세수 대비 국세 비중은 2015년 기준 79.5%, 지방세 비중은 20.5%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세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은 제외한 금액임
 - 국세는 OECD 통계상 초국가(Supranational)¹⁶⁹⁾와 연방 또는 중앙정부(Federal or Central government)의 세수를 합한 금액이며, 지방세는 주정부(State/Regional Government)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세수를 합한 금액임

- 연방국가 중 일부 국가에서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국가는 모두 국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방국가 중 미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연방국가 중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멕시코의 국세 비중은 80%~93%로 다른 연방국가의 국세비중인 44%~5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의 국세 비중은 영국, 이탈리아, 대한민국,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 순으로

169) 유럽연합(EU)을 대신하여 EU 회원국이 징수한 관세는 OECD 통계상 정부형태가 초국가(Supranational)로 분류됨(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P.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세 비중이 지방세 비중보다 높음

- 2015년 기준 국세 비중은 영국 93.9%, 이탈리아 76.7%, 대한민국 75.4%, 프랑스 71.1%, 일본 60.7%, 미국 56.8%, 독일 50%임

- 주요국 대부분이 국세, 지방세 비중에 큰 변화가 없으나 이탈리아는 2000년대에 들어 국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함
 - 이탈리아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1990년 4.3%에서 2000년 21.6%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목 중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기타세수액의 증가로 인한 것임
 - 우리나라, 프랑스의 경우 2015년 기준 지방세 비중은 1990년에 비해 각각 5.6%p, 12.2%p만큼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III-1 OECD 회원국의 국세·지방세 구조 변화 추이¹⁾

(단위: %)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연방국가																			
오스트리아	70.0	30.0	68.4	31.6	93.3	6.7	93.6	6.4	93.7	6.3	93.7	6.3	93.7	6.3	93.7	6.3	93.9	6.1	
멕시코 ³⁾	96.2	2.7	96.0	4.0	95.7	4.3	94.2	5.8	93.8	6.2	92.7	7.3	92.6	7.4	92.4	7.6	92.4	7.6	
벨기에	94.9	5.1	91.2	8.8	90.7	9.3	84.3	15.7	84.2	15.8	85.1	14.9	84.6	15.4	85.0	15.0	81.1	18.9	
호주 ³⁾	81.8	18.2	79.5	20.5	81.8	18.2	80.4	19.6	81.3	18.7	81.4	18.6	80.9	19.1	80.0	20.0	80.0	20.0	
미국	60.8	39.2	54.7	45.3	59.4	40.6	49.6	50.4	52.0	48.0	52.8	47.2	54.3	45.7	55.5	44.5	56.8	43.2	
독일	51.7	48.3	52.1	47.9	50.7	49.3	51.9	48.1	52.0	48.0	51.4	48.6	51.0	49.0	50.8	49.2	50.0	50.0	
스위스	42.1	57.9	45.0	55.0	49.2	50.8	48.1	51.9	48.4	51.6	47.3	52.7	47.4	52.6	46.9	53.1	47.5	52.5	
캐나다	48.4	51.6	47.4	52.6	49.1	50.9	44.3	55.7	44.7	55.3	43.9	56.1	44.1	55.9	44.4	55.6	44.5	55.5	
단일국가																			
에스토니아	- ⁴⁾	-	-	-	97.6	2.4	97.7	2.3	97.6	2.4	97.9	2.1	98.2	1.8	98.4	1.6	98.5	1.5	
체코	- ⁴⁾	-	-	-	98.4	1.6	97.6	2.4	97.8	2.2	97.8	2.2	97.8	2.2	97.8	2.2	97.9	2.1	
이탈란드	96.0	4.0	97.1	2.9	98.0	2.0	96.4	3.6	96.4	3.6	96.3	3.7	96.6	3.4	96.9	3.1	97.4	2.6	
슬로바키아	-	-	-	-	97.6	2.4	94.9	5.1	95.0	5.0	94.7	5.3	94.9	5.1	95.2	4.8	96.4	3.6	
룩셈부르크	90.9	9.1	91.2	8.8	92.1	7.9	93.9	6.1	93.4	6.6	94.4	5.6	95.0	5.0	95.4	4.6	95.1	4.9	
그리스	96.7	3.3	98.4	1.6	98.9	1.2	95.7	4.3	92.3	7.7	91.7	8.3	92.0	8.0	95.8	4.2	94.6	5.4	
영국	87.3	12.7	91.6	8.4	95.1	4.9	93.6	6.4	93.9	6.1	93.9	6.1	93.9	6.1	93.9	6.1	93.9	6.1	
네덜란드	96.9	3.1	96.2	3.8	94.5	5.5	94.4	5.6	93.8	6.2	93.4	6.6	92.2	6.5	93.7	6.3	93.9	6.1	
뉴질랜드	92.8	7.2	93.9	6.1	94.3	5.7	92.8	7.2	92.9	7.1	93.2	6.8	93.3	6.7	93.3	6.7	93.3	6.7	
칠레	- ⁴⁾	-	93.5	6.5	91.5	8.5	92.6	7.4	92.9	7.1	92.9	7.1	92.1	7.9	91.9	8.1	91.9	8.1	

(단위: %)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제	지방세	국제	지방세	국제	지방세	국제	지방세	국제	지방세	국제	지방세	국제	지방세	국제	지방세	국제	지방세
헝가리	- ⁴⁾	-	-	-	92.3	7.7	90.5	9.5	89.8	10.2	90.4	9.6	91.0	9.0	91.3	8.7	91.1	8.9
이스라엘	- ⁴⁾	-	-	-	92.1	7.9	89.5	10.5	89.6	10.4	89.7	10.3	90.2	9.8	90.5	9.5	90.7	9.3
포르투갈	94.9	5.1	92.4	7.6	91.3	8.7	90.5	9.5	90.8	9.2	90.5	9.5	90.4	9.6	89.9	10.1	89.8	10.2
터키	92.7	7.2	89.1	10.9	89.1	10.9	87.6	12.4	87.8	12.2	87.7	12.3	87.9	12.1	86.8	13.2	86.5	13.5
슬로베니아	-	-	-	-	88.3	11.7	81.7	18.3	81.7	18.3	81.3	18.7	81.8	18.2	82.3	17.7	84.0	16.0
노르웨이	75.2	24.8	72.3	27.7	80.9	19.1	82.4	17.6	84.4	15.6	83.9	16.1	82.5	17.5	81.3	18.7	79.3	20.7
폴란드 ³⁾	-	-	-	-	84.8	15.2	80.5	19.5	80.9	19.1	79.7	20.3	79.0	21.0	78.2	21.8	78.2	21.8
이탈리아	97.3	2.7	95.7	4.3	78.4	21.6	77.6	22.4	77.3	22.7	76.8	23.2	76.9	23.1	76.3	23.7	76.7	23.3
대한민국	- ²⁾	- ²⁾	81.0	19.0	81.9	18.1	78.3	21.7	78.6	21.4	79.0	21.0	79.0	21.0	76.9	23.1	75.4	24.6
덴마크	69.8	30.2	69.0	31.0	68.6	31.4	73.0	27.0	73.0	27.0	73.4	26.6	73.4	26.6	74.8	25.2	73.0	27.0
라트비아	- ⁴⁾	-	-	-	74.5	25.5	70.1	29.9	71.2	28.8	72.1	27.9	72.6	27.4	72.3	27.7	72.6	27.4
아이슬란드	82.5	17.5	79.1	20.9	74.7	25.3	71.1	28.9	70.0	30.0	70.7	29.3	70.4	29.6	72.9	27.1	72.2	27.8
프랑스	87.5	12.5	83.2	16.8	80.3	19.8	76.5	23.6	71.3	28.8	71.5	28.8	71.9	28.1	71.3	28.7	71.1	29.0
핀란드	71.7	28.3	71.1	28.9	71.1	28.9	65.4	34.6	67.4	32.6	67.7	32.3	67.1	32.9	66.9	33.1	66.5	33.5
스페인	90.7	9.3	80.5	19.5	74.1	25.9	63.6	35.5	61.4	37.9	57.0	42.5	62.8	36.8	63.5	36.3	63.5	36.1
일본 ³⁾	64.1	35.9	65.2	34.8	59.7	40.3	56.0	44.0	56.9	43.1	57.7	42.3	59.2	40.8	61.1	38.9	60.7	39.3
스웨덴	55.2	44.8	59.8	40.2	60.7	39.3	52.5	47.5	53.4	46.6	51.5	48.5	51.7	48.3	51.8	48.2	52.9	47.1
OECD 평균	76.5	19.6	79.1	20.9	82.0	18.0	79.5	20.5	79.5	20.5	79.3	20.7	79.5	20.5	79.7	20.3	79.5	20.5

주: 1) 국세는 OECD 통계상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와 Supranational의 데이터를 합산하였으며, 지방세는 State/Regional, Local Government의 데이터를 합산함(사회보장기여금은 제외함 수치임)

2) 국제와 지방세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본 표에서는 수치를 제외함

3) 2015년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아 2014년 데이터를 대응치로 사용함

4)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02

직접세·간접세 구조

- OECD국의 직접세, 간접세 구조를 조사한 결과 OECD국의 평균 전체 세수 대비 직접세 비중은 2015년 기준 51.5%, 간접세 비중은 48.5%인 것으로 나타남
 - 직접세는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을 합한 금액임
 - 간접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세율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 소비세, 자본거래세를 합한 금액임

- 국세에서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 비중보다 높은 국가는 2015년 기준 19개국, 낮은 국가는 16개국인 것으로 나타남
 - 직접세 비중이 더 높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일본, 네덜란드,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이스라엘임
 - 간접세 비중이 더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헝가리,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 스웨덴, 슬로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임

-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총 세수의 직·간접세 비중 계산 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의 경우 간접세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그리스, 미국은 간접세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이는 각 국가별로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등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조세정책 차이로 총세수의 직·간접세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임
 - 예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대신 각 주별로 판매세 (Sales tax)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세수 포함 시 직접세 비중은 90%에서

70%로 감소함

- 스웨덴의 경우 국세는 소비과세 중심이고, 지방세는 소득과세 중심이어서¹⁷⁰⁾ 지방세 포함 시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짐
- 스위스의 경우 칸톤별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방 개인소득세율은 13.2%, 법인소득세율은 8.5%인 반면 칸톤별로 지방소득세율은 개인소득의 경우 0%~21%, 법인소득은 3.68%~16.63%로 지방세 포함 시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짐

□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국세의 직접세 비중은 53.9%로 간접세 비중보다 높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세 비중은 1990년 46.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지방정부 세수를 포함한 통합정부의 직접세 비중 계산 시, 간접세 비중이 46.1%에서 49%로 다소 증가하나 직접세 비중은 51%로 직접세 비중이 여전히 높음
- 또한, 주요국인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지방세수를 포함한 총세수 고려 시 우리나라보다 직접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지방세수를 포함한 총세수의 직접세 비중은 미국 78%, 캐나다 71.7%, 호주 68.6%, 일본 64.5%, 이탈리아 57.3%, 프랑스 58.7%, 독일 53.2%인 것으로 나타남

170)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국의 지방소득세제』, 2016, p. 82

표 III-2 OECD 회원국의 직접세·간접세 비중

(단위: %)

국가	정부 형태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호주	중앙정부	69.3	30.7	73.5	26.5	71.4	28.6	71.8	28.2	73.8	26.2	74.7	25.3	73.8	26.2	73.9	26.1	74.3	25.7
	통합정부	66.3	33.7	72.0	28.0	66.8	33.2	67.3	32.7	69.4	30.6	68.3	31.7	71.3	28.7	68.6	31.4	68.6	31.4
오스트리아	중앙정부	56.0	44.0	54.6	45.4	58.5	41.5	58.4	41.6	59.0	41.0	59.2	40.8	60.3	39.7	60.9	39.1	61.4	38.6
	통합정부	53.5	46.5	52.6	47.4	55.0	45.0	55.6	44.4	55.4	44.6	55.6	44.4	56.8	43.2	57.0	43.0	57.7	42.3
벨기에	중앙정부	63.6	36.4	61.4	38.6	62.1	37.9	60.8	39.2	61.9	38.1	63.0	37.0	63.7	36.3	64.2	35.8	62.4	37.6
	통합정부	59.7	40.3	58.7	41.3	59.2	40.8	58.0	42.0	58.8	41.2	58.8	41.2	63.2	36.8	60.7	39.3	60.5	39.5
캐나다	중앙정부	71.4	28.6	73.2	26.8	76.7	23.3	76.9	23.1	78.0	22.0	78.2	21.8	78.1	21.9	77.9	22.1	77.5	22.5
	통합정부	63.6	36.4	-	-	72.0	28.0	71.2	28.8	71.4	28.6	71.8	28.2	72.9	27.1	72.2	27.8	71.7	28.3
칠레	중앙정부	-	-	27.4	72.6	26.7	73.3	44.7	55.3	47.1	52.9	46.1	53.9	41.4	58.6	39.7	60.3	41.5	58.5
	통합정부	-	-	28.0	72.0	27.9	72.1	44.1	55.9	46.3	53.7	45.2	54.8	40.9	59.1	39.3	60.7	41.1	58.9
체코	중앙정부	-	-	-	-	45.2	54.8	40.5	59.5	40.5	59.5	40.4	59.6	39.9	60.1	41.6	58.4	40.6	59.4
	통합정부	-	-	-	-	42.1	57.9	37.9	62.1	37.9	62.1	38.1	61.9	37.9	62.1	39.3	60.7	38.4	61.6
덴마크	중앙정부	47.2	52.8	56.2	43.8	53.7	46.3	57.5	42.5	57.5	42.5	58.1	41.9	59.4	40.6	62.6	37.4	59.3	40.7
	통합정부	60.3	39.7	65.0	35.0	65.4	34.6	65.6	34.4	65.5	34.5	66.0	34.0	66.8	33.2	68.9	31.1	66.9	33.1
에스토니아	중앙정부	-	-	-	-	41.9	58.1	35.8	64.2	35.4	64.6	35.7	64.3	38.3	61.7	39.1	60.9	38.8	61.2
	통합정부	-	-	-	-	40.2	59.8	33.9	66.1	33.1	66.9	33.8	66.2	36.2	63.8	35.8	64.2	36.3	63.7
핀란드	중앙정부	37.6	62.4	39.7	60.3	49.0	51.0	63.9	36.1	63.5	36.5	64.4	36.0	64.0	36.5	63.5	63.5	36.7	63.3
	통합정부	52.1	47.9	53.8	46.2	60.1	39.9	53.5	46.5	52.6	47.4	51.8	48.2	52.1	47.9	52.4	47.6	53.1	46.9

(단위: %)

국가	정부 형태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프랑스	중앙정부	43.7	56.3	46.3	53.7	49.0	51.0	49.5	50.5	48.3	51.7	49.5	50.5	50.4	49.6	49.8	50.2	48.5	51.5
	통합정부	44.8	55.2	48.5	51.5	57.3	42.7	57.2	42.8	57.8	42.2	58.7	41.3	61.2	38.8	59.1	40.9	58.7	41.3
독일	중앙정부	45.0	55.0	44.1	55.9	44.8	55.2	43.8	56.2	45.0	55.0	46.8	53.2	47.6	52.4	48.2	51.8	49.3	50.7
	통합정부	57.9	42.1	56.9	43.1	52.1	47.9	49.8	50.2	50.7	49.3	52.0	48.0	54.1	45.9	53.1	46.9	53.8	46.2
그리스	중앙정부	49.5	50.5	39.6	60.4	50.0	50.0	45.2	54.8	44.7	55.3	49.2	50.8	50.3	49.7	53.2	46.8	53.2	46.8
	통합정부	34.1	65.9	31.6	68.4	41.0	59.0	38.9	61.1	39.9	60.1	43.4	56.6	42.1	57.9	37.6	62.4	40.7	59.3
헝가리	중앙정부	-	-	-	-	41.8	58.2	46.1	53.9	42.2	57.8	42.0	58.0	44.3	55.7	43.2	56.8	42.6	57.4
	통합정부	-	-	-	-	41.3	58.7	36.0	64.0	32.4	67.6	33.2	66.8	33.6	66.4	33.3	66.7	32.9	67.1
아이슬란드	중앙정부	35.1	64.9	41.5	58.5	41.8	58.2	47.5	52.5	47.3	52.7	47.6	52.4	49.7	50.3	55.4	44.6	53.4	46.6
	통합정부	37.0	63.0	44.4	55.6	50.9	49.1	59.6	40.4	60.4	39.6	60.5	39.5	62.0	38.0	65.3	34.7	64.1	35.9
아일랜드	중앙정부	47.7	52.3	52.3	47.7	54.1	45.9	55.4	44.6	57.5	42.5	58.4	41.6	58.9	41.1	59.4	40.6	61.1	38.9
	통합정부	47.3	52.7	49.2	50.8	52.3	47.7	52.7	47.3	54.8	45.2	55.7	44.3	56.0	44.0	56.0	44.0	57.2	42.8
이스라엘	중앙정부	-	-	-	-	58.9	41.1	49.1	50.9	49.9	50.1	50.3	49.7	50.9	49.1	49.9	50.1	51.2	48.8
	통합정부	-	-	-	-	59.3	40.7	51.0	49.0	51.8	48.2	52.1	47.9	52.5	47.5	51.6	48.4	52.5	47.5
이탈리아	중앙정부	56.7	43.3	62.1	37.9	60.6	39.4	61.4	38.6	61.0	39.0	61.6	38.4	61.3	38.7	59.0	41.0	59.1	40.9
	통합정부	51.7	48.3	55.1	44.9	57.1	42.9	57.6	42.4	57.1	42.9	58.8	41.2	59.2	40.8	57.5	42.5	57.3	42.7
일본	중앙정부	76.1	23.9	75.2	24.8	63.5	36.5	58.1	41.9	59.0	41.0	60.2	39.8	62.1	37.9	58.0	42.0	57.8	42.2
	통합정부	73.9	26.1	78.6	21.4	67.9	32.1	66.5	33.5	66.8	33.2	67.5	32.5	69.0	31.0	65.8	34.2	64.5	35.5
대한민국	중앙정부	-	-	46.9	53.1	47.2	52.8	48.0	52.0	51.0	49.0	51.6	48.4	51.5	48.5	52.5	47.5	53.9	46.1
	통합정부	31.8	68.2	49.5	50.5	43.4	56.6	46.7	53.3	49.3	50.7	50.1	49.9	55.9	44.1	50.1	49.9	51.0	49.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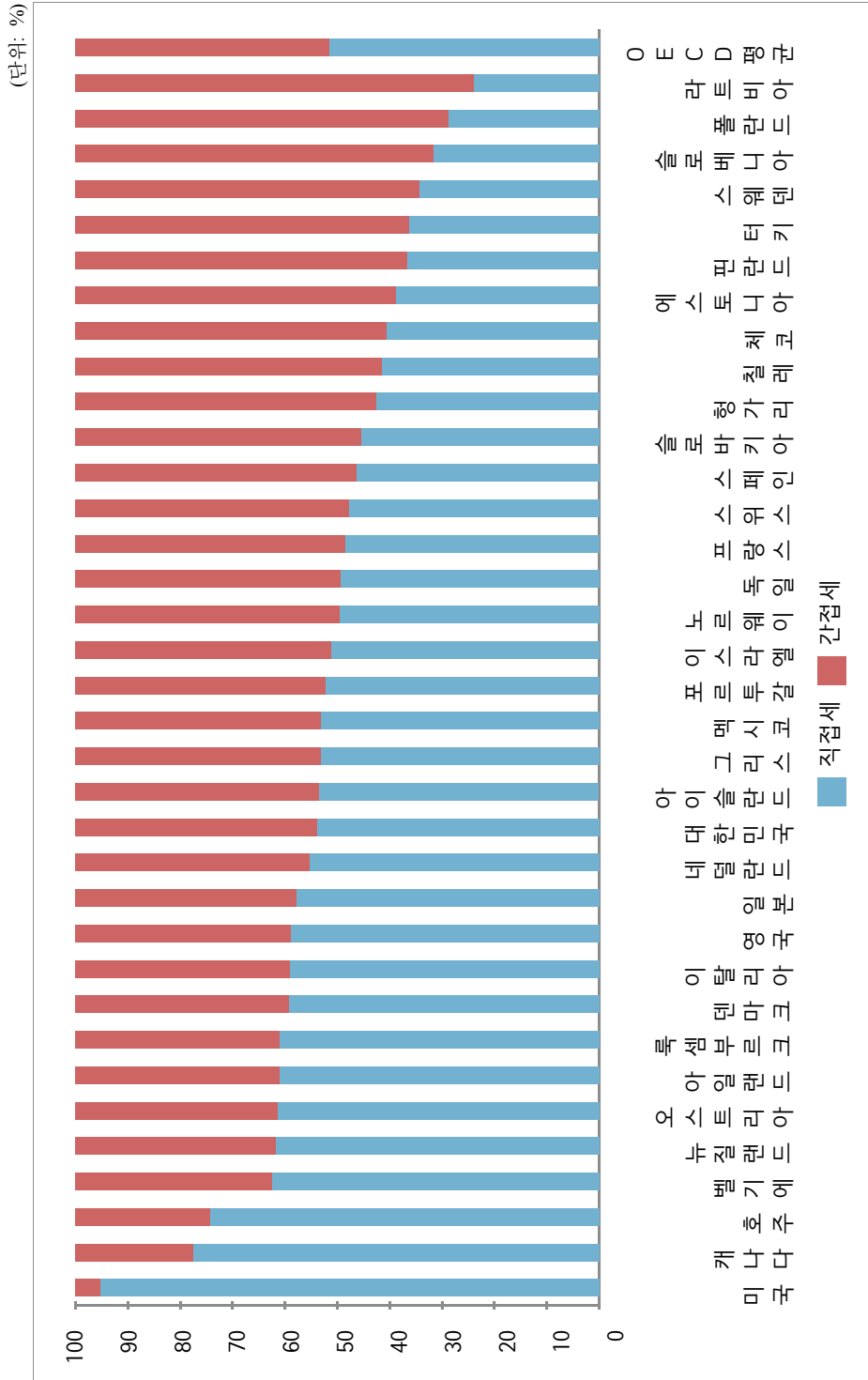
국가	정부 형태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라트비아	중앙정부	-	-	-	-	25.0	75.0	22.2	77.8	22.6	77.4	24.6	75.4	24.7	75.3	24.0	76.0	24.0	76.0
	통합정부	-	-	-	-	41.0	59.0	40.9	59.1	41.0	59.0	41.4	58.6	40.9	59.1	40.6	59.4	40.4	59.6
룩셈부르크	중앙정부	65.4	34.6	62.1	37.9	58.5	41.5	59.0	41.0	57.4	42.6	57.3	42.7	57.8	42.2	56.9	43.1	61.1	38.9
	통합정부	66.7	33.3	63.5	36.5	60.3	39.7	60.0	40.0	58.7	41.3	58.3	41.7	58.6	41.4	57.5	42.5	61.7	38.3
멕시코	중앙정부	66.7	33.3	46.3	53.7	51.5	48.5	56.1	43.9	56.6	43.4	55.4	44.6	59.7	40.3	55.0	45.0	53.1	46.9
	통합정부	39.6	60.4	47.1	52.9	45.9	54.1	51.8	48.2	53.8	46.2	53.6	46.4	59.0	41.0	54.0	46.0	54.0	46.0
네덜란드	중앙정부	62.1	37.9	60.5	39.5	51.6	48.4	52.7	47.3	52.9	47.1	52.4	47.6	52.5	47.5	55.1	44.9	55.3	44.7
	통합정부	57.8	42.2	56.2	43.8	48.3	51.7	48.6	51.4	48.5	51.5	47.6	52.4	47.6	52.4	48.6	51.4	49.8	50.2
뉴질랜드	중앙정부	77.5	22.5	66.5	33.5	66.1	33.9	60.4	39.6	60.2	39.8	61.8	38.2	61.9	38.1	61.7	38.3	61.7	38.3
	통합정부	77.1	22.9	66.2	33.8	65.2	34.8	60.2	39.8	60.1	39.9	61.6	38.4	61.5	38.5	61.4	38.6	61.4	38.6
노르웨이	중앙정부	47.1	52.9	40.0	60.0	54.3	45.7	58.8	41.2	61.5	38.5	61.1	38.9	57.9	42.1	54.6	45.4	49.5	50.5
	통합정부	54.9	45.1	51.3	48.7	59.3	40.7	63.8	36.2	65.4	34.6	65.3	34.7	63.0	37.0	60.5	39.5	57.2	42.8
폴란드	중앙정부	-	-	-	-	34.0	66.0	28.0	72.0	28.0	72.0	29.8	70.2	28.6	71.4	28.7	71.3	28.7	71.3
	통합정부	-	-	-	-	40.6	59.4	38.1	61.9	38.0	62.0	40.4	59.6	40.9	59.1	40.6	59.4	40.6	59.4
포르투갈	중앙정부	42.5	57.5	47.6	52.4	49.6	50.4	47.6	52.4	49.5	50.5	48.8	51.2	54.9	45.1	53.0	47.0	52.2	47.8
	통합정부	32.3	67.7	39.3	60.7	42.4	57.6	41.4	58.6	42.9	57.1	42.0	58.0	48.7	51.3	46.3	53.7	45.7	54.3
슬로바키아	중앙정부	-	-	-	-	40.6	59.4	39.7	60.3	38.7	61.3	42.2	57.8	43.5	56.5	44.7	55.3	45.4	54.6
	통합정부	-	-	-	-	37.5	62.5	35.8	64.2	35.4	64.6	37.1	62.9	37.9	62.1	39.1	60.9	39.8	60.2
슬로베니아	중앙정부	-	-	-	-	37.2	62.8	30.8	69.2	30.4	69.6	29.0	71.0	28.2	71.8	29.5	70.5	31.7	68.3
	통합정부	-	-	-	-	38.8	61.2	36.4	63.6	35.9	64.1	34.4	65.6	32.0	68.0	32.3	67.7	32.8	67.2

(단위: %)

국가	정부 형태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스페인	중앙정부	75.0	25.0	58.1	41.9	53.3	46.7	49.2	50.8	48.0	52.0	45.8	54.2	47.5	52.5	47.2	52.8	46.3	53.7
	통합정부	53.0	47.0	55.7	44.3	49.8	50.2	53.2	46.8	54.7	45.3	55.3	44.7	56.4	43.6	53.2	46.8	52.4	47.6
스웨덴	중앙정부	42.9	57.1	42.5	57.5	47.3	52.7	28.6	71.4	32.3	67.7	30.0	70.0	31.7	68.3	32.2	67.8	34.3	65.7
	통합정부	65.7	34.3	63.3	36.7	65.3	34.7	59.4	40.6	60.9	39.1	60.8	39.2	61.6	38.4	61.8	38.2	62.2	37.8
스위스	중앙정부	35.0	65.0	38.8	61.2	38.2	61.8	44.8	55.2	45.8	54.2	44.4	55.6	45.2	54.8	45.5	54.5	47.7	52.3
	통합정부	67.3	32.7	69.6	30.4	66.3	33.7	67.8	32.2	68.3	31.7	68.1	31.9	68.6	31.4	69.0	31.0	69.8	30.2
터키	중앙정부	69.9	30.1	67.7	32.3	50.8	49.2	37.0	63.0	37.4	62.6	38.2	61.8	35.6	64.4	37.1	62.9	36.3	63.7
	통합정부	65.2	34.7	62.9	37.1	45.1	54.9	32.4	67.6	33.1	66.9	33.7	66.3	31.9	68.1	33.0	67.0	32.3	67.7
영국	중앙정부	63.5	36.5	63.4	36.6	60.5	39.5	60.9	39.1	59.7	40.3	59.0	41.0	58.8	41.2	58.2	41.8	58.8	41.2
	통합정부	64.0	36.0	61.5	38.5	58.1	41.9	59.0	41.0	57.4	42.6	56.6	43.4	56.3	43.7	55.6	44.4	56.1	43.9
미국	중앙정부	91.8	8.2	93.6	6.4	94.9	5.1	93.6	6.4	94.3	5.7	94.1	5.9	94.7	5.3	94.9	5.1	95.3	4.7
	통합정부	77.3	22.7	76.3	23.7	78.9	21.1	75.2	24.8	76.0	24.0	76.2	23.8	76.8	23.2	77.1	22.9	78.0	22.0
OECD	중앙정부	57.5	42.5	54.9	45.1	51.7	48.3	50.2	49.8	50.6	49.4	50.9	49.1	51.5	48.5	51.5	48.5	51.5	48.5
평균	통합정부	55.9	44.0	56.0	44.0	53.0	47.0	52.2	47.8	52.6	47.4	53.0	47.0	53.9	46.1	53.0	47.0	53.2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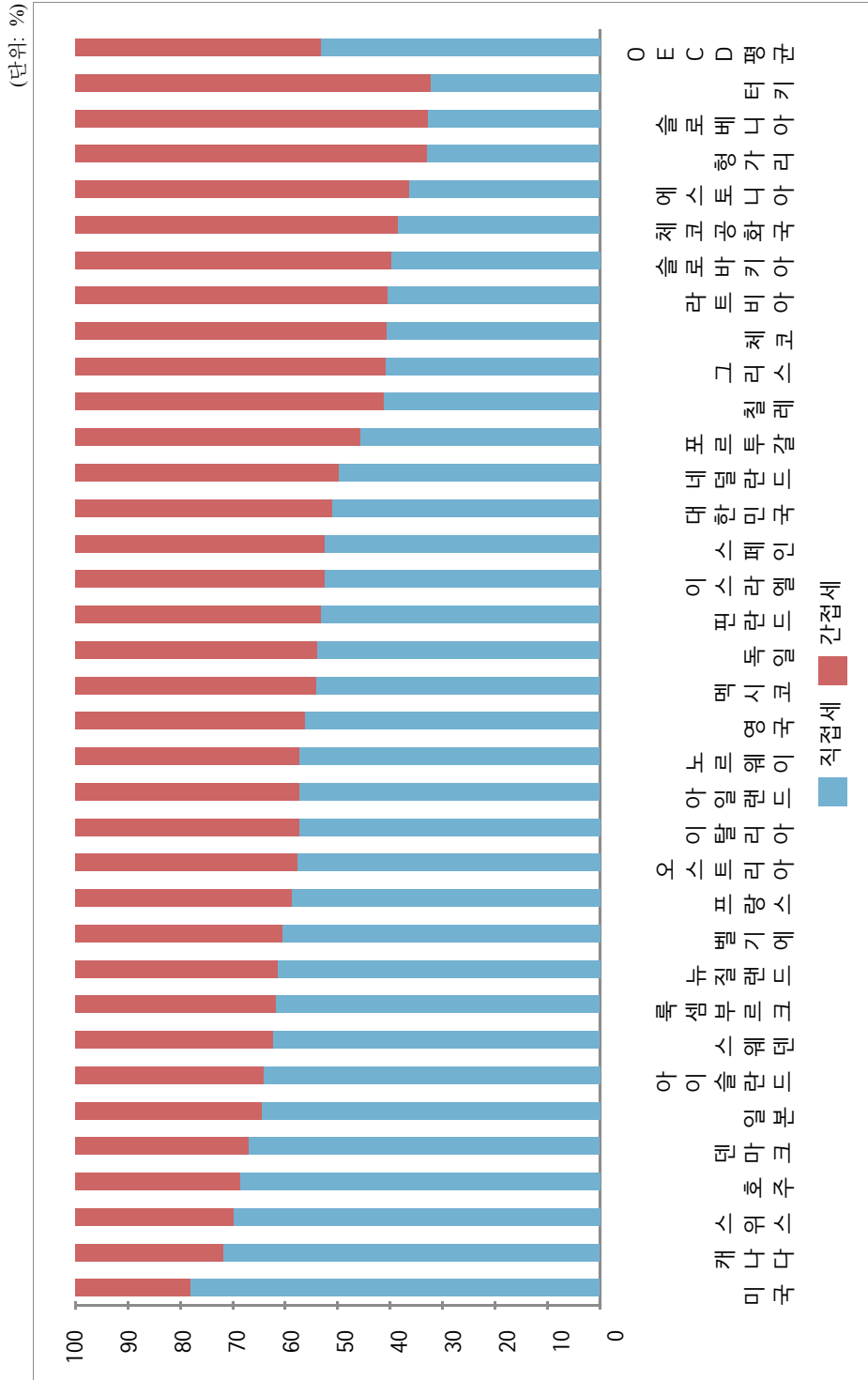
주: 1. 총세수는 OECD 통계상 '2000 사회보장기여금'은 제외된 수치임. 직접세는 10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3000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4000 Taxes on property, 6000 기타를 합한 금액에서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를 차감한 금액이며, 간접세는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와 소비세인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와 EU국의 관세세수인 'Customs duties collected for the EU'의 데이터를 이용함
 2. 중앙정부는 국제 중 직접세-간접세 비중을 구한 수치이며, 통합정부는 국제 및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세수에서 직접세 및 간접세 비중을 구한 수치임
 3.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그림 III-1 OECD 회원국의 직접세·간접세 구조(국세만)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2 OECD 회원국의 직접세·간접세 비중(국세·지방세 모두 포함)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참고하여 저자 작성

03

세목별 세수 비중

-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액이 총세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조사함
 - 총세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제외한 수치임
 - OECD 세수통계상 정부형태는 전체(Total)이며, 총세수(Total Tax Revenue)에서 ‘사회보장기여금(2000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SSC)’를 제외한 데이터를 이용함
 - 세목은 OECD 세수통계의 분류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소비세, 재산세, 환경·에너지세로 구분하였음

표 III-3 세목별 OECD 세수통계 항목

세목		OECD 세수통계 항목
	개인소득세	11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법인소득세	12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corporates
	부가가치세, 판매세	5111 General taxes on goods and services + 5112 Sales tax
	상속·증여세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소비세	5121 Excises
기타	거래세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기타 재산세	4000 Taxes on property(4300 상속·증여세, 4400 금융·자본거래세 제외)
	환경세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

주: 1) OECD 통계데이터의 보다 상세한 세목분류는 본 보고서 pp. 217~219에 제시됨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가. 개인소득세

- OECD국의 평균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1980년대 39%에서 2000년대 31%로 감소하였고, 현재까지 약 31%의 소득세수 비중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소득세수 비중은 1980년 11.6%에서 1990년에 22.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에 17.6%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로 1990년대 수준인 23.8%로 다시 증가함

- OECD 회원국 35개 중 최근 5년간 소득세수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23개국, 감소한 국가는 12개국으로 나타남
 - 소득세수 비중이 증가한 국가 중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미국은 최근 5년간 소득세수 비중이 평균 5%p 정도 증가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멕시코도 소득세수 비중이 평균 2%~3%p 정도 증가함
 - 반면, 헝가리, 라트비아, 스페인은 최근 5년간 소득세수 비중이 각각 6.3%p, 2.7%p, 1.2%p 감소함

- 개인소득세 비중이 증가한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근 5년간 개인소득세율을 인상한 국가이며, 개인소득세 비중이 감소한 국가 대부분은 최근 5년간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함

-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3.8%로 OECD 평균인 31.8%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국 중 10번째로 낮은 수준임
 - 개인소득세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54.6%), 미국(53.4%), 독일(43.1%), 핀란드(42.6%), 캐나다(43.4%), 벨기에(41.3%), 스위스(41.2%), 호주(41%)가 있음
 - 우리나라보다 개인소득세수 비중이 낮은 국가로 칠레(7.6%), 슬로바키아(17.2%), 체코(19%), 헝가리(19.1%), 터키(20.6%)가 있으며 이외에 폴란드,

그리스, 슬로베니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

- G7국은 개인소득세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그림 III-3] 참고)

표 III-4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수 비중(총세수 기준)

(단위: %)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44.0	43.0	37.8	38.4	39.3	39.1	39.0	41.0	-
오스트리아	33.6	31.2	33.6	34.4	34.3	34.8	34.9	35.9	36.8
벨기에	51.1	47.9	45.3	41.8	41.7	41.1	41.9	41.9	41.3
캐나다	38.1	46.5	42.6	41.1	42.3	42.9	42.7	42.8	43.4
칠레	-	6.1	8.2	7.3	7.0	7.3	7.7	7.8	7.6
체코	-	-	23.2	18.5	19.0	18.8	18.9	19.2	19.0
덴마크	52.5	54.0	53.4	52.0	51.9	51.3	54.6	54.1	54.6
에스토니아	-	-	33.9	25.8	25.5	25.3	26.4	26.4	25.8
핀란드	46.6	46.7	41.0	42.0	41.0	41.6	41.2	43.0	42.6
프랑스	20.3	19.1	28.2	27.7	27.6	28.9	29.6	29.9	30.0
독일	45.1	44.1	41.5	39.9	40.2	41.5	42.1	42.6	43.1
그리스	22.2	20.2	20.8	18.9	20.8	28.4	24.1	23.1	0.0
헝가리	-	-	26.3	25.4	21.0	21.8	20.8	20.6	19.1
아이슬란드	23.6	27.8	37.7	41.4	42.5	41.8	42.7	38.6	39.8
아일랜드	37.3	38.5	36.2	36.9	38.5	39.3	38.8	38.6	38.1
이스라엘	-	-	34.1	21.7	21.7	21.7	21.3	22.2	23.5
이탈리아	37.2	39.2	34.8	39.0	38.0	37.7	37.6	36.9	37.5
일본	34.3	37.8	32.5	31.6	31.4	31.8	32.5	31.3	-
대한민국	11.6	22.2	17.6	18.6	19.3	19.9	20.8	22.2	23.8
라트비아	-	-	28.3	32.0	29.5	29.2	28.9	29.0	28.7
룩셈부르크	37.9	33.2	25.0	29.6	31.3	30.9	32.2	32.5	34.4
멕시코	0.0	0.0	0.0	21.0	21.7	23.2	22.9	24.8	-
네덜란드	42.4	39.5	24.6	33.7	33.7	32.8	31.8	31.0	33.0
뉴질랜드	61.6	48.0	43.1	37.7	37.0	37.7	38.0	38.6	38.2
노르웨이	36.1	35.5	30.4	30.4	29.6	30.2	32.6	34.1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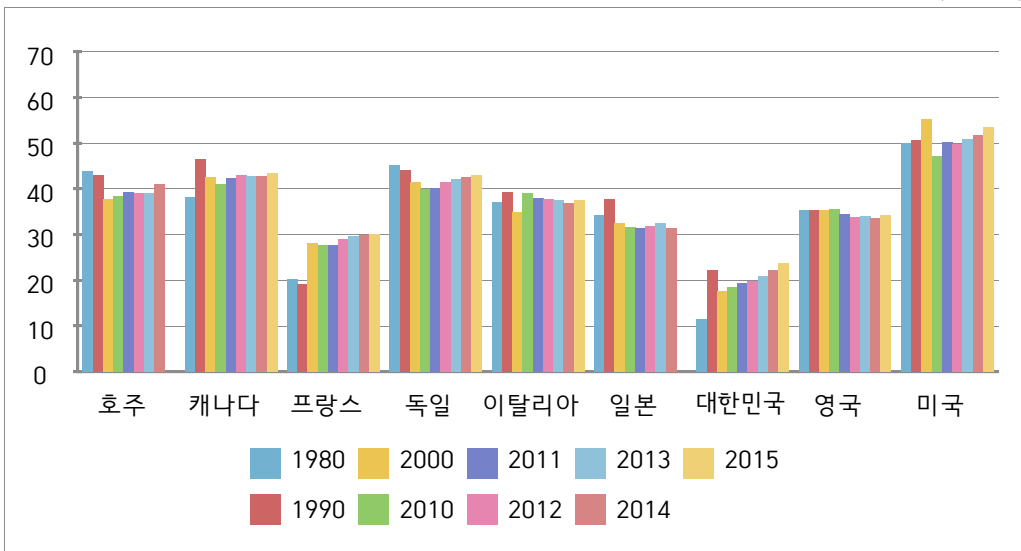
(단위: %)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폴란드	-	-	21.7	21.4	21.1	22.4	22.8	23.0	-
포르투갈	-	21.8	23.4	24.6	25.5	25.2	30.6	30.5	28.7
슬로바키아	-	-	17.0	16.5	17.1	18.2	17.0	16.9	17.2
슬로베니아	-	-	24.2	25.3	25.5	25.9	23.3	23.1	23.3
스페인	39.6	33.7	29.3	34.9	36.5	35.7	34.4	34.0	32.1
스웨덴	57.6	52.9	45.1	37.3	35.9	36.9	37.0	37.2	37.1
스위스	50.8	42.9	39.3	41.9	41.0	42.1	41.5	41.2	41.2
터키	50.7	33.3	27.4	18.7	18.7	19.8	19.2	20.6	20.6
영국	35.3	35.4	35.3	35.5	34.5	33.9	34.1	33.7	34.3
미국	50.0	50.6	55.2	47.1	50.3	49.8	51.0	51.7	53.4
OECD 평균	36.9	35.2	31.4	31.1	31.2	31.7	31.9	32.0	31.8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그림 III-3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법인소득세

- OECD국의 평균 법인소득세 비중은 1980년대 9.9%에서 2000년대 12.9%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부터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 기준 11.4%임
 -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1980년대 11.2%에서 2011년 20.2%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 주요국 중 독일, 일본, 미국은 법인세 비중이 다소 증가 또는 유지되는 반면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법인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그림 III-4] 참고)

-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최근 5년간 법인세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20개국, 감소한 국가는 15개국으로 나타남
 - 법인세 비중이 증가한 국가 중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슬로바키아는 최근 5년간 법인세 비중이 3%~5.6% 정도 증가하였으며, 기타 국가는 0.6%~2.8% 정도 증가함
 - 반면, 그리스, 노르웨이는 법인세 비중이 각각 4.6%p, 14.1%p만큼 큰 폭으로 감소함

- 개인소득세와 달리 법인세 비중이 큰 폭으로 변화한 국가 대부분은 법인세율 인상과 상관없이 다른 세목의 변화 또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법인세 비중의 증감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법인세가 증가한 국가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슬로바키아이며, 나머지 국가는 기존의 법인세율을 계속 유지하였음에도 법인세가 증가함
 - 법인세 비중이 감소한 국가 중 노르웨이는 최근 5년간 법인세율을 4% 인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리스는 오히려 최근 5년간 법인세율을 9%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감소하여 법인세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7.5%로 OECD 평균인 11.4%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임
- 법인소득세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칠레(25.5%), 일본(21.4%), 멕시코(21.3%), 슬로바키아(19.2%), 체코(18.7%)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개인소득세수 비중이 낮았던 국가들임
 - 주요국 중 호주,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법인소득세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법인세수 비중은 약 7%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5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수 비중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2.2	14.1	20.2	18.3	19.7	18.9	17.9	16.8	-
오스트리아	5.1	5.3	7.0	7.0	7.4	7.3	7.7	7.5	7.9
벨기에	6.5	7.2	10.4	8.8	9.7	10.0	10.1	10.5	11.1
캐나다	13.0	8.0	14.1	12.3	12.0	12.0	12.5	12.4	11.6
칠레	-	13.6	12.1	21.9	24.9	29.2	23.8	22.9	25.5
체코	-	-	17.7	18.0	17.2	17.6	17.7	19.0	18.7
덴마크	3.3	3.8	6.9	5.1	4.9	5.7	5.9	5.3	5.7
에스토니아	-	-	4.4	6.4	6.1	6.9	8.4	8.0	9.3
핀란드	4.4	6.1	16.7	8.5	8.7	7.0	7.6	6.2	7.0
프랑스	8.9	9.5	10.8	9.0	9.7	9.3	9.3	8.1	7.4
독일	8.3	7.7	7.9	7.0	7.7	7.7	7.9	7.7	7.6
그리스	5.6	7.9	17.2	12.0	9.0	4.5	4.6	7.4	-
헝가리	-	-	8.1	4.7	5.0	5.0	5.4	5.7	7.1
아이슬란드	2.6	2.9	3.6	3.1	5.7	6.1	6.7	9.5	8.7
아일랜드	5.3	5.7	13.3	10.7	9.9	10.0	10.2	10.1	13.7
이스라엘	-	-	11.2	10.4	11.5	11.0	13.5	12.2	11.5
이탈리아	12.6	15.0	9.7	7.9	7.5	7.8	8.3	7.1	6.8
일본	30.8	30.4	21.2	19.7	20.1	21.4	22.4	21.4	-
대한민국	11.2	14.2	17.0	18.0	20.2	19.8	19.0	17.5	17.5
라트비아	-	-	7.9	5.0	7.4	8.2	8.1	7.5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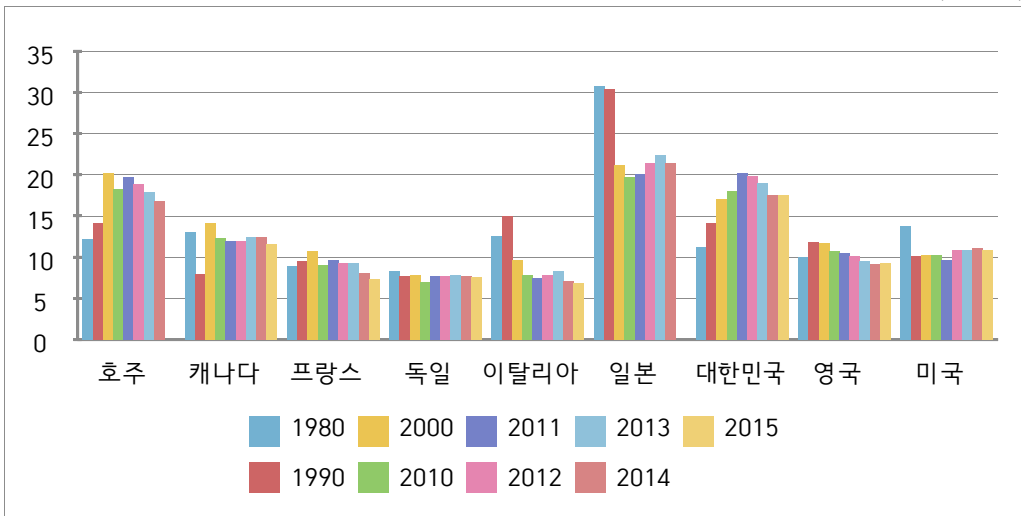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룩셈부르크	22.7	22.3	24.3	21.6	19.0	18.8	17.6	16.0	16.7
멕시코	-	-	-	16.5	18.6	16.8	21.1	21.3	-
네덜란드	10.6	12.1	17.7	10.0	9.9	10.0	10.1	11.4	11.6
뉴질랜드	7.8	6.5	12.4	12.2	12.9	14.1	14.1	13.2	13.5
노르웨이	16.9	12.2	26.5	30.4	33.0	32.1	27.2	23.0	16.4
폴란드	-	-	11.9	9.6	9.8	10.4	9.0	8.8	
포르투갈	-	10.9	16.0	12.5	13.4	11.9	12.9	11.3	12.4
슬로바키아	-	-	13.1	15.3	14.6	14.7	16.8	18.5	19.2
슬로베니아	-	-	5.0	8.4	7.6	5.6	5.5	6.4	6.7
스페인	9.9	13.7	13.9	9.8	9.5	10.6	9.9	9.3	10.8
스웨덴	3.4	4.3	10.2	10.2	9.5	7.9	8.1	8.2	8.9
스위스	8.3	16.0	18.3	13.4	13.8	13.9	13.9	13.9	14.5
터키	4.8	8.3	9.0	9.7	10.4	10.2	8.7	9.0	8.0
영국	10.0	11.9	11.7	10.8	10.5	10.1	9.5	9.2	9.3
미국	13.8	10.1	10.3	10.3	9.6	10.9	10.9	11.1	10.9
OECD 평균	9.9	10.8	12.9	11.8	12.2	12.1	12.1	11.8	11.4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그림 III-4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부가가치세, 판매세(VAT, Sales tax)

- OECD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수 및 판매세 비중(이하 “부가가치세수 비중”)은 1980년 19.4%에서 2010년 2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약 28%의 세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수 비중은 2015년 기준 20.8%로 1980년대부터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큰 변동은 없었으며, 최근 5년간 2% 정도 감소함
 - 주요국 중 일본, 영국은 최근 부가가치세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독일은 감소하였고, 미국, 호주, 캐나다는 부가가치세수 비중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III-5] 참고)

-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수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13개국, 감소한 국가는 22개국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일본, 노르웨이의 부가가치세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칠레, 헝가리, 라트비아, 영국의 부가가치세수 비중도 최근 5년간 약 3% 정도 증가함
 - 그리스, 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수 비중은 최근 5년간 각각 5.8%p, 3.6%p 감소하였으며, 이외에 벨기에,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수 비중도 2%p 정도 감소함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0.8%로 OECD 평균인 28.8%보다 낮으며, OECD국 중 8번째로 낮은 수준임
 - 부가가치세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칠레(43.8%), 에스토니아(40.9%), 체코(38.5%),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약 37%)로 주로 동유럽 국가의 경우 부가가치세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수 비중은 10%~16%로 우리나라보다 낮으며, 일본, 덴마크,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프랑스, 독일,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6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비중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5.3	8.0	12.0	13.7	12.8	12.3	13.0	12.9	12.9
오스트리아	29.1	31.0	28.5	28.9	28.3	28.2	27.7	27.4	27.0
벨기에	23.7	24.6	23.4	24.3	23.7	23.3	22.8	22.5	22.3
캐나다	12.9	16.1	16.4	16.4	16.4	16.4	16.2	16.2	16.4
칠레		41.1	45.1	41.3	39.5	40.3	44.0	44.9	43.8
체코			32.8	37.1	36.7	37.1	38.3	39.8	38.5
덴마크	22.8	18.9	19.8	21.1	21.3	21.0	20.2	19.2	20.3
에스토니아			41.8	41.9	41.6	41.1	39.8	39.8	40.9
핀란드	22.6	25.9	23.3	28.9	29.4	30.0	30.0	29.6	29.0
프랑스	36.4	33.0	26.1	26.2	25.3	24.5	23.9	24.3	24.3
독일	25.3	26.5	30.1	32.9	32.1	31.4	30.9	30.7	30.4
그리스	18.7	36.8	30.0	34.0	32.3	29.6	28.6	28.2	28.2
헝가리			31.8	34.0	35.8	36.1	35.5	37.0	37.8
아이슬란드	29.6	33.3	30.9	25.7	25.2	25.4	24.7	23.0	24.5
아일랜드	17.2	23.7	26.0	27.3	25.8	25.7	24.8	25.1	23.8
이스라엘			31.1	36.0	35.7	35.7	36.0	37.0	35.8
이탈리아	25.2	21.9	21.6	21.1	20.8	19.3	19.0	19.6	20.4
일본		6.0	14.0	16.2	16.1	15.8	15.6	20.2	20.2
대한민국	22.2	20.8	20.4	22.8	22.4	22.8	23.1	23.6	20.8
라트비아			35.9	34.5	35.6	36.4	37.1	37.7	37.8
룩셈부르크	16.3	16.7	18.1	24.0	25.1	26.0	26.7	27.5	24.9
멕시코	18.1	31.4	28.5	33.8	33.0	33.8	30.0	32.2	32.2
네덜란드	25.6	26.3	28.2	29.4	29.3	30.3	30.1	28.4	28.2
뉴질랜드	10.2	22.4	24.9	30.7	31.0	30.0	30.0	29.9	30.0
노르웨이	23.1	25.5	25.0	23.9	23.1	23.5	25.2	27.0	29.6
폴란드			34.5	37.3	38.2	35.8	35.8	35.9	35.9
포르투갈	22.9	26.9	32.8	34.5	34.6	36.0	32.0	33.6	33.6
슬로바키아			34.9	38.7	40.4	37.2	37.3	37.2	37.6
슬로베니아			38.2	36.6	37.2	36.6	38.4	38.3	37.9
스페인	0.0	24.4	27.0	26.7	26.3	25.9	27.1	27.6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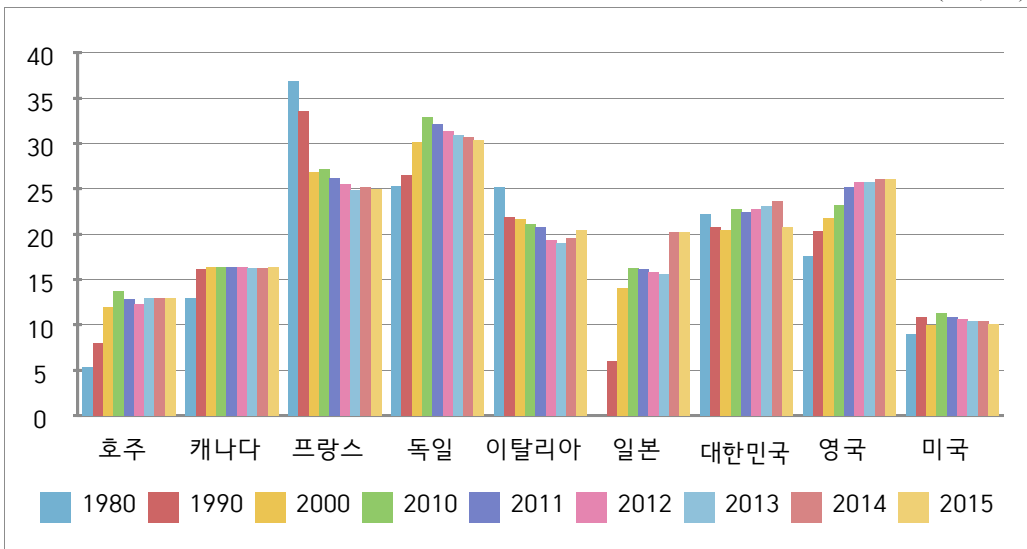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스웨덴	18.8	20.4	23.0	28.4	27.7	27.6	27.2	27.4	27.2
스위스	13.4	15.3	17.8	17.1	17.3	17.7	17.7	17.4	16.8
터키		22.8	29.8	28.9	30.2	28.6	30.3	28.5	29.0
영국	17.6	20.3	21.8	23.2	25.2	25.7	25.7	26.1	26.1
미국	9.0	10.9	10.0	11.3	10.8	10.6	10.4	10.4	10.1
OECD 평균	19.4	23.4	26.7	28.2	28.2	27.9	27.9	28.2	28.1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그림 III-5 주요국의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참고하여 저자 작성

라. 상속세 및 증여세(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 OECD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평균 0.5%로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1980년대부터 세수 비중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수 비중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현재 벨기에, 프랑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벨기에의 상속세 및 증여세수 비중은 2.4%, 프랑스는 2%임

표 III-7 OECD 회원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0.4	0.0	0.0	0.0	0.0	0.0	0.0	0.0	-
오스트리아*	0.2	0.2	0.2	0.0	0.0	0.0	0.0	0.0	0.0
벨기에	1.2	1.1	1.4	2.2	2.2	2.4	2.6	2.3	2.4
캐나다*	0.1	0.0	0.0	0.0	0.0	0.0	0.0	0.0	0.0
칠레	-	0.2	0.1	0.2	0.1	0.3	0.2	0.1	0.3
체코*	-	-	0.1	0.0	0.6	0.4	0.0	0.0	-0.5
덴마크	0.4	0.6	0.5	0.4	0.6	0.5	0.4	0.4	0.6
에스토니아*	-	-	0.0	0.0	0.0	0.0	0.0	0.0	0.0
핀란드	0.3	0.5	0.8	0.7	0.7	0.8	1.0	0.8	1.0
프랑스	1.0	1.7	1.7	1.5	1.6	1.6	1.7	1.7	2.0
독일	0.3	0.5	0.6	0.8	0.7	0.7	0.7	0.8	0.9
그리스	1.8	1.8	1.1	0.3	0.3	0.2	0.2	0.2	-
헝가리	-	-	0.2	0.1	0.1	0.1	0.1	0.1	0.1
아이슬란드	0.1	0.2	0.3	0.5	0.2	0.3	0.4	0.4	0.4
아일랜드	0.4	0.5	0.8	0.6	0.6	0.7	0.7	0.8	0.8
이스라엘*	-	-	0.0	0.0	0.0	0.0	0.0	0.0	0.0
이탈리아	0.3	0.2	0.3	0.1	0.1	0.1	0.1	0.1	0.1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본	1.0	2.0	2.0	1.6	1.9	1.8	1.8	2.0	-
대한민국	0.2	1.1	0.9	1.4	1.4	1.6	1.7	1.7	1.7
라트비아*	-	-	0.0	0.1	0.1	0.1	0.0	0.0	0.1
룩셈부르크	0.5	0.4	0.4	0.5	0.4	0.6	0.6	0.6	0.5
멕시코*	0.0	0.0	0.0	0.0	0.0	0.0	0.0	0.0	-
네덜란드	0.8	0.8	1.4	1.2	1.1	1.0	1.2	1.0	1.0
뉴질랜드*	0.5	0.3	0.0	0.0	0.0	0.0	0.0	0.0	0.0
노르웨이*	0.1	0.2	0.3	0.3	0.2	0.2	0.2	0.2	0.0
폴란드	-	-	0.1	0.1	0.1	0.1	0.1	0.1	-
포르투갈*	0.3	0.7	0.3	0.0	0.0	0.0	0.0	0.0	0.0
슬로바키아*	-	-	0.1	0.0	0.0	0.0	0.0	0.0	0.0
슬로베니아	-	-	0.0	0.2	0.1	0.1	0.1	0.1	0.1
스페인	0.8	0.7	1.0	1.1	1.0	1.0	1.1	1.2	1.1
스웨덴*	0.3	0.3	0.3	0.0	0.0	0.0	0.0	0.0	0.0
스위스	1.1	1.4	1.3	0.8	0.7	0.7	0.7	0.9	0.9
터키	0.2	0.1	0.0	0.1	0.1	0.1	0.1	0.1	0.1
영국	0.7	0.8	0.8	0.6	0.7	0.7	0.7	0.8	0.9
미국	1.5	1.4	1.6	0.8	0.5	0.6	0.8	0.7	0.7
OECD 평균	0.6	0.6	0.5	0.5	0.5	0.5	0.5	0.5	0.5

주: *표시 국가는 상속세가 폐지된 국가임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마. 소비세(Excises)

- OECD국의 평균 소비세수(excises) 비중은 1980년 12.6%이었으나,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 기준 소비세수 비중은 10.6%임
-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최근 5년간 소비세수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6개국, 감소한 국가는 29개국으로 나타남
 - 소비세수 비중이 증가한 국가 중 이탈리아, 멕시코가 각각 1.4%, 1.8% 정도

증가하였으며, 기타국가는 소폭으로 증가함

- 소비세수 비중이 감소한 국가 중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포르투갈에서 약 3%p 감소하였으며, 독일, 아일랜드,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는 약 2%p의 세수 비중이 감소함
- 우리나라의 소비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1%로 OECD 평균인 10.6%과 비슷한 수준이며, OECD국 중 13번째로 높은 수준임
 - 소비세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터키(25.5%), 폴란드(19.4%), 슬로베니아(19.1%), 에스토니아(19%), 체코(17.8%), 라트비아(16%)이며,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2.8%), 미국(4.2%), 캐나다(4.9%), 호주(5.5%)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 모두 우리나라보다 소비세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8 OECD 회원국의 소비세수 비중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5.5	10.3	9.2	7.4	6.7	6.3	6.1	5.5	-
오스트리아	10.8	9.1	9.3	8.8	9.0	8.7	8.4	8.1	7.9
벨기에	7.5	7.4	7.3	7.4	7.1	6.8	6.7	6.7	6.9
캐나다	7.5	6.7	5.5	5.3	5.1	4.9	4.9	4.8	4.9
칠레		10.3	11.1	7.7	7.3	7.3	7.8	8.2	7.9
체코			16.6	19.5	19.9	19.7	18.9	15.6	17.8
덴마크	12.4	10.0	11.2	9.1	9.1	9.1	9.1	8.2	8.8
에스토니아			14.7	20.5	21.4	21.5	20.4	19.7	19.0
핀란드	17.7	13.1	12.0	11.7	12.4	12.5	11.9	11.6	11.7
프랑스	10.8	11.1	9.7	8.8	8.7	8.5	8.6	8.6	9.1
독일	10.9	11.0	12.2	11.6	11.2	10.5	10.1	9.8	9.4
그리스	16.7	17.1	12.7	15.4	16.3	15.0	15.3	14.9	-
헝가리			14.7	13.4	14.2	13.8	12.8	12.4	12.7
아이슬란드	6.7	2.1	10.0	9.8	9.7	9.6	9.1	8.2	7.8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일랜드	30.1	19.8	15.0	13.2	12.8	12.0	12.0	11.3	10.9
이스라엘			4.1	7.0	6.6	6.7	6.2	6.0	5.9
이탈리아	10.9	11.4	8.8	7.9	8.7	9.4	9.2	9.8	9.3
일본	15.1	9.0	11.1	11.1	11.0	10.7	10.1	8.8	—
대한민국	15.6	14.7	16.0	13.8	10.4	11.1	10.8	10.6	11.0
라트비아			17.5	18.5	18.1	16.6	16.3	15.8	16.0
룩셈부르크	12.2	13.7	16.4	13.1	13.2	12.8	11.8	11.7	10.0
멕시코	6.8	11.9	12.9	5.8	5.8	5.7	5.6	7.5	
네덜란드	8.7	9.2	13.5	12.7	12.8	12.6	12.3	11.9	11.4
뉴질랜드	7.2	7.0	5.4	2.9	2.8	2.7	2.5	2.6	2.8
노르웨이	14.2	16.8	11.0	9.1	8.4	8.1	8.4	8.7	9.1
폴란드			18.2	20.3	19.6	19.8	20.2	19.4	
포르투갈	23.2	19.0	15.1	14.4	13.0	12.3	11.0	11.1	11.6
슬로바키아			15.6	17.8	17.1	17.0	15.8	14.9	14.6
슬로베니아			13.5	19.4	19.2	20.7	19.9	19.4	19.1
스페인	10.9	9.0	11.5	10.5	10.3	9.8	10.6	10.3	10.3
스웨덴	10.8	10.1	8.2	8.1	7.5	7.5	7.1	6.7	6.6
스위스	9.6	2.4	7.1	6.8	6.4	6.6	6.3	6.2	6.0
터키	14.0	1.1	14.4	26.5	24.6	25.1	25.7	25.4	25.5
영국	12.7	11.7	12.6	11.0	10.4	10.6	10.2	9.9	9.6
미국	8.0	5.6	4.9	5.6	5.1	5.1	4.7	4.5	4.2
OECD 평균	12.6	10.4	11.7	11.8	11.5	11.3	11.0	10.7	10.6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바. 기타

1) 거래세

- 거래세는 OECD 통계상 ‘금융·자본거래세(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항목으로 증권거래세, 취·등록세 등 각종 금융, 자본거래 시 발생하는 세수가 포함된 금액임

- OECD국의 평균 거래세 비중은 2015년 기준 1.8%로 1980년 2.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로 거의 변동이 없음
 - OECD국 중 터키, 대한민국만 최근 5년간 거래세 비중이 각각 1.3%p, 1.4%p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거래세 비중에 변동이 없음

- 우리나라의 거래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0.8%로 OECD 평균인 1.8%보다 높으며, OECD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래세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10.8%), 터키(5.3%), 호주(4.5%, 2014년 기준), 이탈리아(3.5%), 벨기에(3.5%), 아일랜드(3%), 스페인(2.9%), 영국(2.8%), 프랑스(2.3%)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9 OECD 회원국의 거래세 비중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2.6	3.7	4.5	3.8	3.3	3.4	4.0	4.5	-
오스트리아	0.9	1.1	1.0	1.1	1.0	1.2	1.0	1.0	1.1
벨기에	2.4	3.1	3.4	3.3	3.4	3.3	3.2	3.3	3.5
캐나다	0.0	0.0	0.0	0.7	0.7	0.7	0.7	0.8	0.8
칠레		2.8	3.3	1.0	1.1	1.3	1.0	1.0	0.9
체코			1.4	1.0	1.0	1.0	1.2	1.2	1.3
덴마크	1.4	1.1	0.7	0.7	0.6	0.6	0.5	0.5	0.6
에스토니아			0.0	0.0	0.0	0.0	0.0	0.0	0.0
핀란드	1.9	2.4	0.9	1.0	0.9	1.0	0.9	1.1	1.2
프랑스	2.2	2.4	1.8	2.1	2.2	2.1	2.0	2.1	2.3
독일	0.8	1.1	1.1	1.0	1.1	1.2	1.3	1.4	1.6
그리스	4.4	4.6	6.2	2.4	1.8	1.6	1.4	1.2	-
헝가리			1.5	1.1	1.0	1.1	0.8	1.0	1.1
아이슬란드	1.8	2.6	1.3	0.6	0.6	0.6	0.7	0.5	0.6
아일랜드	1.7	2.0	3.7	2.3	2.1	2.1	2.6	2.7	3.0
이스라엘			1.8	1.4	1.3	1.1	1.3	1.3	1.7
이탈리아	5.6	3.2	3.4	3.8	3.5	3.1	3.5	3.6	3.5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본	3.0	3.4	2.4	1.8	1.7	1.7	1.7	1.5	
대한민국	4.8	8.8	10.5	9.3	9.6	8.5	8.1	9.0	10.8
라트비아			1.0	0.7	1.0	0.9	0.9	1.0	0.8
룩셈부르크	2.7	4.2	3.7	1.4	1.6	1.6	1.7	2.0	2.1
멕시코	0.8	1.0	0.6	0.9	0.8	0.8	0.8	0.8	
네덜란드	1.5	1.6	3.3	1.9	1.4	0.8	0.8	1.0	1.1
뉴질랜드	0.6	0.3	0.2	0.1	0.1	0.1	0.1	0.1	0.1
노르웨이	0.3	0.5	0.5	0.7	0.7	0.8	0.8	0.8	1.0
폴란드			1.3	0.8	0.7	0.6	0.7	0.7	
포르투갈	1.7	1.8	2.9	2.1	1.8	1.6	1.3	1.6	1.8
슬로바키아			0.7	0.0	0.0	0.0	0.0	0.0	0.0
슬로베니아			0.5	0.4	0.4	0.3	0.3	0.3	0.3
스페인	6.8	3.7	4.3	3.8	3.0	2.6	2.5	2.7	2.9
스웨덴	0.6	2.4	0.7	0.9	0.7	0.7	0.8	0.8	0.8
스위스	2.6	3.3	4.4	1.9	1.8	1.2	1.2	1.2	1.3
터키	5.0	2.7	3.3	4.1	4.2	4.5	5.1	5.3	5.3
영국	0.9	1.0	2.8	2.2	2.0	2.0	2.5	3.0	2.8
미국	0.2	0.0	0.0	0.0	0.0	0.0	0.0	0.0	0.0
OECD 평균	2.2	2.4	2.3	1.7	1.6	1.5	1.6	1.7	1.8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2) 기타 재산세

□ 기타 재산세는 OECD 통계상 ‘재산세(4000 Taxes on property)’에서 ‘상속·증여세(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와 ‘금융·자본거래세(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및 부유세 등이 포함됨

□ OECD 회원국의 평균 기타 재산세 비중은 2015년 기준 5.1%로 1980년 4.0%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로 거의 변동이 없음

-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은 최근 5년간 기타 재산세 비중이 각각 4%p, 2.5%p 감소하였으며,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의 경우 각각 2.5%p, 1.9%p가 증가함
 - 기타 국가는 기타 재산세의 변동이 거의 없음
- 우리나라의 기타 재산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4.3%로 OECD 평균인 5.1%보다 낮은 편이며, OECD 회원국 중 1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재산세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13%), 미국(13%), 영국(11.7%), 일본(10.6%, 2014년 기준), 이스라엘(10.1%), 프랑스(10%), 룩셈부르크(9.9%)로 주요국 대부분이 재산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재산세수 비중이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터키, 멕시코로 0.9%~1.8%의 비중을 나타냄
 -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기타 재산세수 비중이 독일(2.2%)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 OECD 회원국의 기타 재산세 비중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4.7	5.3	4.2	5.5	5.3	5.2	5.4	5.6	
오스트리아	3.1	2.7	0.9	0.9	0.9	0.8	1.6	1.1	0.9
벨기에	0.8	1.5	1.9	5.2	5.2	5.3	5.7	6.0	5.6
캐나다	10.1	11.4	11.0	13.8	13.3	13.3	13.3	13.0	13.0
칠레		3.7	4.1	3.3	3.0	3.0	3.3	3.4	3.5
체코			1.0	1.2	1.1	1.2	1.2	1.2	1.1
덴마크	4.1	2.6	2.2	3.0	3.0	2.9	2.9	2.8	3.0
에스토니아			1.9	1.7	1.6	1.6	1.5	1.4	1.3
핀란드	0.3	0.4	1.6	2.2	2.0	2.1	2.2	2.4	2.5
프랑스	5.2	7.2	7.2	10.0	9.7	9.8	9.7	9.9	10.0

(단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독일	3.9	3.8	2.0	2.1	2.1	2.1	2.1	2.0	2.2
그리스	0.6	0.3	1.4	5.1	8.1	8.6	10.5	4.2	
헝가리			0.8	3.3	3.6	3.6	4.1	4.0	3.8
아이슬란드	4.5	5.9	6.8	6.9	6.8	7.0	6.6	6.2	5.0
아일랜드	4.0	3.0	2.0	3.6	4.8	4.9	5.4	5.8	3.9
이스라엘			8.6	11.1	11.2	10.6	10.3	10.0	10.1
이탈리아	0.0	0.0	2.8	3.2	4.0	5.6	5.3	5.7	5.6
일본	7.5	7.4	11.8	13.1	12.9	12.0	11.4	10.6	
대한민국	3.1	3.2	3.5	4.1	4.0	4.0	4.2	4.4	4.3
라트비아			4.7	3.7	4.1	3.9	3.8	4.0	3.9
룩셈부르크	4.7	7.0	10.4	8.1	7.8	7.8	8.0	8.3	9.9
멕시코	1.5	1.2	1.5	1.7	1.8	1.8	1.7	1.8	
네덜란드	3.5	3.5	3.8	2.9	3.1	3.3	3.7	4.3	4.0
뉴질랜드	6.8	6.3	5.2	6.5	6.4	6.1	6.0	6.0	6.1
노르웨이	1.8	3.3	2.1	2.7	2.7	2.7	3.0	3.2	3.0
폴란드			5.6	5.6	5.4	6.0	6.4	6.3	
포르투갈	0.0	1.2	1.7	2.8	2.9	2.9	3.1	3.4	3.4
슬로바키아			2.3	2.6	2.4	2.7	2.6	2.5	2.3
슬로베니아			2.2	2.2	2.2	2.4	2.5	2.4	2.4
스페인	1.3	4.2	4.4	5.3	5.5	6.1	6.6	6.8	6.6
스웨덴	0.4	2.2	3.7	2.3	2.3	2.4	2.5	2.5	2.3
스위스	7.0	5.9	6.3	6.6	6.3	6.4	6.6	6.8	6.7
터키	1.1	0.0	0.6	1.2	1.3	1.2	1.2	1.4	1.4
영국	12.8	8.0	10.4	12.0	11.6	11.9	12.0	11.8	11.7
미국	12.0	14.2	11.7	17.0	15.6	14.9	14.1	13.6	13.0
OECD 평균	4.0	4.3	4.4	5.2	5.3	5.3	5.4	5.3	5.1

자료: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3) 환경에너지세

환경에너지세수 비중은 '환경에너지세/총조세'의 비중임

- 총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총세수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수치임
- 환경에너지세수는 OECD에서 제공하는 ‘환경 관련 세수(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 데이터를 이용함
 - 환경 관련 세수는 화석연료 또는 유류에 부과된 에너지 관련 세액, 차량수입 시 관세, 차량 취·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액, 질소산화물과 같은 환경오염유발물질 배출세 등 기타 환경 관련 세수액으로 구분하고 있음
- OECD 회원국의 평균 환경에너지세 비중은 2014년 기준 8.8%로 1980년 9.0%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 관련 세수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4.1%로 OECD 평균인 9.1%보다 높은 편이며,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에너지 관련 세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터키(18.6%), 슬로베니아(17.5%), 네덜란드(14.7%), 체코(14.1%)인 것으로 나타남
 - 환경에너지 관련 세수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0.5%), 미국(3.7%), 뉴질랜드(4.2%), 캐나다(4.3%)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환경에너지 관련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1 OECD 회원국의 환경 관련 세수 비중(1994년, 2000년, 2010년~2014년)

(단위: %)

국가	1994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호주	8.4	7.9	7.0	6.8	7.6	7.7	6.9
오스트리아	8.3	10.5	10.6	10.8	10.5	10.2	10.2
벨기에	8.5	8.2	7.8	7.8	7.3	6.6	6.6
캐나다	5.5	4.4	4.5	4.4	4.3	4.3	4.3
칠레	6.8	9.0	5.6	5.5	5.6	6.1	6.6

(단위: %)

국가	1994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체코	12.8	13.5	15.1	15.3	14.9	14.3	14.1
덴마크	8.8	10.8	9.3	9.3	9.0	9.1	8.3
에스토니아		7.9	14.3	13.6	13.2	12.3	11.9
핀란드	9.0	9.1	9.4	10.2	10.0	9.5	9.2
프랑스	8.1	8.1	7.1	7.0	6.8	6.9	6.9
독일	10.6	10.4	10.0	9.9	9.4	9.0	8.6
그리스	0.0	9.7	11.6	11.4	11.2	11.1	10.9
헝가리	11.4	10.9	10.7	11.0	10.7	10.3	10.1
아이슬란드	9.7	9.0	7.0	6.8	6.8	6.2	5.7
아일랜드	10.5	10.1	10.6	10.4	9.9	9.9	9.2
이스라엘		8.9	12.8	12.4	12.0	11.0	11.4
이탈리아	13.6	9.9	11.0	11.8	12.3	11.9	12.6
일본	9.5	10.0	9.9	9.5	9.2	8.6	7.6
대한민국	11.5	14.8	15.7	13.8	14.1	14.3	14.1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12.2	9.7	9.0	9.0	8.7	8.0	7.3
멕시코	14.8	12.1	-1.9	-7.1	-10.3	-3.0	0.5
네덜란드	13.4	15.5	15.6	15.8	15.6	15.7	14.7
뉴질랜드	5.0	5.0	4.4	4.3	4.1	4.2	4.2
노르웨이	11.1	8.6	7.4	6.9	6.7	7.1	7.4
폴란드	5.8	9.8	9.5	9.0	9.9	9.8	0.0
포르투갈	15.6	11.3	11.0	9.8	9.3	8.5	8.7
슬로바키아		11.5	11.5	11.1	10.8	10.2	9.7
슬로베니아		13.4	16.5	15.9	17.4	17.8	17.5
스페인	10.7	10.0	8.3	8.2	7.7	8.8	8.5
스웨덴	8.5	7.4	8.0	7.4	7.4	7.2	6.7
스위스	9.7	9.1	9.3	8.9	9.0	8.8	8.7
터키	8.0	14.1	20.0	18.6	18.0	19.1	18.6
영국	10.3	9.9	9.2	8.8	8.9	8.9	8.8
미국	5.6	4.5	4.5	4.3	4.2	3.9	3.7
OECD 평균	9.5	9.9	9.8	9.4	9.2	9.2	8.8

주: OECD에서 환경·에너지 세수는 1994년부터 제공하고 있고, 2015년 데이터는 아직 공시되지 않은 국가가 대다수이므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에너지 세수 비중을 구함

자료: OECD Statistics, Environment Database -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04

소결

- OECD 회원국의 2015년 기준 평균 국세 비중은 79.5%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은 없으며, 일부 연방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원국은 국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방국가 중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며, 단일국가 중 유일하게 스웨덴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국세 비중이 75.4%이며, 지방세 비중은 1990년 19.0%에서 2015년 24.6%로 지방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OECD 회원국의 2015년 기준 평균 직접세 비중은 51.5%로 최근 5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 비중보다 높은 국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로 동유럽 국가에서 간접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는 직접세 비중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 비중은 53.9%로 간접세 비중보다 높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정부 세수를 포함한 총세수 고려 시 간접세 비중은 46.1%에서 49%로 증가함

- 주요국의 세수입 구조를 보면 직접세 비중이 높았던 미국, 캐나다의 경우 개인 소득세, 재산세 비중이 높은 반면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와 소비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 중 독일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비중은 높은 편인 반면 법인 소득세와 재산세의 세수 비중은 낮으며, 일본은 독일과 달리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고, 법인소득세 및 재산세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임

- 소비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수 비중은 독일, 일본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임
 - 프랑스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수 비중 모두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이나 재산세와 거래세수 비중은 상위국가에 속함
 - 이탈리아의 경우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수 비중은 낮으나 개인 소득세와 거래세수 비중이 높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소득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환경에너지세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소득세와 재산세는 OECD 평균보다 낮고 소비세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12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 비중¹⁾(2014년 기준¹⁾)

(단위: %)

	우리 나라	세수 비중 상위 5개국		세수 비중 하위 5개국		OECD 평균
		국가	세수 비중	국가	세수 비중	
개인소득세	22.2	덴마크 미국 핀란드 캐나다 독일	54.1 51.7 43.0 42.8 42.6	칠레 슬로바키아 체코 터키 헝가리	7.8 16.9 19.2 20.6 20.6	32.0
법인소득세	17.5	노르웨이 칠레 일본 멕시코 체코	23.0 22.9 21.4 21.3 19.0	덴마크 헝가리 핀란드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5.3 5.7 6.2 6.4 7.1	11.8
부가가치세 · 판매세	23.6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44.9 39.8 39.8 38.3 37.7	미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10.4 12.9 16.2 17.4 19.2	28.2

(단위: %)

	우리 나라	세수 비중 상위 5개국		세수 비중 하위 5개국		OECD 평균
		국가	세수 비중	국가	세수 비중	
상속세· 증여세	1.7	벨기에 일본 대한민국 프랑스 스페인	2.3 2.0 1.7 1.7 1.2	슬로바키아 스웨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캐나다	0.0 0.0 0.0 0.0 0.0	0.5
소비세	10.6	터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25.4 19.7 19.4 19.4 15.8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2.6 4.5 4.8 5.5 6.0	10.7
거래세	9.0	대한민국 터키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9.0 5.3 4.5 3.6 3.3	에스토니아 미국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0.0 0.0 0.0 0.1 0.3	1.7
재산세	4.4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이스라엘	13.6 13.0 11.8 10.6 10.0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터키 멕시코	1.1 1.2 1.4 1.4 1.8	5.3
환경 에너지세	14.1	터키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대한민국 체코	18.6 17.5 14.7 14.1 14.1	멕시코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0.5 3.7 4.2 4.3 5.7	8.6

주: 1) 2015년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은 국가가 있어 2014년 기준 세목별 세수 비중으로 상위국, 하위국을 선정함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Ⅳ.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



IV

주요국의 면세자 비중

- 면세자 비중은 과세대상소득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세소득이 존재하더라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결정세액이 없는 납세자 비중으로 산정함¹⁷¹⁾
 - 각 국의 소득세 과세방식(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이나 소득구분의 상이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차이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01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

가. 소득세 면세자 비중 산정 방법

- 직·간접적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산정 가능한 국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우리나라를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함
 -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총면세자 수를 총납세자 수로 나누어 계산함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세 통계자료를 통해 납세자 수치를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하여 이를 토대로 납세자 비중을 산정함

171) 각 국의 국세청에서 제공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납세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해당 국세통계의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서 별도의 검증은 수행하지 않음.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납부의무자가 대상 사업연도에 적절히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집계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차이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 소득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 수를 총납세자 수로 간주함
 - 소득신고를 한 자 중 결손이 발생하거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하여 결정세액이 없는 납세자 수를 총면세자 수로 간주함
- 영국의 경우, 국세통계에서 면세자 수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추정치로 계산함
- 납세자별 적용세율 현황을 근거로 ‘최저세율(starting rate)’과 ‘저축소득세율(savers rate)’ 적용대상 납세자를 면세자로 간주하여 총면세자 수를 산정하고, 이를 총납세자 수로 나눈 비율로 면세자 비중을 추정하여 산정함¹⁷²⁾
 - 최저세율 적용 납세자는 과세대상소득(taxable earning)이 없고, 저축소득이 최저세율 한도(starting rate limit) 이하인 소득자이며, 저축소득세율 적용 납세자는 과세대상소득이 없고 최저세율한도와 기본세율한도(basic rate limit) 사이 범위 내의 저축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과세미달 신고자로 간주할 수 있음¹⁷³⁾
 - 비교목적상 2007~08 사업연도를 2007년으로 보아 연도를 구분함
- 호주의 경우, 2009~10 사업연도 이전까지는 국세통계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납세자 수치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나, 2010-11 사업연도 이후에는 추정치로 계산함
- 호주 국세청은 2009~10 사업연도 이전까지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수를 면세자와 과세자로 구분하여 소득구간별로 집계한 표 형태의 통계 수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시된 표를 토대로 면세자 비중을 산정함
 - 2010-11 사업연도 이후 통계자료는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를 성별, 연령, 소득구간, 과세 여부 등의 기준으로 구분한 원자료(raw data)를 제공하고 있음¹⁷⁴⁾

172) 영국의 경우, 면세자 수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 수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함

17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근로소득 공제제도 연구』, 2017. 1, p. 60

174) 소득세를 신고한 과세자 인원수와 면세자 인원수를 별도로 집계하여 표 형태로 제시한 자료는

- 이에 따라 2010-11 사업연도 이후의 면세자 비중은 국세청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각 소득구간별로 면세자 수와 과세자 수를 구분하여 산정함
- 영국과 동일하게 2007~08 사업연도를 2007년으로 보아 연도를 구분하였음
- 우리나라는 국세청 통계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근로소득 신고자 수와 사업자 수¹⁷⁵⁾를 합산하여 면세자 비중을 계산함
- 총납세자 수는 연말정산 신고자 수와 사업자 수를 합한 납세자 수이며, 총면세자 수는 연말정산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와 사업자 수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합산한 수치임

나.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추이

- 각 국의 개인소득세 과세방식이나 소득구분 방법 등이 상이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의 범위는 2014년 기준 3.2%(영국)에서 43.1%(우리나라)로, 국가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면세자 비중이 5% 미만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25%~35%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4년에 세제개편 과정¹⁷⁶⁾에서 면세자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면세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세의 세입확보와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정책 결정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음¹⁷⁷⁾

찾지 못함

175) 국세통계연보상 사업자 수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도 모두 포함한 수치임

176) 위의 보고서, p. 55

17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근로소득 공제제도 연구』, 2017. 1, p. 55

- 다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면세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면세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여온 반면(2014년 제외),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⁷⁸⁾
-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07년 43.6%에서 2013년 33.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10.4%p)하였고, 2015년 기준 40.6%로 전년 대비 2.5%p 감소함

표 IV-1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 추이(2007년~2015년)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7~'14 변동
미국	32.7	36.4	41.7	40.9	36.9	35.8	35.8	35.0	- ¹⁾	+2.3
영국	13.9	- ²⁾	2.5	2.9	3.0	2.9	3.2	3.2	- ²⁾	-10.7
호주	21.8	25.2	26.4	25.5	23.1	25.8	25.1	24.7	- ¹⁾	2.9
캐나다	32.4	32.1	33.9	34.0	33.8	33.6	33.5	33.1	32.2 ³⁾	0.7
대한민국	43.6	43.4	41.3	40.3	37.8	34.5	33.2	43.1	40.6 ⁴⁾	-0.5

- 주: 1) 미국과 호주는 2015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2) 영국의 2008 과세연도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며, 2015년 데이터는 추정치로 제공되어 제외함
 3) 2015년 데이터는 캐나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추정치임
 4) 근로소득 면세자와 종합소득 면세자를 합산하여 계산한 전체 면세자 비중임

- 자료: 1.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uac/soi-tax-stats-individual-income-tax-returns-publication-1304-complete-report>), 각 연도별 “Table 1.4. All Retur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and Tax Items, by Size of Adjusted Gross Income, Tax Year”, 접속일자: 2017.8.23
 2.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income-tax-statistics-and-distributions>), 각 연도별 “Table 2.5a Income tax liabilities, by income range”, 접속일자: 2017.8.23
 3.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ation-statistics/>), 2007~08 사업연도부터 2009~10 사업연도까지의 “Table 5A: Personal tax,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Part A: Tax Office calculated and miscellaneous items”; 2010~11 사업연도부터 2014-15 사업연도까지의 “Individual tax: Detailed Table 2.3: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sex and taxable status”, 접속일자: 2017.8.23
 4. 캐나다 국세청(<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income-statistics-gst-hst-statistics.html>), 2007-2008년 데이터: T1 Final Statistics - Sample Data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2009-2014년 데이터: T1 Final Statistics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2015년 데이터: T1 Preliminary Statistics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접속일자: 2017.8.23
 5. 국세청,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3.1.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총괄』, 『3.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을 참고하여 저자 계산

178) 위의 보고서, p. 55

02

주요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산정방법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의 경우, 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산정한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함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으로 한정하여 총면세자 수를 총납세자 수로 나누어 계산함
 - 미국은 국세통계상 ‘급여 및 임금(Salaries and Wages)’에 대한 신고납세자 수를 근로소득자로 보아 면세자 비중을 계산함
 - 캐나다는 국세통계상 ‘고용(Employment)’으로 소득이 발생한 신고납세자 수를 근로소득자로 보아 면세자 비중을 계산함
 - 영국은 소득원천에 따른 납세자별 적용세율 현황을 근거로 ‘근로자(employment) 관련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면세자 비중을 계산함
 - 호주는 국세 통계자료¹⁷⁹⁾ 중 ‘급여(payroll and wage)소득’에 대한 신고납세자 수를 근로소득자로 보아 면세자 비중을 계산함
- 일본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일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연보 중 ‘급여소득자 수, 급여총액, 세수’ 관련 표에서 산정한 납세자 비중을 100%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고 현황’ 자료를 기초로 연말정산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의 비중으로 계산함

179) 호주 국세청의 통계자료의 내용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에서 기재한 바와 동일하며, 소득원을 보다 세분화하여 ‘급여(payroll and wage)소득’에 한정하여 수치를 계산함

나.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추이

-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4년 기준 0.9%(영국)~47.9%(우리나라)로 소득세 면세자 비중보다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영국의 면세자 비중은 1% 미만이며, 미국은 35% 미만, 이외 국가에서는 20% 미만(캐나다의 경우, 2014년 이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07년 42.2%¹⁸⁰⁾에서 2015년 46.5%로 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32.2%로, 2007년보다 10%p 감소하여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47.9%로 전년 대비 15.7%p 증가함

표 N-2 주요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추이(2007년~2015년)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31.1	33.7	39.1	38.4	33.9	32.9	33.2	32.5	- ¹⁾
영국	- ²⁾	- ²⁾	- ²⁾	0.6	1.0	0.8	0.8	0.9	- ²⁾
호주	14.3	16.4	17.1	16.8	15.2	17.8	17.1	16.6	- ¹⁾
캐나다	31.1	30.7	22.9	22.8	22.6	22.9	23.1	18.7	17.8 ³⁾
일본	14.6	16.4	18.3	17.5	15.6	15.8	16.1	15.4	15.5
대한민국	42.2	43.0	40.2	39.1	35.9	33.0	32.2	47.9	46.5

주: 1) 미국과 호주는 2015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2) 영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와 2015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3) 캐나다의 2015년 데이터는 추정치임

자료: 1.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uac/soi-tax-stats-individual-income-tax-returns-publication-1304-complete-report>), 각 연도별 “Table 1.4. All Retur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and Tax Items, by Size of Adjusted Gross Income, Tax Year”, 접속일자: 2017.8.23

2.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income-tax-liabilities-of-starting-savers-basic-and-higher-rate-taxpayers-by-largest-source-of-income-2010-to-2011>), 각 연도별 “Tabel 3.4 Income tax liabilities of starting, “savers”, basic, higher and additional rate taxpayers, by largest source of income”,

180) 위의 보고서, p. 55

- 접속일자: 2017.8.23
3.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ation-statistics/>), 2007~08 사업연도부터 2009~10 사업연도까지의 “Table 5A: Personal tax,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Part A: Tax Office calculated and miscellaneous items”; 2010~11 사업연도부터 2014~15 사업연도까지의 “Individual tax: Detailed Table 2.3: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sex and taxable status”, 접속일자: 2017.8.23
 4. 캐나다 국세청(<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income-statistics-gst-hst-statistics.html>), 2007-2008년 데이터: T1 Final Statistics - Sample Data의 ‘Table 3-All returns by major source of income’; 2009-2014년 데이터: T1 Final Statistics의 ‘Table 3-All returns by major source of income’; 2015년 데이터: T1 Preliminary Statistics의 ‘Table 3-All returns by major source of income’, 접속일자: 2017.8.23
 5.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kohyo/tokei/kokuzeicho/h27/h27.pdf>), 통계연보, National Tax Agency Annual Statistics Report, 2011년 및 2015년의 ‘Table 12: Number of employment income earners, Total amounts of pay, and Amount of tax’, 접속일자: 2017.9.5
 6. 국세청,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

V. 주요국의 고소득자 세수 비중



V

주요국의 고소득자 세수 비중

- 본 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한민국을 주요국으로 하여 소득상위 0.1%, 1%, 10%인 고소득 납세자의 세수 비중을 조사함
- 고소득자 세수 비중은 각 국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납세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상위 소득구간의 납세자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함
 - 각 국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수치의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은 진행하지 않음
 -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납부의무자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절히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집계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차이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 각 국의 소득세 과세방식(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이나 소득구분의 상이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차이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01

고소득자 세수 비중 산정 방법

- 주요국 중 미국, 영국, 독일은 국세청에서 소득분위별로 세수 비중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이용함
 - 미국은 총조정소득(AGI)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분위별 납세자 수, 총조정소

득, 납부세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득 상위 0.001%~50%까지 소득 및 납부세액 및 세수 비중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은 세전 총소득(total income before tax) 기준 전체 납세자 수의 상위 1%, 10%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세액(total tax)이 총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공시하고 있음
 - 단, 상위 0.1%에 해당하는 비중은 공시되지 않고, 세수 통계자료를 통한 추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조사범위에서 제외함
 - 독일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0.1%~50%까지의 소득 및 납부세액 비중을 제시하고 있음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의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의 소득분위별 세수 비중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과세소득 구간별 납세자 수와 소득세 납부액 통계자료를 근거로 상위 0.1%, 1%, 10%의 세수 비중을 추정함
- 총납세자 수 대비 상위 0.1%, 1%, 10%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속한 소득구간을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해당 소득구간의 납부세액이 총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함
 - 다만, 소득구간별 납세자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아 총납세자 수 대비 상위 0.1%, 1%, 10%와 정확히 일치하는 소득구간을 찾을 수 없어 유사 구간을 택하여 세수 비중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국가별, 연도별 단순 비교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02

고소득자 세수 비중 국제 비교

- 소득구간별 납세액으로 세수 비중을 추정된 국가인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의 소득상위 0.1%, 1%, 10%인 납세자가 속한 소득구간 및 분포는 국가별로 상이함(<표 IV-2> 참고)
 - 단, 각 나라의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구간 금액을 단순비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캐나다의 경우 총소득금액(total income) 규모별 결정세액 자료를 토대로 상위 소득계층의 세부담 비중을 추정한 결과 소득상위 1%가 속하는 소득구간은 CAD 25만 이상으로 추정됨
 - 각 연도별 소득금액이 CAD 25만 이상인 납세자는 상위 0.99%~1.54%의 범위로 분포되어 있음
 - 각 연도별 상위 10%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속한 소득구간은 ‘CAD 10만 이상~CAD 15만 미만’으로 추정되며, 실제 납세자 소득분위는 상위 9.06%~12.51%의 범위로 분포되어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과세소득(taxable income) 규모별 납세자 수와 납부세액 자료를 토대로 상위 소득계층의 세부담 비중을 추정한 결과 소득상위 1%가 속하는 소득구간은 ‘NZD 155,000 초과~215,000 이하’인 구간으로 추정됨
 - 각 연도별 과세소득금액이 NZD 155,000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상위 0.98%~1.03% 범위로 분포되어 있음
 - 각 연도별 상위 10%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속한 소득구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NZD 64,000 초과~NZD 84,000 이하’로 추정되며, 실제 납세자 소득분위는 상위 8.8%~10.4% 범위로 분포되어 있음

- 호주의 경우 과세소득(taxable income) 규모별 결정세액 자료를 토대로 상위 소득계층의 세부담 비중을 추정할 결과 소득상위 0.1%가 속하는 소득구간은 AUD 100만 초과인 구간으로 추정됨
 - 각 연도별 과세소득금액이 AUD 100만 초과인 납세자는 상위 0.07%~0.11% 범위로 분포되어 있음
 - 각 연도별 상위 1%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속한 소득구간은 유사 범위 내로 찾기 어려워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각 연도별 상위 10%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속한 소득구간은 2007년~2008년의 경우 ‘AUD 9만 초과 AUD 10만 이하’, 2009년 이후 ‘AUD 10만 초과 AUD 15만 이하’로 추정되며, 실제 납세자 소득분위는 상위 9.51%~16.33% 범위로 분포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소득구간별 납부세액 자료를 토대로 상위 소득계층의 세부담 비중을 추정할 결과 소득상위 0.1%가 속하는 1억엔 초과구간으로 추정됨
 - 각 연도별 상위 1%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속한 소득구간은 ‘5천만엔 초과~1억엔 이하’로 추정되며, 실제 납세자 소득분위는 상위 0.7%~1% 범위로 분포되어 있음
 - 각 연도별 상위 10%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속한 소득구간은 ‘1천만엔 초과~2천만엔 이하’로 추정되며, 실제 납세자 소득분위는 상위 11.3%~12.8% 범위로 분포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소득 규모별 납부세액 자료를 토대로 상위 소득계층의 세부담 비중을 추정할 결과 소득상위 1%가 속하는 소득구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는 2억원 초과, 2012년에서 2015년까지는 3억원 초과구간으로 추정됨¹⁸¹⁾

181) 우리나라 국제통계연보는 근로소득, 종합소득으로 나누어 세수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나

- 각 연도별 종합소득금액이 2011년까지 2억원, 2012년~2015년까지 3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소득분위는 상위 0.8%~1.2%의 범위로 분포되어 있음
- 각 연도별 상위 10%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속한 소득구간은 6천만원 초과 구간으로 추정되며, 실제 납세자 소득분위는 상위 7.8%~10.6%의 범위로 분포되어 있음

표 V-1 주요국의 소득상위계층의 소득구간 및 분포(2007년~2015년)

	상위 0.1%		상위 1%		상위 10%	
	소득구간	분포	소득구간	분포	소득구간	분포
캐나다	-	-	250,000CAD 이상	0.99~ 1.54%	100,000~ 150,000CAD	9.06~ 12.51%
뉴질랜드	-	-	155,000~ 215,000NZD	0.98~ 1.03%	64,000~ 84,000NZD	8.8~ 10.4%
호주	100만AUD 초과	0.07~ 0.11%	-	-	· 2007년~2008년: 90,000~ 100,000AUD · 2009년 이후: 100,000~ 150,000AUD	9.51~ 16.33%
일본	-	-	5천만엔~1억엔	0.7~ 1%	1천만엔~2천만엔	11.3~ 12.8%
대한민국	-	-	2007년~2011년: 2억원 초과 2012년~2015년: 3억원 초과	0.8~ 1.2%	6천만원 초과	7.8~ 10.6%

□ 2013년 기준¹⁸²⁾ 주요국의 소득상위 1% 납세자의 세수 비중은 대한민국(근로 소득 제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라와 달리 종합소득 규모별 납부세액은 근로소득만 신고한 자의 납부세액은 제외됨
182) 주요국 모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는 2013년이므로 2013년 데이터를 이용함

났으며, 주요국 대부분이 소득상위 1%의 세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13년 기준 소득상위 10% 납세자의 세수 비중 또한 대한민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뉴질랜드를 제외한 주요국 모두 소득상위 10% 세수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소득상위 1%의 세수 비중은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45.9%, 소득상위 10%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준 87.2%, 근로소득세 기준 75.8%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에 비해 고소득자의 세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소득상위 10%의 세수 비중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주요국과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남

표 V-2 주요국의 고소득 납세자의 세수 비중 추이¹⁾(2007년~2015년)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상위 0.1%	19.8	18.2	16.9	17.9	16.1	18.6	18.5	- ¹⁾	- ¹⁾
	상위 1%	39.8	37.5	36.3	37.4	35.1	38.1	37.8	- ¹⁾	- ¹⁾
	상위 10%	70.4	69.2	69.9	70.6	68.3	70.2	69.8	- ¹⁾	- ¹⁾
영국	상위 1%	24.4	-	26.5	25.0	25.4	25.1	27.6	27.2	28.9
	상위 10%	54.3	-	54.9	53.5	55.4	55.8	58.6	58.5	59.8
호주	상위 0.1%	6.55	5.51	5.49	- ²⁾	5.42	5.66	6.90	6.65	- ¹⁾
	상위 10%	45.07	47.81	44.84	- ²⁾	50.26	53.67	55.64	55.98	- ¹⁾
독일	상위 0.1%	-	-	-	-	8.9	8.8	9.0	-	- ¹⁾
	상위 1%	-	-	-	-	22.3	21.9	22.9	-	- ¹⁾
	상위 10%	-	-	-	-	54.5	53.9	56.8	-	- ¹⁾
캐나다	상위 1%	21.2	22.7	19.7	19.8	20.2	20.0	20.3	21.1	23.6
	상위 10%	45.4	45.8	44.8	45.9	47.6	49.0	50.6	52.2	53.8
일본	상위 1%	- ³⁾	- ³⁾	- ³⁾	- ³⁾	28.2	29.2	32.7	31.9	35.0
	상위 10%	- ³⁾	- ³⁾	- ³⁾	- ³⁾	80.0	80.5	81.9	81.9	82.6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뉴질랜드	상위 1%	13.9	13.4	13.9	14.3	13.7	14.5	15.3	13.2	13.3
	상위 10%	43.6	43.2	45.0	46.1	45.4	46.9	47.4	45.7	45.8
대한민국	상위 1%(총소) ⁴⁾	46.9	47.9	51.0	53.4	45.9	45.2	44.3	45.5	45.9
	상위 10%(총소) ⁴⁾	79.4	80.1	83.0	84.3	85.8	85.0	85.1	87.1	87.2
	상위 10%(근소)	74.3	75.5	77.5	77.6	76.4	74.5	73.7	76.6	75.8

- 주: 1) 미국은 2014년과 2015년, 호주는 2015년, 독일은 2007년~2010년, 2014년~2015년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음
 2) 호주 국세청의 2010~11 사업연도 통계자료에서 Net tax 세수 현황은 집계되어 있으나, Net tax 납세자 수가 집계되지 아니하여 산정하지 못함
 3) 일본은 2011년 이후 자료가 공시됨
 4)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 달리 근로소득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1.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uac/soi-tax-stats-individual-statistical-tables-by-tax-rate-and-income-percentile>), “Table 1. All Individual Returns Excluding Dependents: Number of Returns, Shares of Adjusted Gross Income (AGI) and Total Income Tax, AGI Threshold on %iles in Current and Constant Dollars, and Average Tax Rates, by Selected Expanded Descending Cumulative %iles of Returns Based on AGI Using the Definition of AGI for Each Year, Tax Years 2004 - 2013 - Continued, 접속일자: 2017.10.13.
 2.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income-tax-statistics-and-distributions>), “Table 2.4. Shares of total income (before and after tax), for percentile groups, 1999-00 to 2017-18“, 접속일자: 2017.8.23
 3.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ation-statistics/>), 2007~08 사업연도부터 2009~10사업연도까지의 “Table 5A: Personal tax,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Part A: Tax Office calculated and miscellaneous items”; 2010~11 사업연도부터 2014~15 사업연도까지의 “Individual tax: Detailed Table 2.3: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sex and taxable status”, 접속일자: 2017.8.23.
 4. Statistisches Bundesamt, 각 연도의 *Finanzen und Steuern: Lohn-und Einkommensteuer*의 Table A4,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FinanzenSteuern/Steuern/LohnEinkommensteuer/LohnEinkommensteuer.html>), 접속일자: 2017.10.13.
 5. 캐나다 국세청(<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income-statistics-gst-hst-statistics.html>), 2007-2008년 데이터: T1 Final Statistics - Sample Data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2009-2014년 데이터: T1 Final Statistics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2015년 데이터: T1 Preliminary Statistics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접속일자: 2017.8.23
 6.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kohyo/tokei/kokuzeicho/tokei.htm>), 통계연보, 2011년-2015년 데이터: 표 8, 표 20, 접속일자 2017.9.5 別表’, 접속일자: 2017.9.5
 7. 뉴질랜드 국세청(<http://www.ird.govt.nz/aboutir/external-stats/revenue-refunds/income-distrib-individual-customers/income-distrib-individ-customers.html>), 접속일자: 2017.9.12
 8. 국세청,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3.1.4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4.2.1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 현황 I』



참고문헌

1. 참고문헌

김은경, 「해외지방세제도, 스페인의 지방소득세제」, 『지방세포럼』 통권 제29호, 2016.9.

김재진, 「중장기 상속·증여세율 및 공제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0.

김재진·김민경·김영린·유현영,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비교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6.

이영숙,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계개편 동향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5. 2.

하능식, 「해외지방세제도, 스웨덴의 지방소득세제」, 『지방세포럼』 통권 제28호, 2016.7.

한국금융연구원, 『주요국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 시사점』, 『금융브리프』, 2013.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2호, 2011.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 근로소득 공제제도 연구』, 2017. 1.

_____,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3년 제2호, 2013. 12.

_____,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5년 제2호, 2015.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국의 지방소득세제』, 2016, p. 82.

Carolina Torres, Kirsty Mellbye and Bert Brys, “Trends in Personal Income Tax and 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Schedules,”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12, 2012.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Norway 2016*, 2016.

EY, *The 2011 global executive-individual tax, social security and immigration*, 2011.

_____,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471.

_____,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16-17.

_____,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2012-13~2015-16.

HM Treasury, Budget 2009, April 2009.

IBFD, “Increase of VAT rates proposed by the Government,” Dec. 5, 2012. 12. 5.

Latvia - 2010 Budget – Letter of Intent describes fiscal policy per request for IMF assistance (10 Sep. 2009), News IBFD.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_____, *Consumption Tax Trends 2016: VAT/GST and excise rates, trends and policy issues*, OECD Publishing, Paris, 2016.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_____, *Economic Surveys ICELAND*, 2001.

_____, *Restoring Public Finances*, OECD Publishing, Paris, 2011.

_____, *Restoring Public Finances, 2012 Update*, OECD Publishing, Paris, 2012.

Switzerland - VAT rates to increase (29 Sep. 2009), News IBFD.

Tax Foundation, “State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for 2016,” 2016. 1.

2. 웹사이트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aboutir/external-stats/revenue-refunds/income-distrib-individual-customers/income-distrib-individ-customers.html>, 접속일자: 2017.9.12

덴마크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skm.dk/english/facts-and-figures/danish-income-tax-rates-2014-2017>, 접속일자: 2017.9.29

독일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FinanzenSteuern/Steuern/LohnEinkommensteuer/LohnEinkommensteuer.html>), 접속일자: 2017.10.13.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uac/soi-tax-stats-individual-income-tax-returns-publication-1304-complete-report>, 접속일자: 2017.10.12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 접속일자 2017.8.23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kohyo/tokei/kokuzeicho/h27/h27.pdf>, 접속일자 2017.9.5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tx/>, 접속일자: 2017.10.12.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접속일자 2017.9.13

BBC, <http://www.bbc.com/>, 접속일자: 2017.9.22.

EU,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sme-definition_en,
접속일자: 2017.10.10.

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접속일자:
2017.09.25.

IBFD, <https://www.ibfd.org/>, 접속일자: 2017.10.12.

IMF, <https://www.imf.org/external/pubs/ft/scr/2009/cr0903.pdf>, 접속일자: 2017.09.22.

KOTRA, <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 접속일자: 2017.09.21.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접속일자: 2017.9.18.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접속일자:
2017.9.14.

PWC, <http://taxsummaries.pwc.com/ID/Iceland-Individual-Other-Taxes>, 접속일자: 2017.9.25.

PWC, <http://taxsummaries.pwc.com/ID/Portugal-Corporate-Taxes-on-corporate-income>,
접속일자: 2017.10.10.

PWC, <http://taxsummaries.pwc.com/ID/Spain-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접속일자 2017.9.27

VAT Live, <https://www.vatlive.com/>, 접속일자 2017.09.25.

01

GDP

부표 1 OECD 회원국의 GDP(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52	415	705	1,410	1,491	1,524	1,585	1,605	1,657
오스트리아	77	137	213	295	309	317	323	330	340
벨기에	92	171	258	365	379	387	393	400	409
캐나다	332	694	1,122	1,686	1,789	1,838	1,910	1,980	1,990
칠레	..	10,482	42,095	110,999	121,319	129,028	137,230	147,568	157,131
체코	2,373	3,954	4,034	4,060	4,098	4,314	4,555
덴마크	399	855	1,327	1,799	1,833	1,883	1,904	1,943	1,985
에스토니아	6	15	17	18	19	20	20
핀란드	34	91	136	187	197	200	203	205	209
프랑스	453	1,059	1,485	1,998	2,059	2,087	2,115	2,140	2,181
독일	789	1,307	2,116	2,580	2,703	2,758	2,826	2,924	3,033
그리스	7	46	141	226	207	191	180	178	176
헝가리	13,310	27,052	28,134	28,628	30,065	32,180	33,712
아이슬란드	16	380	702	1,618	1,701	1,775	1,879	1,989	2,190
아일랜드	13	38	108	167	173	176	180	193	256
이스라엘	540	876	937	1,001	1,056	1,094	1,150
이탈리아	210	729	1,239	1,605	1,637	1,613	1,604	1,612	1,636
일본	252,254	458,413	510,835	480,528	474,171	474,404	482,401	489,558	500,535
대한민국	39,471	197,712	635,185	1,265,308	1,332,681	1,377,457	1,429,445	1,486,079	1,558,592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라트비아	7	18	20	22	23	24	24
룩셈부르크	5	11	23	40	42	44	47	49	52
멕시코	5	825	6,132	13,267	14,527	15,599	16,077	17,210	18,079
네덜란드	174	260	448	632	643	645	653	663	677
뉴질랜드	26	76	122	206	215	219	235	240	249
노르웨이	318	750	1,508	2,590	2,792	2,965	3,071	3,154	3,131
폴란드	747	1,445	1,567	1,629	1,656	1,719	1,790
포르투갈	8	56	128	180	176	168	170	173	179
슬로바키아 공화국	32	67	70	72	74	76	78
슬로베니아	19	36	37	36	36	37	39
스페인	100	328	646	1,081	1,070	1,043	1,031	1,041	1,081
스웨덴	593	1,528	2,380	3,520	3,657	3,685	3,770	3,918	4,155
스위스	199	358	459	606	618	624	635	642	640
터키	0	1	167	1,099	1,298	1,417	1,567	1,747	1,953
영국	243	616	1,081	1,572	1,628	1,675	1,740	1,822	1,870
미국	2,863	5,980	10,285	14,964	15,518	16,155	16,692	17,393	18,037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ference Series for Revenue Statistics, 'GDP for tax reporting years at market prices, national currency'

02

세목별 세수액

가. 총 세수액

부표 2 OECD 회원국의 총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40	117	215	361	392	417	437	447	..
오스트리아	30	54	90	120	127	132	137	141	148
벨기에	37	70	112	156	164	171	177	180	183
캐나다	101	244	390	517	546	570	591	618	636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칠레	..	1,777	7,902	21,846	25,762	27,715	27,382	29,145	32,525
체코	772	1,287	1,342	1,367	1,397	1,427	1,524
덴마크	165	380	622	810	827	862	891	963	926
에스토니아	2	5	5	6	6	6	7
핀란드	12	39	62	76	83	85	89	90	92
프랑스	179	434	639	839	889	925	957	973	992
독일	287	455	767	903	965	1,002	1,030	1,069	1,120
그리스	1	11	47	73	70	68	64	64	65
헝가리	5,141	10,145	10,261	11,043	11,470	12,302	13,281
아이슬란드	5	115	255	540	586	626	676	774	813
아일랜드	4	12	33	45	47	48	51	55	60
이스라엘	188	268	288	297	324	342	361
이탈리아	60	265	503	672	686	708	706	704	709
일본	62,443	130,823	136,125	132,480	135,668	139,578	146,401	156,867	..
대한민국	6,687	37,262	136,295	295,968	321,915	341,336	347,332	365,428	393,558
라트비아	2	5	6	6	6	7	7
룩셈부르크	2	4	9	15	16	17	18	19	19
멕시코	1	102	833	1,873	2,038	2,171	2,350	2,608	..
네덜란드	70	104	167	228	231	232	238	249	255
뉴질랜드	8	27	40	62	66	70	73	78	82
노르웨이	133	302	632	1,086	1,175	1,231	1,226	1,220	1,192
폴란드	246	450	496	520	528	552	..
포르투갈	2	15	40	55	57	54	58	59	62
슬로바키아	11	19	20	21	22	24	25
슬로베니아	7	13	13	13	13	14	14
스페인	22	104	216	341	337	338	343	352	366
스웨덴	259	756	1,166	1,521	1,554	1,568	1,618	1,676	1,801
스위스	46	84	126	160	167	167	171	174	178
터키	0	0	40	288	361	392	459	503	586
영국	81	202	355	512	544	548	565	584	608
미국	731	1,552	2,901	3,516	3,709	3,888	4,283	4,501	4,754

주: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 총세수금액임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나. 개인소득세

부표 3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7.5	50.1	81.2	138.5	153.8	163.0	170.3	183.4	
오스트리아	6.9	11.3	19.9	27.1	28.5	30.3	31.5	33.4	35.9
벨기에	13.6	22.5	35.3	44.0	46.1	47.6	50.5	51.6	51.6
캐나다	34.5	99.7	143.7	180.9	197.1	207.5	214.1	224.7	233.9
칠레		99.2	604.1	1,492.8	1,690.2	1,893.6	1,964.2	2,114.3	2,313.4
체코			99.7	131.7	142.8	144.8	149.8	153.8	164.5
덴마크	86.2	205.2	327.5	420.9	428.1	441.1	485.5	520.2	504.3
에스토니아			0.4	0.8	0.8	0.9	1.0	1.1	1.2
핀란드	4.2	13.6	19.1	22.5	24.2	25.0	26.0	27.5	27.8
프랑스	20.7	46.3	115.2	143.4	152.8	167.9	178.4	182.4	187.1
독일	85.1	125.3	194.2	219.4	238.7	257.1	268.5	281.6	299.6
그리스	0.2	1.6	6.8	9.0	9.8	13.3	10.8	10.4	
헝가리			954.7	1,768.8	1,422.1	1,622.0	1,610.3	1,705.1	1,688.6
아이슬란드	1.1	30.9	88.5	197.3	220.6	234.5	258.6	270.6	291.9
아일랜드	1.3	4.1	10.6	13.6	14.6	15.6	16.2	17.7	19.2
이스라엘			54.8	48.2	51.9	53.5	57.7	63.4	70.7
이탈리아	13.9	69.7	124.9	180.2	180.5	187.3	186.0	182.3	185.5
일본	15,180.0	36,393.6	28,677.3	24,662.7	24,951.0	25,945.9	28,150.1	29,655.0	30,540.7
대한민국	766.0	7,440.4	19,950.0	42,098.0	47,299.0	51,185.0	53,311.0	59,457.0	68,625.0
라트비아			0.4	1.1	1.1	1.3	1.3	1.4	1.4
룩셈부르크	0.4	0.9	1.6	3.2	3.5	3.7	4.1	4.3	4.7
멕시코				313.5	352.4	397.7	425.6	514.2	609.4
네덜란드	18.4	25.8	25.1	49.0	47.9	45.2	44.8	46.6	52.4
뉴질랜드	4.7	13.2	17.1	23.5	24.3	26.4	27.9	30.1	31.1
노르웨이	38.0	79.1	152.0	256.5	271.3	288.1	304.4	309.6	326.6
폴란드			32.4	62.9	67.9	72.6	74.2	78.7	
포르투갈		2.4	6.9	9.6	10.5	9.8	13.1	13.3	13.1
슬로바키아			1.1	1.8	2.0	2.1	2.1	2.3	2.5
슬로베니아			1.0	2.0	2.1	2.0	1.8	1.9	2.0
스페인	4.5	22.5	41.2	74.5	76.8	77.5	77.2	78.7	78.0
스웨덴	106.4	291.1	387.5	423.9	427.9	439.6	459.1	479.5	518.0
스위스	18.1	27.7	37.5	51.2	51.8	52.8	53.2	53.8	55.5
터키	0.0	0.0	9.0	40.4	48.8	56.5	63.8	73.9	85.8
영국	23.9	59.5	104.1	147.0	152.7	150.5	156.3	160.3	169.4
미국	285.5	584.7	1,224.5	1,224.5	1,438.7	1,497.2	1,659.1	1,768.5	1,938.1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다. 법인소득세

부표 4 OECD 회원국의 법인소득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4.9	16.5	43.4	66.0	77.1	78.7	78.1	75.2	..
오스트리아	1.0	1.9	4.2	5.5	6.2	6.4	7.0	7.0	7.7
벨기에	1.7	3.4	8.1	9.2	10.7	11.6	12.2	12.9	13.9
캐나다	11.7	17.2	47.6	54.1	56.1	57.9	62.8	65.2	62.3
칠레	..	219.6	882.9	4,448.7	6,021.4	7,560.9	6,041.1	6,196.1	7,721.6
체코	76.2	128.2	129.7	135.2	140.4	151.9	162.1
덴마크	5.4	14.6	42.1	40.9	40.1	49.3	52.6	51.4	52.5
에스토니아	0.1	0.2	0.2	0.3	0.3	0.3	0.4
핀란드	0.4	1.8	7.8	4.6	5.2	4.2	4.8	4.0	4.5
프랑스	9.2	23.1	44.2	46.7	54.1	54.1	55.8	49.7	46.1
독일	15.7	22.0	37.1	38.4	45.4	47.5	50.5	51.0	52.9
그리스	0.1	0.6	5.6	5.7	4.3	2.1	2.1	3.3	..
헝가리	292.7	329.7	338.5	368.2	416.2	471.9	625.2
아이슬란드	0.1	3.2	8.4	14.6	29.5	34.0	40.5	66.8	63.7
아일랜드	0.2	0.6	3.9	3.9	3.8	4.0	4.3	4.6	6.9
이스라엘	18.0	23.1	27.6	27.1	36.6	35.0	34.7
이탈리아	4.7	26.6	34.7	36.7	35.8	38.6	41.2	35.2	33.7
일본	13,620.0	29,288.0	18,720.9	15,371.6	15,958.9	17,406.1	19,384.1	20,284.2	21,329.4
대한민국	738.2	4,756.6	19,271.0	40,807.0	49,546.0	50,759.0	48,481.0	46,896.0	50,525.0
라트비아	0.1	0.2	0.3	0.4	0.4	0.4	0.4
룩셈부르크	0.3	0.6	1.5	2.3	2.1	2.3	2.2	2.1	2.3
멕시코	246.7	303.2	288.4	392.2	441.3	592.4
네덜란드	4.6	7.9	18.1	14.6	14.0	13.7	14.3	17.1	18.4
뉴질랜드	0.6	1.8	4.9	7.6	8.5	9.9	10.3	10.3	11.0
노르웨이	17.8	27.2	132.2	256.7	301.9	306.2	253.7	208.6	141.7
폴란드	17.9	28.1	31.6	33.9	29.4	30.0	..
포르투갈	..	1.2	4.7	4.9	5.5	4.6	5.5	4.9	5.7
슬로바키아	0.8	1.7	1.7	1.7	2.1	2.5	2.8
슬로베니아	0.2	0.7	0.6	0.4	0.4	0.5	0.6
스페인	1.1	9.1	19.6	21.0	20.0	22.9	22.2	21.6	26.1
스웨덴	6.4	23.7	87.8	115.8	113.0	94.8	99.9	106.1	124.4
스위스	3.0	10.3	17.4	16.3	17.4	17.4	17.8	18.1	19.5
터키	0.0	0.0	2.9	20.9	27.0	29.0	29.0	32.3	33.4
영국	6.8	20.1	34.5	44.7	46.7	44.6	43.6	43.7	45.9
미국	78.6	117.0	229.3	267.0	274.2	327.2	355.1	379.3	395.9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라. 부가가치세

부표 5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2.1	9.4	25.8	49.3	50.0	51.5	56.8	57.8	
오스트리아	6.0	11.2	16.9	22.8	23.5	24.6	25.0	25.5	26.3
벨기에	6.3	11.6	18.2	25.5	26.3	27.1	27.5	27.7	27.8
캐나다	11.7	34.5	55.3	72.1	76.5	79.4	81.2	85.2	88.3
칠레		664.4	3,306.4	8,399.9	9,536.8	10,447.4	11,170.8	12,133.7	13,274.0
체코			141.2	263.5	276.5	286.1	303.8	319.5	333.3
덴마크	37.4	71.7	121.6	170.8	175.6	180.8	179.6	184.6	187.9
에스토니아			0.5	1.3	1.4	1.5	1.6	1.7	1.9
핀란드	2.1	7.5	10.9	15.5	17.3	18.0	18.9	18.9	19.0
프랑스	37.3	80.0	106.9	135.4	140.2	142.4	144.2	148.0	151.5
독일	47.8	75.5	140.9	180.5	190.2	194.4	197.3	203.4	211.7
그리스	0.2	2.9	9.8	16.2	15.3	13.9	12.8	12.8	
헝가리			1,153.7	2,363.4	2,422.9	2,682.6	2,741.5	3,059.3	3,343.6
아이슬란드	1.4	37.1	72.7	122.4	131.1	142.8	149.8	160.9	179.5
아일랜드	0.6	2.5	7.6	10.1	9.8	10.2	10.4	11.5	12.0
이스라엘			49.9	79.9	85.6	88.2	97.4	105.7	107.8
이탈리아	9.4	38.9	77.5	97.6	98.7	96.2	93.9	97.0	101.2
일본		5,778.3	12,350.3	12,675.2	12,744.9	12,901.5	13,478.9	19,135.4	21,984.3
대한민국	1,471.0	6,964.4	23,212.0	51,800.0	54,868.0	58,702.0	59,105.0	62,975.0	60,162.0
라트비아			0.5	1.2	1.4	1.6	1.7	1.8	1.9
룩셈부르크	0.2	0.4	1.1	2.6	2.8	3.1	3.4	3.7	3.4
멕시코	0.1	26.6	189.6	504.5	537.1	580.0	556.8	667.1	707.2
네덜란드	11.1	17.2	28.8	42.7	41.6	41.7	42.4	42.7	44.9
뉴질랜드	0.8	6.2	9.9	19.1	20.3	21.0	22.1	23.3	24.5
노르웨이	24.4	56.7	125.0	201.8	211.7	224.1	235.8	244.8	256.3
폴란드			51.6	109.7	122.6	116.3	116.6	122.7	
포르투갈	0.3	2.9	9.7	13.5	14.3	14.0	13.7	14.7	15.4
슬로바키아			2.2	4.2	4.7	4.3	4.7	5.0	5.4
슬로베니아			1.6	2.9	3.0	2.9	3.0	3.2	3.2
스페인	0.0	16.3	37.9	57.0	55.3	56.3	60.9	63.9	68.7
스웨덴	34.6	112.4	197.5	322.6	330.8	329.3	337.8	353.4	379.2
스위스	4.8	9.9	16.9	20.9	21.9	22.2	22.7	22.7	22.6
터키		0.0	9.7	62.5	78.6	81.6	100.7	102.5	120.8
영국	11.9	34.1	64.2	95.9	111.5	113.9	118.0	124.2	128.9
미국	51.3	125.6	221.4	294.4	308.3	319.7	338.5	353.9	366.0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마. 상속·증여세

부표 6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0.2	0.0	0.0	0.0	0.0	0.0	0.0	0.0	..
오스트리아	0.0	0.1	0.1	0.0	0.0	0.0	0.0	0.0	0.0
벨기에	0.3	0.5	1.1	2.3	2.4	2.7	3.1	2.8	3.0
캐나다	0.1	0.0	0.0	0.2	0.2	0.2	0.2	0.2	0.3
칠레	..	3.4	10.9	39.3	30.9	66.7	45.6	31.3	92.2
체코	0.6	0.2	4.4	3.4	0.2	0.0	-4.4
덴마크	0.7	2.2	2.9	3.6	4.8	4.0	3.9	3.8	5.1
에스토니아	0.0	0.0	0.0	0.0	0.0	0.0	0.0
핀란드	0.0	0.1	0.4	0.4	0.4	0.5	0.6	0.5	0.6
프랑스	1.0	4.1	6.9	7.7	8.6	9.6	10.4	10.2	12.2
독일	0.5	1.5	3.0	4.4	4.2	4.3	4.6	5.5	6.3
그리스	0.0	0.1	0.4	0.2	0.1	0.1	0.1	0.1	..
헝가리	5.5	6.3	6.5	5.7	5.3	6.2	7.4
아이슬란드	0.0	0.2	0.8	2.6	1.3	1.9	2.4	2.5	2.9
아일랜드	0.0	0.0	0.2	0.2	0.2	0.3	0.3	0.4	0.4
이스라엘	0.0	0.0	0.0	0.0	0.0	0.0	0.0
이탈리아	0.1	0.4	1.0	0.5	0.5	0.6	0.6	0.6	0.7
일본	441.0	1,918.0	1,782.2	1,250.4	1,474.4	1,503.9	1,574.3	1,882.9	1,761.0
대한민국	12.0	353.9	989.0	3,076.0	3,333.0	4,021.0	4,290.0	4,625.0	5,044.0
라트비아	0.0	0.0	0.0	0.0	0.0	0.0	0.0
룩셈부르크	0.0	0.0	0.0	0.1	0.0	0.1	0.1	0.1	0.1
멕시코	0.0	0.0	0.0	0.0	0.0	0.0	0.0	0.0	..
네덜란드	0.3	0.5	1.5	1.7	1.5	1.4	1.7	1.5	1.6
뉴질랜드	0.0	0.1	0.0	0.0	0.0	0.0	0.0	0.0	0.0
노르웨이	0.1	0.4	1.3	2.4	1.8	1.9	2.2	1.9	0.3
폴란드	0.2	0.3	0.3	0.3	0.3	0.3	..
포르투갈	0.0	0.1	0.1	0.0	0.0	0.0	0.0	0.0	0.0
슬로바키아	0.0	0.0	0.0	0.0	0.0	0.0	0.0
슬로베니아	0.0	0.0	0.0	0.0	0.0	0.0	0.0
스페인	0.1	0.4	1.4	2.4	2.2	2.2	2.5	2.7	2.7
스웨덴	0.5	1.4	2.5	0.0	0.0	-0.0	-0.0	0.0	-0.0
스위스	0.4	0.9	1.2	1.0	0.8	0.9	1.0	1.2	1.2
터키	0.0	0.0	0.0	0.2	0.3	0.3	0.3	0.4	0.4
영국	0.5	1.3	2.2	2.6	2.9	3.1	3.4	3.9	4.4
미국	8.4	15.8	35.6	19.5	14.4	19.0	26.0	23.8	24.8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바. 소비세

부표 7 OECD 회원국의 소비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6.2	12.0	19.8	26.7	26.3	26.4	26.5	24.5	..
오스트리아	2.2	3.3	5.5	6.9	7.5	7.6	7.6	7.5	7.7
벨기에	2.0	3.5	5.7	7.8	7.8	7.9	8.0	8.2	8.6
캐나다	6.8	14.5	18.4	23.3	23.7	23.7	24.3	25.4	26.2
칠레	..	166.0	816.2	1,561.2	1,750.9	1,892.7	1,987.5	2,224.2	2,378.2
체코	71.4	138.4	149.8	151.7	149.8	124.9	153.8
덴마크	20.3	38.1	68.8	73.7	75.0	78.4	81.1	79.1	81.1
에스토니아	0.2	0.6	0.7	0.8	0.8	0.8	0.9
핀란드	1.6	3.8	5.6	6.3	7.3	7.5	7.5	7.4	7.7
프랑스	11.0	26.8	39.6	45.5	48.2	49.4	52.0	52.7	56.7
독일	20.6	31.2	57.2	63.5	66.3	64.9	64.6	65.1	65.3
그리스	0.2	1.4	4.2	7.3	7.7	7.0	6.8	6.8	..
헝가리	533.5	929.9	960.0	1,022.6	992.3	1,027.6	1,125.3
아이슬란드	0.3	2.3	23.6	46.7	50.2	53.9	55.2	57.5	57.4
아일랜드	1.0	2.1	4.4	4.9	4.9	4.8	5.0	5.2	5.5
이스라엘	6.6	15.5	15.9	16.4	16.7	17.1	17.6
이탈리아	4.1	20.3	31.5	36.4	41.1	46.8	45.7	48.7	45.8
일본	6,674.0	8,637.2	9,837.0	8,622.4	8,719.0	8,720.5	8,728.4	8,308.4	8,247.6
대한민국	1,029.0	4,923.7	18,155.0	31,340.0	25,401.0	28,410.0	27,661.0	28,226.0	31,857.0
라트비아	0.2	0.6	0.7	0.7	0.7	0.8	0.8
룩셈부르크	0.1	0.4	1.0	1.4	1.5	1.5	1.5	1.6	1.4
멕시코	0.0	10.1	86.2	86.1	94.6	98.5	104.1	155.8	..
네덜란드	3.8	6.0	13.8	18.4	18.2	17.4	17.3	17.9	18.1
뉴질랜드	0.5	1.9	2.1	1.8	1.8	1.9	1.9	2.0	2.3
노르웨이	14.9	37.5	54.9	76.3	77.0	77.3	78.5	79.0	78.8
폴란드	27.2	59.6	63.0	64.4	65.8	66.1	..
포르투갈	0.3	2.1	4.5	5.7	5.4	4.8	4.7	4.8	5.3
슬로바키아	1.0	1.9	2.0	2.0	2.0	2.0	2.1
슬로베니아	0.6	1.6	1.5	1.6	1.6	1.6	1.6
스페인	1.2	6.0	16.2	22.5	21.7	21.2	23.8	23.9	25.1
스웨덴	19.9	55.3	70.3	91.6	89.7	89.8	88.5	86.9	91.6
스위스	3.4	1.5	6.8	8.3	8.0	8.2	8.1	8.1	8.1
터키	0.0	0.0	4.7	57.3	64.2	71.7	85.5	91.1	105.9
영국	8.6	19.7	37.3	45.4	46.2	46.8	46.6	47.1	47.3
미국	45.5	65.0	108.6	145.3	146.5	154.1	153.4	154.8	154.1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사. 거래세

부표 8 OECD 회원국의 거래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0	4.3	9.8	13.6	12.8	14.2	17.3	20.2	..
오스트리아	0.2	0.4	0.6	0.8	0.8	1.0	0.9	0.9	1.1
벨기에	0.6	1.5	2.7	3.5	3.8	3.8	3.9	4.1	4.4
캐나다	0.0	0.0	0.0	3.1	3.4	3.4	3.6	4.0	4.5
칠레	..	45.9	240.9	196.9	265.6	324.7	247.4	273.6	272.1
체코	5.8	7.4	7.6	7.6	9.1	9.6	11.6
덴마크	2.3	4.1	4.2	5.7	5.1	4.9	4.6	5.2	5.8
에스토니아	0.0	0.0	0.0	0.0	0.0	0.0	0.0
핀란드	0.2	0.7	0.4	0.5	0.5	0.6	0.6	0.7	0.8
프랑스	2.2	5.9	7.3	10.8	12.2	12.0	11.9	12.6	14.3
독일	1.6	3.1	5.2	5.3	6.4	7.4	8.4	9.3	11.2
그리스	0.0	0.4	2.0	1.1	0.9	0.7	0.6	0.5	..
헝가리	52.8	77.6	68.9	79.9	64.7	81.9	93.4
아이슬란드	0.1	2.9	3.1	2.7	2.9	3.4	4.0	3.5	4.2
아일랜드	0.1	0.2	1.1	0.8	0.8	0.8	1.1	1.2	1.5
이스라엘	2.8	3.1	3.1	2.8	3.4	3.7	5.1
이탈리아	2.1	5.6	12.3	17.4	16.8	15.3	17.1	18.0	17.3
일본	1,347.0	3,279.8	2,098.5	1,402.9	1,388.4	1,413.3	1,483.0	1,406.7	1,388.5
대한민국	319.3	2,959.7	11,935.0	21,170.0	23,443.0	21,877.0	20,748.0	24,026.0	31,095.0
라트비아	0.0	0.0	0.0	0.0	0.0	0.0	0.0
룩셈부르크	0.0	0.1	0.2	0.2	0.2	0.2	0.2	0.3	0.3
멕시코	0.0	0.9	4.0	13.2	12.5	13.6	14.9	17.2	..
네덜란드	0.6	1.0	3.4	2.8	1.9	1.1	1.1	1.6	1.8
뉴질랜드	0.0	0.1	0.1	0.1	0.1	0.1	0.1	0.1	0.1
노르웨이	0.3	1.1	2.7	5.9	6.7	7.2	7.3	7.6	8.4
폴란드	2.0	2.4	2.3	2.0	2.1	2.3	..
포르투갈	0.0	0.2	0.9	0.8	0.7	0.6	0.6	0.7	0.8
슬로바키아	0.0	0.0	0.0	0.0	0.0	0.0	0.0
슬로베니아	0.0	0.0	0.0	0.0	0.0	0.0	0.0
스페인	0.8	2.5	6.0	8.0	6.4	5.6	5.6	6.3	7.2
스웨덴	1.1	13.1	5.8	10.1	8.9	8.8	9.6	9.9	11.4
스위스	0.9	2.1	4.2	2.3	2.3	1.5	1.5	1.5	1.7
터키	0.0	0.0	1.1	8.8	10.9	12.7	17.1	19.1	22.3
영국	0.6	1.8	8.4	9.1	8.8	8.9	11.5	14.1	13.8
미국	1.0	0.0	0.0	0.0	0.0	0.0	0.0	0.0	0.0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아. 기타 재산세

부표 9 OECD 회원국의 기타 재산세수액(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2015년)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1.9	6.1	9.1	19.9	20.8	21.8	23.6	25.1	
오스트리아	0.6	1.0	0.5	0.7	0.7	0.7	1.5	1.0	0.8
벨기에	0.2	0.7	1.5	5.5	5.7	6.1	6.8	7.4	7.0
캐나다	9.1	24.5	37.2	60.5	61.8	64.1	66.7	68.3	70.2
칠레		60.0	302.2	662.4	731.2	788.9	840.8	924.1	1,054.2
체코			4.5	8.8	8.5	9.5	9.9	9.6	9.9
덴마크	6.7	9.8	13.7	24.1	24.9	24.7	26.1	26.9	27.8
에스토니아			0.0	0.1	0.1	0.1	0.1	0.1	0.1
핀란드	0.0	0.1	0.7	1.2	1.2	1.3	1.4	1.5	1.6
프랑스	5.4	17.4	29.6	51.8	53.7	56.9	58.5	60.3	62.2
독일	7.3	10.7	9.3	11.3	12.4	12.9	13.1	13.4	15.1
그리스	0.0	0.0	0.5	2.4	3.9	4.0	4.7	1.9	
헝가리			30.8	228.2	241.7	265.6	318.8	329.3	336.3
아이슬란드	0.2	6.5	16.1	32.8	35.1	39.0	40.1	43.6	36.4
아일랜드	0.1	0.3	0.6	1.3	1.8	2.0	2.3	2.6	2.0
이스라엘			13.8	24.7	26.9	26.2	27.8	28.7	30.6
이탈리아	0.0	0.0	10.0	14.6	18.8	27.7	26.2	28.2	27.8
일본	3,326.0	7,098.5	10,413.7	10,225.0	10,237.2	9,798.9	9,882.2	10,016.0	9,900.2
대한민국	205.4	1,075.3	3,922.0	9,270.0	9,779.0	10,315.0	10,809.0	11,654.0	12,486.0
라트비아			0.1	0.1	0.2	0.2	0.2	0.2	0.2
룩셈부르크	0.1	0.2	0.7	0.9	0.9	0.9	1.0	1.1	1.4
멕시코	0.0	1.0	9.9	25.7	28.7	31.5	31.3	37.7	
네덜란드	1.5	2.3	3.9	4.3	4.4	4.6	5.3	6.5	6.3
뉴질랜드	0.5	1.7	2.0	4.0	4.2	4.3	4.4	4.7	5.0
노르웨이	1.9	7.3	10.6	22.6	24.3	26.2	27.7	28.8	26.2
폴란드			8.4	16.4	17.5	19.5	20.7	21.4	
포르투갈	-0.0	0.1	0.5	1.1	1.2	1.1	1.3	1.5	1.6
슬로바키아			0.1	0.3	0.3	0.3	0.3	0.3	0.3
슬로베니아			0.1	0.2	0.2	0.2	0.2	0.2	0.2
스페인	0.1	2.8	6.2	11.3	11.6	13.2	14.8	15.7	16.0
스웨덴	0.7	12.1	31.5	26.4	27.6	28.7	31.6	32.0	32.5
스위스	2.5	3.8	6.0	8.1	8.0	8.0	8.5	8.8	9.0
터키	0.0	0.0	0.2	2.7	3.5	3.5	3.8	5.0	5.9
영국	8.7	13.5	30.6	49.9	51.5	53.0	54.9	56.3	57.8
미국	68.5	164.5	259.5	442.6	446.5	449.5	457.1	463.3	470.1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자. 환경에너지세

부표 10 OECD 회원국의 환경에너지세수액(1994년, 2000년, 2010년~2014년)

(단위: 각국현지통화, 10억)

국가	1994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호주	11.5	17.0	25.3	26.5	31.6	33.8	30.8
오스트리아	3.8	6.2	8.4	9.0	9.1	9.2	9.5
벨기에	4.9	6.4	8.2	8.7	8.4	8.0	8.1
캐나다	12.9	14.8	19.8	20.6	20.9	21.8	22.6
칠레	285.2	661.5	1,146.9	1,316.7	1,458.5	1,552.3	1,777.1
체코	37.3	57.9	107.5	115.4	114.7	113.5	113.1
덴마크	40.6	66.0	75.3	77.1	77.3	80.7	79.9
에스토니아	0.0	0.1	0.4	0.5	0.5	0.5	0.5
핀란드	2.5	4.2	5.0	6.0	6.0	6.0	5.9
프랑스	22.8	33.3	36.8	38.8	39.7	41.4	42.1
독일	43.1	48.4	54.9	58.7	58.3	57.6	56.7
그리스		3.2	5.5	5.4	5.2	4.9	4.9
헝가리	135.5	394.5	748.0	745.1	795.3	795.6	834.5
아이슬란드	12.1	21.1	33.2	35.1	38.1	37.9	39.9
아일랜드	1.5	3.0	3.9	3.9	3.9	4.1	4.2
이스라엘	8.6	14.3	28.4	29.7	29.7	29.8	32.5
이탈리아	33.1	35.8	51.0	55.9	61.3	59.0	62.1
일본	8,239.3	8,817.9	7,705.1	7,538.2	7,498.5	7,449.7	7,221.8
대한민국	6,985.0	16,827.0	35,706.1	33,667.2	36,265.5	36,585.6	37,785.2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0.5	0.6	1.0	1.0	1.0	1.0	1.0
멕시코	25.3	80.3	-27.9	-115.2	-177.1	-56.3	9.5
네덜란드	9.8	15.9	22.6	22.4	21.5	22.2	22.1
뉴질랜드	1.6	2.0	2.7	2.8	2.9	3.1	3.3
노르웨이	30.1	42.9	62.4	63.5	64.4	66.0	66.7
폴란드	3.7	14.6	27.8	29.1	32.2	31.9	
포르투갈	2.7	3.4	4.3	4.0	3.6	3.7	3.8
슬로바키아	0.5	0.7	1.2	1.3	1.3	1.3	1.3
슬로베니아	0.0	0.6	1.3	1.3	1.4	1.4	1.4
스페인	9.2	14.1	17.8	17.2	16.8	19.6	19.6
스웨덴	48.4	63.5	91.3	88.0	88.6	89.1	86.6
스위스	7.1	8.7	11.3	11.3	11.3	11.3	11.3
터키	0.1	4.6	43.3	48.5	51.4	63.6	66.9
영국	19.2	29.2	38.3	39.1	39.5	40.9	42.0
미국	79.5	99.2	118.2	122.3	125.4	125.9	125.6

자료: OECD Statistics, Environment Database -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03 주요국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신고자 분포

가. 미국

부표 11 미국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 분포(2014년 기준)

소득(달러)	소득세				근로소득세				(단위: 명, %)
	Taxable returns		Non-taxable returns		Taxable returns		Non-taxable returns		
	신고 수	구성비	신고 수	구성비	신고 수	구성비	신고 수	구성비	
0	2,034,138	0.3	2,027,678	99.7	563,811	3,234	0.6	560,577.0	99.4
\$1 ~ \$5,000	10,262,509	2.4	10,021,273	97.6	7,400,467	98,529	1.3	7,301,938.0	98.7
\$5,000 ~ \$10,000	11,790,191	15.6	9,945,181	84.4	9,151,598	1,774,694	19.4	7,376,904.0	80.6
\$10,000 ~ \$15,000	12,289,794	36.1	7,853,366	63.9	9,264,373	3,664,127	39.6	5,600,246.0	60.4
\$15,000 ~ \$20,000	11,331,450	45.4	6,182,822	54.6	9,184,654	4,276,430	46.6	4,908,224.0	53.4
\$20,000 ~ \$25,000	10,061,750	53.3	4,698,490	46.7	8,492,339	4,482,349	52.8	4,009,990.0	47.2
\$25,000 ~ \$30,000	8,818,876	60.5	3,481,139	39.5	7,596,619	4,434,930	58.4	3,161,689.0	41.6
\$30,000 ~ \$40,000	14,599,675	70.6	4,294,342	29.4	12,779,113	8,827,258	69.1	3,951,855.0	30.9
\$40,000 ~ \$50,000	11,472,714	83.4	1,904,386	16.6	10,010,599	8,271,614	82.6	1,738,985.0	17.4
\$50,000 ~ \$75,000	19,394,648	93.4	1,282,579	6.6	16,645,564	15,553,429	93.4	1,092,135.0	6.6
\$75,000 ~ \$100,000	12,825,769	98.1	239,111	1.9	11,136,071	10,961,608	98.4	174,463.0	1.6
\$100,000 ~ \$200,000	17,501,251	99.3	121,237	0.7	15,452,930	15,375,713	99.5	77,217.0	0.5
\$200,000 ~ \$500,000	4,978,534	99.8	9,390	0.2	4,409,695	4,403,032	99.8	6,663.0	0.2
\$500,000 ~ \$1,000,000	834,981	99.9	1,071	0.1	713,890	713,041	99.9	849.0	0.1
\$1,000,000 ~ \$1,500,000	410,298	99.9	444	0.1	338,164	337,866	99.9	298.0	0.1
총계	148,606,578	65.0	52,062,499	35.0	123,139,887	83,177,854	67.5	39,962,033.0	32.5

자료: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uac/soi-tax-stats-individual-income-tax-returns-publication-1304-complete-report>), Table 1.4. All Retur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and Tax Items, by Size of Adjusted Gross Income, Tax Year 2014 (Filing Year 2015) 자료 사용

나. 영국

부표 12 영국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 분포(2014년 기준)

(단위: 천명, %)

소득 (피운드)	소득세						근로소득세							
	총납세자 수 (a)	Taxable returns			Non-taxable returns			총납세자 수 (d)	Taxable returns			Non-taxable returns		
		납세자 수 (a-b-c)	구성비	starting rate(b)	savers rate(c)	납세자 수 (b+c)	구성비		starting rate(e)	savers rate(f)	납세자 수 (e+f)	구성비		
10,000	7,000	6,571	93.87	250	179	429	3,836	3,700	96.45	61	75	136	3.55	
15,000	6,080	5,963	98.08	12	105	117	3,968	3,920	98.79	24	24	48	1.21	
20,000	7,730	7,566	97.88	10	154	164	5,510	5,510	100	-	-	-	-	
30,000	6,600	6,344	96.12	13	243	256	3,921	3,920	99.97	-	1	1	0.03	
50,000	2,490	2,486	99.84	-	4	4	2,251	2,251	100	-	-	-	-	
100,000	425	425	100	-	-	-	889	889	100	-	-	-	-	
150,000	151	151	100	-	-	-	102	102	100	-	-	-	-	
200,000	160	160	100	-	-	-	68	68	100	-	-	-	-	
500,000	30	30	100	-	-	-	56	56	100	-	-	-	-	
1,000,000	11	11	100	-	-	-	9	9	100	-	-	-	-	
2,000,000+	4	4	100	-	-	-	-	-	-	-	-	-	-	

자료: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income-tax-statistics-and-distribution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income-tax-liabilities-of-starting-savers-basic-and-higher-rate-taxpayers-by-largest-source-of-income-2010-to-2011>), "Table 2.5a Income tax liabilities, by income range, 2014-15"; "Table 3.4 Income tax liabilities of starting, 'savers', basic, higher and additional rate taxpayers, by largest source of income, 2014-1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필승일자: 2017.8.23

다. 호주

부표 13 호주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 분포(2014년 기준)

(단위: 천명, %)

소득(호주달러)	소득세			근로소득세						
	총신고 수	Taxable returns		총신고 수	Taxable returns		Non-taxable returns			
		신고 수	구성비		신고 수	구성비	신고 수	구성비		
6,000 이하	955,787	23,401	2.45	932,386	97.55	311,651	4,314	1.38	307,337	98.62
6,001~10,000	407,110	8,524	2.09	398,586	97.91	255,732	1,799	0.70	253,933	99.30
10,001~18,200	1,125,254	12,054	1.07	1,113,200	98.93	738,621	3,321	0.45	735,300	99.55
18,201~25,000	1,235,849	606,682	49.09	629,167	50.91	864,629	492,384	56.95	372,245	43.05
25,001~30,000	779,257	656,865	84.29	122,392	15.71	601,757	554,299	92.11	47,458	7.89
30,001~37,000	1,105,541	1,052,966	95.24	52,575	4.76	893,759	872,527	97.62	21,232	2.38
37,001~40,000	490,795	486,790	99.18	4,005	0.82	412,854	412,277	99.86	577	0.14
40,001~45,000	774,876	772,180	99.65	2,696	0.35	675,859	675,346	99.92	513	0.08
45,001~50,000	713,612	712,516	99.85	1,096	0.15	635,196	634,866	99.95	330	0.05
50,001~55,000	649,345	648,453	99.86	892	0.14	585,589	585,299	99.95	290	0.05
55,001~60,000	561,922	561,232	99.88	690	0.12	510,775	510,534	99.95	241	0.05
60,001~70,000	955,906	954,929	99.90	977	0.10	876,398	876,041	99.96	357	0.04
70,001~80,000	792,199	791,423	99.90	776	0.10	718,929	718,649	99.96	280	0.04
80,001~90,000	606,541	605,938	99.90	603	0.10	557,423	557,187	99.96	236	0.04
90,001~100,000	431,565	431,055	99.88	510	0.12	400,381	400,185	99.95	196	0.05
100,001~150,000	982,701	981,000	99.83	1,701	0.17	896,300	894,576	99.92	724	0.08
150,001~180,000	246,528	245,828	99.72	700	0.28	211,791	211,495	99.86	296	0.14
180,001~250,000	220,479	220,044	99.80	435	0.20	186,895	185,770	99.93	125	0.07
250,001~500,000	136,296	135,960	99.75	336	0.25	108,350	108,262	99.92	88	0.08
500,001~1,000,000	31,123	31,114	99.97	9	0.03	21,826	21,825	100.00	1	0.00
1,000,001 이상	11,128	11,123	99.96	5	0.04	7,204	7,204	100.00	0	0.00

자료: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ation-statistics/>), "Individual tax: Detailed Table 2.3: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sex and taxable status 2014-15"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접속일자: 2017.8.23.

라. 캐나다

부표 14 캐나다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 분포(2014년¹⁾ 기준)

소득(캐나다달러)	소득세						(단위: 명, %)
	총신고 수		Taxable returns		Non-taxable returns		
	신고 수	구성비	신고 수	구성비	신고 수	구성비	
0 ~ 4999	2,744,190	1.3	36,750	1.3	2,707,440	98.7	
5,000~9,999	1,796,610	9.2	165,920	9.2	1,630,690	90.8	
10,000~14,999	2,343,000	18.7	437,070	18.7	1,905,930	81.3	
15,000~19,999	2,516,540	32.2	811,540	32.2	1,705,000	67.8	
20,000~24,999	2,020,700	66.6	1,344,980	66.6	675,720	33.4	
25,000~29,999	1,633,140	85.9	1,402,630	85.9	230,510	14.1	
30,000~34,999	1,557,460	93.2	1,451,110	93.2	106,350	6.8	
35,000~39,999	1,505,920	96.2	1,449,270	96.2	56,650	3.8	
40,000~44,999	1,459,290	97.8	1,426,740	97.8	32,540	2.2	
45,000~49,999	1,245,260	98.5	1,226,210	98.5	19,060	1.5	
50,000~54,999	1,073,610	98.9	1,061,610	98.9	12,000	1.1	
55,000~59,999	937,770	99.2	930,010	99.2	7,760	0.8	
60,000~69,999	1,536,090	99.4	1,526,430	99.4	9,670	0.6	
70,000~79,999	1,224,780	99.6	1,220,250	99.6	4,530	0.4	
80,000~89,999	911,730	99.7	909,320	99.7	2,410	0.3	
90,000~99,999	718,350	99.8	716,910	99.8	1,440	0.2	
100,000~149,999	1,473,810	99.8	1,470,500	99.8	3,320	0.2	
150,000~249,999	567,790	99.7	565,890	99.7	1,900	0.3	
250,000 ~	268,690	99.7	267,800	99.7	890	0.3	

주: 1) 2015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정치이므로 2014년 데이터를 이용함. 근로소득세는 소득구간별로 납세자 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근로소득세의 소득구간별 신고자 분포는 제외함

자료: 캐나다국세청(<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income-statistics-gst-hst-statistics.html>), T1 Final Statistics of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마. 일본

부표 15 일본의 급여소득자 수, 급여총액 및 세수

(단위: 천명, %, 억엔)

구분	급여소득자 수				급여총액				세수 (Amount of tax)
	총급여소득자 (Number of employment income earners)	납세자		면세자 ¹⁾	총급여액 (Total amounts of pay)	납세자 (For taxpayers)	구성비		
		납세자 수 (Number of taxpayers)	구성비 (Percentage of taxpayers)					면세자 수	
2007	45,425	38,806	85.4	6,619	14.6	1,985,896	1,868,224	94.1	87,575
2008	45,873	38,365	83.6	7,508	16.4	1,970,670	1,814,087	92.1	85,551
2009	45,056	36,829	81.7	8,227	18.3	1,828,745	1,654,595	90.5	71,240
2010	45,520	37,547	82.5	7,973	17.5	1,875,455	1,699,764	90.6	72,473
2011	45,657	38,533	84.4	7,124	15.6	1,867,459	1,729,218	92.6	75,529
2012	45,556	38,375	84.2	7,181	15.8	1,858,508	1,721,294	92.6	72,977
2013	46,454	38,969	83.9	7,485	16.1	1,921,498	1,787,114	93.0	82,907
2014	47,563	40,259	84.6	7,304	15.4	1,974,043	1,845,833	93.5	85,124
2015	47,940	40,514	84.5	7,426	15.5	2,015,347	1,879,094	93.2	88,407

주: 1) 면세자 수는 급여소득자 수에서 납세자 수를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며, 면세자 구성비는 100%에서 납세자 구성비를 차감하여 산정함
 자료: 일본 국세청 통계연보(<https://www.nta.go.jp/kohyo/fokei/kokuzetcho/h27/h27.pdf>), National Tax Agency Annual Statistics Report, 2011년과 2015년의 'Table 12: Number of employment income earners, Total amounts of pay, and Amount of tax'

바. 대한민국

부표 16 우리나라의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신고자 분포(2015년 기준)

소득	종합소득세					
	총신고수 (A)	결정세액이 있는 자		결정세액이 없는 자		비중 (C/A)
		신고 수 (B)	비중 (B/A)	신고 수 (C)	비중 (C/A)	
과세미달자	704,576	0	0.0	704,576	100.0	100.0
0 이하	188,707	0	0.0	188,707	100.0	100.0
1천만 이하	2,408,205	1,969,455	81.8	438,750	18.2	18.2
2천만 이하	1,148,473	1,016,559	88.5	131,914	11.5	11.5
3.5천만 이하	710,437	687,659	96.8	22,778	3.2	3.2
4천만 이하	127,932	127,004	99.3	928	0.7	0.7
6천만 이하	325,538	324,607	99.7	931	0.3	0.3
8천만 이하	184,011	183,637	99.8	374	0.2	0.2
1억 이하	113,174	112,864	99.7	310	0.3	0.3
2억 이하	184,961	183,897	99.4	1,064	0.6	0.6
3억 이하	43,470	43,120	99.2	350	0.8	0.8
5억 이하	27,310	27,177	99.5	133	0.5	0.5
10억 이하	13,879	13,852	99.8	27	0.2	0.2
10억 초과	6,581	6,576	99.9	5	0.1	0.1
소계	6,187,254	4,696,407	75.9	1,490,847	24.1	24.1

(단위: 백만명,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4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2016.

부표 17 우리나라의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신고자 분포(2015년 기준)

(단위: 명, %)

소득	근로소득세					
	총신고수 (A)	결정세액이 있는 자		결정세액이 없는 자		
		신고 수 (B)	비중 (B/A)	신고 수 (C)	비중 (C/A)	
1천만 이하	3,539,985	59	0.0	3,539,926	100.0	
1.5천만 이하	2,084,938	285,747	13.7	1,799,191	86.3	
2천만 이하	1,961,900	1,153,233	58.8	808,667	41.2	
3천만 이하	2,930,090	1,920,043	65.5	1,010,047	34.5	
4천만 이하	1,928,195	1,344,127	69.7	584,068	30.3	
4.5천만 이하	737,622	593,800	80.5	143,822	19.5	
5천만 이하	622,341	542,545	87.2	79,796	12.8	
6천만 이하	988,334	935,557	94.7	52,777	5.3	
8천만 이하	1,303,229	1,290,131	99.0	13,098	1.0	
1억 이하	570,400	569,275	99.8	1,125	0.2	
1억 초과	596,124	594,647	99.8	1,477	0.2	
총계	17,263,158	9,229,164	53.5	8,033,994	46.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V(과세대상 근로소득), 2016.

04

주요국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납부세액 분포

가. 미국

부표 18 미국의 소득분위별 소득 비중 및 세부담 현황(2013년)

(단위: 명, 백만달러, %)

총 조정소득분위	납세자 수	구성비	총조정소득	구성비	납부세액	구성비
상위 0.001%	1,383	0.001	168,992	1.9	40,764	3.3
상위 0.01%	13,831	0.01	384,881	4.3	100,868	8.2
상위 0.1%	138,313	0.1	815,662	9.0	227,623	18.5
상위 1%	1,383,132	1.0	1,719,794	19.0	465,705	37.8
상위 2%	2,766,263	2.0	2,195,723	24.3	567,786	46.1
상위 3%	4,149,395	3.0	2,550,046	28.2	631,900	51.3
상위 4%	5,532,526	4.0	2,847,179	31.5	680,817	55.3
상위 5%	6,915,658	5.0	3,109,388	34.4	721,242	58.5
상위 10%	13,831,316	10.0	4,143,498	45.9	859,863	69.8
상위 20%	27,662,631	20.0	5,591,750	61.9	1,011,220	82.1
상위 25%	34,578,289	25.0	6,151,678	68.1	1,062,798	86.3
상위 30%	41,493,947	30.0	6,633,611	73.4	1,104,510	89.7
상위 40%	55,325,262	40.0	7,409,491	82.0	1,163,238	94.4
상위 50%	69,156,578	50.0	7,995,603	88.5	1,197,603	97.2
총계	138,313,155	100.0	9,033,840	100.0	1,231,911	100.0

자료: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uac/soi-tax-stats-individual-statistical-tables-by-tax-rate-and-income-percentile>),
 “Table 1. All Individual Returns Excluding Dependents: Number of Returns, Shares of Adjusted Gross Income (AGI) and Total Income Tax, AGI Threshold on Percentiles in Current and Constant Dollars, and Average Tax Rates, by Selected Expanded Descending Cumulative Percentiles of Returns Based on AGI Using the Definition of AGI for Each Year, Tax Years 2004 - 2013” 접속일자: 2017.8.23

나. 영국

부표 19 영국의 소득분위별 소득세 납부 현황(2007년~2016년)

(단위: %, 십억파운드)

과세연도	세전 총소득(total income before tax) 기준		세액(total tax)
	상위 10%	상위 1%	
2007-08	54.3	24.4	163
2008-09 ¹⁾	*	*	*
2009-10	54.9	26.5	154
2010-11	53.5	25.0	152
2011-12	55.4	25.4	156
2012-13	55.8	25.1	157
2013-14	58.6	27.6	165
2014-15	58.5	27.2	167
2015-16 ²⁾	59.8	28.9	174

주: 1) 영국의 2008-09 과세연도 자료는 공시되지 않음

2) 영국의 2015-16 과세연도 자료는 추정치에 해당함

자료: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income-tax-statistics-and-distributions>),

“Table 2.4 Shares of total income (before and after tax) and income tax for percentile groups, 1999-00 to 2017-18”, 접속일자: 2017.8.23

다. 독일

부표 20 독일의 소득분위별 소득세 납부 현황(2013년)

(단위: %)

구분	납세액 비중	소득금액 비중
상위 0,1%	9	4.5
상위 1%	22.9	12
상위 5%	43.4	26.3
상위 10%	56.8	38
상위 15%	66.0	47.2
상위 20%	73.1	54.9
상위 25%	78.8	61.5
상위 30%	83.5	67.4
상위 35%	87.3	72.6
상위 40%	90.5	77.3
상위 45%	93.2	81.5
상위 50%	95.3	85.2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각 연도의 *Finanzen und Steuern: Lohn- und Einkommensteuer*의 Table A4,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FinanzenSteuern/Steuern/LohnEinkommensteuer/LohnEinkommensteuer.html>), 접속일자: 2017.10.13

라. 호주

부표 21 호주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납부 현황(2014년 기준)

(단위: 명, 호주달러, %)

과세소득구간 (호주달러)	납세자 수(Net tax 기준)			납부세액(Net tax 기준)		
	인원수	누적 인원수	누적 비중	세수	누적 세수	누적 비중
1,000,001 이상	11,123	11,123	0.11	11,800,882,564	11,800,882,564	6.65
500,001~1,000,000	31,114	42,237	0.42	8,993,547,491	20,794,430,055	11.71
250,001~500,000	135,960	178,197	1.79	17,191,190,646	37,985,620,701	21.39
180,001~250,000	220,044	398,241	4.00	15,261,571,833	53,247,192,534	29.98
150,001~180,000	245,828	644,069	6.47	12,614,537,085	65,861,729,619	37.09
100,001~150,000	981,000	1,625,069	16.33	33,548,764,969	99,410,494,588	55.98
90,001~100,000	431,055	2,056,124	20.66	10,619,361,900	110,029,856,488	61.96
80,001~90,000	605,938	2,662,062	26.75	12,576,041,289	122,605,897,777	69.04
70,001~80,000	791,423	3,453,485	34.71	13,617,647,462	136,223,545,239	76.71
60,001~70,000	954,929	4,408,414	44.31	13,054,112,506	149,277,657,745	84.06
55,001~60,000	561,232	4,969,646	49.95	6,194,386,111	155,472,043,856	87.55
50,001~55,000	648,453	5,618,099	56.46	5,983,488,664	161,455,532,520	90.92
45,001~50,000	712,516	6,330,615	63.62	5,281,222,058	166,736,754,578	93.89
40,001~45,000	772,180	7,102,795	71.38	4,303,509,980	171,040,264,558	96.31
37,001~40,000	486,790	7,589,585	76.28	1,992,892,017	173,033,156,575	97.44
30,001~37,000	1,052,966	8,642,551	86.86	2,997,617,458	176,030,774,033	99.12
25,001~30,000	656,865	9,299,416	93.46	1,126,184,596	177,156,958,629	99.76
18,201~25,000	606,682	9,906,098	99.56	351,047,653	177,508,006,282	99.96
10,001~18,200	12,054	9,918,152	99.68	41,376,942	177,549,383,224	99.98
6,001~10,000	8,524	9,926,676	99.76	20,112,933	177,569,496,157	99.99
6,000 이하	23,401	9,950,077	100	17,559,470	177,587,055,627	100

자료: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ation-statistics/>), “Individual tax: Detailed Table 2.3: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sex and taxable status, 2014-15”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접속일자: 2017.8.23

마. 캐나다

부표 22 캐나다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납부 현황(2014년 기준)

(단위: 명, CAD, %)

총소득금액 기준	납세자 수		납부할 세액	
	신고 수	비율	금액	비율
0 ~ 4999	36,750	0.2	7,830	0.0
5,000~9,999	165,920	0.9	61,827	0.0
10,000~14,999	437,070	2.4	199,863	0.1
15,000~19,999	811,540	4.4	622,500	0.3
20,000~24,999	1,344,980	7.3	1,482,756	0.8
25,000~29,999	1,402,630	7.6	2,564,418	1.3
30,000~34,999	1,451,110	7.9	3,727,903	1.9
35,000~39,999	1,449,270	7.9	4,865,628	2.5
40,000~44,999	1,426,740	7.7	6,080,473	3.1
45,000~49,999	1,226,210	6.7	6,382,626	3.3
50,000~54,999	1,061,610	5.8	6,694,400	3.4
55,000~59,999	930,010	5.0	6,928,530	3.5
60,000~69,999	1,526,430	8.3	14,092,229	7.2
70,000~79,999	1,220,250	6.6	14,249,343	7.3
80,000~89,999	909,320	4.9	13,066,700	6.7
90,000~99,999	716,910	3.9	12,227,962	6.2
100,000~149,999	1,470,500	8.0	35,511,772	18.1
150,000~249,999	565,890	3.1	25,244,121	12.9
250,000 ~	267,800	1.5	41,925,754	21.4
합계	18,420,940	100.0	195,936,635	100.0

주: 2015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정치이므로 2014년 데이터를 이용함
 자료: 캐나다 국세청(<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income-statistics-gst-hst-statistics.html>), T1 Final Statistics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접속일자: 2017. 10. 13.

바. 일본

부표 23 일본의 소득구간별 소득세 납부 현황(2014년 기준)

(단위: 천명, 억엔, %)

과세소득구간 (엔)	납세자 수			납부세액		
	인원수	누적 인원수	누적 비중	세수	누적 세수	누적 비중
1억 초과	15	15	0.2	9,459	9,459	17.6
~1억 이하	40	55	0.9	7,725	17,184	31.9
~5,000만 이하	217	272	4.4	15,760	32,944	61.1
~2,000만 이하	497	769	12.6	11,192	44,136	81.9
~1,000만 이하	1,041	1,810	29.6	6,312	50,448	93.6
~500만 이하	1,224	3,034	49.5	2,031	52,479	97.4
~300만 이하	1,175	4,209	68.7	873	53,352	99.0
~200만 이하	1,445	5,654	92.3	483	53,835	99.9
~100만 이하	471	6,125	100.0	43	53,878	100.0

자료: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kohyo/tokei/kokuzeicho/tokei.htm>), 통계연보(2014), 統計情報>標本調査結果>調査結果の概要, '(第8表)所得階級別納稅者數'와 '(第20表)所得階級別稅額'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접속일자 2017.9.5

사. 대한민국

부표 24 우리나라의 종합소득규모별 소득세 납부 현황(2015년 기준)

(단위: 백만원, %)

	총 납세인원			종합소득			결정세액		
	인원(명)	비중	누적 비중	금액	비중	누적 비중	금액	비중	누적 비중
10억 초과	6,581	0.1	0.1	16,101,113	9.9	9.9	5,078,348	21.5	21.5
10억 이하	13,879	0.2	0.3	9,354,677	5.8	15.7	2,852,164	12.1	33.7
5억 이하	27,310	0.4	0.8	10,333,144	6.4	22.1	2,894,189	12.3	45.9
3억 이하	43,470	0.7	1.5	10,502,754	6.5	28.6	2,568,199	10.9	56.8
2억 이하	184,961	3.0	4.5	25,050,113	15.5	44.0	4,530,998	19.2	76.1
1억 이하	113,174	1.8	6.3	10,103,176	6.2	50.3	1,288,278	5.5	81.5
8천만 이하	184,011	3.0	9.3	12,705,841	7.8	58.1	1,341,333	5.7	87.2
6천만 이하	325,538	5.3	14.5	15,940,313	9.8	67.9	1,282,593	5.4	92.7
4천만 이하	127,932	2.1	16.6	4,784,021	3.0	70.9	324,956	1.4	94.0
3.5천만 이하	710,437	11.5	28.1	18,670,965	11.5	82.4	937,294	4.0	98.0
2천만 이하	1,148,473	18.6	46.6	16,426,889	10.1	92.6	382,013	1.6	99.6
1천만 이하	2,408,205	38.9	85.6	12,060,896	7.4	100.0	86,128	0.4	100.0
0 이하	188,707	3.0	88.6	0	0.0	100.0	0	0.0	100.0
소계	5,482,678	88.6	88.6						
과세미달자	704,576	11.4	100.0						
총 합계	6,187,254	100.0		162,033,902	100.0		23,566,493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1-4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2016.

부표 25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상위 10%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 현황(2007년~2015년)

(단위: 백만원, %)

	연말정산 신고자		급여총계 상위 10%		
	인원(명)	결정세액	인원(명)	결정세액	비중
2007	13,376,254	14,113,796	1,337,377	10,483,908	74.3
2008	14,045,580	14,182,145	1,404,558	10,713,873	75.5
2009	14,294,993	12,851,857	1,429,499	9,964,831	77.5
2010	15,176,782	15,586,275	1,517,678	12,097,799	77.6
2011	15,540,057	17,801,868	1,554,005	13,598,416	76.4
2012	15,768,083	19,971,211	1,576,808	14,877,057	74.5
2013	16,359,770	22,287,305	1,635,977	16,420,256	73.7
2014	16,687,079	25,397,795	1,668,707	19,465,109	76.6
2015	17,333,394	28,252,845	1,733,339	21,427,347	75.8

자료: 국세청,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총괄)’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년 10월 23일 인쇄
2017년 10월 30일 발행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 쇄 (주)정인애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